



사례
중심

비즈니스 & 생활법률

중국法

이럴땐 이렇게



투자과 경영 / 세무 / 무역과 관세 / 지식재산권 /
노무인사 / 환경과 기업 / 부동산 / 민법과 생활 / 민사소송법과 생활 /
형법과 생활 / 형사소송법과 생활 / 일상 생활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사례
중심

비즈니스 & 생활법률

중국法

이럴땐 이렇게



투자과 경영 / 세무 / 무역과 관세 / 지식재산권 /
노무인사 / 환경과 기업 / 부동산 / 민법과 생활 / 민사소송법과 생활 /
형법과 생활 / 형사소송법과 생활 / 일상 생활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중국 법률 사례집 『2020년 개정증보판』 을 발간하며

요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지구촌 모두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곳 중국도 초기에는 어려움이 컸으나, 지금은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와 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거의 30여 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한·중 양국의 인적·물적 교류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교류 인원은 매년 1,000여만 명에 이르고, 중국은 어느덧 우리에게 제1위 수출국이자 제3위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도 양국은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상호 지원하고 응원하는 등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우호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양국 간의 교류의 증대로 다양한 유형의 법률분쟁이 매년 급증하고 있고, 중국의 법률 환경도 최근 그 변화가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기업 운영과 밀접한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여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등 기존 외국인투자 3법을 폐지하였고, 금년에는 1949년 신중국이 성립된 후 70여 년 만에 교민 생활과 밀접한 《중화인민공화국민법》을 처음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민 및 기업은 중국의 최근 제·개정된 법령을 이해하고, 법률 분쟁에 대하여도 사전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주중한국대사관은 해외공관 중 처음으로 2011년 생활법률책자를 발간한 이래, 2014년과 2017년 개정 증보판을 각 발간하였고, 이번에는 『2020년 개정증보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는 주중한국대사관에 접수된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반영한 모든 법률분야를 망라한 종합 사례집으로, 대사관 각 분야 주재관들의 업무 경험과 관련 중국법령을 모아 발간한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중국법률 실무서적이라고 자부합니다.

이번 『2020년 개정증보판』은 양국에서 최근 문제되는 미세먼지 등을 고려한 환경 분야 및 비자 등 일상생활 분야를 새로이 각 추가하고, 우리 기업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무 및 세금, 지식재산권 분야를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새롭게 재구성하였으며, 최근 제정된 통합 민법전의 내용을 민사 및 부동산 분야 등에 반영하는 등 우리 기업 및 교민의 합법적인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책자는 인쇄본으로 제작되어 우리 교민단체 및 우리 기업에게 전달하고, 주중한국대사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중국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교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주중한국대사관은 한·중 양국 간에 법치주의에 입각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2020년 개정증보판』 발간에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8월

대한민국 주중국대사 장하성

CONTENTS

SECTION 1 투자와 경영 14

| | |
|------------------------------------------|----|
| [1] 외국인 개인사업자 등록 | 15 |
| [2] 외상투자법과 기존 삼자투자법의 차이 | 16 |
| [3] 외상투자법 시행에 따른 외자기업의 경과조치 | 18 |
| [4] 중국법인 설립시 검토사항 | 19 |
| [5] 외자법인 설립 간소화 | 20 |
| [6] 대표처(대표기구) 설립 절차 | 21 |
| [7] 외국 비정부조직의 중국 대표처 설립 | 23 |
| [8] 대표처(대표기구) 등기증 연장 | 24 |
| [9] 합명기업의 설립 | 25 |
| [10] 합명기업과 유한회사의 차이 | 26 |
| [11] 등록자본금에 대한 규정 | 27 |
| [12] 외상투자회사 설립 시 현물출자 | 28 |
| [13] 회사 주소지 조건 및 아파트 등록 가능 여부 | 29 |
| [14] 인터넷 쇼핑몰업체의 설립 | 31 |
| [15] 부동산 중개업체의 설립 | 32 |
| [16] 인테리어 회사 설립 조건 | 33 |
| [17] 개인투자 광고회사 설립 가능 여부 | 35 |
| [18] 영업집조 게시 의무 위반 | 36 |
| [19] 외국인의 전자영업집조 발급(신청)절차 | 37 |
| [20] 외국인투자자 신분증명 공증업무 | 38 |
| [21] 회사 현재 상태 확인 방법 | 39 |
| [22] 법인 연도공시제도 시행 | 40 |
| [23] 직권말소 처분을 받은 회사의 원상회복 가능 여부 | 41 |
| [24] 중국 내 유한회사의 외국인 법정대표 | 42 |
| [25] 회사의 익명주주와 향후 권리의 보호 | 43 |
| [26] 지분양도 후 발견된 채무에 대한 책임 | 44 |
| [27] 채권 회수 관련 대리권 위임 절차 | 46 |
| [28] 토지 출자 후 소유자 명의변경 | 47 |

| | |
|------------------------------------|----|
| [29] 기업청산의 당위성 | 48 |
| [30] 기업청산의 사유 및 청산 절차 | 49 |
| [31] 간이청산절차 | 51 |
| [32] 세무청산 절차와 세무청산 보증제도 | 52 |
| [33] 법인 말소 이외의 세무청산을 해야하는 상황 | 54 |
| [34] 청산의 위임 | 55 |
| [35] 청산재산의 정리와 변제 순위, 세금 반환 | 56 |
| [36] 청산공고 및 청산 중 출국 가능 여부 | 58 |
| [37] 파산, 구조조정, 화의의 개념 비교 | 59 |

SECTION 2 세무 60

| | |
|---------------------------------------------|----|
| ▶ 기업 세무 | 61 |
| [1] 중국사업시 납부해야 할 세금의 종류 | 61 |
| [2]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세무절차와 제출서류 | 63 |
| [3] 세무등기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 제재 조치 | 64 |
| [4]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 납세신고 여부 | 65 |
| [5] 회사운영이 곤란한 경우 납세연기 가능 여부 | 66 |
| [6]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제재조치 | 67 |
| [7] 세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권리를 구제하는 방법과 절차 | 69 |
| [8] 거주자기업과 비거주자기업의 구분 기준과 기업소득세 | 70 |
| [9] 기업 비용의 공제한도와 추가공제 | 71 |
| [10] 조세우대 혜택 세목 및 세율 | 73 |
| [11] 소형박리기업의 기준과 혜택 | 75 |
| [12] 현지법인 이익금을 한국으로 송금하려면 | 77 |
| [13] 한중 이중과세 조정방법 | 79 |
| [14] 이전가격과 위험관리 방법 | 80 |
| [15] 회사에 지속 결손이 나는 경우 세무처리방법 | 82 |
| [16] 기업청산시 기업소득세 | 83 |
| [17] 직원 보조금 지급과 기업소득세 | 84 |

CONTENTS

| | |
|------------------------------------------------|-----|
| [18] 복리후생비 지급과 기업소득세 | 86 |
| [19] 영업세 폐지와 증치세 통합 내용 | 87 |
| [20] 증치세 과세 대상 항목 | 88 |
| [21] 증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 89 |
| [22] 증치세 영수증(세금계산서)의 구매방법 | 90 |
| [23] 증치세 영수증(세금계산서) 발행방법 | 91 |
| [24] 전용영수증(세금계산서)과 보통영수증 (세금계산서)의 차이점 | 92 |
| [25]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영수증(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 93 |
| [26] 증치세 소규모납세자와 일반납세자 구분과 차이점 | 94 |
| [27] 증치세 소규모납세자에서 일반납세자로의 전환 | 96 |
| [28] 증치세 일반납세자에서 소규모납세자로의 전환 | 97 |
| [29] 증치세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방법 | 98 |
| [30] 서비스 일반납세자 증치세 공제문제 | 100 |
| [31] 소비세 납세의무자와 납세대상 | 102 |
| [32] 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세금의 종류와 방법 | 103 |
| [33] 기업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의 종류와 방법 | 105 |
| [34] 기업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세금의 종류와 방법 | 107 |
| ▶ 생활 세무 | 108 |
| [35] 주재원의 개인소득세 | 108 |
| [36] 한중 겸임 근무자의 개인소득세 | 110 |
| [37] 개인소득세 종합과세와 분류과세 | 112 |
| [38] 개인소득세 종합과세시 소득공제 내용 | 114 |
| [39] 중국주식 및 펀드 수익에 대한 납세 | 116 |
| [40]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 조정방법 | 117 |

| | |
|-------------------------------------------|------------|
| [41] 차량취득세 | 118 |
| [42] 중국내에서 가족간에 무상 증여 하는 경우 ... | 119 |
| [43] 중국내에서 타인간에 무상 증여 하는 경우 ... | 120 |
| [44] 개인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 121 |
| [45] 개인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 123 |
| [46] 각종 세금의 세율표 및 납세기한 | 125 |
| Section 3 무역과 관세 | 134 |
| [1] 무역거래에서 Alipay(支付宝) 결제방식 | 135 |
| [2] 수입금지 품목 | 136 |
| [3] 세관신고서의 정정에 필요한 비용 및 시간 | 137 |
| [4] 가공무역 | 138 |
| [5] 관세의 환급 | 139 |
| [6] 원재료 소모에 대한 관리 | 140 |
| [7] 무역분쟁 관련 한국정부의 상담지원 | 141 |
| [8] 개인우편 택배에 대한 처리 | 142 |
| [9] 감면실비에 대한 세관신고처리 | 143 |
| [10] 해외 전자상거래 업무에 관하여 | 144 |
| [11] 해외 수출입기업의 세관 등록증서의 기간 | 145 |
| [12]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미 제출시 보완절차 | 146 |
| [13] 품목분류 및 관세소급 추정 | 147 |
| [14] 로열티에 대한 가격심사 | 148 |
| [15] 감면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처벌 | 149 |
| [16] 수출입기업의 세관신용제도 | 150 |
| [17] 품목분류 규정 | 152 |
| [18] 증치세 수출환급 | 153 |
| [19] 중국 내 의료기기 수입, 판매 | 154 |
| [20] 기술 수출 절차 | 155 |

Section 4 지식재산권 156

CONTENTS

| | | | |
|----------------------------------------------|------------|----------------------------------------------|------------|
| [1] 도메인 네임과 상표권의 분쟁 해결방법 | 157 | [7] 근로자의 인력유출 예방 | 196 |
| [2] 세관(해관) 상표등록 | 159 | [8] 근로자에 대한 위약금 약정 | 197 |
| [3] 전시회 참가자의 지재권 보호 | 160 | [9] 퇴직연령 이후의 재고용 및 사회보험 | 198 |
| [4] 무단으로 先등록한 상표에 대한 대응방안 | 161 | [10] 파견근로자가 업무중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책임처리 | 199 |
| [5] 상표의 유효기간 | 163 | [11] 이직증명서 발급의무 | 200 |
| [6] 상표등록 전에 전시된 상표의 우선권 | 164 | ▶ 취업허가제도 | 201 |
| [7] 기업 말소 후 상표 양도 | 165 | [12] 대표처의 직원고용 | 201 |
| [8] 타인의 상표를 도용하여 상화로 등록한 경우 | 166 | [13] 취업허가 신청요건 | 202 |
| [9] 특허의 무효 시기지급된 사용료의 반환 여부 | 167 | [14] 이직 시 취업비자 변경 | 206 |
| [10] 상표권 담보 대출 | 168 | [15] 이직 시 비자 및 외국인 근로허가증 변경 | 207 |
| [11] 직무발명의 소유권 | 169 | [16] 외국인 근로허가증 말소의무 | 208 |
| [12] 특허 보호기한 연장 여부 | 170 | [17] 외국인 고용업체 불일치 등 불법고용시 받게 될 처벌 | 209 |
| [13] 영업비밀 보호 | 171 | [18] 외국인 근로허가증 신청 | 211 |
| [14] OEM 수출시 상표분쟁 대응법 | 173 | [19] 취업비자 연기시의 주의사항 | 212 |
| [15] 저작권 등록방법과 관련 상담지원 | 175 | ▶ 여성, 장애인, 미성년자 고용 | 213 |
| [16]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지재권 보호 방법 | 179 | [20] 장애인 고용 의무 및 장애인 취업보장금 | 213 |
| [17] 온라인 상표 침해에 대한 대응방법 | 180 | [21] 미성년자 고용문제 | 215 |
| [18] 상표 라이선스 계약 주의사항 | 182 | [22] 임신과 해고 | 216 |
| [19] 중국에서 지재권 출원 및 지재권 분쟁시 한국정부의 지원 | 184 | [23]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보장 | 217 |
| [20] 지재권 분야의 신용상실 행위에 대한 제재 | 187 | [24] 임신한 직원의 노동계약기한 연장 | 218 |
| Section 5 노무인사 | 189 | ▶ 임금, 휴가 등 근로조건 | 219 |
| ▶ 노무계약 및 이행 | 190 | [25] 일급계산 | 219 |
| [1] 회사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의 책임 | 190 | [26] 주말 잔업비 지급 | 220 |
| [2] 노동계약 미체결 시 2배 임금 배상문제 | 191 | [27] 근무시간 종합계산제(탄력적 근로시간제) | 221 |
| [3] 수습기간 | 192 | [28] 개수불제(성과과제) 임금 | 223 |
| [4] 이종재직자의 고용과 책임 | 193 | [29] 직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 가능 여부 | 224 |
| [5] 기업의 겸업 근로자에 대한 관리 | 194 | [30] 연차 유급휴가와 근무연수의 계산 | 225 |
| [6] 이직방지를 위한 신분증 보관 등의 적법성 | 195 | [31] 평일 대체휴무 잔업수당 지급여부 | 227 |

CONTENTS

▶ 산업안전과 보상 228

| | |
|------------------------------------|-----|
| [32] 안전사고 발생시 회사 및 책임자에 대한 처벌..... | 228 |
| [33] 산업재해보험의 적용범위..... | 229 |
| [34]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상금 산정..... | 230 |
| [35] 산업재해 근로자의 의료대우 범위..... | 232 |
| [36] 산업재해 치료기간 중 임금..... | 234 |
| [37] 출퇴근 교통사고의 공상 인정 여부..... | 235 |

▶ 사회보험..... 236

| | |
|-------------------------------------------|-----|
| [38] 외국인의 중국사회보험 가입의무..... | 236 |
| [39]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자..... | 238 |
| [40] 양로보험 가입면제..... | 239 |
| [41] 근로자 고용시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및 절차..... | 241 |
| [42] 사회보험 미가입, 연체 및 허위신고 등에 대한 처벌..... | 244 |
| [43] 사회보험 미가입 약정의 효력..... | 246 |

▶ 노동계약의 해지 247

| | |
|---------------------------------------------|-----|
| [44] 근로자의 계약 해지 요건..... | 247 |
| [45] 회사의 일방적인 업무내용 변경과 계약 해지..... | 248 |
| [46] 회사의 징계하고 요건..... | 249 |
| [47] 고정기한 계약 연속 2회 체결 및 무기한 노동계약 해지..... | 251 |
| [48] 수습기간 중인 직원의 해고..... | 252 |
| [49] 시간제 근로자의 해고..... | 253 |
| [50] 근무태만에 따른 해고..... | 254 |
| [51] 정리해고의 절차와 방법..... | 256 |
| [52] 경제보상금 지급 사유 및 지급액..... | 257 |
| [53] 외국인의 경제보상금..... | 259 |

▶ 노동분쟁..... 260

| | |
|--------------------------------|-----|
| [54] 노동중재의 신청절차, 비용, 기간 등..... | 260 |
| [55] 노동중재에 대한 이의 신청..... | 261 |

| | |
|-----------------------|-----|
| [56] 중재판결의 취소 신청..... | 262 |
|-----------------------|-----|

Section 6 환경과 기업 263

| | |
|----------------------------------|-----|
| [1] 산란오 기업(散乱汚企业) 정리 및 구제절차..... | 264 |
| [2] 공장 신·증설시 환경영향평가 실시..... | 266 |
| [3] 배출허가증 신청..... | 268 |
| [4]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관리..... | 270 |
| [5] 중점오염배출기업 지정..... | 272 |
| [6] 오염물질 검측 (모니터링)제도..... | 274 |
| [7] 중점 오염물질 총량 관리제도..... | 276 |
| [8] 기업환경신용평가..... | 278 |
| [9] 중요업 예·경보 시 기업활동제한..... | 280 |
| [10] 고오염, 고에너지 소비 업종의 구조조정..... | 282 |
| [11] 위험폐기물 관리..... | 284 |
| [12]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관리..... | 286 |
| [13] 영업용 디젤차 규제..... | 287 |
| [14] 비도로 이동기계(건설중장비 등) 규제..... | 289 |
| [15] 형사처벌 대상인 환경법 위반행위..... | 290 |
| [16] 행정구류 대상인 환경법 위반행위..... | 292 |
| [17] 환경법 위반으로 인한 생산제한, 생산정지..... | 293 |
| [18] 환경법상 행정처벌 및 관련 청문제도..... | 295 |
| [19] 환경설비 투자에 대한 소득세액 감면..... | 297 |
| [20] 환경보호세법에 의한 환경보호세 부과..... | 298 |
| [21] 내부고발 및 주민신고제도..... | 301 |
| [22] 쓰레기 분리수거와 위반시 벌칙..... | 302 |

Section 7 부동산 303

▶ 기업 부동산 304

| | |
|--------------------------------|-----|
| [1] 토지소유권..... | 304 |
| [2] 확보(무상불하)토지 양수..... | 306 |
| [3] 국유토지사용권 출양방식..... | 307 |
| [4] 개발구와 체결한 토지출양 계약서의 효력..... | 308 |

CONTENTS

| | |
|---------------------------------|------------|
| [5] 토지사용권의 양도와 임대 | 310 |
| [6] 유휴토지에 대한 강제 회수 | 311 |
| [7] 주택분양허가증의 취득 전 분양 | 312 |
| [8] 분양면적의 차이 | 313 |
| [9] 토지 임차기간 | 315 |
| [10] 상가 임차인의 인테리어 비용 회수 | 316 |
| [11] 임차인의 우선구매권에 대한 특례 | 318 |
| [12] 국유토지 건축물 철거시 임차인 보호 | 319 |
| [13] 집체토지 건축물 철거시 임차인 보호 | 320 |
| [14] 불법 건축물 철거시 임차인 보호 | 321 |
| [15] 임차한 농촌 토지 관련 분쟁 | 322 |
| [16] 미등기건물 저당권 설정 가능 여부 | 323 |
| [17] 외국법인의 중국내 부동산 구매 | 324 |
| [18] 부동산 매매에 따른 임차인 보호 | 326 |
| [19] 토지사용권 이중 양도시 대책 | 327 |
| ▶ 생활 부동산 | 329 |
| [20] 아파트 임차와 숙소등기 | 329 |
| [21]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유의사항 | 330 |
| [22] 임대차계약서와 세금 관련 약정 | 332 |
| [23] 임대차 등기 미이행시 처벌 여부 | 333 |
| [24] 임차아파트 사업용도 변경 | 334 |
| [25] 임차한 아파트의 매매와 임차인 보호 | 335 |
| [26] 저당권 설정 아파트와 임차인 보호 | 336 |
| [27] 아파트 전대(재임대) | 337 |
| [28] 임대차 목적물의 수리의무 | 338 |
| [29] 외국인의 아파트 구입 및 주의사항 | 339 |
| [30] 부동산 허위 광고 | 341 |
| [31] 인테리어 보수기간 | 342 |
| [32] 건물관리등기증 취득 전 아파트의 양도 | 343 |
| [33] 부부 중 일방의 재산처분행위의 효력 | 344 |

| | |
|------------------------------------------------|-----|
| [34] 압류부동산의 매매 | 345 |
| [35] 담보 제공된 부동산 등기사항 확인 | 346 |
| [36] 저당부동산의 변제 방법 | 347 |
| [37] 토지용도의 무단 변경 | 348 |
| [38] 토지 사용기간 | 349 |
| [39] 부동산 저당권 신청절차 | 351 |
| [40] 부동산 구입 관련 은행 대출 시 계약금(首付款) 납입 비율 | 353 |
| [41] 아파트 구매 후 인테리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 | 354 |
| [42] 중국 부동산에 대한 한국 법원 판결의 효력 | 355 |
| [43] 입주민간 공사 소음 문제의 처리 | 356 |
| [44] 차고의 부동산등기 | 357 |
| [45] 중국에서 부동산 판매 시 주의사항 | 358 |
| [46] 부동산 기본상황 조사방법 | 359 |
| [47] 전자 부동산 등기증서의 효력 | 360 |
| [48] 소산권방(小产权房)의 법적리스크 | 361 |

Section 8 민법과 생활 363

| | |
|--------------------------------------------|-----|
| [1]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성립 여부 | 364 |
| [2] 구두 계약의 효력 | 365 |
| [3] 만 17세 미성년자의 민사상 책임능력 | 366 |
| [4] 미성년자가 충전한 게임머니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 367 |
| [5] 처분권이 없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 | 368 |
| [6] 협박을 받아 체결한 계약의 효력 | 369 |
| [7] 이자 지급기한에 대한 약정 없이 금전을 빌려준 경우 | 370 |
| [8] 지연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이자지급 | 371 |
| [9] 개인 대출이자율의 제한 문제 | 372 |
| [10] 계약금(定金)과 약정금(订金)의 차이 | 373 |

CONTENTS

| | |
|-------------------------------------------|-----|
| [11] 계약의 위약금 약정에 대한 법적 제한..... | 374 |
| [12] 분할 지급 계약에서 매수인의 위약 책임..... | 375 |
| [13] 여행과정에서 계약과 다를 경우 여행사의 책임..... | 376 |
| [14]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 | 377 |
| [15] 공동 연대보증인 상호 간의 구상권 관계..... | 379 |
| [16]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 | 381 |
| [17] 채권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의 변제 방법..... | 382 |
| [18]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의 불안 항변권..... | 383 |
| [19] 술을 강권하여 사망한 경우의 법적 책임..... | 384 |
| [20] 임대 부동산 화재에 대한 책임..... | 385 |
| [21] 민법상의 자구행위 인정여부..... | 386 |
| [22] 인신상해 면책약정의 유효여부..... | 388 |
| [23] 강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의 손해배상 문제..... | 389 |
| [24] 연대책임에서의 가해자 책임범위..... | 390 |
| [25] 유치권 행사에 대한 제한..... | 391 |
| [26]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의 환불 문제..... | 392 |
| [27] 중국 혼인신고 연령 및 국제결혼 신고 절차..... | 393 |
| [28] 출생 아이의 국적 및 산아제한정책..... | 395 |
| [29] 혼인 중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경우..... | 397 |
| [30] 한국과 중국의 이혼절차 차이..... | 398 |
| [31] 이혼 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분할..... | 400 |
| [32] 이혼시 상대방 명의 재산 및 예금의 분할..... | 401 |
| [33] 이혼 후 아이의 양육권..... | 403 |
| [34] 중국 소재 부동산의 상속..... | 404 |
| [35] 중국인 계부 재산에 대한 상속..... | 406 |
| [36] 공증접객업자의 보관물 책임..... | 407 |
| [37] 공공버스에서 분실한 물건의 배상책임..... | 408 |
| [38] 품질보증기간..... | 409 |
| [39] 채권자가 제3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상환 | |

| | |
|-----------------------------------------|------------|
| 요청 가능여부..... | 410 |
| [40] 조건부 계약 이행..... | 411 |
| [41] 법정 대표자의 월권행위의 효력..... | 412 |
| [42] 회사 합병 후의 채무승계문제..... | 413 |
| [43] 제품판매량에 따라 할인비율을 정하는 것의 합법성..... | 414 |
| Section 9 민사소송법과 생활..... | 415 |
| [1] 중국 법원의 조직..... | 416 |
| [2] 계약조항 중 중재 또는 소송약정에 대한 분쟁..... | 418 |
| [3] 법원의 민사소송 절차와 소송비용..... | 419 |
| [4] 부동산 분쟁의 소송관할..... | 424 |
| [5]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 425 |
| [6] 법원소송 중 증인의 출석의무..... | 427 |
| [7] 재심 신청..... | 428 |
| [8] 법원소송 중 화해의 법적 효력..... | 430 |
| [9] 중재와 소송의 비교..... | 431 |
| [10] 민사소송 중 중국에서 출국이 금지된 경우..... | 433 |
| [11] 민사소송 중 증거를 훼손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 | 434 |
| [12] 채무자의 투자지분을 통한 채권회수..... | 436 |
| [13] 중국의 지급명령제도..... | 438 |
| [14] 재산보전 처분 및 그 담보..... | 439 |
| [15] 소송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 441 |
| [16] 한국법원 판결문에 대한 중국에서 집행 거부..... | 442 |
| [17] 거주주택에 대한 강제집행 제한..... | 444 |
| [18] 판결문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 445 |
| [19] 민사판결 불이행과 소비제한..... | 446 |
| [20] 위법한 보전조치 해제에 대한 구제..... | 448 |
| [21] 민사소송 진행 중 외국인의 권리..... | 449 |
| [22] 법원의 임의적인 결석판결..... | 450 |
| [23] 건물 매매가 착오로 집행되었을 경우의 | |

CONTENTS

| | | | |
|---------------------------------------------|------------|---------------------------------------------|------------|
| 대응방법 | 451 | [23] 도박죄의 입안 기준 | 487 |
| [24] 외국변호사 신분으로 중국에서 소송대리 가능여부 | 452 | [24] 도박 장소를 제공한 경우의 형사처벌 | 488 |
| [25] 원고 소재지 법원의 관할권 | 453 | [25] 미약범죄의 처벌 기준 | 489 |
| [26] 법관의 회피제도 | 454 | [26] 미약 흡입행위를 수용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 490 |
| [27] 중국 법원의 소송문서의 송달방식 | 455 | [27]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 | 491 |
| Section 10 형법과 생활 | 456 | [28] 무고죄 | 492 |
| [1] 한국에서의 범죄를 중국에서 다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457 | [29] 중국의 집회, 시위, 행진제도 | 493 |
| [2] 중국의 정당방위의 범위 | 458 | [30] 성추행에 대한 처벌 | 494 |
| [3] 범행중지의 경우 형사책임 | 459 | [31]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 | 495 |
| [4] 식중독 사고와 형사책임 | 460 | [32] 성관계 동영상 유포의 형사책임 | 496 |
| [5] 저작물 유포의 형사책임 | 462 | [33] 회사자금 유용 및 자금유용죄 | 498 |
| [6] 짝퉁명품 생산을 하는 공장임대인에 대한 형사처벌 | 464 | [34] 회사자금 횡령 및 직무침점죄 | 499 |
| [7] 문화재 밀수 | 466 | [35] 계약과 달리 도착한 물품이 폐자재인 경우와 계약사기죄 | 500 |
| [8] 고공투하물에 대한 형사처벌 | 467 | [36] 부동산 이중매매와 계약사기죄 | 501 |
| [9] 신용카드대금 연체에 대한 형사처벌 | 468 | [37] 진단서를 위조하여 병가 처리한 직원에 대한 형사처벌 | 502 |
| [10] 공공질서문란죄 | 469 | [38] 회사를 상대로 공갈협박한 직원에 대한 형사처벌 | 504 |
| [11] 비방죄(誹謗罪) | 470 | [39] 수표 부도시 형사책임 | 505 |
| [12] 사이버에서의 비방 문제 | 471 | [40] 교통사고죄 중 중대사고 및 처리 절차 | 506 |
| [13] 중혼죄의 인정에 관하여 | 473 | [41] 경미한 교통사고의 형사책임 범위 | 509 |
| [14] 중국에서 간통죄 인정 여부 | 475 | [42] 차문을 열면서 부딪쳐 발생한 교통사고의 처리 | 510 |
| [15] 철도사건의 입건 기준 | 476 | [43] 음주운전에 대한 형법상 처벌과 행정처벌 | 511 |
| [16] 강도죄의 형사책임 | 478 | [44] 음주측정에 대한 이견 진술기회 | 513 |
| [17] 태아 성별 감정의 위법성 | 479 | [45] 자전거에 의한 교통사고 | 514 |
| [18] 상해죄의 입건 기준 | 480 | [46] 가정폭력과 형법상 확대죄 | 515 |
| [19] 위조지폐를 사용한 경우의 형사책임 | 481 | [47] 가정폭력에 대한 구제 | 516 |
| [20] 착오 송금된 돈을 반환 거부한 경우의 형사처벌 | 483 | Section 11 형사소송법과 생활 | 517 |
| [21] 중국 형법의 공소시효에 관하여 | 484 | [1] 형사소송 중 변호인의 자격 | 518 |
| [22] 미성년자의 형사책임 범위 | 485 | [2] 변호인의 선임 | 519 |

CONTENTS

| | |
|-------------------------------------|-----|
| [3] 국선변호인 제도 | 520 |
| [4] 형사소송 중 변호사의 권리 | 521 |
| [5] 중국의 묵비권 | 523 |
| [6] 형사처벌과 합의 | 524 |
| [7] 보석 석방제도 | 525 |
| [8] 주거감시 제도 | 527 |
| [9] 중국 가석방 제도의 범위 | 528 |
| [10] 중국 법률 중 친고죄의 범위 | 529 |
| [11] 불법 녹음의 형사처벌 여부 | 530 |
| [12] 피해자의 형사소송 참여 | 531 |
| [13] 중국의 감옥외집행 범위 | 532 |
| [14] 구속 요건 | 533 |
| [15] 공안의 불법건 조치에 대한 피해자의 불복방법 | 534 |
| [16] 법원의 재심청구 요건 | 535 |
| [17] 형사판결 상소시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 536 |
| [18] 형사사건 중 수사기간과 구류기한 | 537 |
| [19] 검찰원의 공안에 대한 보충수사 요구 제도 | 538 |
| [20] 회피 제도 | 539 |
| [21] 증인보호 제도 | 540 |
| [22] 법정질서 문란 시의 처벌 | 541 |
| [23] 상소기간이 지난 후의 상소 가능성 | 542 |
| [24] 중국의 2심 중심제 | 543 |
| [25] 형사 안건의 법원 심판기한 | 544 |
| [26] 외국인의 재판 방청 | 545 |
| [27] 형사 인건 중 불공개 심판 범위 | 546 |
| [28] 검찰원의 불기소 처분의 유형 | 547 |
| [29] 검찰원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구제절차 | 549 |
| [30] 중국의 사형재심제도 | 550 |
| [31] 재판 중의 선임변호사의 교체 여부 | 551 |
| [32] 잘못된 형사구금의 배상 | 552 |
| [33] 형사재판 법원의 관할권 확정 | 553 |

| | |
|--------------------------------------------|-----|
| [34] 감형 및 감형 조건 | 554 |
| [35] 사형 집행유예제도 | 555 |
| [36] 형사 고소의 절차 | 556 |
| [37] 영장 없이 압수수색 가능여부 | 557 |
| [38] 한국 범죄자가 중국에서 한국 변호사 선임 가능 여부 | 558 |
| [39] 피고인의 국적불명 시의 처리 | 559 |

Section 12 일상 생활 (비자, 자동차, 학교, 애완동물 등)

| | |
|----------------------------------------------|------------|
| [1]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벌 및 구제 | 561 |
| [2] 법인 설립에 따른 Z비자 취득 | 562 |
| [3] 중국 비자의 유효기간과 체류기간 | 564 |
| [4] 거류허가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 | 565 |
| [5] 중국에서 외국인이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 566 |
| [6] 외국인의 중국 운전면허 취득 | 568 |
| [7]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보험 보상 | 569 |
| [8] 교통사고의 책임범위 | 570 |
| [9] 중국 학교의 학력 인정 | 571 |
| [10] 대학교의 학위증 발급 거부에 대한 구제 | 572 |
| [11] 애완동물의 반입 및 관리 | 573 |
| [12] 외국인의 선교 활동 | 574 |
| [13] 위챗페이 이용 방법 | 576 |
| [14] 알리페이(즈푸바오) 이용 방법 | 578 |
| [15] 타오바오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 579 |
| [16] 중국 의대를 졸업한 외국인의 중국 내 의료행위 가능여부 | 581 |
| [17] 병원의 의료과실사고에 대한 구제 | 583 |
| [18] 중국에서 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장례 처리 절차 | 585 |
| [19] 불법 환치기 환전 시 처벌 | 587 |
| 부록 | 589 |

- Part 1 -

중국 비즈니스법률

투자과 경영 / 세무 / 무역과 관세 / 지식재산권 /
노무인사 / 환경과 기업 / 부동산



Section 1

투자과 경영

이러때 이러게



외국인 개인사업자 등록

Q 외국인도 중국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할 수 있나요?

A 중국에서 외국인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서 사업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 :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업자유형은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个体工商户)와 법인사업자로 나뉩니다.

중국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신청인은 반드시 중국 국민이어야 합니다(<개인사업자조례, 个体工商户条例> 제2조). 즉, 중국 국적자가 아닌 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은 반드시 법인(독자, 합자,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1인(자연인, 법인)유한책임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외상투자법과 기존 삼자투자법의 차이

Q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외상투자법(外商投資法)> 및 그 실시조례는, 기존의 <외자기업법(外資企業法)>,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經營企業法)> 및 그 실시조례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A 중국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외상투자법(外商投資法)> 및 그 실시조례와 기존의 삼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經營企業法)>, <외자기업법(外資企業法)>)의 차이점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삼자기업법 | 외상투자법 |
|----------|---------------------------------------------------------------|--------------------------------------------------|
| 투자자 | 중국측 투자자는 법인이어야 함(중외합자경영기업 혹은 중외합작경영기업) | 중국인 개인도 가능 |
| 권리기구 | 이사회 혹은 공동관리위원회(중외합작기업, 중외합자기업), 주주회/주주총회(외자기업) | 주주회/주주총회 |
| 이사 임기 | 4년(중외합작합자경영기업) | 3년 |
| 이사 임명 | 투자자가 직접 임명 | 노동자 대표가 아닌 이사는 주주회에서 선임하고, 노동자 대표인 이사는 선거를 통해 선임 |
| 법적출석인수 | 이사회 혹은 공동관리위원회(중외합작기업, 중외합자기업), 회의 최저 출석 인수 비례는 2/3 이상 | 별도 규정은 없고, 회사 정관에 약정할 수 있음 |
| 중대사항 표결권 | 중외합자기업 혹은 중외합작기업이 중대사항 결의 시 반드시 회의에 출석한 이사(혹은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 필요 | 표결권이 있는 2/3 이상의 주주가 찬성하면 통과 |

| | | |
|--------------------|-----------------------------------------------------------------------------------------------------------------------------------------------------------------------------------------------------------------------------------------------------------------------------------------------------------------------------------|----------------------------------------------------------------------------------------------------------------------------------|
| 법정대표인 | 대표이사 혹은 공동관리위원회 주임(중외합작기업, 중외합작기업)이 담당 | 대표이사, 집행이사 혹은 총경리가 담당 |
| 감사 | 규정 없음 (중외합작기업 혹은 중외합작기업) | 감사 혹은 감사회를 설치해야 함 |
| 지분양도 제한 | 기타 주주의 만장 일치 필요 | 양도인을 제외한 주주의 과반수 동의 필요 |
| 이윤분배 |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함(중외합작경영기업) | 약정 비율과 방식에 따라 분배 |
| 외국측 투자자의 투자금 우선회수권 | 중외합작회사가 합작기업계약서 중에 합작기간이 만료될 때 합작기업의 모든 고정자산을 중국측 합작자의 소유로 한다고 약정할 경우에는 합작기업계약에서 외국합작자가 합작기간내에 먼저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약정할 수 있음(중외합작기업법) 중외합작회사가 합작기업계약서에 합작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합작기업의 모든 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중국측 합작자의 소유로 한다고 약정할 경우에는 외국합작자는 합작 기간 내에 투자 또는 합작조건 제공에 따라 분배하는 기초에서 합작기업계약서에 외국합작자 수익 분배 비율을 확대하고 선행투자금을 회수한다고 약정할 수 있음(중외합작기업법 실시세칙) | 회사에서 청산비용, 종업원 임금, 사회보험료, 법정 보상금을 지급하고, 미납세금을 납부하며, 회사 채무를 상환한 후의 잔여재산에 대하여 유한책임회사는 주주의 출자비율에 따라, 주식유한회사는 주주가 소지한 주식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
| 기금 인출 | 비축 기금, 직원 장려 및 복지 기금, 기업 발전 기금 인출 | 법정공적금, 임의 공적금 인출 |
| 투자총액 | 명확히 약정해야 함 | 규정 없음 |



외상투자법 시행에 따른 외자기업의 경과조치

Q 2020년 1월 1일부터 <외상투자법> 및 그 실시조례가 시행되었는데, 2020년 전에 이미 설립된 외자기업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주의사항은 무엇인지요?

A 이미 설립된 외자기업은 새롭게 시행되는 <외상투자법> 및 그 실시조례에서 규정한 조직형태, 조직기구 및 활동준칙을 적용하며, 원기업의 조직형태, 조직기구 등 외상투자법 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은 5년의 이행기간 내에 변경해야 합니다.

외상투자기업이 5년 이행기간 중 주의해야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조직형태. 2020년 1월 1일 전에 설립된 외상투자기업과 외상합명기업은 조직형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인자격을 없는 중외합작기업과 외자기업은 2025년 1월 1일 전에 조직형태 변경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조직기구. 5년 이행기간 중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상의 강제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등기(비안) 사항에 대해 변경등기, 정관비안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등기등록 특수규정. 5년 이행기간 내에 기업이 조직형태 변경 전에 원 조직형태 및 의사표결 방식에 따라 변경 혹은 말소 신청을 할 경우 등기기관은 반드시 접수해야 합니다.
4. 주주변경 관련 특수규정.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의 조직형태와 조직기구를 현행 법률규정에 따라 변경 후 계약 유효기간 내에 주주변경등기 신청 시, 등기기관에서는 반드시 접수해야 합니다. 전체 주주가 새로 약정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약정에 따릅니다.

중국법인 설립시 검토사항

Q 저희 회사는 중국에 법인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중국으로 진출하는 것이고 중국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 기본적으로 중국법상 어떠한 점을 검토해야 하나요?

A 중국은 외국인투자 가능 분야를 네거티브리스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리스트에 속하는 분야는 특정 조건에 따르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어떠한 제한을 가할 수도 있고, 외국인투자를 금지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네거티브리스트에 속하지 않는 분야는 모두 설립이 가능한 분야라고 보시면 되지만 구체적인 조건 등은 중국 현지의 관련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① 관련 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인지의 여부 확인
- ② 영업장소의 합법성 여부 확인
- ③ 독자, 합자 또는 합작으로 설립할 것인지의 여부 검토
- ④ 출자비용에 대한 검토
- ⑤ 출자방식 및 출자목적물(현물, 현금,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검토
- ⑥ 출자금 납입방식에 대한 검토
- ⑦ 이사회 이사수, 의결방법, 대표이사, 총경리(总经理) 선임 문제 등에 대한 검토
- ⑧ 주주회의 주주 권리, 의결방법, 만장일치 의결사항 등에 대한 검토
- ⑨ 상표사용, 노무관리, 회사 해산시 재산처리, 경영기한, 합작의 경우 출자 불이행에 따른 위약책임 문제, 분쟁해결 방식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홍콩, 마카오, 대만의 중국 투자는 외국인 투자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과 홍콩기업이 공동으로 중국 현지 법인을 설립할 경우 기업형태는 외상투자기업이지 중외합자기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외자법인 설립 간소화

Q 중국에서 외자법인을 간단하게 설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예, 맞습니다.

2016년 10월 8일부터 실시되는 <외상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등록관리 잠정시행 방법(外商投资企业设立及变更备案管理暂行办法)>에 따라 외상투자 제한업종과 금지업종 이외의 모든 업종에 대한 외자법인 설립은 모두 신고제로 바뀌어 영업집조를 바로 신청할 수 있어 기존의 비준제도보다 절차상, 시간상 모두 간편해졌습니다.

또 '5중합일' 제도의 실행으로 각 부서의 대기 절차도 최소로 줄어들게 되어 법인 설립이 많이 간편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비교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준제도와 신고제도 비교표

| 비준제도 | | | 신고제도 | | |
|-------------|------|------------|-------|------|------------|
| 명칭등기 | 3-5일 | 공상행정관리국 | 명칭등기 | 3-5일 | 공상행정관리국 |
| 비준서 심사 | 20일 | 상무위원회 | 영업집조 | 7일 | 공상행정관리국 |
| 조직기구 코드증 신청 | 1일 | 기술감독관리국 | 등록등기 | 5일 | 상무위원회 |
| 비준증서 수령 | 3일 | 상무위원회 | 회사 직인 | 1일 | 공안국 및 도장회사 |
| 영업집조 | 7일 | 공상행정관리국 | 세무등록 | 3일 | 지방 및 국가세무국 |
| 회사 직인 | 1일 | 공안국 및 도장회사 | 통장개설 | 15일 | 은행 |
| 조직기구 코드증 심사 | 3일 | 기술감독관리국 | | | |
| 외환등기증 | 5일 | 외환관리국 | | | |
| 세무등기증 | 3일 | 세무국 | | | |
| 통장개설 | 15일 | 은행 | | | |
| 통계등기증 | 1일 | 통계국 | | | |
| 재정등기증 | 1일 | 재정국 | | | |

대표처(대표기구) 설립 절차

Q 한국의 모 주식회사입니다. 중국 시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표처(대표기구)를 설립하려 하는데, 소요기간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A 대표처(대표기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업자등록증, 자산신용증명서, 파견대표의 여권, 장소사용증명서 등을 갖추어 공상행정관리국 및 기타 관련부서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다만 2010년 11월 10일 발표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조례(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管理条例)>를 통해 2011년 3월 1일부터 대표처(대표기구) 설립 등기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기 때문에 설립신청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정확히 알고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대표처(대표기구) 설립 등기 신청서

- ① 대표처(대표기구) 설립 등기 신청서(代表机构设立登记申请书)
- ② 본사의 주소증명과 2년 이상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증명
- ③ 본사의 정관
- ④ 수석대표, 대표에 대한 본사의 임명장
- ⑤ 수석대표, 대표의 신분증명서 및 이력서
- ⑥ 본사와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산신용증명서
- ⑦ 대표처(대표기구) 주소지 사용 관련 적법성 입증 문건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동 조례 제23조 제1항).

이와 같이 등기신청이 접수되면 등기부서는 신청 수리 후 15일 이내에 등기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등기여부를 결정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기증과 대표증을 발급하거나 등기거절통지서를 발급하고 거절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동 조례 제24조 제1항).

유의하실 점은 중국정부가 위 조례 시행에 맞춰 대표처(대표기구)의 영업행위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동 조례 제13조 제1항).

만약 대표처(대표기구)가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등기부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영업행위로 인한 불법소득과 영업행위에 제공된 도구, 설비, 상품 등 관련 물품을 몰수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 등기증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외국 비정부조직의 중국 대표처 설립

Q 외국의 비정부조직도 이젠 중국에서 대표처 설립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 인가요?

A 네.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외국 비정부조직 국내활동관리법(外国非政府组织境内活动管理法)>에 의하여 외국의 비정부조직도 중국에 대표처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외국 비정부조직의 중국 대표처 설립 관련 규정이 없었으며, 2013년부터는 사실상 설립이 불가능 했습니다. 다만 2016년 4월 28일에 발표된 <외국비정부조직 국내활동관리법>에 의해 2017년 1월 1일부터 외국비정부조직은 중국 관할 공안부문에 대표처 등록 후 비로서 업무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비정부조직의 중국 대표처 설립 시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1. 해외 기금회, 사회단체, 싱크탱크 등 비영리, 비정부 사회조직이 경제, 교육, 과학기술, 보건, 스포츠, 환경보호 등 영역과 구제, 원조 등 분야에서 공익발전에 유익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경우
2.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질수 있으며
3. 정관 규정과 업무범위는 공익 사업발전에 유리해야 하고
4. 해외에서 2년 이상 존재하고 실질적 활동을 하고 있을 것

중요한 것은 중국 공안부문에 등록하기 전에 외국 비정부조직과 업무 연결이 될 수 있는 중국 관련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이 비준을 받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는 중국 관련 부서가 없을 경우, 대표처 설립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대표처(대표기구) 등기증 연장

Q 한국의 A회사는 2017년 2월 중국 북경에 대표처(대표기구)를 설립했는데, 2018년에 A회사가 청산되었습니다. 중국의 등기기관에서 발급한 대표처(대표기구) 증서의 유효기간이 3년이므로 대표처(대표기구) 등기증을 2020년 1월에 연장해야 하는데 공상행정관리국에서 그 신청을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A회사는 대표처(대표기구)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가요?

A 2019년 1월 4일부터 시행하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공안부의 외국기업 상주 대표기구 등기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公安部关于进一步加强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管理的通知)> 제1조는 '대표기구 등기증 연장 신청 시 출자기업 소재지 유관부처가 발부한 기업존속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회사는 위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국에 A회사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다면 대표처(대표기구) 등기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합명기업의 설립

Q 중국에서 외국인도 합명기업(合夥企業)을 설립할 수 있나요?

A 네, 설립할 수 있습니다.

〈외국기업 혹은 개인의 중국 국내 합명기업 설립 관리방법(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夥企业管理办法)〉이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도 중국에서 합명기업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외상합명기업은 외상일반합명기업과 외상유한합명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외상일반합명기업은 일반합명인으로 구성되며, 합명인은 합명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외상유한합명기업은 일반합명인과 유한합명인으로 구성되며, 일반합명인은 합명기업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고 유한합명인은 그가 납입한 출자액에 한하여 합명기업의 채무에 대한 유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무한책임합명인+유한책임합명인)

만약 기업유형이 유한합명기업일 경우, 반드시 최소 1인은 무한책임합명인이어야 하며, 동 무한책임합명인은 합명기업 채무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합명기업과 유한회사의 차이

Q 중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주변에 합명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유한회사보다 유리하다고 하는데 어느 쪽이 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가지 법인형태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A 합명기업은 일반합명기업과 유한합명기업 2가지가 있고, 각 합명인 사이에 합명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출자, 경영하고 수익을 분배하며, 리스크도 함께 부담하여 기업의 채무에 대해 최소 1인은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영리조직입니다.

유한회사는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를 말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유한책임을 지는 기업법인입니다.

합명기업과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책임 부담. 합명기업은 무한연대책임을 지고 기업의 손익에 대하여 합명인 모두 연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에 비해 유한회사는 등록자본금 완납 후 회사 재산으로만 채무를 부담하고 부족할 경우 주주의 개인재산으로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2. 납세. 합명기업은 개인소득세만 납부하지만 유한회사는 기업소득세, 증치세, 개인소득세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3. 법적 지위. 합명기업은 법인이 아니고 기업조직형태의 일종이며, 유한회사는 독립적으로 법적책임을 지는 법인 형태입니다.

등록자본금에 대한 규정

Q 현재 중국에서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등록자본금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입니까?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등록자본금을 결정해야 하나요?

A 네, 현재 중국에는 등록자본금 규정이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건설회사, 여행사, 보험회사, 은행 등 특수 업종의 법인 이외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자본금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자본금 납입기한에 대해서도 투자자가 스스로 정관으로 규정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건설업체, 여행사 등 별도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업종은 법인설립이 않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자격증의 등급 차이에 따라 자본금에 대한 요구조건도 다르므로 법인설립 전에 관련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업종의 법인을 설립할 경우 법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최소 1년 정도의 비용(예상 수익 포함)을 예상하여 자본금 규모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회사의 부실경영으로 채무가 발생할 경우, 등록자본금 금액 한도 내에서 채무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등록자본금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일시에 거액의 등록자본금을 설정하지 말고 회사 상황에 맞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외상투자회사 설립 시 현물출자

Q 중국법인이 토지사용권을 출자하고 저는 300만 위안을 출자하여 합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토지사용권도 출자가 가능한가요?

A 예, 토지사용권도 출자가 가능합니다.

이유 :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제27조 제1항에서는 '투자자(股东)는 현금, 현물, 지식재산권, 토지사용권 등 화폐로 계산 가능하고 법에 따라 양도 가능한 비화폐 재산으로 출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사용권을 출자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중국측 파트너가 토지를 출자하겠다고 하면서 토지사용권이 아닌 토지임차권을 출자하는 경우입니다. 위 <회사법> 규정에서는 화폐로 계산이 가능하고 법에 따라 양도 가능한 비화폐 재산을 출자물로 삼을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임차권도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인등기기관인 공상행정관리국에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법에 따라 양도 가능한 비화폐 재산'으로 출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지역의 법인등기기관에 해당 비화폐 재산의 출자물 요건 구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회사 주소지 조건 및 아파트 등록 가능 여부

Q 중국 북경에 식당을 차리려고 아파트 1층 가게를 임차했는데 이 주소지에는 식당을 설립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또 보증금3개월치와 임대료3개월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신축 아파트를 임차했는데 건물권리등기증 없이 기타 서류로만 회사를 등록할 수 있나요?

A 예, 동 아파트의 용도가 상업용이라 하더라도 가게 위층이 주택이므로 식당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 등기과의 주소지 사용증명 문서에 대한 엄격한 심사에 관한 통지(北京市工商行政管理局登记科关于从严审查住所使用证明文件的通知)>에 따라, 건물권리등기증(중국에서는 ‘房产证’이라고 합니다)이 없으면 법인을 등록할 수 없고, 동시에 부동산 용도가 상용 또는 사무용으로 된 주소지에서만 법인설립이 가능하며, 또 <북경시 신증산업의 금지와 제한목록(1), 北京市新增产业的禁止和限制目录(1)>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 또는 주거용 건물의 이웃 건물에는 식당을 개설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임차한 부동산은 위층이 주택으로 위 법령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식당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북경시의 지방성 규정이고 각 지방마다 이에 관한 규정이 다르므로 식당을 하려는 해당 지역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또 법인등기 주소지에 대하여 중국 내 각 도시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해당지역의 관련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유 : 북경의 경우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 등기과의 주소지 사용증명 문서에 대한 엄격한 심사에 관한 통지(北京市工商行政管理局登记科关于从严审查住所使用证明文件的通知)> 규정에 따라 비상업용(非商业用)

인 부동산에는 기업법인을 등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공상행정관리국 8호 일회성 고지서(工商行政管理局8号一次性告知单)>의 규정에 따라 상업용 부동산이지만 건물권리등기증(房屋所有权证)이 없으면 이 또한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내 많은 도시에서는 아직도 기타 서류로 주소지의 소유권만 증명할 수 있으면 회사등기가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비용은 물론 적지 않은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자행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회사등록지로 사용할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거나 또는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쇼핑몰업체의 설립

Q 중국에서 인터넷 쇼핑몰(여성의류, 액세서리, 잡화)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외국인도 가능한지요?

A 예, 외국인도 단독형 또는 입점형 쇼핑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유 : 우선 단독형 쇼핑몰은 한국의 인터넷파크, CJ Mall과 같은 형태의 인터넷 쇼핑몰을 말하고, 입점형 쇼핑몰은 G마켓과 같은 형태의 쇼핑몰을 지칭합니다. 이중 단독형 쇼핑몰에 대해서는 중국 현행법상 여러가지 제한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에 따르면 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종사할 경우 '인터넷 정보서비스 부가전신업무 경영허가증(互联网信息服务增值电信业务经营许可证, ICP)'을 취득해야 합니다(제7조 제1항).

따라서 단독형 인터넷 쇼핑몰을 추진하려면 전술한 규정에 따라 먼저 ICP증을 취득해야만 동 인터넷 쇼핑몰을 개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 네거티브리스트(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19)〉에서는 외상투자의 ICP관련 업무에 대하여 중의합자의 형식(외자 비율은 50% 미만)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외상투자 전신기업 관리규정(外商投资电信企业管理规定)(2016)〉에는 등록 자본금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판매할 경우 최소 등록자본금은 1,000만 위안이어야 하고 성·시·자치구 내에서만 경영할 경우 최소 등록자본금은 100만 위안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최근에 ICP증을 취득한 합자회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설립 신청 시 현지 정보통신발전국에 문의하신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업체의 설립

Q 중국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고 합니다. 아내가 중국 국적이어서 아내 명의로 할 수도 있는데, 어떠한 자격요건이 필요한지요?

A 외국인도 중국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이전 중국 부동산 중개업은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의 제한업종으로 규정돼 있어 외국인이 설립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 네거티브리스트(2019)>에 따라 외국인도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으므로 굳이 중국인 아내의 명의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앞 [1] 외국인 개인사업자의 등록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국인 명의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지방마다 조금씩 다른데 <북경시 부동산중개기구관리규정(北京市房地产经纪机构管理规定)>에 따르면 북경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부동산 중개기구 자격요건

| 구분 | 1급 중개기구 | 2급 중개기구 | 3급 중개기구 |
|-----------------|----------------------------------------------------------|----------------|----------------|
| 자본금 | 100만 위안 이상 | 50만 위안 이상 | 10만 위안 이상 |
|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 소지자 | 전체 직원의 70% 이상 | 전체 직원의 60% 이상 | 전체 직원의 50% 이상 |
| 부동산 경제사 자격증 소지자 | 중, 고급경제사 5명 이상 | 중, 고급경제사 3명 이상 | 중, 고급경제사 2명 이상 |
| 준수 규칙 | - 기장, 재무제표, 계약규범화 -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비용 수취 - 불법행위가 없을 것 | 좌동 | 좌동 |

인테리어 회사 설립 조건

Q 인테리어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어떤 조건들이 있나요?

A 인테리어 회사를 설립하는 별도의 조건은 없으나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려면 꼭 필요한 인테리어 자질허가증을 취득해야 하고, 여기에는 그 등급별로 조건이 있습니다. 즉 인테리어 자질허가증을 취득한 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신설법인은 공사 실적이 없으므로 자질신청시에는 최하급인 2급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축인테리어 공사전문 도급자질표준

| | 1급 | 2급 |
|------|----------------------------------------------------------------------------------------------------------------------------------------------------------------------|-------------------------------------------------------------------------------------------------------------------------------------------------------------------|
| 순자산 | 1500만 위안 이상 | 200만 위안 이상 |
| 주요인력 | 건축공사전문 1급 공인건조사 최소 5명 | 건축공사전문 1급 공인건조사 최소 3명 |
| | 기술책임자는 10년 이상 공사시공기술관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고 공사고급직함 또는 건축공사전문 1급 공인건설사(또는 1급 공인건축사 또는 1급 공인구조공정사) 자격이 있어야 함 건축미술설계, 구조, 난방과 통풍, HVAC, 상수도, 전기 등 전공 중급이상 직함인원이 최소 10명이어야 함. | 기술담당자는 8년 이상의 공사 시공기술관리 경험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공사 계통 중급 이상의 직함 또는 건축공사 전문 공인건조사(또는 공인건축사 또는 공인구조공정사) 자격이 있어야 함 건축미술설계, 구조, HVAC, 상수도, 전기 등 전공의 중급이상 직함인원이 최소 5명이어야 함. |
| | 직무증서를 보유한 시공 현장관리인원 최소 30명 이상, 시공, 품질, 안전, 재료, 가격, 노무, 나료 등 인원이 구비되어야 함. | 직무증서를 보유한 시공 현장관리인원 최소 10명 이상, 시공, 품질, 안전, 재료, 가격, 노무, 나료 등 인원이 구비되어야 함. |
| | 심사 또는 교육을 거쳐 합격된 목수, 벽돌공, 도장공, 석조공, 전기공 등 중급 이상의 기술공인이 최소한 30명이어야 함. | 심사 또는 교육을 거쳐 합격된 목수, 벽돌공, 도장공, 석조공, 전기공 등 전공의 기술공인이 최소한 15명이어야 함. |

| | | |
|------|---------------------------------------------------------------------|-----------------------------------|
| 공사실적 | 최근 5년간 단일 계약액이 1500만 위안 이상인 인테리어장식공사를 맡은 2개 이상 적이 있고, 공사품질이 합격된 경우. | 조건 없음 |
| 도급공사 | 모든 유형의 건축 인테리어장식공사 및 인 | 단일 계약액 2,000만 위안 미만의 건축 |
| 범위 | 테리어 공사와 세트로 된 기타 공사의 시공을 맡을 수 있음. | 인테리어 장식 공사, 및 부대 공사의 시공을 맡을 수 있음. |

개인투자 광고회사 설립 가능 여부

Q 중국에 광고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개인도 투자하여 설립할 수 있나요?

A 예, 가능합니다.

2015년 이전에는 중국에 광고회사를 설립하려면 외국투자자는 반드시 광고회사
이어야 하고 수익과 실적이 있어야 가능했는데, 2015년 6월 29일부터 국가공상행정
관리총국에서는 <외상투자광고기업관리규정(外商投资广告企业管理规定)>을 폐지
하여 외국투자자에 대한 위의 제한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규정에 의하면, 외국회사 또는 개인 모두 중국에서 광고회사를 설립할 수 있
고, 관련 광고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단 본문 [1] 외국인 개인사업자 등록 부분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사업자로는 등록할 수 없고 반드시 법인사업자로서만 등록
이 가능합니다.

영업집조 게시 의무 위반

Q 제가 운영하는 한국식당은 공상행정관리국으로부터 영업집조를 식당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업집조 상에 등록자본금, 법정대표인 등이 적혀있어 그 내용이 공개되는 것이 꺼림직하여 영업허가증을 식당에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재검사 시 영업집조를 게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00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과태료 부과가 법에 근거한 것인가요?

A 예. 그러한 과태료 부과는 법적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 : <회사등기관리조례(中华人民共和国公司登记管理条例)> 제72조에는 ‘영업집조를 주소 또는 사업장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않는 경우 회사등기관에서 그 시정을 명한다. 시정하지 않은 경우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영업집조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라고 명령했는데, 3개월 후에도 게시하지 않았으므로 공상행정관리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합법적이라 하겠습니까. 다만 과태료의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겠습니까.

외국인의 전자영업집조 발급(신청)절차

Q 중국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니 북경에서 법인설립 업무를 대행사에 위임했는데,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 반드시 본인이 전자영업집조를 다운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전자영업집조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A 예. 전자영업집조도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북경시에서는 2018년 11월 9일부터 전자영업집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업집조는 국가 법률법규와 전국통일표준에 따라 발급한 법률전자증명서류이며 종이 영업집조와 동등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법정대표인이 외국인일 경우 반드시 여권 원본을 가지고 소재지 관할 시장감독관리국에 가서 전자영업집조를 신청, 수령해야 합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외국인 법정대표인이 현장에 가서 전자영업집조 신청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중국 휴대폰 번호가 있어야 인증번호를 메시지로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중국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업집조는 타인(회계, 행정 인원)에게 수시로 세무, 공상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도록 수권 혹은 수권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자영업집조 제도는 현재 중국 전역에서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자 신분증명 공증업무

Q 중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다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투자자로서 신분증명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꼭 한국에 귀국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중한국대사관에서도 공증 업무가 있는데 안되나요?

A 네, 안됩니다.

주중한국대사관에서도 공증업무가 있고 또 무범죄사실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지만 투자자 신분증명 서류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의 규정에 의하면, 투자자 신분증명에 대한 서류는 반드시 투자자 소재 국가의 공증기관에서 공증하고 투자자 소재 국가에 있는 중국영사관에서 인증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 시 제출해야 하는 외국인 투자자 신분증명에 대한 공증은 반드시 투자자 소재국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대행사에서 대행해주는 업무도 있으므로 공증업무 대행사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회사 현재 상태 확인 방법

Q 중국회사와 합자(합작)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이 회사에 대한 기본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중국회사 모르게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A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하려고 하는 합작상대방이 중국 정부기구에 등록된 법인일 경우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www.gsxt.gov.cn)에서 회사 명칭으로 검색하면 이 회사의 기본상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기 공시시스템에서 검색한 결과 중국측 회사가 경영 유의기업 목록에 포함돼 있거나 혹은 엄중한 위법기업명단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합작을 중지하고 다시 한번 상대회사의 경영상황과 합자(합작)회사 설립의도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변호사사무소에 문의하신 후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 연도공시제도 시행

Q 중국에서 법인에 대한 연도검사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연도공시제도가 시행된다고 들었는데 정말입니까?

A 예, 맞습니다. 다만 연도검사제도를 연도공시제도로 바꾸었습니다.

동 제도 폐지 전까지는 연도검사를 하려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상행정관리국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후 연도검사 통과 도장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업정보공시 잠정시행조례(企业信息公示暂行条例)>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에 전년도 연도보고서를 업로드하여 외부에 공개해야 합니다. 연도보고서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고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이전 감사보고서는 전문기관에 요청해야 하므로 비용이 발생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전에는 연도검사를 거치지 않으면 연말에 곧바로 강제말소를 당했는데 현재 <기업정보공시 잠정시행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연도공시를 하지 않으면 경영이상 목록에 추가하고 3년간 계속 공시를 하지 않으면 업중 위법기업 명단에 추가하고, 업중 위법기업 명단에 추가된 회사의 법정대표인과 책임자는 3년간 기타 기업의 법정대표인, 책임자로 재직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직권말소 처분을 받은 회사의 원상회복 가능 여부

Q 중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경영상의 문제로 휴업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다시 운영하려고 하니 회사가 직권말소 되었기 때문에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요? 회사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가요?

A 직권말소 된 회사는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할 수 없고 청산절차를 거쳐 법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중국에는 법적으로 휴업상태라는 것이 없고 실질적으로 휴업하고 경영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제때에 세무신고, 공시신고 등 행정업무를 완성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부서에서 직권말소 처분을 내립니다.

이미 직권말소 처분을 받은 경우 다시 정상경영 상태로 회복할 수 없으며, 상황이 엄중할 경우 벌금을 납부한 후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회사를 정리해야 합니다.

직권말소를 당한 회사를 정리하지 않은 경우, 그 회사의 주주는 새로운 법인에 투자할 수도 없고 이미 투자한 회사에서도 지분변경 등 절차를 진행하려고 할 때 직권말소 된 회사를 정리해야만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또 직권말소를 당한 회사의 법정대표인은 새로운 법인에 취직하여 고위직 임원(동사장, 총경리 등)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업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1-2년내에 다시 개업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법적으로 회사를 정리하고 필요시 다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법적 책임 측면에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내 유한회사의 외국인 법정대표

Q 중국인이 투자한 내자기업의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에 외국인이 법정대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A 예. 중국에서는 외국인이 법정대표 또는 대표이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 : 중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유한회사가 대부분입니다.

이 유한회사의 법정대표 또는 대표이사(总经理) 직책은 지분이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맡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사람들은 법정대표 또는 대표이사로 고용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고용된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 약간의 지분이라도 투자했다면 그 회사형태는 내자기업이 아닌 외상투자기업(합자 또는 합작)이 됩니다. 중국의 내자기업 중에서는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허가증서상의 법정대표를 외국인으로 해놓은 곳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위 사례와 같이 내자기업의 인허가증서에 법정대표를 외국인 명의로 해 놓으면 그 회사가 외국인 투자 회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가 많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익명주주와 향후 권리의 보호

Q 중국에서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친분이 있는 중국인을 법정대표로 세워서 내자기업을 설립하고, 주주구성도 중국인 법정대표가 90% 지분과 그의 배우자가 10%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등록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회사의 지분 없이도 향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A 실제 투자자와 명의주주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실제 투자자가 주주로 변경등록을 해야만 비로소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외상투자기업 분쟁사건 심리에 있어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규정(1), 关于审理外商投资企业纠纷案件若干问题的规定(1)) 제14조.

그러나 실제투자자와 명의주주 사이의 투자계약 내지 합의는 비교적 손쉽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국인 대표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에 대한 권리의무를 약정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 이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 ① 투자에 대한 계약(이른바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 ② 신설법인에 대하여 보유한 지분을 질권설정할 것을 요구하여 질권설정 계약 체결 및 질권설정 등기를 진행하며
- ③ 투자협약을 이행했다는 증거로 출자 및 비용에 대한 송금 내역과 영수증(세금 계산서)을 잘 보관하고
- ④ 투자자가 신설법인 이사/총경리 직무를 담당하고 주주총회로부터 가능한 넓은 범위의 직권을 위임받아 경영을 완전히 지배하는 등의 방안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업종에 진출하거나 외국인 투자에 관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인의 명의를 빌려 기업을 설립, 운영하는 경우 위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적지 않은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분양도 후 발견된 채무에 대한 책임

Q 김씨는 외자기업인A사를 운영하다 개인사정상 회사의 지분을 임씨에게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양수인 임씨는 회사에 대한 간단한 실사를 한 후, 김씨와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지분양도 계약서에는 회사의 채무에 관한 언급이 없었으며 관련 채무명세서도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인수 후 반년이 지나서 임씨가 계약 당시에 몰랐던 채무가 발견되었으며, 회사장부상에도 상당한 결손이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씨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 지분 양도시에는 해당 회사의 순자산에 근거하여 지분양도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의 순자산은 회사의 자산 및 채무와 직접 연관되므로 대상 회사의 채무금액에 따라서 지분의 가치 즉 지분양도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쌍방이 지분양도계약 체결시 대상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실사 확인 및 채무명세표를 계약서에 첨부했다면, 지분 인수 후 채무명세표상에 없는 채무(지분인수 전의 채무)가 발견되었을 경우, 양수인은 지분양도계약에 근거하여 양도인에게 양도대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의 경우 쌍방이 지분양도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실사를 하지 않았으며, 채무명세표를 계약서에 첨부하지도 않아 이후 발생한 우발채무의 법적 책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인 임씨는 증거부족으로 소송에서 승소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지분양도시 우발채무로 인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분양도 계약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① 채무기준일을 정합니다. 채무기준일은 지분양도 전후 대상 회사의 자산과 채무에 관한 분계선이며 채무기준일까지 대상 회사의 재무상황에 근거하여 지분양도금액을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인수시점은 채무기준일과 가까운

것이 적절하며, 만약 채무기준일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회사를 인수할 경우 인수전 양도인의 경영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며, 해당 제한 사항을 지분양도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② 채무기준일 당시의 대상 회사의 채무명세표를 작성하여 지분양도계약서에 첨부하고, 별도로 지분양도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채무명세표 이외의 우발채무가 발생할 경우 해당금액을 지분양도 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양도인이 별도로 배상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 회수 관련 대리권 위임 절차

Q 중국 지사에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대리권을 위임하고 싶은데, 위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A 중국에서 통상적인 대리권 위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본사는 우선 한국에서 중국지사에 대한 위임장(수권위탁서)을 작성하여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직접 중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거나 또는 국문으로 작성 후 중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② 한국의교부 영사과에 당해 위임장을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③ 한국의교부 확인 후 주한중국대사관에 제출하여 당해 위임장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④ 본사는 위임장에 대한 공증·인증 후 당해 위임장 원본을 중국지사에 송부하면 됩니다.

주한중국대사관 인증시 제출서류는 ① 공증인증신청서 1부 ②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원본 및 사본 1부 ③ 인증하고자 하는 서류의 원본 및 사본 1부 등입니다.

전술했다시피 주한중국대사관 인증 신청 시 인증하고자 하는 서류에 중문 또는 영문본이 있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위임장 작성과 공증 및 한국 외교부의 확인 관련 사항은 한국의 해당 분야 변호사나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 출자 후 소유자 명의변경

Q 몇 년 전에 중국회사와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중국측에서는 토지로 출자했습니다. 현재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토지가 합자회사 소유가 아니라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된 것이지요?

A 합자합영계약서 상에 토지사용권으로 출자한다고 약정했고 또 공상행정관리국에 동일한 내용으로 등기가 된 상황이라면 토지사용권을 합자회사 명의로 변경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3),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若干问题的规定(3)] 제10조에 따르면, 출자자가 부동산, 토지사용권으로 출자하여 회사에 교부하여 사용했지만 권리소속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 회사, 기타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에서는 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권리등기변경수속을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는 중국측에 토지사용권 변경등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국측이 거절할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업청산의 당위성

Q 주변에서는 청산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실익이 더 많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 청산은 꼭 해야만 하나요? 또 청산을 해야 하는 회사가 M&A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A 회사를 적법하게 경영해 온 사업자는 청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유 : 만약 청산을 하지 않는다면 실익이 있을 것 같지만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사 실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실익은 불법행위를 통해서만 실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청산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회사의 명의를 도용할 가능성이나 회사 이해 관계자들이 민사, 형사책임을 청구할 가능성이나, 세금, 노동 문제 등의 행정책임, 그리고 장래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해질 수 있는 불이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적법하게 경영해 온 사업자는 청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산을 해야 하는 회사가 청산을 하지 않고 회사의 지분을 유·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출자자를 변경하는 행위 등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법원에 청산 또는 파산신청을 한다면 복잡한 문제에 휩싸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분을 양도하거나 출자자를 변경하는 시점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청산을 하지 않고도 회사를 정리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기업청산의 사유 및 청산 절차

Q 사업을 그만두고 싶으면 아무때나 청산하면 되는 건가요? 또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데 보통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가요?

A 청산은 관련 법규의 규정이 정한 청산요건을 충족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산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80조, 제182조에서는

- ① 회사 정관상의 영업기한이 만료된 경우
- ② 회사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③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가 결의한 경우
- ④ 회사의 합병 또는 분리로 인하여 청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 ⑤ 회사의 영업집조가 취소, 직권말소되고 폐업(关闭) 명령을 받은 경우
- ⑥ 회사가 경영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발생하여 계속해서 존속할 수 없는 경우
- ⑦ 출자자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청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위의 사항에 해당되어 청산에 직면한 경우,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청산을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청산 기간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청산 절차는 약 4개월 정도 걸리지만 각 지역 및 회사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청산인이 하는 업무는 청산재산을 정리하고 처리해서 분배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만일 돈이 될 만한 재산도 없고, 채무도 없다면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주무관청과 관련된 업무는 신문에 공고하고 기다리는 시간(45일), 세무국 직원들

이 업무 처리하는 시간(실무적으로 약 2개월), 세관과 공장국 말소 시간(약 14일) 및 휴일 등을 감안하면 실무적으로 약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아래 도표 참조).

기업·청산·절차



이처럼 중국에서의 청산업무는 주로 주무관청 공무원들의 업무처리를 기다리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위의 기간도 일률적인 것은 아니고 각 지역 및 회사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간이청산절차

Q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법인을 설립했는데 영업을 시작하기 전 개인적인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법인을 이대로 두면 리스크가 있다고 하여 청산을 해야 한데 아무런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청산해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청산을 해야합니다. 다만 간이청산 절차로 간단하게 청산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이청산 절차란 세무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영업집조 말소등기를 진행하여 법인을 청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앞의 청산절차 도표를 참고하시면 알 수 있는 바 시간상으로 일반적인 법인 청산보다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간이청산 절차로 법인을 청산하려면 ① 영업집조 취득 후 경영활동을 하지 않았고, ② 말소등기 신청 전에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혹은 채권, 채무를 정리 완료한 기업이 아래 조건 중의 하나에 부합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1) 세무 관련 업무를 처리한 적이 없는 경우
- (2) 세무 관련 업무를 처리한 적이 있지만 영수증을 수령하지 않았고, 체납한 세금과 벌금이 없는 경우

위와 같이 간이청산 신청 조건에 부합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세무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장감독관리국에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감독관리국에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접수하거나 기각하는데, 기각할 경우에는 다시 세무국에 세무청산을 신청하시면 되며 정상적인 청산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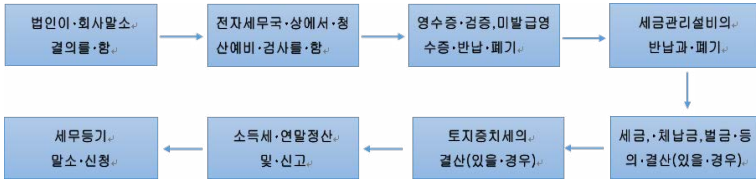
따라서 회사에서는 자사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간이청산 절차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출서류 등이 모두 진실이라는 보증서에 사인하여야 하기에 허위 혹은 거짓으로 신청하지 않아야 나중에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세무청산 절차와 세무청산 보증제도

Q 중국에서 법인을 말소하려면 세무청산 절차가 어렵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있나요? 또 현재 중국에서 기업 세무청산 절차에 대해 세무 문제가 없다고 보증하면 세무청산증명서를 발급해 준다고 하는데 맞는 말입니까?

A 네, 세무청산은 법인말소 절차 가운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세무청산 절차는 아래 절차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차상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각 부분마다 회사 세무상황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법인 청산을 결정하신다면 회사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를 가지고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 받으시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최근 ‘세무청산 즉시처리서비스’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세무청산 기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세무청산 즉시처리서비스’란 납세자가 세무청산 신청 시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보증서 제출 후 즉시 세무청산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업무처리 방식을 가리킵니다.

세무기관에서 세무청산 신청 접수 시 회사 세무상황에 따라 일반적 세무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세무청산 즉시처리서비스’로 처리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세무검사 상태에 있지 않고, ② 세금 및 벌금 체납 상황이 없으며, ③ 증치세 전용영수증과 세무관리설비를 반납, 폐기한 납세자가 아래 상황 중의 하나에 부합될 경우 '세무청산 즉시처리서비스'에 따라 처리합니다.

- (1) 납세신용등급이 A급 혹은 B급인 납세자
- (2) 지주회사의 납세신용등급이 A급인 M급 납세자
- (3) 성급 인민정부에서 유치한 인재 혹은 성급이상 업종 협회 등 기구의 인정을 받은 업종리더인재 등이 설립한 기업
- (4) 납세신용등급 평가에 참가하지 않는 정기 정액 개인사업자
- (5) 증치세 징수기준에 도달한 납세자.

납세자는 보증한 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해야 하고 관련 사항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보증한 바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세무기관에서는 그의 법정대표자, 재무담당자를 납세신용 등급을 D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법인 말소 이외의 세무청산을 해야 하는 상황

Q 현재 북경에 있는 공장 임대료가 너무 비싸고 또 하북성 낭팡시 개발구에서 기업 소득세 혜택이 있다고 하기에 낭팡시 개발구로 공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세무국에서 세무청산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법인을 말소하는 것이 아닌데 세무청산을 왜 해야 하나요?

A 네, 세무청산을 해야 합니다. 세무청산을 한다는 것은 법인을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한내에 납세자의 납세행위, 소득 등에 대하여 정산하고 세금을 완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중국은 지역별로 납세주관부서가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북경 시에서 하북성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면 납세기관도 새로운 주관부서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원납세기관에서의 세무상황을 깔끔히 정리하고 이전해야 합니다.

법인말소 이외의 세무청산을 해야하는 상황은 주소지 이전(다른 도시로 이전)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도 반드시 세무청산을 해야 합니다.

1. 해산, 파산, 취소 등의 상황으로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종료한 경우
2. 규정에 따라 시장감독관리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서 말소등기를 할 필요가 없지만 관련 기관에서 종료의 비준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
3. 시장감독관리기관에 의해 영업허가증을 직권말소 당했거나 기타 기관에 의해 등록을 취소당한 경우
4. 주소 및 경영 장소가 변경되어, 세무등기 기관이 변경될 경우
5. 외국기업의 상주 대표기구가 주재기간이 만료되거나 기한 전에 업무활동을 종료한 경우
6. 국외 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건축 및 설치, 조립, 탐사 공사를 하청 받아 용역을 제공한 후,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중국을 떠날 경우
7. 비경내등록주민기업이 국가세무총국의 확인에 의하여 주민신분이 종료된 경우

따라서 질의하신 상황일 경우 주소지 변경으로 인하여 세무등기기관이 변경됐으므로 세무청산을 해야합니다.

청산의 위임

Q 법인 설립자는 다른 사람(전문경영인, 변호사)에게 청산을 위임할 수 있나요?

A 법인설립자가 아닌 회사의 청산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청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청산인은 회사형태와 청산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유한회사는 출자자가 청산인이 되고, 주식회사는 이사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자가 청산인이 됩니다.

또한 청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을 시작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서 선임한 자에 의해 청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회사법(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제184조).

실무적으로는 종업원 수가 많지 않은 기업은 청산인이 직원을 지정하여 직접 청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종업원수가 수 십명 이상이 되는 기업은 노동, 보험, 재산처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치닫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회사 상황에 따라 전문 대행업체에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청산은 청산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청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산재산의 정리와 변제 순위, 세금 반환

Q 회사를 청산하려고 합니다. 은행잔고와 설비를 정리하여 미납세금과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산을 하면 이제까지 받아 온 세제혜택도 모두 반환해야 하나요?

A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는 청산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물품은 청산인의 관리하에 일괄적으로 처분하여 청산비용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러한 청산재산을 채권자의 이익에 반하여 임의로 처분하거나 매매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산 중인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고의가 아니더라도 재산을 숨기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사의 재산처분은 세무당국, 근로자, 채권자 등 복잡한 이해 관계인들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정리, 처분하여 현금으로 바꾸어 청산비용, 직원의 임금과 사회보험료, 법정보상금, 미납세금이나 회사채무 등을 갚아야 청산을 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 자산은 ①청산비용, ②직원 급여 및 사회보험료와 법정보상금, ③미납세금, ④ 회사 채무 등을 정리한 후, 나머지 자산을 회사 정관에 약정된 이윤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만약 회사에 미납세금, 임금 등을 줄 돈이 없다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파산관리인이 회사에 남은 재산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신청하여 파산종료를 하게 되고, 청산도 완료되게 됩니다. 단, 이러한 제도는 적법한 회사설립과 합법적인 회사 운영을 했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청산하는 기업이 장려업종, 생산성 기업, 첨단기업, 특구 등에 의하여 그 사업기간이 10년 미만이고, 2면3감반(2년 동안 세금을 면세해주고, 3년 동안은 50% 감면)의 법인세 혜택을 받은 경우, 또는 면세설비가 들어온 일자로부터 5년 미만이고 관세 등의 세금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그 면세, 감면 받은 세금을 모두 주무관청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사업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면세설비 도입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청산 전까지 누려 온 세제혜택은 반환해야 하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금반환과 관련해서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구체적인 해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청산공고 및 청산 중 출국 가능 여부

Q 회사 청산을 결정한 후 어떤 방식으로 채권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나요? 또 회사의 관계자는 청산이 끝날 때까지 한국으로 출국할 수 없나요?

A 회사 청산을 결정한 후 신문에 공고를 내야 하고, 또 별도로 서면으로 각 채권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공고는 반드시 시급(市級) 이상의 신문에 내야하며 공고 상에는 기업의 명칭, 통신회신용코드증서 일련번호 등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 별도로 회사 채무를 정리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회사 청산결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신문광고만 내고 채권자에게 별도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청산소조의 모든 구성원은 채권자가 제때에 채권을 주장하지 못하여 초래한 손실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청산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경우에 따라 채권자 또는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출국금지 요청을 했을 때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청산절차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관계 있는 사람들까지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원의 결정과 통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회사를 설립, 운영했다면 단지 청산절차 중에 있다고 하여 그 회사 관계자들을 출국 금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회사 상대로 채권자 또는 노동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출국금지를 요청했을 때는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 구조조정, 화의의 개념 비교

Q 파산, 구조조정, 화의란 무엇인가요?

A 파산이라는 것은 재산보다 빚이 많고,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법원이 나서서 그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여 공평하게 빚을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파산으로 가는 경우는 처음부터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와 청산 중에 있는 회사가 뚜껑을 열어보니 빚이 너무 많고,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 파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법원이 개입하여 모든 것을 처리하므로 기업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구조조정(重整) 또는 법정관리는 부실기업을 파산시키는 것보다 계약, 협의를 통해 회생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긴밀하게 협의하여 개선작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화의(和解)는 도산에 직면한 기업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빚을 갚는 시기와 금액 및 이율 등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그 회사의 회생을 도와주는 취지에서 채무자와 채권자간에 계약을 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파산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에 따라 파산, 구조조정, 화의 중의 하나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Section 2

세무

이럴땐 이렇게



01

중국사업시 납부해야 할 세금의 종류

Q 중국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중국에는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증치세, 소비세, 교육비부가세, 방산세, 인지세, 취득세, 건물재산세, 관세 등의 세금이 있고 업종에 따라 상응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영업집조(营业执照)를 수령한 후, 총수입에서 생산원가, 비용, 손실 등을 차감한 후 이익이 있으면 모든 사업자는 기업소득세(10%~25%)를 내야 합니다(기업소득세법(企业所得税法)) 제4조.

또 매출액이 발생할 경우 매출액에 대하여 증치세(0%~13%)를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하는 증치세에 따라 교육비부가와 도시건설세(성건세)부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 노동관계 혹은 비노동관계로 임금을 받는 인원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요 사업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사업형태에 따른 세금유형(2020년 5월 기준)

| 사업형태 | 세목 | 세율 |
|----------------------------------------------|--------------------------------------------------------------|--------------------------------------|
| 물건 판매 또는 수입자, 서비스 제공, 무형자산 양도, 부동산 판매자 | 증치세(增値稅) | 0%, 6%, 9%, 13% (소규모납세자 등은 3% 또는 5%) |
| 물건 판매 또는 수입자, 서비스 제공, 무형자산 양도 | 도시건설 부가비용 (城建稅), 및 교육비부가 (教育費附加) 와 지방 교육비 부가 (地方教育費附加) | 12%(7%+3%+2%) |

| | | |
|---------------------|--------------------------------------|----------------------------|
| 소비품 생산자 또는 수입자 | 소비세(消費税) | 4%~56% |
| | 도시건설 부가비용, 및 교육비부가와 지방 교육비부가세(教育費附加) | 12%(7%+3%+2%) |
| 사업자가 건물의 소유주 또는 사용자 | 건물재산세(房産稅) | 경영 사용 1.2% 임대료기준 4%~12% |
| 사업자가 부동산 등의 재산권 취득자 | 취득세(契稅) | 3%~5% |
| 수출입자 | 관세 | 수출입 품목에 따라 다름 |

위 표와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 세금문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있거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 다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금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세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실 때는 회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세무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1) TEL: 12366 세무콜센터에 전화로 문의할 수도 있고, (2) 중국 국가세무총국 사이트(<http://www.chinatax.gov.cn/>)상의 지능건설센터 모듈을 클릭하여 문의할 수 있으며, (3) 아래 QR코드로 위챗에 등록하여 자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세무절차와 제출서류

Q 영업집조를 수령한 후 세무절차와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중국에서 회사를 설립하시는 분들은 관련서류를 준비완료한 날로부터 약 20일이면 영업집조, 법인인감(직인) 등을 수령하게 됩니다. 영업집조를 수령한 후,

- (1) 30일 내에 전자세무국(사이트)에서 온라인등록을 하여 회사 정보를 등기하며
- (2) 세무국에서 통과한 후 법정대표인 신분증명과 회사 직인을 가지고 세무국에 납세항목을 확인 받아야 하며
- (3) 회사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은행과 세무국과의 3자협의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세무국(사이트)에서 온라인등록 시 아래의 정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1) 영업집조(营业执照) 상의 정보
- (2) 회사 정관(章程) 상의 정보
- (3) 임대차계약서(계약서상의 임대기간, 비용 등에 대한 정보)
- (4) 회사 주요 영업항목 등

위와 같이 영업집조를 발급 받았다고 하여 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지역의 회계, 세무 전문가를 통해 사전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절차 및 소요일자 등은 북경시 기준입니다.

세무등기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 제재 조치

Q 세무등기를 하지 않고 거래를 하다가 발각 되었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A 시정명령 및 벌금 또는 물건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세무등기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하거나 임시로 사업을 한 경우 정황별·시간별로 처분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우선 세무기관이 납부할 세금을 결정한 후 세금납부를 명합니다.
- ② 만약 그 명을 어기고, 세금을 내지 아니할 경우, 세무기관은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상품·화물을 압류합니다.
- ③ 세무기관이 상품·화물을 압류했을 경우, 납세자는 압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단, 압류물건이 신선도를 중시하는 상품이거나 쉽게 부패 또는 가치가 상실되는 상품·화물인 경우, 세무기관은 압류물건의 유통기한에 근거하여 압류기한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④ 압류 후 납세자가 세금을 낸 경우, 세무기관은 즉시 압류를 해제하고 모든 압류 상품·화물을 반환합니다.
- ⑤ 압류 후에도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현급(县级) 이상 세무국 국장의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압류물품을 경매(拍卖) 또는 임의매각(变卖)하고 그 소득으로 세금을 충당합니다. [〈세금징수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제 37조, 〈세금징수관리법 실시세칙(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实施细则)〉 제58조]

또 이처럼 미등기 또는 임시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세금징수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서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상황이 엄중할 경우에는 2000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으며, 규정한 시간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세무국의 요청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영업집조를 직권말소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의 납세신고 여부

Q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납세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납세신고는 해야 합니다.

납세신고란 납세자가 세법에 정해진 신고기간 내에 세무기관에 납세신고서·재무회계보고서 또는 원천징수납세신고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세금징수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제25조).

납세신고 방법은 각 세무국의 전자세무국 사이트에 들어가 등록(등록방식은 휴대폰 문자로 등록하는 방식과 CA증서로 등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한 후 세무납세 신고방식에 따라 세무신고를 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위의 납세신고 방법에 따라 반드시 납세신고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징수관리법 실시세칙(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实施细则)〉 제32조]

만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기한 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2,000 위안~10,000 위안 이하의 과태료(세금징수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제62조)를 물게 됩니다.

또 {납세신용관리방법(시행)纳税信用管理办法(试行)} 국가세무총국공고2014년 제40호(国家税务总局公告2014年第40号)의 규정에 따라 기업납세자에 대하여 A, B, C, D 4개 납세신용등급으로 나누며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A급: 연도평가지표가 90점 이상일 경우, ② B급: 연도평가지표가 70점 이상 90점 이하일 경우, ③ C급: 연도평가지표가 40점 이상 70점 이하일 경우, ④ D급: 연도평가지표가 40점 이하일 경우

{납세신용평가지표와 평가방식(시행)纳税信用评价指标和评价方式(试行)} 국가세무총국공고2014년 제48호(国家税务总局公告2014年第48号)의 방식에 따르면 기한내에 납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매년 5점씩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운영이 곤란한 경우 납세연기 가능 여부

Q 회사 운영이 곤란한 경우 납세연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너무 어려운데도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 낼 돈이 없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가산금(滞纳金)이 부과되어 오히려 부담만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중국의 납세연기제도(延期缴纳税款制度)를 활용하여 최고 3개월까지 연장할 수는 있으나(세금징수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제31조 제2항,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단 2가지입니다)(세금징수관리법 실시세칙(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实施细则) 제41조).

그 사유는 ① 불가항력으로 비교적 큰 손실을 입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경우 ② 지급하여야 할 직원의 급여, 사회보험료를 낸 후 세금 낼 돈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이 제도를 활용하여 일정기간 세금 납부를 연장 받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납세연기 신청은 직접 세무국에 가서 신청하거나 혹은 각지역 전자세무국(북경 시전자세무국 사이트: <https://etax.beijing.chinatax.gov.cn/xxmh/html/index.html>)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① <세무행정허가신청표> ② 모든 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③ 신청인 신분증 원본 이며, 신청 후 9일내에 회신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제재조치

Q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A 세금체납이란 납세자가 세법으로 정한 납세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은 현재 이러한 세금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법률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①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 또는 그의 법정대표자가 출국을 할 경우, 출국전 세무기관에서 출입국관리기관에 출국금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② 납세자가 합병, 분리 전에 세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합병 후의 납세자가 계속 이행하지 않은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분리 후의 납세자는 이행하지 않은 납세의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집니다.
- ③ 5만위안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가 부동산 혹은 거액 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세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④ 세무기관은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에 대해 법에 따라 대위권 및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⑤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자동이체되지 않은 세금은 기한 내 납부를 명하고 세금을 체납한 날부터 매일 체납세액의 0.05%를 부가징수 하며, 체납금을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강제집행조치를 취해 체납금을 추징할 수 있으며,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의 50%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⑥ 납세자의 세금 체납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고합니다.

또 [세신용관리방법(시행) 纳税信用管理办法(试行)] 국가세무총국공고 2014년제40호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납세하지 않을 경우 신용등급은 D로 판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제재를 받은 경우 우선 세무국에 세금을 완납하고 또 관련 벌금과 체납금을 납부한 후 세무기관에 납세신고 시스템 정상화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 신용등급이 D로 판정된 사항에 대하여 익년 말 전에 주관세무국에 신용등급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권리를 구제하는 방법과 절차

Q 중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다가 갑자기 세무국으로부터 미납된 기업소득세를 완납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세무국에서 본사에서 신고한 납세금액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회사 재무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이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선 회사에서는 세무국의 납세결정에 따라 세금과 체납금을 완납하거나 혹은 상응한 담보를 제공한 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와 세무기관이 납세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세금징수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우선 세무기관의 납세결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음 회사측에서는 60일내에 해당 세무기관의 상급 세무기관에 행정이의(行政复议)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이의에서 세무국의 납세결정을 기각할 경우에는 세무국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이의 결정에 불복한 당사자 일방은 15일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 법원은 한국과 달리 2심 종결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세무관련 안건도 일반 법원에서 접수하고 처리합니다. 법원은 안건 접수후 6개월 내에 1심판결을 내려야 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15일내에 상급법원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급법원은 3개월 내에 2심판결을 내려야 하고 이는 최종판결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세무국의 납세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국을 직접 방문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 납세기간 혹은 개정기간이 넉넉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세무국 결정에 따라 납세를 하고 다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니면 다음 세무 업무에 더큰 지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신고 불가능, 영수증 발행 불가능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기업과 비거주자기업의 구분 기준과 기업소득세

Q 거주자기업과 비거주자기업의 구분기준은 무엇이고 기업소득세 납부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중국 세법상 기업소득세 납세자를 거주자기업과 비거주자기업 2가지로 나누며, 각자 부합돼야 하는 조건과 적용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주자기업은 아래 조건 중의 하나에 부합할 경우를 가리킵니다.

- (1) 중국 경내에서 합법적으로 설립한 기업
- (2) 해외에 설립했으나 실제관리기구가 중국 경내에 있는 기업

비거주자기업은 아래 조건 중의 하나에 부합할 경우를 가리킵니다.

- (1) 해외에 설립하고 실제관리기구가 중국 경내에 없으나 중국에 연락기구 혹은 장소가 있는 기업
- (2) 해외에 설립하고 또 중국 경내에 실제관리기구, 연락기구 혹은 장소가 모두 없지만 중국 경내로부터 얻는 소득이 있는 기업

거주자기업의 기업소득세 세율은 25%이지만, 소형박리 기업일 경우에는 20% 세율(실제세부담은 연간과세소득액에 따라 5%에서 10%를 초과하지 않음), 고신기술기업(高新技术企业)은 15%의 우대세율이 적용됩니다.

비거주자기업의 기업소득세 세율은

- (1) 중국 경내에 설립한 기구, 장소와 실제로 연결되어 얻은 소득에 대하여 25%의 기업소득세를 징수하고
- (2) 취득한 소득이 중국 경내에 설립한 기구, 장소와 실제 관련이 없을 경우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0% 기업소득세를 징수합니다. 그러나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1조에서 10% 감면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적용세율은 10%입니다.

거주자기업은 무한 납세의무를 가지고 경내, 경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하여야 하고, 비거주자기업은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만 중국에서 납세합니다.

기업 비용의 공제한도와 추가공제

Q 한국의 접대비 등과 같이 중국에도 기업의 비용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가 있나요? 그리고 추가 공제가 가능한 비용도 있나요?

A 중국에서도 접대비 등의 비용에 대하여서는 손금산입의 한도가 있습니다.

손금산입에 대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직원 복리비용: 급여임금 총액의 14%
- (2) 직원 교육경비: 급여임금 총액의 8%
- (3) 직원 공회경비: 급여임금 총액의 2%
- (4) 업무접대비: 접대비의 60%와 당해 년도 영업수익의 0.5% 중 적은 금액
- (5) 광고비용: 당해 년도 영업수익의 15%, 화장품 제조·판매업 및 의약품과 음료수 제조업은 당해년도 영업수익의 0.5%
- (6) 공익성 기부금: 과세연도 세전 이윤의 12%
- (7) 수수료 및 용역료: 수익금액의 5%
 - 생명보험업은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환급 후 잔액의 10%
 - 재산보험업은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환급 후 잔액의 15%
- (8) 장애인 직원 월급: 실제월급의 100%, 최고 당해년도 과세대상소득액
- (9) 연구개발비: 조건에 부합될 경우 175%

* 위의 항목 가운데 (2) 직원 교육경비와 (5) 광고비용은 규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차기 납세연도로 이월공제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경비는 이월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코로나19 방역을 지지하기 위하여 2020년 2월 6일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에서는 [재정부, 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통제 관련 기부]의 조

세 정책에 관한 공고(세무총국공고2020년9호)(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捐赠税收政策的公告)(税务总局公告2020年第9号)를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기업과 개인이 공익성 사회조직 혹은 현금 이상 인민정부 및 그 산하부처 등 국가기관을 통해 '코로나19'에 사용하는 현금과 물품을 기부할 경우 기업소득세 과세소득 산정 시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 ② 기업과 개인이 직접 '코로나19' 방역임무를 맡은 병원에 '코로나19'에 사용하는 물품을 기부할 경우 과세소득 산정 시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증자는 병원에서 받은 수증서류를 근거로 세전공제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마감일은 전염병 상황에 따라 별도로 공고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코로나19' 발생 기간 내에 발생하는 상기 기부금에 대하여 원 정책인 세전이윤의 12%를 사용하지 않고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조세우대 혜택 세목 및 세율

Q 중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세금방면에 어떤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모든 회사가 세금우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형태를 아래표로 정리했습니다.

조세우대 혜택 세목 및 세율, 조건(2020년 5월 기준)

| 세목 | 세율 | 조건 |
|------------------|--------|------------------------------------------|
| 기업소득세 | 20% | 소형박리기업(실세 세부담은 5%, 10%를 초과하지 않음) |
| | 15% | 고신기술기업, 선진기술형 서비스기업 |
| | | 0.25 μ m보다 작은 집적회로 생산업체 |
| | | 80억 이상 투자한 집적회로 생산업체 |
| | | 서부지역에 설립한 장려산업업체 |
| | | 특별지역에 설립한 장려산업업체 |
| 오염방지에 중사하는 제3자기업 | | |
| 10% | 비거주자기업 | |
| 증치세 | 0% | 기술양도, 기술개발 수입 사업 |
| | | 농업생산자가 자가생산한 농산물 판매 |
| | | 피임 약품과 기구의 구매와 판매 |
| | | 사회에서 회수한 고서 |
| | | 과학연구, 과학실험과 교육에 사용하는 수입기기와 설비 |
| | | 외국정부, 국제조직에서 무상으로 지원한 수입물자와 설비(외국기업 불포함) |
| | | 장애인 조직에서 직접 수입하여 전문적으로 장애인에게 사용하는 물품 |
| 수입관세 | 0% | 장려산업 |

중국에 진출하신 분들 중에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이 첨단기술기업 또는 장려산업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조세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위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등을 회계,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세무국에서는 조세우대 정책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각 세종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의가 있을 경우, (1) TEL: 12366 세무콜센터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2) 중국 국가세무총국 사이트(<http://www.chinatax.gov.cn/>)상의 지능컨설턴트 모듈을 클릭하여 문의하거나, (3) 아래 QR코드로 위챗 계정에 등록하여 자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소형박리기업의 기준과 혜택

Q 중국에서 말하는 소형박리기업이란 어떤 기업을 말하나요? 소형박리기업이 어떤 세금 우대 혜택이 있나요?

A 소형박리기업은 한국의 중소기업과 비슷합니다.

소형박리기업으로 인정 받으려면 아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1) 국가에서 제한, 금지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여야 하고
- (2) 연간 납세소득액이 3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 (3) 종업원 수는 300명을 초과하지 않으며
- (4) 자산총액은 50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형박리기업으로 인정 받은 기업은 아래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업소득세

소형박리기업은 아래와 같이 3년 동안 기업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1월1일부터 2021년12월31일까지, 이 기간동안에는 연간 납세소득에 따라 2가지 방식에 따라 세율을 적용합니다.

- 연간 납세소득이 100만 위안(100만 위안 포함)을 초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25%로 납세소득을 감소하여 계산하여 20%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고,
- 연간 납세소득이 100만 위안 이상 300만 위안(300만 위안 포함) 이하인 부분에 대하여서는 50%로 납세소득을 감소하여 계산하여 20% 세율에 따라 기업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국가세무총국의 소형박리기업 보통혜택소득세 감면 정책의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国家税务总局关于实施小型微利企业普惠性所得税减免政策有关问题的公告)> (2019)2호)

예: 소형박리기업의 납세소득이 280만위안일 경우

납세금액: $100 \times 25\% \times 20\% + (280 - 100) \times 50\% \times 20\% = 23$ 만위안

(2) 증치세(증치세 소규모 납세자만 가능함)

다만, 증치세 납세자는 소규모납세자와 일반납세자 2가지로 나누는데, 소형박리 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이 증치세 소규모 납세자일 경우에만 아래 혜택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증치세 소규모 납세자가 월 매출액이 3만 위안(3만 위안 포함, 아래 동일함)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증치세 징수를 면제하고, 분기별로 납세하는 증치세 소규모납세자는 한 분기의 매출액이 9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증치세 징수를 면제합니다. <국가세무총국의 소형박리기업이 증치세와 영업세 징수 면제의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4년57호)(国家税务总局关于小微企业免征增值税和营业税有关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2014年57号)>

★ section 2 [26] 증치세 소규모납세자와 일반납세자 구분과 차이점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지법인 이익금을 한국으로 송금하려면

Q 현지법인의 이익금을 한국으로 송금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 현지법인의 이익금을 한국으로 송금하려면 우선 현지법인에서 기업소득세 등 세금과 공적금 등을 납부하고 이윤을 분배해야 합니다.

- (1) 한국 투자자에게 이익금을 송금하기 전에 현지법인은 기업소득에 대하여 증치세 및 기업소득세 등 세금을 완납한 후 최종 소득금액을 확정합니다.
- (2) 회사 정관상의 규정에 따라 최종 소득금액의 10%를 법적잉여적립금으로 하여 최종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법적잉여적립금은 누계 등록자본금의 50%까지 공제하고 그다음부터는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 (3) 최종 소득금액에서 법적잉여적립금을 공제한 나머지 이윤분배가능대금 즉 배당소득을 투자자에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 (4) 배당소득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려면 현지 법인이 중국에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만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에 대하여서는 투자자가 법인일 경우와 개인일 경우의 세율이 다릅니다. 배당소득세에 대한 세율은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체결한 협정이 있어 동 조세조약을 우선 적용합니다.

- 투자자가 법인일 경우: 협지법인에 대하여 25% 이상 지분을 가진 법인이 배당소득을 송금받을 때 5%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고, 25% 이하 지분을 가진 법인이 배당소득을 송금받을 때 10%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韩民国政府关于对所得避免双重征税和防止偷漏税的协定)).
- 투자자가 개인일 경우: 개인투자자가 중국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취득 할 경우 개인소득세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하여도 원천징수 세무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개인소득세 몇 가지 정책문제에 대한 통지(財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个人所得税若干政策问题的通知)>(재세자[1994]20호)

(5) 마지막으로 은행에서 배당소득을 송금 시 요청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송금신청서 ② 외상투자기업 외화등기서류 ③ 최고권리기구의 이윤분배 결의서 ④ 등록자본금 검사보고서와 감사보고서 ⑤ 세무납세증명서

일반적으로 외국투자자에게 배당소득을 배당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지만 각 지방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으므로 구체적으로는 회사상황에 따라 회계,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 이중과세 조정방법

Q 중국에 설립한 자회사가 한국본사에 이익배당을 송금하려고 하는데 중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나요?

A 예,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한·중 조세협정에 따라 이중과세의 방지를 목적으로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한·중 양국 중의 한 나라에서 과세되었다면 상대방 나라에서는 그 세액을 공제해주며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중국 자회사가 한국본사에 배당금을 송금하는 경우 한국본사는 중국에서 원천징수당한 배당소득세를 직접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중국 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형성과정에서 납부한 중국의 기업소득세를 간접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소득원천지국이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범불상 소득세를 감면할 시에도 거주국은 이미 징수한 금액으로 간주하여 조세공제를 해주어야 하고, 소득원천지국이 배당금, 이자,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대해 거주국은 각각 10%의 세율로 세금을 공제해 줘야 합니다.

물론 공제금액은 중국에서 얻은 소득이 한국의 세수총소득에 적용되는 몫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전가격과 위험관리 방법

Q 외자기업은 이전가격 위험을 항상 대비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전가격이 무엇이고 중소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이전가격이란 특수관계사 사이의 특수거래 시 확정하는 거래가격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모기업이 국외에 있는 자회사 등 특수관계사와 거래할 때 적용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많은 외자기업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세무국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자기업은 본사 또는 지사 등 특수관계사와 거래를 할 경우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 (1) 독립적 거래원칙에 따라 거래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과거 10년을 소급하여 납세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2) 거래와 관련되는 쌍방이 체결한 계약서, 거래내역 등 모든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 (3) 실질적으로 경영활동을 하지 않고 기능도 수행하지 않을 경우 경외 특수관계사에게 지불한 비용은 세무기관에서 지출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 (4) 외국 특수관계사가 제공한 노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때 그 노무는 본기업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경제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 특수관계거래가 발생한 기업은 연말 기업소득세 세무신고 시 특수관계사간의 특수관계거래업무에 대하여 신고해야 하며,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이전가격 동기자료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표준에 도달할 경우, 법규에 따라 준비 후 세무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전가격 동기자료 보고서는 마스터파일, 로컬파일 및 특수사항문서를 포함합니다.

1. 아래 조건 중의 하나에 부합되는 기업은 마스터파일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 ① 연도내에 국제간 특수관계거래가 발생하였고, 아울러 해당 기업의 재무보고서를 연결하는 최종지주기업 산하 그룹에서 이미 마스터파일을 준비하였을 경우,
 - ② 연간 특수관계거래 총액이 10억위안을 초과할 경우.
2. 연간 특수관계거래 금액이 아래 조건 중의 하나에 부합되는 기업은 로컬파일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 ① 연간 유형자산소유권 양도금액(위탁가공 업무는 연간 수출입 통관가격으로 계산)이 2억위안을 초과할 경우
 - ② 연간 금융자산 양도금액이 1억위안을 초과할 경우
 - ③ 연간 무형자산 소유권 양도금액이 1억위안을 초과할 경우
 - ④ 연간 기타(유형자산사용권양도, 무형자산사용권양도, 자금조달이자, 노무거래 등) 특수관계거래 금액이 합계 4000만위안을 초과할 경우.
3. 특수사항 문서는 원가분담협의 특수사항 문서와 과소자본 특수사항 문서를 포함합니다.
 - ① 기업이 원가분담협의서를 체결 또는 집행할 경우에는 원가분담협의 특수사항 문서를 준비해야 하고,
 - ② 기업 특수관계 채권성투자와 권익성 투자비율이 기준비율(금융기업 5:1, 기타기업 2:1)을 초과하여 독립거래 원칙에 부합되는지를 설명하여야 하는 경우 과소자본 특수사항문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중국 경내 특수관계자와만 특수거래가 발생하는 기업은 마스터파일, 로컬파일, 특수사항문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세무국에서 세금 포탈로 인정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이전가격 위험에 대한 충분한 사전대응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거래내용 등을 검토하여 이전가격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이전가격사전승인("APA") 신청을 고려할 수 있고 이전가격 위험이 중간 또는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전가격 문서화 또는 위험분석 등을 수행하여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가격 관련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회사에 지속 결손이 나는 경우 세무처리방법

Q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회사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이월하여 3년째 보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최장 몇년까지 보전할 수 있나요?

A 중국에서는 최장 5년까지 보전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결손이 발생한 경우 동 결손금을 이월하여 그 다음 연도의 소득으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단, 이월하여 보전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기업소득세법(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제18조).

다만 벤처기업과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자격을 인정 받은 기업은 10년까지 보전할 수 있습니다. <재정부, 세무총국의 벤처기업과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결손금 이월 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财政部 税务总局关于延长高新技术企业和科技型中小企业亏损结转年限的通知)>(재세[2018]76호)

최근 중국의 많은 국내기업들은 국외에 지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지점에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중국의 국내기업은 국외 손실을 보전할 수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17조(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第17条)>

결손이라는 것은 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 하면 결손의 이월 보전은 과세소득액의 공제계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에서는 (재정부 세무총국의 코로나19 방역 통제 관련 조세 정책에 관한 공고(2020년 제8호)(财政部 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税收政策的公告)(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20年第8号)를 발표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크게 받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업종/ 기업(교통운송, 찬음, 주숙, 여행)의 2020년도 발생 결손금 최장 이월공제 기간을 기존의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기업청산 시 기업소득세

Q 기업이 청산을 하고 말소등기를 하기 전에 청산소득이 있는 경우 기업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A 기업은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을 하고 소관부처인 공상행정관리국에 말소등기를 하기 전에 세무등기 말소시 청산소득이 있는 경우 세무기관에 신고하고 법률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기업소득세법(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제55조 제2항).

여기서 말하는 청산소득이란 기업의 모든 자산을 현금으로 환산 또는 거래한 가격에서 자산의 순가치, 청산비용, 관련 세금과 수수료비용 등을 뺀 후의 잔액을 가리킵니다.

기업은 말소등기 전에 청산소득을 세무기관에 신고하고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의 투자회사가 청산기업으로부터 배당받은 잉여자산 중 청산기업의 누적된 잉여금이나 적립금으로부터 배당된 것이 있다면 주식배당금 수입으로 간주되므로 중국에서 기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익은 청산기업이 이윤분배를 결정한 날에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봅니다.

★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Section 1 [30] 기업청산의 사유 및 청산 절차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보조금 지급과 기업소득세

Q 중국 자회사에서 한국에서 파견나온 직원에게 지급하는 주택보조비, 급식보조비, 자녀교육비, 출장보조비 등의 보조비에 대해 어떤 세금혜택이 있나요?

A 아래와 같은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 (1) 회사에서 외국인 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보조비 중 ①자녀교육지출, ②계속 교육지출(继续教育支出), ③큰 병 의료지출, ④주택대출이자, ⑤주택임대료, ⑥노인 봉양 지출은 개인소득에 포함하여 개인소득세 신고 시 개인소득 전문 항목공제로 하여 개인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에 포함하여 신고 시, 개인소득 전문항목공제로서 사전에 세무국에 전문 항목 공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금액 또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무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 못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임금에 포함하여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중국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에 대하여 개인소득이지만 규정된 한도내에서 과세대상소득액을 절감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 개인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2) 기타 기업의 복리비용은 개인소득공제항목으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체 직원 임금 총액의 14% 한도내에서 기업소득세 신고 시 회사에서 지출로 공제하여 기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비용처리가 가능한 공제항목들을 체크하신 후 복리비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소득으로 할 것인지 2가지 방법의 장, 단점을 비교 판단하여 회계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소득으로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개인소득세APP에서 신고하여야 하므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Section 2 [38] 개인소득세 종합과세시 소득공제 내용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전에 중국 세무당국에 이미 주택보조금, 자녀교육비 등을 신고하고 세무국으로부터 비준받은 금액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은 계속 사전 방식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향유할 수 있고 2022년부터는 위 신규정에 따라 혜택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재정부, 세무총국의 개인소득세법 수정 후의 관련 혜택 정책의 연결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18년 164호)(财政部 税务总局关于个人所得税法修改后有关优惠政策衔接问题的通知)(财税2018年164号))

복리후생비 지급과 기업소득세

Q 한국기업이 중국내 자회사 또는 대표처에서 근무하는 자를 위하여 한국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한국에서 어떤 문제가 있나요? 동 소득은 중국에서 과세되어야 하나요?

A 한국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파견근로자가 한국법인의 관련 업무의 수행여부 및 그 업무의 범위 등(업무연관성)에 따라 한국기업의 비용산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파견직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한국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됩니다.

또한 파견된 임직원 또는 직원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한국 거주자로 보기 때문에(동 시행령 제3조) 한국법인은 한국에서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파견 근로자가 183일 이상을 중국에 체류했다면 중국에서 과세되며, 183일 미만이라면 국외에서 지급된 소득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비과세됩니다.

영업세 폐지와 증치세 통합 내용

Q 중국에서 영업세를 폐지시키고 증치세로 통합했다던데 정말입니까? 언제부터 통합했나요? 세율 상에 변화가 있나요?

A 네, 정말입니다. 2016년 5월 1일부터 통합했습니다.

중국의 증치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 좀 다르기도 합니다. 세율은 각 품목별로 다르고 중국의 세수 중 30%~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영업세란 한국에는 없는 세금이고, 거래세 중의 한가지입니다. 증치세와 영업세 모두 거래세에 속하지만 통합하지 전에는 업종에 따라 증치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혹은 영업세 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

영개증(营改增)이란 중국에서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하는 것을 말하며 전에 영업세를 납부해야할 과세항목을 증치세 과세항목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개증(营改增)의 제일 큰 특징은 세금의 중복 징수를 줄이고 기업의 세무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영개증(营改增)은 처음에는 건축업, 부동산업, 금융업 등 일부 업종에서 각 지역 별로 적용하다가 현재는 전국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개증(营改增)을 시행함으로써 소규모납세자는 세율이 곧바로 5%에서 3%로 절감하였고 일반납세자는 세율이 6%, 9% 혹은 13%가 되어 많아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제 정책이 있기에 최종적으로 대부분 기업들은 감소했다고 판단합니다.



증치세 과세 대상 항목

Q 중국에서 생산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싶은데 매출액에 따라 증치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증치세란 어떤것을 말하나요?

A 중국의 증치세란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합니다.

증치세는 상품(용역 포함)이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납세 대상으로 징수하는 거래세의 한가지입니다. 제품의 생산, 유통, 노무서비스 등 단계별로 새로 추가된 가치 혹은 제품에 부가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부가된 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증치세는 중국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가공, 수리 노무 제공 및 제품을 수입하는 단위와 개인을 상대로 세금을 징수합니다.

또 증치세 납세자는 경영규모 및 회계재산 상황에 따라 일반납세자와 소규모납세자로 나누어 집니다.

또 구체적인 증치세 과세대상 항목별 세율은 ★ Section 2 [46] 기업세무 관련 세율표 및 납세기한 중의 증치세 세율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Q 증치세 계산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A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은 2019년 11월 27일에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법(의견모집 초안)(이하 "증치세법 의견수렴본"으로 약칭)>을 발표하였고 2019년 12월 26일까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증치세법의견수렴본>에서는 하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1) 간이과세방법과세항목, 증치세면제항목, 집단복지 또는 개인 소비에 사용되는 화물, 용역, 무형자산, 부동산·금융상품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 이 중 관련된 고정자산, 무형자산·부동산은 상기 항목에 전용하는 고정자산, 무형자산·부동산 만을 가리킵니다.
- 2) 비정상손실항목과 관련된 매입세액
- 3) 소비에 직접 사용되는 음식서비스, 주민일상서비스·오락서비스 관련 매입세액
- 4) 대출서비스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
- 5) 국무원에서 규정한 기타 매입세액

이중에서 “음식서비스, 주민일상서비스·오락서비스”에 대해 “소비에 직접 사용되는”이라는 제한조건을 새로 추가하였으며,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범위를 서면상으로 한정하였습니다.

해당 조정은 실무에서 어떤 납세자가 상술한 서비스를 구입한 것이 직접 소비의 목적(음식 주문 플랫폼 등 서비스에 종사하는 납세자 등)이 아니라 과세거래에 종사하는 등의 필수 목적 지출인 경우, 기계적으로 현행 정책에 따라 집행한다면 해당 납세자의 증치세 세무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출이자의 지급으로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수렴본>에서는 별도 조정 하지 않았으므로 대출서비스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여전히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증치세 영수증(세금계산서)의 구매방법

Q 영수증(세금계산서)의 구매, 취득은 어떻게 하나요?

A 영수증(세금계산서)을 발급하려면 ① 우선 세무국에서 영수증 종류를 확정하여야 하고, ② 세무국의 통지에 따라 세금관리설비 공급상으로부터 세금관리설비를 구매하며, ③ 마지막으로 영수증을 구매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법인설립 후 이통통 카드(一證通卡) 혹은 전자영업집조로 세무국 사이트에 등록하여 납세자 정보를 기록합니다.
- (2) 동 사이트에서 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고 증치세영수증 신청표를 작성하여 신청자(회계)의 신분증을 스캔하여 업로드한 후 제출합니다.
- (3) 48시간 내에 세무국에서 신청결과를 통지할 것이며 신청 통과 후 세무국의 영수증 확정통지서를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 (4) 영수증 확정통지서 상에서 세무국이 열거한 공급상에게 연락하여 세금관리설비 및 영수증 프린트기계를 구매합니다.
- (5) 세금관리설비 및 영수증 프린트기계 구매 및 설치 후 세무국 사이트에 등록하여 영수증 종류와 수량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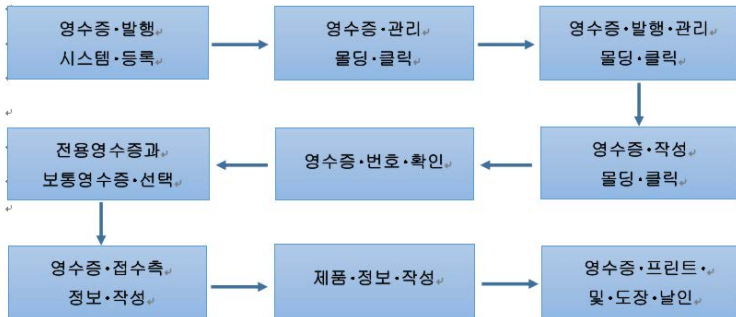
구체적인 사항이나 절차에 소요되는 일지는 각 관할 세무기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세무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치세 영수증(세금계산서) 발행방법

Q 중국 법인을 운영하면서 증치세 영수증(세금계산서)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증치세 영수증을 발행하려면 우선 위 질문의 내용과 같이 영수증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영수증 발행은 세금관리설비 공급상에 따라 절차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용영수증은 1식3부이고 각각 기장증, 영수증, 공제증이며, 보통영수증은 1식 2부이고 각각 기장증과 영수증입니다.

전용영수증(세금계산서)과 보통영수증(세금계산서)의 차이점

Q 중국의 증치세 영수증(세금계산서)은 전용과 보통 두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A 중국의 증치세영수증(세금계산서)은 증치세전용영수증(세금계산서)과 증치세보통영수증(세금계산서) 2가지가 있습니다.

전용영수증과 보통영수증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통상적으로 일반납세자가 발급한 영수증은 증치세전용영수증이고 소규모납세자가 발급한 영수증은 증치세보통영수증입니다. 다만 소규모납세자는 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해당 세무기관에 증치세전용영수증을 대신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증치세보통영수증은 세무기관에 등기를 하지 않은 개인도 세무기관에 세금을 납부하고 대신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2) 증치세전용영수증은 판매 쌍방의 거래증빙일 뿐만 아니라 구매측에서 증치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이기도 합니다. 증치세보통영수증은 농수산품 등 거래에서 법정세율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증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3) 증치세보통영수증은 단순한 거래증빙이지만 증치세전용영수증은 거래증빙일 뿐만 아니라 증치세 공제증빙이기도 합니다.
- (4) 증치세전용영수증 상에는 증치세보통영수증 상에 기재한 내용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판매쌍방의 통일사회신용카드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은행명칭과 통장번호 및 세금금액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증치세전용영수증과 증치세보통영수증은 위와 같은 차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업종과 지역 등에 따라 특별규정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할 세무기관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고 업무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Q 개인이 소유하는 사무실을 임차했으나 개인이 어떻게 영수증(세금계산서)을 끊어줄 수 있느냐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하여 비용처리를 하지 못하는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개인이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고, 개인이라는 이유로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없다며 발뺠을 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스스로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런 경우에 한해서 특별절차를 두어 이와 유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북경의 경우에는 개인이 세무기관에 세금을 납부하고 임대계약서, 건물권리등기증, 신분증 복사본 등을 제시하면 세무기관에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사무실 또는 사업장을 임차했다 할지라도 이러한 제도를 통해 적법하게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유의 사업장은 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영수증을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초기에 영수증 문제를 언급하고 발급해 줄 수 없다면 임대료 인하나 임대계약상의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증치세 소규모납세자와 일반납세자의 구분과 차이점

Q 중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세무등기 시 법인이 소규모납세자인지 일반납세자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A 중국은 증치세 납세자를 일반납세자와 소규모납세자로 구분하고 있고 각각의 이해득실을 따져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증치세 세율

2019년부터 일반납세자의 증치세 세율은 0%, 6%, 9%, 13% 4가지로 분류되어 있고 소규모납세자는 세율이 아니라 징수율을 3%(특수업종 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세금계산 방법

일반납세자 세금 계산 방법은 증치세 공제계산 방법을 사용하고,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납세금액=매출세액-매입세액-감면세액

소규모납세자 세금계산 방법은 바로 수익의 3%를 세금으로 납세합니다.

(3) 세금 혜택

일반납세자는 증치세 납부 관련 아래 두가지 혜택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1) 매입세액의 10% 추가공제(감면)정책 (2019년 4월-2021년)

2019년 4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생산, 생활서비스업의 납세인은 당 기공제가능 매입세액을 10% 추가로 공제 가능하며 증치세 과세금액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감면정책").

구체적인 내용은 BOI 서비스 일반납세자 증치세 공제문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미공제 매입세액 환급제도의 시행 (2019년 4월-2021년)

2019년 4월 1일부터, 증치세 말기 미공제 금액에 대한 환급제도를 시행하여

정책 실행 후 조건에 부합되는 납세인의 미공제 매입세액의 증가량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 증치세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납세자 증치세 혜택은 분기별 소득이 30만원 이하일 경우 증치세 면세 혜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가세(도시유지건설세, 교육비부가, 지방교육비 부가)도 함께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4) 자체 발급 영수증

일반납세자는 자체적으로 전용영수증과 보통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또 세율이 0%, 6%, 9%, 13%인 4가지 전용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동시에 영수증 접수측은 6%-13%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납세자는 자체적으로 보통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고 영수증 접수측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소규모납세자가 전용영수증을 발급하려면 매번 세무국에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고 또 발급 받은 전용영수증은 3%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일반납세자와 소규모납세자는 각자의 이해득실에 따라 있으므로 경영자는 회사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증치세 소규모납세자에서 일반납세자로의 전환

Q 소규모 납세자가 일반납세자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13% 영수증(세금계산서)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에서 소규모납세자로부터 일반납세자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명드리자면 물건을 만들어서 팔려면 물건을 만들기 위한 자재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이때 매입세액이 발생할 것이고, 그 자재를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어 팔면 상가 판매액에 대해서 매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일반납세자인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의 잔여액이 납부할 증치세액이 되는 반면에, 소규모납세자는 매출액에 대해서 3%의 매출세액을 납부할 뿐, 납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납세자가 소규모납세자가 발급한 전용영수증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3%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보통영수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설립 초기에 일반납세자로 신청하지 않은 소규모납세자는 회사설립 후에 필요시 일반납세자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합법적인 경영장소가 있고 실질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으며 세무국에서 신청한 법인에 현장검사를 한 다음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모두 비준해주는 상황입니다.

또 법인의 증치세 매출액이 연속12개월 동안 누계 500만위안을 초과할 경우 세무국에서는 법인에게 일반납세자로 변경할 것을 통지하여 법인이 자동적으로 소규모납세자로부터 일반납세자로 변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치세 일반납세자에서 소규모납세자로의 전환

Q 법인 설립 시 일반납세자로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신청했는데 세금이 소규모 납세자보다 많아 소규모납세자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나요?

A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납세자로부터 소규모납세자로 변경하려면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国家税务总局关于小规模纳税人免征增值税政策有关征管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9年第4号))

- (1) 연속12개월 기간 동안 증치세매출액이 누계 500만위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2) 상업 혹은 공업 등 비영개증(非营改增) 업종이어야 하고 영개증(营改增) 업종인 법인은 소규모납세자로 변경이 불가능 함
- (3) 2018년 5월 1일 전에 이미 등기한 일반납세자만 소규모납세자로 변경이 가능하고 2018년 5월 1일 후에 일반납세자로 등기한 납세자는 변경이 불가능 함
- (4) 2019년 12월 31일 전에 소규모납세자로 등기 완료해야 함.

위와 같이 상술 조건 등에 대하여 매년 수정 공고를 발표하였는데, 현재까지 세무국에서 이부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반납세자에서 소규모납세자로 변경을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또 수시로 새로운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초기에 어떤 납세자로 등기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우선 소규모납세자로 등기하고 나중에 회사 경영 상황에 따라 다시 신청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합니다.

증치세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방법

Q 중국에서 증치세를 환급받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조건에 부합될 경우 환급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납세자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증치세 납세금액으로 하여 납세하여야 하는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에 대하여 증치세 이월공제 환급제도(増値稅留抵退稅制度)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세무총국의 증치세 기말 이월공제세액 환급 관련 처리사항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2019년 제20호)(国家税务总局关于办理増値稅期末留抵稅額退稅有关事项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9年第20号))

- (1) 일반기업이 증치세 이월공제 환급제도(増値稅留抵退稅制度)에 따라 증치세 환급 신청을 하려면 아래 5가지 조건에 부합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2019년 4월 납세기간부터 연속 6개월 동안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고 그 금액이 누계 6개월간 50만위안을 초과할 경우
 - ② 납세신용등급이 A급 혹은 B급일 경우
 - ③ 환급 신청 전 36개월 내 수출환급 사취 혹은 증치세영수증 허위발행 사실이 없을 경우
 - ④ 환급 신청 전 36개월 내 탈세로 인하여 세무기관의 처벌을 2번 이상 받은적이 없을 경우
 - ⑤ 2019년 4월 1일부터 증치세 징수 즉시 반환 및 징수 후 반환 정책을 향유하지 않았을 경우

증분이월공제세액(増量留抵稅額)이란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의 차액이 2019년 3월 기말보다 새로 증가된 금액을 말합니다.

* 납사제가 당기에 반환가능한 증치세 증분이월공제세액 = 증분이월공제세액×매

일구성비율×60%

(2) 상기 일반기업 중 2019년 6월1일부터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선진제조기업은 아래 5가지 조건에 부합할 경우 증치세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 ② 납세신용등급이 A급 혹은 B급일 경우
- ③ 환급 신청 전 36개월 내 이월공제환급과 수출환급 사취 혹은 증치세영수증 허위발행 사실이 없을 경우
- ④ 환급 신청 전 36개월 내 탈세로 인하여 세무기관의 처벌을 2번 이상 받은적이 없을 경우
- ⑤ 2019년 4월 1일부터 증치세 징수 즉시 반환 및 징수 후 반환 정책을 향유하지 않았을 경우

* 납사제가 당기에 반환가능한 증분이월공제세액 = 증분이월공제세액×매일구성비율

공고 상의 시행기간(2019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연속 6개월 동안의 증치세 공제잔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청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일반납세자 증치세 공제문제

Q 서비스 업종인 컨설팅 회사 등은 일반납세자일 경우 증치세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아주 적습니다. 이런 서비스 업에 대한 우대정책이 있나요?

A 우대정책이 있습니다.

〈재정부, 세무총국, 해관총서의 증치세 개혁심화 관련 정책에 관한 공고(財政部、稅務總局、海關總署關於深化增值稅改革有關政策的公告)〉와 〈재정부, 세무총국의 생활성 서비스업 증치세 가상공제정책 명확화에 관한 공시(財政部 稅務總局關於明確生活性服務業增值稅加計抵減政策的公告)〉 상의 규정에 따르면,

- ① 2019년 4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우편서비스업, 전기통신서비스업, 현대서비스업의 서비스 매출액이 법인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을 초과할 경우 당기 매입세액에서 10%를 가산하여 공제할 수 있다.
- ② 2019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생활서비스업은 납세금액 계산 시 매입세액에 15%를 가산하여 공제할 수 있다.

물론 소규모납세자는 이 혜택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추가감면정책을 적용하는 "생산, 생활서비스업의 납세인"이란 우정(郵政)서비스, 전신(電信)서비스, 현대서비스, 생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취득한 매출액의 전체 매출액 대비 50% 이상에 달하는 납세자를 가리킵니다. 추가감면정책을 적용하는 첫 해에는 세무기관에 〈추가감면정책 적용에 대한 성명(適用加計抵減政策的聲明)〉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납세자가 추가감면정책의 적용을 확인한 후, 당해년도 내에 더 이상 조정할 수 없으며 다음 연도에 적용할지 여부는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계산하고 확정합니다. 납세자가 계상할 수 있으나 계상하지 않은 추가감면액은 추가감면정책의 적용을 확정된 당기에 일차적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추가감면액을 계상할 수 없으며, 이미 추가감면액을 계상한 매입세액은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전출하고 매입세액 전출 당기에 관련 추가감면액을 하향 조정해야 합니다.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당기 계상한 추가감면액} = \text{당기 공제가능한 매입세액} \times 10\%$$

당기 감면가능한 추가감면액 = 전기말 추가감면잔액 + 당기 계상한 추가감면액 - 당기 하향 조정된 추가감면액

(2) 납세자는 현행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방법 하의 과세액(이하 공제전 과세액)을 계산한 후, 아래의 상황으로 구분하여 추가감면 합니다.

- ① 감면전 과세액이 0일 경우, 당기 감면 가능한 추가감면액은 전액 다음기간에 이월하여 감면합니다.
- ② 감면전 과세액이 0보다 많고 당기 감면 가능한 추가감면액보다 많을 경우, 당기 감면 가능한 추가감면액은 전액 감면전 과세액에서 감면합니다.
- ③ 감면전 과세액이 0보다 많고 당기 감면 가능한 추가감면액보다 적거나 동일할 경우, 당기 감면 가능한 추가감면액은 과세액을 0까지 감면합니다. 감면하지 못한 당기 감면 가능한 추가감면액은 다음 기간에 이월하여 계속 감면합니다.
- (3) 납세자가 화물·용역을 수출하고 다국적 과세행위가 발생하였다면 추가감면 정책을 적용하지 않고 관련 매입세액은 추가감면액을 계상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가 화물, 용역 수출을 겸하고 다국적 과세행위가 발생하여 매입세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공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추가 감면액을 계상할 수 없는 매입세액 = 당기 구분할 수 없는 전부매입세액 × 당기 화물용역 수출 및 다국적 과세행위의 매출액 ÷ 당기 전부 매출액

(4) 납세자가 추가감면액의 계상, 감면, 하향조정, 잔액 등 변동상황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추가감면액을 편취하거나 추가감면액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추가감면정책 집행완료 후, 납세자는 더 이상 추가감면액을 계상하지 않으며 잉여 추가 감면액은 감면을 중단합니다.



소비세 납세의무자와 납세대상

Q 중국에 양조공장을 설립하여 술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소비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소비세가 무엇입니까?

A 소비세는 소비제품의 거래대금을 징수대상으로 하는 세금의 통칭입니다. 소비세는 가격에 포함하고, 과세 소비품의 생산, 임가공, 수입 단계에서만 납부되며 도매 및 소매 등 단계에서는 이미 가격 중에 소비세가 포함돼 있기에 다시 납부하지 않으며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소비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소비세 납세대상은 주요로 담배, 술, 폭죽 불꽃, 화장품, 정제유, 귀금속 및 보석 옥석, 골프공 및 기구, 고급 시계, 요트, 목제1회용 젓가락, 원목마루, 오토바이, 승용차, 배터리, 도료 등의 세목을 포함합니다.

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세금의 종류와 방법

Q 중국에서 법인명으로 사무실용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어떻게 납부하나요?

A 법인명으로 부동산 구매시 납부해야할 세금은 토지사용세 및 방산세(건물재산세), 인지세, 취득세가 있습니다.

(1) 토지사용세

도시(城市), 현 소재지(县城), 건제진(建制镇), 공업광산구(工矿区)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모두 토지사용세 과세대상으로, 실제로 점용한 토지면적을 과세근거로 매년 납부합니다(〈도시토지사용세 잠정조례(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제2조, 제8조).

도시토지사용세 세율(2020년 5월 기준)

| 지역별 | 세율 | 비고 |
|-------------------|-------------------------|----------------|
| 대도시 | 1.5~30위안/m ² | 인구 50만명 이상 |
| 중도시 | 1.2~24위안/m ² | 인구 20만명 ~ 50만명 |
| 소도시 | 0.9~18위안/m ² | 인구 20만명 이하 |
| 현 소재지, 건제진, 공업광산구 | 0.6~12위안/m ² | |

★ 건제진(建制镇): 중국의 행정단위로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구획된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2) 방산세(건물재산세)

건물재산세는 매년 일차적으로 부동산 취득원가의 10%~30%를 차감한 후의 잔액에 대해 징수하며 연간 세율은 1.2%입니다.

즉 납세금액=부동산 취득원가×(1-10%~30%)×세율(1.2%)

(3) 인지세

인지세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 ①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가격의 0.03-0.05%,
- ② 부동산 권리등기증 변경 시 5위안/건

(4) 계세(취득세)

취득세의 세율은 3~5%이고 구체적 세율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이 범위 내에서 지역의 실제상황에 따라 확정합니다.

즉 납세금액=(구매가격-원가격)×세율 입니다.

기업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의 종류와 방법

Q 중국에서 법인명으로 사무실용 부동산을 구매하여 운영하다가 상황이 좋지 않아 매각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발생하는 세금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 법인명의 부동산을 매각시 발생하는 세금은 증치세, 기업소득세, 토지증치세, 인지세, 도시유지건설세와 교육비부가가 있습니다.

(1) 증치세

법인이 구매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부동산 판매자가 일반납세자인지, 소규모납세자인지에 따라 증치세 징수 방식이 다릅니다.

① 일반납세자일 경우

2016년 4월 30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판매할 경우 5%또는 9%의 세율로 징수할 수도 있으며, 2016년 4월 30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을 판매할 경우에는 9%의 세율로 징수합니다.

② 소규모납세자일 경우

자가건축한 부동산을 판매할 경우에는 거래액에 따라 징수(9%)하고 비 자가건축한 부동산을 판매할 경우에는 차액에 따라 징수(5%)합니다.

(2) 기업소득세

법인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의 소득에 대하여 당기 기업 소득에 포함하여 세무신고하여야 합니다.

(3) 토지증치세

토지증치세 즉 부동산 매각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가가치금액을 세금계산표 준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가가치금액은 부동산 매각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서 각 공제항목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가리킵니다.

토지증치세는 부가가치금액×세율로 계산하여 징수합니다.

다만 세율은 부가가치금액이 공제항목금액을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① 부가가치금액이 공제항목금액 50% 부분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세율은 30%이고
- ② 부가가치금액이 공제항목금액 50% 부분을 초과했지만 공제항목금액 100% 부분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세율은 40%이고
- ③ 부가가치금액이 공제항목금액 100% 부분을 초과했지만 공제항목금액 200% 부분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세율은 50%이고
- ④ 부가가치금액이 공제항목금액 200% 부분을 초과했을 경우 세율은 60%이며
- ⑤ 보통주택을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금액이 공제항목금액 20% 부분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면세합니다.

(4) 인지세

부동산 판매가격의 0.05%에 상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도시유지건설세와 교육비부가

도시유지건설세=실제납부한 증치세액 ×7%

교육비부가=실제납부한 증치세액 ×3%

또 지방에서 별도로 받는 제방방호비 등이 있지만 각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세율을 규정하기에 당지 관할부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세금의 종류와 방법

Q 북경에서 공장부지를 임차했는데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1/4 정도 있어 타회사에게 임대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네. 공장부지를 임대할 경우 부담해야할 세금 종류는 증치세, 기업소득세, 방산세(건물재산세), 도시유지건설세와 교육비부가,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1) 증치세

① 일반납세자일 경우:

- 영개증(营改增)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간이과세방법으로 5% 세율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합니다.
- 영개증(营改增) 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9% 세율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합니다.

② 소규모납세자일 경우 5% 세율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합니다.

(2) 기업소득세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당기 기업 소득에 포함하여 세무신고하여야 합니다.

(3) 도시유지건설세와 교육비부가

도시유지건설세=실제납부한 증치세액×7%

교육비부가=실제납부한 증치세액×3%

(4) 인지세

부동산 임대가격의 0.1%에 상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재원의 개인소득세

Q 중국에 주재하는 한국 근로자는 임금을 한국에서 일부 그리고 중국에서 일부를 구분하여 수령하고 있습니다. 납부세액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한·중 조세협정(中韩稅收協定)>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한국에서 파견한 임직원 등의 중국 체류기간이 12개월의 기간 중 연속 또는 누적하여 183일을 초과하지 않고 임직원 등이 지급받는 급여 등 대가를 중국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가 지급하거나, 우리나라 내국법인이 중국 내에 설치한 지점이 당해 급여를 경비로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국 내 체류기간 183일 초과 여부와 급여 지급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한중 조세협정상 체류기간 및 지급자에 따른 면세 요건(2020년 5월 기준)

| 체류기간 | 급여 등 부담(지급)자 | 중국에서 과세여부 |
|---------|--------------------|-----------|
| 183일 이하 | 한국 본점 또는 모법인 | × |
| | 중국 지점 또는 현지법인(거주자) | ○ |
| 183일 초과 | 한국 본점 또는 모법인 | ○ |
| | 중국 지점 또는 현지법인(거주자) | ○ |

다만, 고급관리인원에 대한 개인소득세 납세방법은 일반 직원들과 다르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고급관리인원이란 중국 경내기업에서 총경리, 부총경리, 각 부서의 총담당자 및 이와 유사한 관리직무를 맡고 있는 인원을 가리킵니다. {재정부, 세무총국의 비주민개인과 무주소 주민개인의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

중국 공고 2019년 제35호) [财政部 税务总局关于非居民个人和无住所居民个人有关个人所得税政策的公告 (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19年第35号)]

중국 경내기업의 고급관리인원이 중국에서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해당 고급관리인원은 자신이 직무를 담임하는 동안 중국에서 개인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한국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상기 일반 직원의 관련 규정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한·중 겸임 근무자의 개인소득세

Q 한국(이사직)과 중국(수석대표직)에서 직무를 겸임하는 사람이 중국에는 출장형태로 한달에 2,3일 정도 체류하는데, 이런 경우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대표처의 수석대표직에 계시는 분들은 주로 출장형태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중국 내 고정주소가 없는 사람의 임금, 급여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를 어떻게 확정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계산 하느냐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83일 미만 거주자 : (당월 중국 경내의 소득 × 세율 - 속산공제액) × (중국 경내 소득 / 중국 경내의 소득)

183일 이상 거주자 : (당월 중국 경내외소득 × 세율 - 속산공제액) × [1 - (중국 경외의 소득 / 중국 경내의 소득) × (중국 경외 체류일수 / 당월일수)]

*[재정부, 세무총국의 비주민개인과 무주소 주민개인의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35호)([财政部 税务总局关于非居民个人和无住所居民个人有关个人所得税政策的公告\(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19年第35号\)](#))]

위 계산공식을 보면 복잡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관할 세무국은 그 수석대표의 여권을 1페이지~마지막 페이지까지 복사해 오라고 해서 그 입국일자와 출국일자를 모두 계산해서 중국 내,외 임금 과세소득을 합하여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 중국 내, 외 임금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수석대표가 현지 고용인 경우에는 더욱 복잡합니다. 현지고용은 임금도 주재원보다 낮기 때문에 중국 외에서 적지 않은 임금을 받을 것이라는 세무국의 오해를 사게 됩니다. 이로 인해 관할 세무국은 해당국가 대표처의 수석대표 기준으로 비용을 책정하여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중국에서 일정기간 또는 모든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한국에서 거주한 일자와 중국에 출장 나온 일자에 따라 각기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 각각 중국 세무기관과 한국 세무기관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관할 세무국의 내부업무지침에 나와있는 각 나라별, 기관 형태별, 직책별 임금기준이 책정되어 있고 그 기준을 근거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대표처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은 크게 문제삼지 않으나 대표자 명의변경을 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차후 대표처를 폐쇄할 경우 이 문제로 인하여 세무등기 말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표처를 설립하는 각 지역의 임금인정 기준을 사전에 조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개인소득세 종합과세와 분류과세

Q 중국에서도 개인소득세는 종합과세 한다고 하는데, 전의 분류과세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중국에서도 한국처럼 개인소득세 종합과세를 하고 있지만 분류과세도 존재하며 구체적인 구분방법은 소득의 항목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항목은 총 9가지입니다. ① 임금, 보수, ② 노무보수, ③ 원고료, ④ 특허권사용료, ⑤ 경영소득, ⑥ 이자, 주식배당금, 상여금 소득, ⑦ 재산임대 소득, ⑧ 재산 양도 소득, ⑨ 우발 소득

①④ 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하고 거주지는 연도별로 종합과세 할 수 있고 비거주자는 월별로 혹은 차별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⑤⑨ 소득에 대하여서는 분류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세율은 Section 2 [46] 기업세무 관련 세율표 및 납세기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에 대하여 매년 3월1일부터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하고 아래 상황 중의 하나가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1) 2곳 이상에서 종합소득이 발생하고 종합소득 년소득액에서 공제항목 공제 후 잔액이 6만위안 이상일 경우
- (2) 노무 보수, 원고료, 특허권사용료 중의 한가지 혹은 몇가지 소득을 취득하고, 종합소득 년소득액에서 공제항목 공제 후 잔액이 6만위안 이상일 경우
- (3) 납세년도 내 예납한 세금액이 응납세액보다 적을 경우

(4) 납사자가 세금 환급을 신청 할 경우.

비거주자가 종합소득 취득 시 원천징수 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비거주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 이외의 임대료, 양도대금, 우발소득 등 소득에 대하여 분류과세를 하고 있는데, 각자 소득 발생 시 대금지불 측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나머지 대금을 개인에게 지급합니다.

경영소득에 대하여 월별 혹은 차별로 분류과세한 후 다음해 초 세무신고 완료 후 3월31일 까지 세무확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 현재 혜택을 향유한 외국인 복리비용, 직원 퇴직비용, 기업연금의 일시불 수령 등 특수 개인소득에 대하여 각자 특별처리정책이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실제상황에 따라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소득세 종합과세시 소득공제 내용

Q 한국의 소득공제와 같이 중국에서 개인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A 예, 한국의 소득공제처럼 중국도 개인소득세 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한국의 소득공제는 사회보험료와 주택공적금 뿐만 아니라 부모님 병원검진치료 비용, 자녀 교육비용 등 많은 항목들을 공제할 수 있으며 한국과 똑같지는 않지만 중국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개인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주택공적금 등 기본 공제 항목뿐만 아니라 2019년1월1일부터 새로 시행하는 <개인소득세 특별항목공제 잡정시행방법(국발(2018)41호)(个人所得税专项附加扣除暂行办法(国发〔2018〕41号))의 규정에 따라 ① 자녀교육지출, ② 계속교육지출(继续教育支出), ③ 중병 의료지출, ④ 주택대출이자, ⑤ 주택임대료, ⑥ 노인부양 지출도 세전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① 자녀교육지출: 자녀당 매월 1,000위안의 표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속교육지출(继续教育支出):

납세자가 중국 경내에서 학력(학위) 계속교육을 받는 지출은 학력(학위) 교육 기간에 매월 400원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고, 동일한 학력(학위)의 계속교육 공제기간은 48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기능인원 직업자격 계속교육, 전문기술인원 직업자격 계속교육을 받는 지출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당년에 3600위안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③ 중병 의료지출: 1개 납세년도 중 중병 의료지출이 1.5만위안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8만위안의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④ 주택대출이자: 납세자가 중국경내의 주택을 구매할 때 발생한 첫번째 주택대출이자지출은 실제 대출이자가 발생한 년도에 매달 1,000위안의 표준정액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기한은 24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는 첫 주택 대출의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⑤ 주택임대료: 납세자가 주요 근무도시에서 자기 소유주택이 없어 발생한 주택임대료 지출은 다음의 표준정액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직할시, 성소재지(수부) 도시, 단독계획시 및 국무원이 확정된 기타 도시의 공제기준은 매월 1,500위안입니다.
 - 제1항에 열거한 도시를 제외한 시관할구 호적인구가 100만을 초과하는 도시의 공제기준은 매월 1,100위안이고, 시관할구 호적인구가 100만을 초과하지 않는 도시의 공제기준을 매월 800위안으로 합니다.
- ⑥ 노인 부양 지출:
- 납세자가 독자녀일 경우 매월 2,000위안의 표준정액에 따라 공제하며
 - 납세자가 비독자녀일 경우 매월 1인당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제항목은 사전에 개인소득세 APP에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고 또 관련 증명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세무국에서 수시로 검사할 경우 제출할 수 있도록 마련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주식 및 펀드 수익에 대한 납세

Q 2년전에 중국 주재원으로 온 후 중국의 주식 및 펀드에 투자하여 재미를 좀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에서의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A 중국에서 주식 및 펀드에 투자하여 얻게 된 소득은 한국에서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과 한국 내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가 됩니다. 중국에서 납부된 세금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주식 및 펀드에 투자하여 얻게 된 소득은 한국에서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과 한국 내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가 됩니다. 중국에서 납부된 세금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주소는 없으나 중국에 거주한지 만 183일이 된 개인은 무제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중국 내에 주소가 없고 거주한 날자가 매년 183일 이상인 년도가 연속 6년 이하인 개인(통상 주재원이 이에 해당함)의 국외소득은 주관 세무기관의 기준을 거친 경우 중국 내에 있는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지급한 것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중국 내에 주소가 없고 거주 기간이 연간 183일 이상인 년도가 연속 6년이 넘는 개인은 7년이 되는 때부터 국내 및 국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정부, 세무총국의 비거주자와 주소가 없는 거주자의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35)(財政部 稅務總局公告2019年第35号))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 조정방법

Q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중국에서 납부한 모든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을 외국납부 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 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해당세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소득세액으로 인정되어 공제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공제액은 공제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이월하여 이월된 연도의 공제한도액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공제한도 = 근로소득 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차량취득세

Q 주재원입니다. 중국에서 차량을 취득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일정한 계산공식에 따라 구입차량 가격의 일정비율에 의해 증치세, 차량취득세, 차량선박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1) 증치세

증치세는 상품 유통단계에서 부가가치에 대해 징수하는 세금이고 13% 세율에 따라 징수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대리점에서 부르는 가격은 증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차량취득세

중국 내에서 차량을 구매, 수입한 자는 그 구입차량 가격의 일정비율에 따라 차량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차량취득세는 1회 징수된다는 점에서 재산세 보다는 행위세에 가깝다 할 것입니다.

차량 취득세의 세율을 10%이고,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차량취득세 잠정조례(车辆购置税暂行条例) 제4조, 제5조).

차량취득세 = (차량판매가격 - 증치세) × 세율

* 일반적으로 자동차 대리점에서 부르는 가격은 증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차량선박세

차량선박세는 매년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고 차량의 배기량과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각 지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내에서 가족간에 무상증여하는 경우

Q 중국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가 있나요? 한국 거주 부모가 중국 거주 자녀에게 (1) 한국 내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과 중국에서 과세되나요? (2) 중국내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과 중국에서 과세되나요?

A 한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있지만 중국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라는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1) 한국 내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중국에서 과세하지 않아도 되고, 한국에서 과세하면 됩니다. 한국에서 과세할 경우 한국 세법에 따라 증여인이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 (2) 중국내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처럼 상속세 및 증여세는 없지만 증여받는 자의 국적을 불구하고 계세(契稅)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국에서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소유권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계세(契稅)를 납부하여야만 부동산권리등기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세(契稅) 세율: 90㎡ 이하 처음 부동산 구매하는 자는 1% 세율에 따라 징수하고, 90㎡-140㎡일 경우 부동산 가격의 1.5% 세율에 따라 징수하며, 140㎡ 이상일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의 3% 세율에 따라 징수하며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기타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증여 시 부동산 소재지에 따라 세금이 발생하므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국 혹은 세무 전문기관에 문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내에서 타인간에 무상증여하는 경우

Q 김모씨는 빚도 갚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기 위해 최모씨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증여하고자 합니다.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유 : 김모씨가 최모씨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증여하더라도 일반 아파트매매에 따라 김모씨는 증치세를, 최모씨는 계세(契稅)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증치세는 5%, 계세는 3%, 개인소득세는 20%, 인지세는 0.05%(보통주택 면제가능)입니다.(2016년 10월 북경시 표준)

단, 김모씨가 위 아파트를 아래 사람에게 증여할 경우, 증치세와 개인소득세가 면세됩니다.

- ①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형제자매에게 증여하는 경우
- ② 양육 또는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자 또는 피부양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 ③ 김모씨의 법정상속인이나 유서상의 승계자 또는 수증자에게 증여할 경우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에서 개인금융상품 매매 등의 영업세 면제정책에 관한 몇 가지 통지(財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个人金融商品买卖等营业税若干免 税政策的 通知)〉 제2조, 〈개인이 무상으로 수증받은 주택과 관련한 개인소 득세 문제에 대한 통지(关于个人无偿受贈房屋有关个人所得税问题的通知)〉 제 1조]

개인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Q 중국에서 개인이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중국에서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6가지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유 : 이러한 세금에는 증치세, 개인소득세, 토지증치세, 취득세, 도시건설유지세 및 교육비부가세, 인지세등이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시 원가치와 합리적인 비용에 대한 증명이 중요합니다. 원가치란 부동산을 구입할 때 실제 구매가격 및 납부한 세금지급 증거, 즉 매매영수증(세금계산서), 세금완납증명 등을 말하며, 합리적인 비용이란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실제 지불한 인테리어 비용, 주택 대출이자, 수수료, 공중비 등을 가리킵니다.

아파트 매매시의 세금(2020년 5월 기준)

| 세목 | 세율 | 세액계산공 | 비고 |
|---------|------------|--------------------------------------------------------|--------------------------------------------------------------|
| 증치세 | 5%~9% | (판매가격-구입가격)×5% (영개증 이전 취득) 판매가격 x 9% (영개증 이후 취득) | 재산권 취득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면세 |
| 개인소득세 | 20% | (판매가격-(1)원가치-(2)합리적인 비용)×20% | 재산권 취득기간 5년 이상이고 1주택인 경우 면세, 원가치 증거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판매가격의 1% 납부 |
| 취득세 | 0%, 1%, 3% | 판매가격×해당 세율 | 지방과 부동산 면적에 따라 세율이 상이 |
| 도시건설유지세 | 1%, 5%, 7% | 증치세액×해당 세율 |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을 경우 도시건설유지세는 없음, 소재지역에 따라 세율이 상이 |
| 교육비부가세 | 3% | 증치세액×3% |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부가세는 없음 |

| | | | |
|-------|---------------------|------------------------------------|------------------------------------------|
| 토지증치세 | 30%,40%, 50%,60% | (판매가격-(1)원가차-(2)합리 적인 비용)×해당 세율 | 개인 보통주택의 경우 면세, 토지가치 증가 비율에 따라 세율이 상이 |
| 인지세 | 0,05% | 판매가격×0,05% | 개인 보통주택의 경우 면세 |

* 북경시 기준이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반드시 관련 영수증(매매영수증, 세금완납증명 등)을 챙겨놓으셔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의 유형 및 구매연수, 그리고 각 지방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Q 북경 왕징에 주택을 갖고 있는 김모씨는 최모씨에게 아파트를 매월 5,000위안에 임대 주고 있습니다. 김씨는 임대료의 37% 이상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면서 최씨에게 그 세금의 일부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반드시 부담해야 하나요?

A 임대료에 따른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임대료로부터 수익을 얻는 임대인이지만 임차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상 임대인은 이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권리가 없습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치세, 도시건설유지세, 건물재산세, 인지세, 개인소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이 자기소유인 부동산을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임차인에게 임대할 경우, 북경일 경우에는 이 모든 세금을 종합하여 종합세율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래표와 같습니다.

개인소유 부동산 임대 관련 종합소득세 세율표(2020년 5월 기준)

| 부동산 용도 | 임대료 범위 | 세율 |
|--------|---------------|------|
| 주택 | 월임대료 10만위안 이하 | 2.5% |
| | 월임대료 10만위안 이상 | 4% |
| 비주택 | 월임대료 10만위안 이하 | 7% |
| | 월임대료 10만위안 이상 | 12% |

중개업체를 거치거나 혹은 재임대일 경우에는 위 세율표를 사용할 수 없고 증치세, 도시건설유지세, 건물재산세, 인지세, 개인소득세 등의 세금에 대하여 정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금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증치세: 5% 징수율에 따라 1.5% 세율로 응납세액을 계산합니다.

$$\text{응납세액} = \text{임대료} \div (1 + 5\%) \times 1.5\%$$

(2) 도시건설유지세 및 교육비부가세: 실제 납부한 증치세의 3%에 따라 징수합니다.

(3) 건물재산세: 주택일 경우에는 4% 세율에 따라 징수하고 비주택일 경우에는 12% 세율에 따라 징수합니다.

(4) 인지세: 개인이 주택을 임대, 임차할 경우 인지세는 면세이고, 비주택일 경우에는 임대료의 0.1%에 따라 징수합니다.

(5) 개인소득세: 법적으로 적용세율은 20%이지만 현재 10%로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각종 부동산수리비용, 세금 등 실제로 부동산 임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소득이 4000위안 이하일 경우 별도로 800위안을 공제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임대소득이 4000위안 이상일 경우 20%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금의 부담은 임대인인 김모씨의 의무이므로 임차인인 최씨는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임차인이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대료에 포함하거나 임대료를 높여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 많으므로 이부분을 분명히 약정하시는 것을 좋을 것입니다.

각종 세금의 세율표 및 납세기한

Q 중국에서 개인소득세 세율표, 기업소득세 세율표, 증치세 세율표, 소비세 세율표, 개인소득세 납세기한, 기업소득세 납세기한, 증치세 납세기한, 소비세납세기한은 어떠한가요?

개인소득세 세율표(1)(2020년 5월 기준)

(종합소득 적용)

| 급수 | 전년도 과세대상소득액(위안) | 세율(%) | 속산공제액 |
|----|-----------------|-------|---------|
| 1 | 36,000 이하 | 3 | 0 |
| 2 | 36,000-144,000 | 10 | 2,520 |
| 3 | 144,000-300,000 | 20 | 16,920 |
| 4 | 300,000-420,000 | 25 | 31,920 |
| 5 | 420,000-660,000 | 30 | 52,920 |
| 6 | 660,000-960,000 | 35 | 85,920 |
| 7 | 960,000 이상 | 45 | 181,920 |

- ★ 종합소득: 임금, 급여 소득, 노무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
- ★ 전년도 과세대상소득액 = 연소득액 - 60,000 - 전문항목 공제 - 기타 법적공제 금액
- ★ 비거주자 개인이 취득한 임금, 급여 소득, 노무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은 본표에 따라 연간소득으로 환산하여 응납세액을 계산합니다.

개인소득세 세율표(2)(2020년 5월 기준)

(경영소득 적용)

| 급수 | 전년도 과세대상소득액(위안) | 세율(%) | 속산공제액 |
|----|-----------------|-------|-------|
| 1 | 30,000 이하 | 5 | 0 |
| 2 | 30,000-90,000 | 10 | 1500 |
| 3 | 90,000-300,000 | 20 | 10500 |
| 4 | 300,000-500,000 | 30 | 40500 |
| 5 | 500,000 이상 | 35 | 65500 |

★전년 과세대상소득액 = 년소득액 - 원가비용 - 손실금액

개체호 경영, 생산소득과 기업단위의 도급경영, 임대차 소득 적용

(2020년 5월 기준)

| 급수 | 전년도 과세대상소득액(위안) | 세율(%) | 속산공제액 |
|----|-----------------|-------|-------|
| 1 | 15,000 이하 | 5 | 0 |
| 2 | 15,000-30,000 | 10 | 750 |
| 3 | 30,000-60,000 | 20 | 3750 |
| 4 | 60,000-100,000 | 30 | 9750 |
| 5 | 100,000 이상 | 35 | 14750 |

기업소득세 세율표(2020년 5월 기준)

| | 적용 세목 | 세율 |
|---|---------------------------------------------------------------------------------------------------------------------------------------------|-----|
| 1 | 기본세율 | 25% |
| 2 | 조건에 부합되는 소형박리기업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과세소득액이 100만위안 이하일 경우 25% 감면비율로 과세소득액을 계산한다. 100만위안 이상 300만 위안 이하일 경우 50% 감면비율로 과세소득액을 계산한다.) | 20% |
| 3 |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벤처기업 | 15% |
| 4 |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 (중국 서비스 외주 시범도시) | 15% |
| 5 | 집적회로의 선풍이 0.25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집적회로 생산기업 | 15% |
| 6 | 투자액이 80억 위안을 초과하는 집적회로 생산기업 | 15% |

| | | |
|----|-----------------------------------------------------------------------------------------------------------------|-----|
| 7 | 서부 지역에 설치한 장려산업 기업 | 15% |
| 8 | 광둥 형진(广东横琴), 복건 핑탄(福建平潭), 심천 첸하이(深圳前海) 등 지역의 장려산업 기업 | 15% |
| 9 | 국가 계획 분포 내의 중점 소프트웨어기업과 집적회로 설계기업 | 10% |
| 10 | 오염방지에 중사하는 제3자 기업(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말까지) | 15% |
| 11 | 비주민기업이 중국 경내에 기구 또는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기구 또는 장소를 설립했으나 기업의 소득이 기구 또는 장소와 실제 관계가 없는 경우, 중국 경내의 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 10% |

증치세 세율표(2020년 5월 기준)

| | 간이과세 | 징수율 |
|-------------------------------------|---------------------------------------------------------------------------------------------------------------------------------------------------------------------------------------------------|----------------------|
| 소규모 납세자 및 간이세금계산방식의 과세를 허용하는 일반 납세자 | 소규모 납세자의 화물판매 또는 가공, 수선 교체용역 제공, 과세 서비스, 무형자산 판매 일반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간이 과세 방법을 적용하거나 또는 간이 과세 방법을 선택하여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특정 과세행위가 발생한 경우, 5%의 징수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3% |
| | 부동산 판매 조건에 부합되는 경영 임대 부동산(토지 사용권) 영개증 전에 취득한 토지사용권의 양도 부동산 개발업체 자체 개발 부동산의 판매, 임대 조건에 부합되는 부동산 용자 임대 차액납세를 선택한 노무파견, 안전보호 서비스 일반납세자가 제공한 인력자원 외주 서비스 | 5% |
| | 개인 임대주택일 경우 5% 징수율에서 감면하여 1.5% 세율로 과세액을 계산 | 임대수익 ÷ (1+5%) × 1.5% |
| | 납세자가 중고품을 판매한 경우 소규모 납세자(기타 개인 포함하지 않음) 및 규정된 상황에 부합되는 일반 납세자가 자신이 사용한 고정자산을 판매할 경우, 3% 징수율에서 감면하여 2% 징수 | 판매가격 ÷ (1+3%) × 2% |
| 일반납세자 | 증치세 항목 | 세율 |
| | 화물 판매 또는 수입(별도 열거한 화물은 제외), 용역 제공 | 13% |
| | 1. 식량 등 농산품, 식용 식물성 기름, 식용 소, 2. 수돗물, 난방, 냉방, 운수, 가스, 석유 액화가스, 천연가스, 디메틸에테르, 메탄가스, 주민용 석탄 제품 3. 도서, 신문, 잡지, 음향 영상제품, 전자 출판물 4.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농업용 비닐막 5.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화물의 판매 또는 수입 | 9% |

| | | | |
|--------------|------------------------------------------------------|---------------------------------------------------------------------|-----|
| 일반납세자 | 농산물 매입세액 공제율 | | |
| | 증치세 일반 납세자가 농산품 구매 시 적용하던 공제율을 기존 10%에서 9%로 인하. | | 9% |
| | 증치세 일반 납세자가 생산용 또는 위탁가공용 농산품 구매 시 공제율을 13%에서 10%로 인하 | | 10% |
| | 영개증 항목 | | 세율 |
| | 교통운송 서비스 | 육로 운송서비스, 수로 운송서비스, 항공 운송서비스 (우주 운송서비스 포함) 및 파이프라인 서비스, 무운송 도구 운송업무 | 9% |
| | 우정 서비스 | 보통 우편 서비스, 특수 우편 서비스, 기타 우편 서비스 | 9% |
| | 전기통신 서비스 | 기초 전신 서비스 | 9% |
| | | 부가가치 전신 서비스 | 6% |
| | 건축 서비스 | 공사 서비스, 설치 서비스, 수선 서비스, 장식 서비스 및 기타 건축 서비스 | 9% |
| | 부동산 판매 | 건축물, 구조물 등 부동산 소유권 양도 | 9% |
| | 금융서비스 | 대출 서비스, 직접 수금 금융서비스, 보험 서비스 및 금융상품 양도 | 6% |
| | 현대서비스 | 연구개발 및 기술 서비스 | 6% |
| | | 정보기술 서비스 | |
| | | 문화 창의 서비스 | |
| | | 물류 보조 서비스 | |
| | | 감정 전문 서비스 | |
| | | 방송 서비스 | |
| | | 상무 보조 서비스 | |
| | | 기타 현대 서비스 | |
| 유형 동산 임대 서비스 | | 13% | |
| 부동산 임대 서비스 | | 9% | |
| 생활서비스 | 문화체육 서비스 | 6% | |
| | 교육의료 서비스 | | |
| | 여행오락 서비스 | | |
| | 요식숙박 서비스 | | |
| | 주민 일상 서비스 | | |
| | 기타 생활 서비스 | | |

| | | | |
|---------|----------------------------------------------------------------------------------------------------------------------------------------------------------|-------------------------------------------------|----|
| 일반납세자 | 무형자산 판매 | 기술, 상표, 저작권, 영업권, 자연자원 및 기타 권익성 무형자산 사용권 또는 소유권 | 6% |
| | | 토지사용권 양도 | 9% |
| 소규모 납세자 | 수출화물, 서비스, 무형자산 공제율 | | 세율 |
| | 납세자 수출 화물(국무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 | 0% |
| | 경내기구와 개인이 국외로 국무원 규정 범위내의 서비스, 무형자산 판매 | | 0% |
| | 화물, 용역 판매, 국제 과세행위가 면제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 | 면세 |
| | 경내의 단위와 개인이 증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서비스 또는 무형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증치세 영세율 적용을 포기하고 면세 또는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증치세 영세율 적용을 포기한 후 36개월 내에 증치세 영세율 적용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 |

소비세 세율표(2020년 5월 기준)

| | 담배 | 생산단계 | 도매단계 |
|---|-------------------------------------|---------------|--------------|
| 1 | 귤련(갑류) | 56%+0,003원/대 | 11%+0,005원/대 |
| | 귤련(을류) | 36%+0,003원/대 | |
| | 시가 | 36% | 없음 |
| | 각연초 | 30% | 없음 |
| 2 | 주류와 알콜 | | |
| | 백주 | 20%+0,5원/500g | |
| | 황주 | 240원/톤 | |
| | 갑류 맥주 | 250원/톤 | |
| | 을류 맥주 | 220원/톤 | |
| | 기타 주류 | 10% | |
| 3 | 고급 화장품 | 15% | |
| 4 | 귀중품 장신구 및 보석 | | |
| | 금은 장신구, 비 금은 장신구, 다이아몬드 및 다이아몬드 장신구 | 5% | |
| | 기타 귀중한 장신구와 보석, 옥장신구 | 10% | |
| 5 | 폭죽, 화염 | 15% | |
| | 석유 완제품 | | |
| | 휘발유(유연) | 1,52원/리터 | |

| | | |
|----|--------------------------------------|----------|
| 6 | 휘발유(무연) | 1,52원/리터 |
| | 중유 | 1,2원/리터 |
| | 항공유 | 1,2원/리터 |
| | 시너 | 1,52원/리터 |
| | 용제유 | 1,52원/리터 |
| | 윤활유 | 1,52원/리터 |
| | 연료유 | 1,2원/리터 |
| 7 | 자동차 타이어 | 3% |
| 8 | 오토바이 | |
| | 실린더 용량이 250ml이하인 경우 | 3% |
| | 실린더 용량이 250ml 이상인 경우 | 10% |
| 9 | 승용차 | |
| | 승용차 실린더 용량, 배기량이 1,0ml, 4,0 ml이상인 경우 | 1~40% |
| | 중형상업용 승용차 | 5% |
| 10 | 골프용품 | 10% |
| 11 | 고급손목시계 | 20% |
| 12 | 유람선 | 10% |
| 13 | 나무로 만든 1회용 젓가락 | 5% |
| 14 | 나무마루 | 5% |
| 15 | 배터리 | 4% |

개인소득세 납세기한(2020년 5월 기준)

| 방법 | 근거 | 납세기한 | 납세지 | 징수기관 |
|------------------------------------------------------------|-------------------------------------------------------------------------------------------------------------------------------------|--------------------------------------------------------------------------------------|--------------------------------------------------------------------------------------------|----------------|
| 자진 신고 납세 | <개인소득세법(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제12,13조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국가세무총국 개인소득세 자진납세신고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国家税务总局关于个人所得税自行纳税申报有关问题的公告) | ★ 거주민 개인의 종합소득(居民个人综合所得): 매달 혹은 매번 예비납부하고 소득을 취득한 다음해 3월1일~6월 30일 내에 결산. | 1) 임직·고용업체소재지의 관할세무기관 2) 두 곳 이상인 경우 한 곳을 선택 3) 고용업체 없으면 납세자의 호적소재지 또는 경상 거주지 관할 세무기관 | 지방 세무 기관 |
| | | ★ 거주민 개인의 해외소득: 소득 발생 이듬해 3월 1일~6월 30일 사이 | 1) 중국 내 임직·고용업체 소재지 관할 세무기관 2) 호적 소재지 또는 중국 내 경상거주지 관할 세무기관. | |
| | | ★ 비거주민 개인의 임금·급여소득, 노무보수, 원고료, 특허권 사용료 소득: 소득 발생 다음해 6월 30일 까지, 이 기한 전에 출국할 경우 출국전까지 | 원천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세무기관 | |
| | | ★ 경영소득: 월 혹은 분기종료 후 15일내에 세금 예납 및 소득발생 다음해 3월 31일 전까지 정산 처리. | 1) 경영관리 소재지 세무 기관에 세금 신고, 납부 2) 두 곳 이상으로부터 경영소득 취득한 경우 그 중 한 곳을 선택 | |
| | | ★ 중국 경내의 두 곳 이상으로부터 임금, 급여소득을 취득하는 비거주자 개인의 납세신고: 소득 취득 다음달 15일까지 | 선택한 임직·고용 업체 소재지 관할세무기관 | |
| ★ 이자,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재산임대, 재산양도 및 우발소득: 소득 발생 이듬해 6월 30일 까지 | | | | |
| 원천 징수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제14조 | ★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 달 15일 이내 | 원천징수 의무자 소재지 | |

기업소득세 납세기한(2020년 5월 기준)

| | 납세기한 | 납세지 | 징수기관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예정): 매월 또는 매 분기 종료 일로부터 15일 이내 ★ 일반(결산): 납세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 ★ 특수: 기업이 사업연도 중에 경영활동 등 종결: 실제 경영 종결일로부터 기산하여 60일 이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기업: 기업등기등록지 ★ 비거주기업: 기업주소 소재지 | 국가세무기관 |
| 근거법령 | 기업소득세법 제54조 제55조,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 기업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 | |

증치세 납세기한(2020년 5월 기준)

| | 납세기한 | 납세지 | 징수기관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세무기관이 납부세액의 다소에 따라 1일, 3일, 5일, 10일, 15일로 정한 경우: 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예납하고 다음달 15일내에 신고 납부 ★ 1개월 혹은 1분기로 정한 경우: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납부 ★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세관으로부터 세액납부증서를 발급 받은 후 7일 이내 납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판매 활동이 발생한 곳 | 국가세무기관 (수입재화는 세관) |
| 근거법령 | 증치세잠정시행조례(增値稅暫行條例) 제23조 | 증치세잠정시행조례 제22조 | 증치세잠정시행조례 제20조 |

소비세 납세기한(2020년 5월 기준)

| | 납세기한 | 납세지 | 징수기관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기간이 1일, 3일, 5일, 10일, 15일인 경우: 과세기간 만료일부터 5일 이내 예비납부하고 다음달 15일 내에 신고납부 ★ 과세기간이 1개월, 1분기인 경우: 과세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 신고납부 ★ 과세소비를 수입한 경우 세관에게 세액납부 증서를 받은날부터 15일 이내 납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 자가생산, 자가사용: 납세자의 사업장 소재지 ★ 위탁가공: 수탁자의 사업장 소재지 ★ 수입한 과세소비품: 수입자 또는 대리인의 수입신고지 ★ 자가생산 과세소비품을 다른 현(시)에 판매 또는 위탁판매: 납세자의 사업장 소재지 ★ 본점과 지점이 동일한 현(시)에 있지 않을 경우: 각자의 소재지 | 국가 세무기관 (수입재화는 세관) |
| 근거법령 | 소비세잠정시행조례(中华人民共和国消费税暂行条例) 제14조 | 소비세잠정시행조례 실시세칙(中华人民共和国消费税暂行条例实施细则) 제24조 | 소비세잠정시행조례 제12조 |

Section 3

무역과 관세

이럴땐 이렇게



무역거래에서 Alipay(支付宝) 결제방식

Q 저희 회사는 중국에 수출을 진행 중입니다만 현지 법인이나 연락사무소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와 상담 중인 중국업체 역시 수입자격이 없어 Alipay라는 결제방식을 제안하고 있는데 괜찮은 것인지 걱정됩니다.

A 괜찮습니다. 국제Alipay(支付宝)는 신용장 개설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결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중 기업간 무역결제는 대부분 안전한 신용장 거래(L/C)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입하고자 하는 중국업체가 수입자격이 없기 때문에 신용장 개설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신용장 개설 대신 중국 내국법인들 사이에 사용되는 Alipay라는 결제방식을 제안하는 중국업체도 종종 있습니다. 국제Alipay 결제는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에스크로우(Es-crow) 방식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Alipay라는 결제방식은 무역거래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또 귀사가 중국에 법인이나 연락사무소도 없기 때문에 해당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현재 중국기업들은 상당수가 수입자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자격이 있는 회사를 통해 무역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업체에 신용장 개설을 요청하시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무역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신용장을 개설해주는 회사는 실거래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결제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거래 당사자인 상대방 회사의 신용도와 지불능력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입금지 품목

Q 저희 회사는 한국에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고 다양한 물품을 중국으로 판매, 수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쉽지 않은데요, 어떻게 하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중국은 2001년 <수입금지 물품 목록(禁止进口货物目录(第一批))>을 처음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24종의 수입금지 물품 목록과 49종의 수출금지 물품 목록을 제정,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출입금지 물품목록에 대한 정보는 중국세관총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v.cn>) 혹은 중국 상무부 대외무역국 홈페이지(<http://wms.mofcom.gov.cn>)에 들어간 후 검색창(搜索)에 “수입금지 물품 목록(禁止进口货物目录)”을 입력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중국어가 어려우신 분들은 KOTRA 북경사무소(8610-6410-6162)나 무역협회 중국사무소(8610-6505-2672)를 통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시거나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 및 수출 이전에 정확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관신고서의 정정에 필요한 비용 및 시간

Q 저희 회사는 얼마전 중국으로 수출한 물품의 단가가 송품장(인보이스)과 포장명세서(팩킹리스트)상에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중국 업체측에 수입정정을 요구했는데 비용도 적지 않게 들며 절차도 복잡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수입정정시 소요되는 비용과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중국에서 수입정정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수출입화물세관신고서 정정 및 취소 관리방법 (进出口货物报关单修改和撤销管理办法)>에 따라 처리되게 됩니다. 동 방법 제7조에서는 수출입 정정시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것이 필요합니다.

- (1) 수출입 실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송품장, 선적증명서 또는 선적리스트 등 관련 증빙서류와 증명문서
- (2) 상세한 상황설명서 및 관련 증명서류

세관은 통관신청인이 세관의 감독관리를 회피하는 행위가 없을 경우, 통관신고서를 수정하거나 취소해 줄수 있습니다. 만약 통관신고서를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제때에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야 되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수입정정시 소요되는 비용은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제대로 수입정정을 하지 않으면 관세청의 수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공무역

Q 중국 청도시에 위치한 한 가공무역기업은 수입원재료로 가공수출입을 하고 있는데, 물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보세 원료와 비보세 원료를 서로 교체하여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요?

A 〈세관 가공무역 물품관리방법(中华人民共和国海关加工贸易货物监管办法)〉 제25조에 의하면, '가공무역 화물은 전용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단, 세관의 기준을 거쳐, 기업은 보세원료간 및 보세와 비보세원료간 서로 교체하여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며, 서로 교체된 원료는 동일한 기업의 소유이고 동일품종, 동일규격, 동일수량, 비영리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만약 기업이 공예품 가공의 수요로 비보세원료를 사용해야 될 경우, 가공무역기업은 반드시 사전에 세관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보세 원료의 비율, 품종, 규격, 사이즈, 수량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세관에서는 추후 수출완제품 총 소모량 중에서 그만큼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공무역 수책(징수유예대장)을 만들 때 위와 같이 성실히 신고하시어 세관의 현장심사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의 환급

Q 중국에서 수출관세를 납부한 화물이 한국측 수하인 문제로 선하수출이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관세의 환급이란 관세 납세자가 세관이 산정한 세액에 따라 관세를 납부한 후 어떠한 원인으로 세관의 실제 징수액이 징수하여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납세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관은 과다 징수한 세액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환급 해 주어야 합니다. 납세자는 세금 납부일로부터 1년 내에 세관에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세관법(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제63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부합될 경우, 납세자는 세금 납부일로부터 1년 내에 세관에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환급신청 시, 서면형식으로 세관에 상황 설명을 하고 납세증명서 원본 및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1) 수입관세를 납부한 화물이 품질 혹은 규격상 문제로 원상태로 반품되어 다시 수출된 경우
- (2) 수출관세를 납부한 화물이 품질 혹은 규격상 문제로 원상태로 반품되어 다시 수입되고 동시에 수출로 인한 국내부분의 관련 세금을 다시 납부한 경우
- (3) 수출관세를 납부한 화물이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선하수출이 안되어 수출 철 회신고를 한 경우

세관은 관세 환급 신청을 수리(受理)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상황 조사 완료 후, 납세자에게 환급수속 처리를 진행할 것을 통지합니다. 납세자는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환급수속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출입관세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关税条例) 제50조).

원재료 소모에 대한 관리

Q 당사에서 여성용 패딩조끼를 생산하려고 하는데, 원재료 치수 등 원재료 소모량 기준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생겨 원료 소모량 기준이 없는 경우, 그 기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A 단위소모량(单耗)란 기업이 정상적으로 가공하는 조건하에서 단위완제품(单位成品)을 가공하는데 소모되는 원료량을 가리킵니다.

단위소모기준(单耗标准)이란 통상적 혹은 중복적으로 사용되는 가공무역 단위완제품에서 소모되는 원료량을 가리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가공무역 소모량 관리 방법(中华人民共和国海关加工贸易单耗管理办法)〉(총서령155호) 제4조에 의하면 가공무역 기업은 가공무역 수책을 만드는 단계에서 세관에 원료소모량(单耗)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모량 관리는 사실대로 신고하고(如实申报) 사실대로 정산처리(核销)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아직 단위소모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완제품에 대해서는, 가공무역 기업은 사실대로 단위소모량을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세관은 가공무역기업의 실제 단위소모량에 따라 정산처리(核销)를 합니다.

위 사례처럼 세관에서 해당 완제품에 대한 단위소모기준을 공표하지 않은 경우, 가공무역 기업은 세관에 사실대로 소모량 도면, 실제 소모량 및 소모량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여 소모량 정산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역분쟁 관련 한국정부의 상담지원

Q 저희 회사는 중국업체로부터 샘플을 받아본 후 품질이 괜찮아서 선금 5만불을 보내고 컨테이너 1개 분량을 수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입한 물품을 보니 샘플과 전혀 다른 불량품이었습니다. 중국업체에 강력히 항의했지만 '미안하다'는 얘기만 할 뿐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해결방법이 없나요?

A 중국에서는 기업간 무역분쟁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부기관의 관여 없이 쌍방이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해결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기업간 무역분쟁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상의 분쟁처리 관련 조항에 중재위원회를 중재기구로 선정한 경우, 해당 기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만일 소송을 통해 해결하도록 예정되어 있다면 계약서상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건접수는 당사자가 직접해야 하므로 중국어가 가능한 법률사무소나 변호사와 상의하신 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중국어가 어려우신 분들은 KOTRA나 주중한국대사관 법률지원센터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주중한국대사관 법률지원센터에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http://overseas.mofa.go.kr/cn-ko/wpge/m_1266/contents.do)
(전화: 86-10-8531-0727)

또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공증된 서류에 대하여 인증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총영사관에서 영사인증 업무를 도와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우편 택배에 대한 처리

Q 중국 허북성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A는 미국e-bay에서 가격이 300달러인 신형ipad를 구입하였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 소포로 부친 물품에 대해 중국세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A 일반화물(상업화물)로 인정되어 통관절차를 거쳐야 되며 수입세 13%를 납부해야 됩니다.

해외(미국)에서 개인물품 우편택배의 경우, 매회 물품가격이 인민폐1,000 위안을 초과할 경우, 반송을 하거나 혹은 물품규정에 따라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관총서 2010년 제43호 공고)

중국의 경우 특이하게 물품별로 지정가격제(세금징수용)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율도 다릅니다. 만약 그 가격이 1,000위안이 넘는다면 반송하거나 일반화물(상업화물)로 통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2019년 <중화인민공화국 반입물품 분류표(中华人民共和国进境物品归类表)>를 조정할 것에 관한 공고에 의하면 노트북 컴퓨터의 수입세율은 13%입니다.

감면설비에 대한 세관신고처리

Q 저희 본사는 중국 청도에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이며 자회사는 천진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천진 자회사의 생산수요를 위해 본사는 자신의 명의로 면세설비를 한국에서 수입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면세설비의 실제 사용자는 천진 자회사일 경우, 본사는 어느 세관에 면세수속을 신청해야 되나요?

A 자회사 소재지인 천진 세관에 면세수속을 신청해야 됩니다.

〈세관 수출입물품에 대한 감면세 관리방법(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减免税管理办法)〉 제3조에 따라, 수출입화물의 감면신청인(이하 감면신청인)은 자신의 소재지 세관에서 감면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와 같이 특수한 경우 예외를 두기도 합니다.

투자대상 소재지 세관과 감면신청인 소재지 세관이 서로 다른 경우 감면신청인은 투자대상 소재지 세관에서 감면신청을 하고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투자대상 소재지가 여러곳의 세관에 걸쳐 있는 경우 감면신청인은 그중의 임의 소재지 세관 또는 해당 세관의 상급세관에 감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상급세관은 관련 세관을 지정하여 감면신청을 처리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역외 전자상거래 업무에 관하여

Q 역외 전자상거래기업은 세관에 등기신청을 해야 되나요? 보세 전자상거래의 적용 범위는 어떠한가요?

A 세관총서 2018년 194호 공고(역외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입상품에 대한 감독관리 공고(关于跨境电子商务零售进出口商品有关监管事宜的公告))에 의하면, 전자상거래기업이 역외 전자상거래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기업은 통관기업의 관련 등록관리규정에 따라 기업 소재지 세관에 정보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세관전상망의 전자상무 교역플랫폼상에서 세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규정에 따라 세관플랫폼을 통해 교역, 지불, 보관 및 물류 관련 데이터를 전송해야 합니다.

또한 세관은 역외 전자상거래업무를 발전시키고 기업통관의 편리, 세관관리의 규범화, 세관통계를 실시하기 위하여 세관총서2014년 제57호 공고를 공포하고 세관감독관리“1210”(“보세국제무역 전자상거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세관감독관리“1210”은 경내 개인 혹은 전자상거래기업이 세관의 비준을 받고 역외 전자상거래를 통해 세관의 특수감독관리구역 혹은 보세감독관리구역 내에서 수출입하는 상품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보세상태의 수입은 수입 시범구(7개 도시)의 특수감독관리구역과 보세물류센터(B형: 다자서비스용 보세창고)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관총서는 2016년 제57호 공고를 공포하고 세관감독관리“1239”(보세국제무역 전자상거래A)를 추가 실시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업무를 더욱 규범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입기업의 세관 등록증서의 기간

Q 우리 회사는 해외 수출입기업으로서 상해 세관에 등록한 기간이 2020년10월 15일자로 만료됩니다. 사전에 문의한 바, 지금은 갱신이 필요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A 세관총서령 2018년 제221호 규정에 의하면,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신고기업 등록증서는 장기간 유효합니다. 귀사는 원래의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등록증서>를 등록지 세관에 가서 새로운 증서로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5년부터는 매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 세관에 <신고기업 등록정보 연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는 상해 세관 홈페이지 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신고기업 등록관리규정(中华人民共和国海关报关单位注册登记管理规定)>(세관 총서령 2018년 2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미 제출시 보완절차

Q 저희는 한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중국 청도의 한 무역회사인데 통관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어떤 보완절차가 있나요?

A 세관에 한국 원산지자격을 구비하고 있다는 보충신고를 제출하고 일정한 보증금을 지급한 후 먼저 통관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15년12월20일에 실시된 세관총서의 [(한-중 FTA)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 大韩民国政府自由贸易协定项下进出口货物原产地管理办法)]에 의하면, 한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수령자 또는 대리인이 통관신고를 할 때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세금납부전 수입물품이 한국 원산지자격을 구비하고 있다는 보충신고를 세관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와 함께 세관에 보충신고를 제기하고 해당 관세금액에 대한 보증금을 지급할 경우, 세관은 규정에 따라 통관수속을 해준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기절차에 따라 먼저 통관수속을 진행한 후, 당사자는 반드시 해당 보증금 납부 이후 6개월 이내 혹은 세관의 비준을 거쳐 연장된 보증기한 내에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중국에서 한국에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없이도, 원산지 증명서 전자데이터의 제출도 가능하므로 수출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품목분류 및 관세소급 추정

Q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해 기간 낮은 세율이었던 상품이 고세율로 변경되었으나 중국 세관의 소홀로 인해 수입관세를 적게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수입물품은 이미 통관절차를 마치고 수령한 지가 6개월을 넘었는데 중국세관에서 고세율로 소급추징할 수 있나요? 만약 저희가 이에 불복시 어떤 대응조치가 있는지요?

A 세관에서 고세율로 소급추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수출입관세조례(中华人民共和国关税条例)> 제51조에 의하면, 세관에서 관세를 적게 납부하거나 누락한 상황을 발견할 경우, 관세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날 혹은 물품의 통행을 허가한 날로부터 1년내에 세금 납부의무자에게 소급추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관세를 적게 납부하거나 누락한 경우에는 세관에서 관세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날 혹은 물품의 통행을 허가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세금 납부의무자에게 소급추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품목분류 이슈문제로 관할 세관에서 고세율로 소급추징하는 요구에 불복할 경우, 상급세관에 이의(复议)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다른 물품을 제출하여 품목분류 사전회시를 영땡한 것으로 받았다면 밀수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로열티에 대한 가격심사

Q 최근 중국세관에서 사후심사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관신고서에도 로열티 등 별도 신고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로열티에 대한 중국세관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1. 로열티에 대한 관세는 일반적으로 몇 퍼센트 적용되니까? 아니면 수입 CKD(반 조립제품)의 평균 관세율을 적용하는지? 2. 로열티의 관세 금액은 수입시 CKD에 지급하였던 관세 금액에서 제외 하는 것이 맞습니까?

A <세관 수출입화물 완세가격 심사방법(中华人民共和国海关审定进出口货物完税价格办法)> 제6조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실거래가격(신고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상황을 이해하고 납세의무자와 협상을 거친 후 아래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물품 가격을 확정합니다. 1) 동종동질 가격, 2) 유사물품 가격, 3) 시가역산 가격, 4) 조정 가격, 5)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한 가격입니다.

또한 동법 제7조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실거래가격은 공급자가 중국 경내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을 판매할 경우, 일정한 조정을 거쳐 수입자가 공급자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되거나 실제 지급한 가격(직접비용)이 포함되며 특허 사용료(로열티)와 같은 간접비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로열티가 수입화물과 관련이 없거나 중국내에서 판매되는 화물과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로열티 전체를 과세한다고 생각치 마시고, 법리적, 논리적으로 충분히 세관과 협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로열티는 수입물품에 체화되므로 과세가격이 결정되면 그 수입화물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위 사례처럼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로열티의 관세금액은 수입시 CKD에 지급하였던 관세금액에서 당연히 제외됩니다(전체 합산하여 공제). 그리고 로열티에 대한 비율(수입가격에 합산)을 사전에 중국세관과 합의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면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처벌

Q '연구목적, 연구개발용'으로 한국에서 수출 신고하고, 중국에서 '연구목적, 연구개발용'으로 수입 신고하여 수입한 물품을 다른 용도(판매 등)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A 연구개발용 세금 감면물품을 감독기간 내에 세관의 허가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관세추징, 벌금부과, 위법소득액 몰수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 수출입물품에 대한 감면세관리 방법(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减免税管理办法)〉 제30조에 의하면, 세관 감독기간 내에 감면물품에 대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 주관 세관에 신청을 제기하고 세관의 비준 하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기간동안의 세금을 보충 납부해야 되며, 그 기간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상응한 세금담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상기 규정을 위반하여 주관 세관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물품 가격의 5%이상 30%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관적으로 고의성이 있을 경우, 밀수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중국세관의 행정처벌 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海关行政处罚实施条例)〉 제18조.

수출입기업의 세관신용제도

Q 청도지역 한국업체(제조업) 일부가 중간에 철수 하면서 중국 세관측에서 한국기업에 대한 신용을 낮게 평가하여 저희 한국기업은 고급인증기업(高级认证企业)에서 일반인증기업(一般认证企业)으로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출입무역통관업무에서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요구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면 신용도를 높일 수 있나요?

A 기업은 세관에 신용도의 제고 신청을 제기하여 기업의 신용기준이 <세관기업인증기준(海关认证企业标准)>에 따른 고급인증기업기준에 부합될 경우, 고급인증기업으로 신용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중국 <세관 기업신용 관리방법(中华人民共和国海关企业信用管理办法)> 제3조에 의하면, 세관은 기업의 신용상황에 근거하여 기업을 인정기업, 일반신용기업, 신용불량기업으로 분류합니다. 인정기업은 또 고급인증기업과 일반인증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용도가 제일 높은 기업은 고급인증기업이고, 그 다음은 일반인증기업, 그리고 일반신용기업, 신용불량기업이 되겠습니다.

만약 한 수출입무역기업이 신용이 높아 고급인증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아래와 같은 관리조치를 적용하게 됩니다. (동법 제24조)

- (1) 수출입 물품에 대한 검사율은 일반인증기업의 20% 이하
- (2) 세관에 신청하여 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음
- (3) 기업에 대한 조사, 검사율 감소
- (4) 수출물품이 세관 감독관리구역에 도착하기전, 세관에 통관신고를 할 수 있음
- (5) 세관은 기업에게 협조 인원을 배치해 줌
- (6) AEO상호인정 국가 및 지역 세관의 통관편리조치

- (7) 국가 관련부문에서 실시하는 신용준수연합격려조치(守信联合激励措施)
- (8) 불가항력으로 국제무역이 중단되어 다시 회복한 후 우선적으로 통관할 수 있음
- (9) 기타 세관총서에서 규정한 기타 관리조치

이처럼 중국세관에서 보증금 예치를 요구하는 것은 한국기업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아니고, 기업신용등급에 따른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고급인정기업은 보증금이 필요없으나 일반인정기업의 경우는 보증금이 필요한 것 입니다.

또한 고급인정기업으로 다시 평가를 받으려면, 기업은 일반인정기업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 후 다시 세관에 기업신용도 평가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은 <세관 기업인정기준(海关认证企业标准)>에 따른 고급인정기업 기준에 따라 고급인정기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세관은 상기 <세관 기업인정기준(海关认证企业标准)>에 규정된, 기업의 세관업무교육기준, 수출입업무기준, 품질관리기준, 정보관리기준, 안전관리기준 등 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고급인정기업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동 “세관 기업인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품목분류 규정

Q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규정은 어떠한가요?

A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란, 품목분류 목차의 체계화에 관련 수출입 품목 분류 규정 또는 세관 총서에서 발표한 품목분류에 대한 행정결정 및 규정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대한 물품번호(商品編碼)를 확정하는 활동을 가리킵니다. 한국의 경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10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중국의 경우에는 8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6단위까지는 일반적으로 세계관세기구(WCO)회원가입국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기업은 세관의 요구에 따라 사실대로 정확하게 수출입물품에 대한 상품명칭, 규격 등을 신고해야 되며,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거쳐 상응한 물품번호를 확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관은 수출입 기업에서 신고한 물품번호가 부정확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품목분류 규정에 따라 다시 확정해야 하며, 수출입기업에 통관서류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통지합니다.

만약 기업이 세관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심사완료 전에 우선 통관해 줄 것을 원할 경우, 보증금 납부 후 통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관에 등록된 수출입기업은 실제 물품 수출입 45일 전에 직속 세관에 신청하여 수출입 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 먼저 품목분류를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사전회시(商品預归类)라고 약함>

또한 직속세관은 심사를 거쳐 품목분류 관련 규정 또는 세관의 행정결정에 해당될 경우, 품목분류사전회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내에 <세관 품목분류사전회시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증치세 수출환급

Q 중국에서 증치세 환급을 받으려 합니다. 관련 법령은 어떠한가요?

A 수출재화에 증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국제시장의 경쟁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증치세 환급제도입니다. 동 제도는 한국의 수출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와 유사한 제도입니다.

중국은 증치세 징수관리 수준은 낮으나 비교적 많은 조세우대정책을 펼쳤고, 이로 인하여 탈세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2012년에 수출에 대한 증치세 환급에 관한 새로운 근거법령(수출에 관한 화물·노무 증치세와 소비세 정책 통지(关于出口货物劳务增值税和消费税政策的通知))을 마련하였습니다.

통지에 구체적으로 증치세 환급제도 그리고 수출물품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상황 등이 상세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환급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한내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지 못하면 수출환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기의 법령 발표 이후, 2015년에 [(국무원 비행정허가승인 사항을 취소할 것에 관한 결정(国务院关于取消非行政许可审批事项的决定))]을 발표하여 비행정절차를 취소하고 일부는 정부의 내부승인 절차로 개선하였기 때문에 구체적 환급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세무전문가 등과 충분한 사전에 협의를 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중국 내 의료기기 수입, 판매

Q 중국에서 외국의 의료기기를 수입, 판매하려고 하는데 3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A 제품에 따라 판매허가 기간과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중국에서 판매하려면 의료기기가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등록된 후 등록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등록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투입되지만 이미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등록돼 있는 제품일 경우에는 추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중국에서는 의료기기를 제품의 성능에 따라 1, 2, 3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제1류의 의료기기란, 수술용 칼과 같은 독립적인 기기를 말하며, 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제품등록만 돼있으면 바로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2류의 의료기기란, 일회용 채혈침 등 인체에 직접 접촉하는 기기를 말하며, 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동일한 제품이 등록돼 있어야 하고 또 수입제품에 대한 의료기기 비안등을 해야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합니다.

제3류의 의료기기란, 인체에 삽입하는 심장박동기 등 기기를 말하며, 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동일한 제품이 등록돼 있어야 하고 또 수입제품에 대한 의료기기경영허가증을 별도로 신청해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의료기기 경영허가증을 취득하려면 최소 고정 경영장소와 창고가 있어야 하고 창고의 면적, 환경 등은 제품에 따라 모두 다르므로 신청 지역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고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술 수출 절차

Q 한국 본사로부터 중국으로 기술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A 기술을 중국에 수출하려면 우선 수출하려고 하는 기술이 <중화인민공화국 대 무역법> 제 16조의 규정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 기술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한 기술의 경우,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을 제한하는 기술을 수입할 경우에는 기술수입자는 마땅히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문에 기술 수입 신청을 해야 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 기술 수입 신청자는 <기술수입 허가 의향서>를 취득하기 전에 수입하면 안되고, 반드시 취득 후에 기술수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금지, 제한 항목의 경우, < 중화인민공화국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자유 수입 항목에 속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 수입 계약 등기관리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 수입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 기술수출입 등기를 해야 수입자가 세무국에 완세증명서 신청을 할 수 있고, 기술수입 대금을 외국으로 송금 시 은행에 세금완납증명서와 기술 수출입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수입자는 수출자를 대신하여 중국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만 송금할 수 있고, 수출자는 원천징수 영수증(세금계산서) 증명서류를 갖고 외국에서 소득세 납부 시 공제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Section 4

지식재산권

이럴땐 이렇게

도메인 네임 및 상표권의 분쟁 해결방법

Q A회사는 B회사가 자사의 상표를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A 상표 권리인이 타인의 도메인 네임이 본인의 상표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네임 분쟁해결 기관(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도메인 네임 분쟁해결 센터(<http://dndrc.cietac.org/>))에 도메인 네임을 신고합니다.

이 경우, B회사의 도메인 네임 등록시간은 만 3년 미만이어야 하며, 신고자가 지지를 얻으려면 아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국가 최상위 도메인 네임 분쟁해결방법(国家顶级域名争议解决办法)> 제8조]

- (1) 신고된 도메인 네임과 신고인이 민사권익을 향유하는 명칭 또는 로고가 동일하거나 또는 충분히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유사성이 있는 경우
- (2) 신고된 도메인 네임 소유인이 도메인 네임 혹은 그의 주요 부분에 대해 합법적인 권익을 향유하지 않는 경우
- (3) 신고된 도메인 네임 소유인이 도메인 네임의 등록 혹은 사용에 대해 악의적인 경우

여기서 “악의적”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동법 제9조]

- ① 도메인 네임 등록 또는 양수 목적이 민사권익 소유인으로서의 신고인 혹은 그의 경쟁자에게 동 도메인 네임을 매각하거나 대여, 또는 다른 방식으로 양도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경우
- ② 타인이 합법적인 권익을 향유하는 명칭 혹은 로고를 본인의 도메인 네임으로 수 차례 등록하여 타인이 도메인 네임의 형식으로 인터넷에서 그가 합법적인 권익을 향유하는 명칭 혹은 로고를 사용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경우

③ 도메인 네임을 등록 혹은 양수하는 목적이 신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신고인의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파괴하거나 혹은 신고인과의 구별을 분간 못하게 하여 대중을 호도하려는 경우

④ 기타 악의적인 상황

한편,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쟁해결이 안될 경우 법원에 도메인 네임 권리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세관(해관) 상표등록

Q 모방제품의 수입을 막으려고 상표 세관(해관)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등록상표의 권리인은 세관(해관)총서에 지식재산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내륙지역 이외의 권리인은 반드시 중국 경내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해외 권리인이 중국 경내에 설립한 사무기관 등)에 의뢰하여 세관(해관)총서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지식재산권 세관(해관)보호 시스템 사이트: <http://202.127.48.148/>를 통해 신청을 합니다. 등록 신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하기전에 우선 시스템 사용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시스템 사용자는 상표 권리인의 명의로 등록을 해야 하며, 사용자 정보를 작성하여 세관(해관)총서가 심사한 후 통과되면 사용자 권한을 취득합니다.
 - 2)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 3) 심사 결과를 받습니다. 세관(해관)총서는 신청인의 등록신청을 접수한 후 30 영업일 내에 비준(승인)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등록 비준이 되면 시스템에서 전자메일로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 4) 등록비용을 납부하고, 시스템에 지불 정보를 입력합니다. 등록비용은 800위안/건이며, 입금시 반드시 시스템 사용자 아이디를 비교해야 합니다. 참고로, 세관(해관)총서는 2015년 11월 1일부터 지식재산권 등록비용의 수취를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 5) 등록 효력발생
- 이와 같은 절차를 마치면 등록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시회 참가자의 지재권 보호

Q A는 모 전시회에 참가하였다가 같은 전시회 참가자인 B회사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을 전시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상표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를 받은 경우 상표권자는 전시회 지식재산권 신고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직접 시장감독관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1) 권리인이 신고기관에 신고를 할 경우 아래의 신고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① 합법적이고 유효한 지식재산권 소유권 관련 증명: 상표분쟁일 경우 신고인이 도장을 날인하여 확인한 상표등록 증명문서, 상표권리인의 신분증명 등
 - ② 권리침해 당사자의 기본정보
 - ③ 권리침해의 이유와 증거
 - ④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고할 경우, 위임장 필요

신고자료가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전시회 지식재산권 신고기관은 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전시회 지식재산권 보호방법(展会知识产权保护办法)〉 제8조, 제9조]

또한 일반적으로 전시회는 개최기간이 짧으므로 신고서류가 부족하면 당장 보충하기 어렵기에 참가기업은 사전에 신고서류를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직접 시장감독관리기관에 신고를 하려는 경우, 향후 행정기관 조사 및 관련 민사소송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시부스 및 권리침해 상표를 부착한 홍보책자와 샘플 등 권리침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멸실 가능한 정보와 자료는 공증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으로 先등록한 상표에 대한 대응방안

Q 저희 상표가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선등록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우선, 귀사의 상표를 무단 선등록한 기업이 어떤 업체인지 분석해보시기 바랍니다.

1. 악의적인 상표권 매매의 목적이 있는 경우

귀사의 상표를 선등록 한 기업이 타 기업의 상표를 매매할 목적으로만 다량으로 선등록 하여 이익을 취하려고 한 경우라면 상표법 제4조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인 상표등록은 그 출원을 거절한다.'는 규정에 위반되므로 상표법 제44조에 의거 등록된 상표의 무효선고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관련하여 악의적 상표등록임을 알면서 상표등록을 대행해준 상표대행 기구도 상표법 위반으로 시장감독관리기관에 의해 경위에 근거하여 경고, 벌금부과 등 행정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표법 제68조)

관련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공동대응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응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http://www.koipa.re.kr/>) 지식재산권분쟁지원 협의체 지원사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악의적인 상표권 매매의 목적이 없는 경우

귀사의 상표를 선등록한 기업이 분석결과, 다른 기업의 상표를 매매할 목적으로만 다량으로 선등록하는 기업이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대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1) 귀사의 상표가 중국내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보유한 상표라면, 상표법 제32조 '상표등록 출원은 타인의 선행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고, 부당한 수단으로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선점할 수 없다'에

근거하여 선 등록 상표에 대해 중국 상표평심위원회에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내에 무효선고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선행권리' 와 '일정한 영향력' 은 아래와 같은 것을 의미 합니다.

* '선행권리' 란

- ① 상표등록 출원일 전에 중국에서 이미 등록된 디자인
- ② 상표등록 출원일 전에 이미 발표된 작품의 저작권
- ③ 상표등록 출원일 전에 중국에서 이미 등록된 상호 혹은 일정한 인지도가 있는 상호

* '일정한 영향력' 이란

- ① 반드시 중국 경내에서 이미 사용이 된 상표 (한국에서 사용된 상표는 포함 안 됨)
- ② 중국 경내에서 일정한 인지도 및 지명도가 있는 상표(한국에서의 지명도, 인지도는 포함 안됨)
- (2) 3년 불사용 취소심판 방안: 중국에서 3년동안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해 누구든지 '3년 불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협상하여 상표를 양도 받는 방안: 상표 소유권자와 협상하여 상표를 양도를 받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거액의 양도 금액을 제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표의 유효기간

Q 상표에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중국 상표법 제39조에 따르면 상표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등록 비준일로부터 계산합니다.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상표 등록자는 기간 만료 12개월 내에 규정에 따라 갱신 수속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수속을 하지 못한 경우, 6개월의 추가 기간 내에 갱신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회 갱신 등록한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전회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계산합니다. 만약 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갱신 수속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등록상표는 말소됩니다. (동법 제40조)

상표의 갱신 비용은 500위안이며, 대행기구에 위임할 경우 대행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상표등록 전에 전시된 상표의 우선권

Q 한국의 A기업은 중국진출을 목표로 중국 전시회에 참가하여 신제품을 공개하였습니다. 몇달 후 신제품에 사용하였던 상표를 중국 상표국에 상표출원을 하려고 하는데, 전시회에서 공개된 터라 타인이 먼저 출원을 했을가봐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A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되는지 보아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26조에 따르면, 중국정부가 주최하거나 또는 중국정부가 승인한 국제전람회전시회에서 전시한 상품에 처음으로 사용된 상표는 전시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해당 상표의 출원인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이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향유하려면 아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① 반드시 중국정부가 주최하거나 중국정부에서 승인하는 국제전시회에서 전시된 상품에 처음으로 사용된 상표여야 하고
- ② 전시회에서 전시된 지 6개월 내에 상표출원을 해야 하며
- ③ 상표출원 시 서면형식으로 우선권을 신청해야 하고, 3개월 내에 전시회의 명칭, 전시제품에 해당 상표를 사용한 증거, 전시일자 등 증명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개월을 초과하여 사용증거 또는 증명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우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업 말소 후 상표 양도

Q 중국에 투자하여 설립하였던 회사를 말소하였는데 회사 소유의 상표권은 말소후에도 양도를 할 수 있나요?

A 양도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말소 후 법인 자격이 소멸되며, 민사주체 자격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말소된 회사의 명의로 상표권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회사 말소 전에 미처 상표를 양도하지 못하였다면, 청산보고서에 상표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확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청산보고서에서 이러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원 회사의 전체 주주는 상표 등 무형자산을 회사말소 청산시의 누락자산으로 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를 양도하려는 경우, 해당 상표를 양수하려는 당사자가 상표양도 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표법 실시조례〉 제32조에 의하면 “상표전용권이 양도 이외의 계승 등 기타 사유 이전이 되는 경우, 해당 상표 전용권을 이전 받는 당사자가 관련 증명문서 또는 법률문서를 지니고 상표국에서 상표 전용권 이전수속을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 양도 수속시 공상부서의 말소증명서, 청산보고서, 청산팀 또는 전체 주주의 양도 동의서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상표를 도용하여 상호로 등록한 경우

Q A는 북경에서 웨딩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촬영도 많이 하고 각종 광고와 방송에 협찬도 많이 하여 브랜드 지명도도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 A의 상표를 상호로 등록하고 공공연히 사용하는 B웨딩스튜디오가 생겨나 고객들에게 혼동을 주어 A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B 스튜디오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아닌가요?

A 상표권 침해가 맞습니다.

최고인민법원 <상표 민사분쟁 사건 심리 시 적용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문자를 기업의 상호로 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서비스에 사용하여 관련 소비자가 오인하기 쉬운 경우는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에 손해를 주는 행위로 상표권 침해에 속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상표 민사분쟁사건심리 시 적용 법률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商标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1조 1항]

B 업체는 A의 상표와 동일한 문자를 상호로 등록하고,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관련 소비자가 충분히 혼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B의 상호등록은 시간적으로 A의 상표출원보다 후에 발생한 것입니다.

B업체는 A의 브랜드 지명도를 빌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실신용원칙과 상업도덕을 위반하였으며, 부당경쟁 행위를 구성하는 바, 반부당경쟁법 제18조에 따라 기업명칭을 변경해야 합니다.

특허의 무효 시기 지급된 사용료의 반환 여부

Q 저희 회사는 A사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A사의 특허를 사용하여 제품 생산을 하고 매달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사의 특허가 특허 행정부서에 의해 무효선고를 받아 무효가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저희 회사는 A사에 이미 지불한 로열티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이 경우, A사는 로열티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특허법 제47조는 “무효 선고된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특허권 무효선고의 결정은, 특허권 무효 선고 전에 인민법원이 이미 집행한 특허의 권리침해 판결, 조정, 이미 이행하였거나 또는 강제집행한 특허의 권리침해분쟁 처리 결정 및 이미 이행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과 특허권 양도계약에 대하여 소급력을 가지지 않는다. 단 특허권자가 악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배상을 해야 한다.

또한 전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 침해 배상금, 로열티, 특허권 양도료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평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면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제47조

따라서 특허의 무효선고는 이미 이행된 계약에 소급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A회사는 이미 이행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의 로열티를 다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특허가 무효되어 특허권을 실시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짧은 기간만 실시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취득한 이익이 로열티 및 특허권 실시를 위한 지출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라면 공평원칙에 위배되는 경우로 볼수 있으며, A회사에 이미 지불한 전부 또는 일부 로열티를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담보 대출

Q 회사 경영이 어려워 용자를 받고 싶은데 상표권을 담보로 하여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표권은 일종의 무형자산으로서 상표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전용권 담보대출을 받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대출 신청인이 <상표등록증> 및 기타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담보대출을 신청
- ② 은행에서 대출용도, 신용상황, 상환능력, 상표의 기본상황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
- ③ 대출 신청인이 은행에서 인정하는 상표 평가기구에 상표가치 평가를 위탁하고 상표가치 보고서를 발행 받아 은행에 제출
- ④ 은행과 대출 신청인이 담보대출 계약서 체결
- ⑤ 담보대출 계약서 체결 후 15일 내에 상표국에 상표전용권 담보 등기 수속 진행
- ⑥ 은행에서 대출금 지급

단 상표전용권 담보에 관한 법률제도가 부족하고, 상표권 가치의 불안정성 등 문제로 상표권 담보대출은 기타 담보대출에 비해 은행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일부 은행에서만 신용상태가 좋고 비교적 유명한 상표에 대해 담보대출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무발명의 소유권

Q 회사의 기술연구개발팀 직원이 이직 후 1년도 안되어 기술연구개발팀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와 관계된 특허를 출원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특허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A 발명특허의 소유권은 원 회사에 속합니다.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또는 회사의 물질적 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는 직무발명에 속하며, 직무발명의 발명특허 권리는 회사에 속합니다. 그러나 발명자 또는 설계자가 회사와 특허권 귀속에 관한 기타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특허법〕 제6조

원 회사와 노동관계가 종료된 후 1년안에 발생한 발명이 발명자가 원 회사에서 맡은 본연의 업무나 원 회사에서 할당된 임무와 관련된 발명일 경우에는 원 회사의 직무발명에 해당됩니다.〔특허법 실시조례〕 제12조

특허 보호기한 연장 여부

Q 저희 회사의 특허(발명, 실용신안, 디자인)의 보호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A 특허는 모두 연장할 수 없습니다.

발명특허의 보호기간은 20년이고, 실용신안 및 디자인 권리의 보호기간은 10년이며, 모두 출원일로부터 계산합니다. [특허법 제42조]

또한 권리인은 특허권을 취득한 해부터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하며,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보호기간 만료 전에 권리가 종료됩니다.

영업비밀 보호

Q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이 사직하고 같은 업종의 경쟁기업에 취직을 하거나 자신이 직접 같은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는 등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분쟁이 발생한다면 해결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1.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는 방법

(1) 직원과 비밀유지 계약서를 체결

회사는 직원과 체결한 노동계약서에 회사의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비밀유지 사항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제23조] 비밀유지 계약서에는 비밀유지의 대상, 범위, 내용, 기간, 쌍방의 권리와 의무, 위약책임과 배상금액 계산방식 등을 약정해야 합니다.

(2) 노동계약서에 경업금지(竞业限制) 규정을 추가

회사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노동계약서 또는 비밀유지 협의서 중에 직원과 경업금지 조항을 약정할 수 있고, 노동계약서 해지 또는 종료 후 경업금지 기간내에 직원에 대한 경제보상금 지불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이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약정에 따라 회사에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노동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제23조]

또한 경업금지 대상은 고급 관리인원, 고급 기술직원과 기타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직원으로 제한되며, 경업금지 기한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동법 제24조]

(3) 직원에 대해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보호와 관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여 직원의 영업비밀 보호 인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2. 영업비밀 분쟁의 해결방법

(1) 협상으로 해결

영업비밀 분쟁은 민사분쟁에 속하며, 회사의 영업비밀이 침해당했을 경우 침

해자와 협상을 진행하여 침해 중지 및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중재기구에 중재신청 제기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노동분쟁 중재 위원회에 중재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원이 노동계약시 약정한 비밀유지 사항 또는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노동계약법〕 제90 조

(3) 시장감독관리기관에 신고

〈반부정당경쟁법〉 제9조에 의하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권리인의 영업비밀 유지의 요구를 위반하고 알고있는 영업비밀을 누설, 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한 경우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당했을 경우 현금 이상의 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

직원이 비밀유지 약정을 위반한 경우, 계약위반과 동시에 회사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에도 해당되며, 회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직원이 위약책임 또는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형사책임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회사가 중대한 손실을 입게된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OEM 수출 시 상표분쟁 대응법

Q 저희 회사는 인건비 절약을 목적으로 중국에서 OEM 생산을 하여 전량을 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내에서 상표권을 등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중국 세관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이 타인의 세관등록 상표를 침해하여 상표권자의 신고로 압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수출제품이 상표권 침해 문제로 세관에 압류된 경우 침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통관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 OEM 계약서, 상표권리 증명서류, 수권서 등 수출이 정상적인 OEM 무역방식이며, 내수없이 전부 수출하고 있고, 국외에 상응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OEM 의뢰에 따라 생산하여 수출하였다는 관련 증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 제 18조]

다음으로 세관과 적극적으로 충분한 소통을 하여야 합니다.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세관조사를 받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 대해 세관은 조사를 진행하여 압류한 제품이 OEM제품 특징 및 증거요구에 부합될 경우 상표권 침해 불인정 결정을 내리며, 압류일로부터 50일내에 법원의 집행통지가 없으면 통관을 허가합니다.(동법 제24조 제2항) 세관에 등가의 담보금을 제공하고 제품을 먼저 통관시킨 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동법 제19조)

이와 동시에 압류통지를 받은 후 신속하게 상표권자를 찾아 협상을 통해 상표권자가 세관에 압류신청을 취하하도록 합의하면 빨리 통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수출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피하려면, 첫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확인판결을 내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판결은 이후의 수출 통관과정에서 세관에 제출하여 상표권 침해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만약 세관등록 상표가 악의적 선등록 상표일 경우, 주도적으로 상표의 무효 또는 취소청구를 제기하여 철저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의식을 높이고, 중국에 자체 브랜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미리 상표출원을 해놓음으로써 상표권으로 인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관상표를 등록하는 방법은 Section 4 지식재산권 [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등록방법과 관련 상담지원

Q 중국에서 저작권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등록방법과 저작권 등록 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중국에서 저작권 등록을 하려고 할 경우, 우편으로 등록신청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인이 직접 중국관권보호중심(CPCC)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등록방법

1단계: www.ccopyright.com.cn/을 방문하여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취득합니다.

2단계: 온라인상에서 등록신청표를 작성하여 출력 후 서명날인하고 기타 신청자료와 함께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자료를 제출합니다.

3단계: 신청자료가 요구에 부합하면 비용납부 통지서를 받게되며, 신청인이 비용을 납부합니다.

4단계: 중국관권보호중심에서 신청자료를 수리하고, 심사 후 등록증서를 발급하고 공고를 합니다.

▶ 등록기관-중국관권보호중심(CPCC)

| | |
|------------------------------|----------------------------------------------------------------------------------|
| CPCC 텐차오 판권등기홀 (天桥版权登记大厅) | 주소: 북경시 서성구 천교남대가 1호 천교예술빌딩 A동 1층 상담전화: 010-83192701, 010-68003887-7989, 7902 |
| CPCC 옹허 판권등기홀 (雍和版权登记大厅) | 주소: 북경시 동성구 안정문 동대가 28호 옹화빌딩 서루 1층 상담전화: 010-83197929, 83197931 |
| 우편신청 주소: | 북경시 서성구 천교남대가 1호 천교예술빌딩 A동 307실 접수인: 판권등록부 우편: 100050 |

▶ 제출서류

| | |
|--------|---------------------------------------------------------------------------------------------------------------------------------------------------------------------------------------------------------------------|
| 직접신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저작권 등록신청표> · 신청인 신분증명 문서 사본(개인: 여권/ 법인: 사업자등록증) · 권리 귀속증명 문서 · 작품의 샘플 · 작품 설명서(창작목적, 창작과정, 독창성을 설명, 서명날인 후 날짜 표시) |
| 대리인 신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신청 제출서류 전체 · 대리인 위탁서 · 대리인 신분증명 사본 |

▶ 소요비용

중국관권보호중심 저작권 등록비용 기준 (2020년 5월 기준)

| 구분 | 단위 | 비용 기준(위안) | 비고 |
|------------------|----|---------------------------------------------------------------------------------------------------------------------------------------------------|----------------------------|
| 문자, 구술작품 | 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이하 100위안 · 100~5000자 150위안 · 5001~10000자 200위안 · 10000자 이상 300 위안 | 시리즈 작품 등록 2건부터 건당 100위안 |
| 음악작품 | 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가사 300 위안 · 곡 200 위안 | 시리즈 작품 등록 2건부터 건당 100위안 |
| 연극/곡예작품 | 건 | · 300 위안 | |
| 무용작품 | 건 | · 300 위안 | |
| 잡기작품 | 건 | · 300 위안 | |
| 미술작품 | 건 | · 300 위안 | |
| 촬영작품 | 건 | · 300 위안 | |
| 엔지니어링/ 제품 디자인 | 건 | · 500 위안 | |
| 지도/안내도 | 건 | · 500 위안 | |
| 모형작품 | 건 | · 500 위안 | |
| 건축작품 | 건 | · 1500 위안 | |
| 영화작품 | 건 | · 2000 위안 | |

| | | | |
|---------------------|---|-----------------------------|-----------------------------|
| 영화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작품 | 건 | · 1분미만 200위안 | 시리즈 작품 등록 2건부터 건당 50 위안 |
| | | · 1~5분 300위안 | |
| | | · 5~10분 400위안 | 시리즈 작품 등록 2건부터 건당 100 위안 |
| | | · 10~25분 800위안 | 시리즈 작품 등록 2건부터 건당 200 위안 |
| | | · 25~45분 1000위안 | 시리즈 작품 등록 2건부터 건당 300 위안 |
| | | · 45분 초과 2000위안 | 시리즈 작품 등록 2건부터 건당 400 위안 |
| | | · 드라마1회 100위안 | - |
| 편집작품 | 건 | · 2000 위안 | 시리즈 작품 등록 2건부터 건당 100 위안 |
| 멀티미디어 편집작품 | 건 | · 2000 위안 | |
| 기타 작품 | 건 | · 2000 위안 | |
| 변경등기 | 건 | · 저작권 등록 수급 기준의 50% | |
| 증서 재발급 | 건 | · 50위안 | |
| 등기취소 | 건 | · 80위안 | |
| 녹음제품 | 건 | · 노래 300위안/곡, 앨범 2000위안 | 시리즈 작품, 협상 후 결정 |
| | | · 30분 이하 300위안 | |
| | | · 30분 이상 500위안 | |
| 녹화제품 | 건 | · 30분 이하 300위안 | |
| | | · 30분 후 100위안/30분 | |
| 포맷 디자인 | 건 | · 500위안 | |
| 방송 | 건 | · 30분 이하 300위안 | |
| | | · 30분~1시간 500위안 | |
| | | · 1시간 이상 800위안 | |
| 연기 | 건 | · 연기작품 유형 저작권등기 비용기준에 따름 | |
| 등록파일 자료 복제 | 장 | · A4 1위안/페이지 · CD 10위안/장 | 기타 종이 규격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수취 |

| | | | |
|---------|---|----------------------------------------------------------------------------------------------------------------------------------------------------------------------------------------------|-----------------------------------------------------------------------------------------|
| 증서 우편요금 | 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우편(1-4개 증서) 15위안 · 등기우편(5-30개 증서) 20위안 · 등기우편(30개 이상 증서) 20위안을 기초로 1-30개당 20위안씩 추가비용 수취 · EMS 중국 대륙지역내 22위안 | 등기우편 내의 증서 수량은 동일 저작권자가 동일차에 제출한 신청표의 건수를 합해서 결정 홍콩, 마카오, 대만 및 해외의 EMS는 국제 지역에 따라 수취 |
|---------|---|----------------------------------------------------------------------------------------------------------------------------------------------------------------------------------------------|-----------------------------------------------------------------------------------------|

▶ 상담 및 지원

-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

주소: 북경시 조양구 광화루 광화시리 1호 한국문화원 4층

상담전화: + 86-10-6501-5437

▶ 저작권 등록증 활용방안

첫째,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저작권 보유 상황을 증명하는 기초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저작권의 우선권리를 이용하여 상표 무효선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작품이 창작될 때 발생하기 때문에 상표권이나 디자인 특허권리에 비해 우선권에 속합니다. 중국의 <상표법>과 <특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타인의 우선권리와 충돌하는 상표와 디자인은 취소 또는 무효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저작권의 사용허가, 양도 등으로 경제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지재권 보호 방법

Q 저희 회사가 생산, 판매하는 과자는 슈퍼마다 진열되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제품입니다. 얼마전 B사에서 저희회사 과자와 포장이 똑같고 상표만 다른 이른바 '싼자이(山寨)' 과자를 시장에 출시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상표만 신청을 하였고 포장에 대한 디자인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B사의 행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B사의 행위는 반부정당경쟁 행위에 해당됩니다.

〈반부정당경쟁법〉 제6조 제1항은 “타인이 일정한 영향을 가진 상품의 명칭, 포장, 장식 등과 같거나 유사한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과 특정한 연계가 있을 것이라고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사의 행위는 반부정당경쟁법을 위반한 행위로 시장감독관리기관에 신고하거나 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행위를 멈추고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부정당경쟁법을 위반하여 상황이 엄중할 경우, “상업비밀 침해죄”, “상업/상품명에 손해죄”, “뇌물죄”,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표 침해에 대한 대응방법

Q 화장품 회사인 A사는 중국에 상표등록을 하고 중국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에 A사의 상표를 사용한 위조제품이 정품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A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신의 상표가 침해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경고장 발송

권리침해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하여 침해행위 정지를 요구하고, 침해제품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협력을 요청

〈중화인민공화국 권리침해책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권리침해행위를 실시하였을 경우, 피권리침해자는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하여 삭제, 폐쇄, 링크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제공자가 관련 통지를 접수한 후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는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여 확대된 부분의 손해에 대해 당해 인터넷 사용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시장감독관리기관에 신고

〈상표법〉 제60조에 의하면, 시장감독관리기관에서 상표권 침해 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할 경우, 권리침해를 즉시 정지하도록 명하고, 권리침해 상품 및 권리침해 상품의 제조, 등록상표 표식의 위조에 사용된 도구를 몰수, 소각합니다.

또한 불법수입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수입에 대해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불법수입이 없거나 또는 5만 위안이 되지 않을 경우 25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 제기

권리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 재산보전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온라인 상의 정보는 변경 또는 삭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행정조치 또는 손해배상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 전에 공증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위조상품 대응 지원 신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한국내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위해 중국의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에 유통되는 위조상품 대응 지원을 제공합니다.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 (www.koipa.re.kr)

- T. 02-2183-5883, 5885, 5894 (한국전화)

- E-mail : kipraglobal@koipa.re.kr

-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F

상표 라이선스 계약 주의사항

Q 저희는 한국본사에서 중국 남경시에 투자하여 설립한 교육자문유한회사(A회사)입니다. A회사는 자체의 교육제품에 대해 사회적 지명도를 높이기 위하여, 타 회사B의 상표권을 사용하고자 상표사용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상표사용권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저희는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A 상표사용권 라이선스 계약이란,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사용권을 제3자에게 허가함으로써, 양수권자는 해당 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상응한 대가를 지급하고,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행위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A회사가 회사B와 상표사용권 라이선스 계약서를 체결할 경우, 아래와 같은 몇가지 사항에 주의를 기울려야 하겠습니다.

1. 라이선스 계약서상 명시된 상표가 상표등록증(商标注册证)에 기재된 상표와 일치하는지 확인
 2. 라이선스 계약서상 명시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상표등록증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
 3. 라이선스 계약기한이 상표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
 4. 라이선스 계약서에 상표사용권 허가 지역에 대해 약정되었는지 확인
 5. 라이선스 계약서상 독점허가(独家许可), 일반허가(普通许可), 배타허가(排他许可) 중 어떤 허가형식으로 약정할 것인지에 대해 확인
- (1) 독점허가란 상표권자를 포함한 임의의 제3자는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오직 양수권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일반허가란 양수권자뿐만 아닌, 상표권자 또는 상표권자가 허락한 임의의 제3자도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3) 배타허가란 양수권자와 상표권자만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고 기타 제3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라이선스 계약서상 양수권자가 제3자에게 재수권(다시 상표사용권을 허가)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
7. 라이선스 계약서를 체결한 후, 반드시 관할 상표관리부서에 계약서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서 등록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선의로 해당 상표 사용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상표사용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려면, 상기 주의사항 외에도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위약책임, 분쟁해결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한국 관련 지원기관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지재권 출원 및 지재권 분쟁시 한국정부의 지원

Q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인데 중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표나 지재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에 중국 진출 전 중국에 상표 및 특허를 출원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지원 사업은 없나요?

A 있습니다.

KOTRA에서는 해외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한국 기업들을 위해 해외지식재산 센터(IP-DESK)를 설치하여 지재권 상담 지원,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지원, 지재권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지원 등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중국에는 홍콩,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시안에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1. 지원대상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으로 중국에 사업을 운영(예정)중인 자

* 중소기업의 증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확인서만 인정

2. 지원내용

1) 상표·디자인 출원 지원

- 현지에서 상표·디자인 출원 시 발생하는 비용·절차 지원

| 지원건수 | | 신청기업별 연간 8건 (국가제한 없음) |
|----------|-------|-----------------------|
| 지원 비용 | 상표한도 | \$300 |
| | 디자인한도 | \$300 |
| | 지원비율 | 실제 출원비용의 최대 50% 지원 |

2) 특허출원 지원

- 현지에서 특허출원 시 발생하는 비용 · 절차 지원

| | |
|------|-----------------------------------------------------------------------------------------------------------------|
| 지원건수 | 신청기업별 연간 3건(국가제한 없음) |
| 지원한도 | \$1,000 |
| 지원비율 | 최대 50% |
| 주의사항 | · 번역비 제외 · 모든 국가 신청시 명세서는 출원국 언어 또는 영문으로 작성 제출 · 현지대리인과 연락가능한 지정대리인(변리사, 변호사) 연락처 필수 기재 (지정대리인 미선정시 신청불가) |

3) 지재권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지원

- 해외 모조품 유통 피해에 대한 현지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비용 지원

| | | |
|----------|---------------------------------------------------|-------------------------------------------------|
| 지원내용 | 침해 · 피침해 조사, 행정단속, 법률의견서(경고장, 침해감정서 등) 작성비용 일부 지원 | |
| 지원건수 | 신청기업별 연간 3건 (국가제한 없음) | |
| 지원 비용 | 한도액 | \$10,000/건 (피침해 실태조사만 진행 시 \$6,000) |
| | 지원비율 | 최대 70%지원 (중복지원 시 20%씩 지원비율 하락, 70% → 50% → 30%) |

- 3개사 이상(업종 단체 포함) 협의체 공동신청 시 기업수만큼 지원한도 증액
- 협의체 공동신청은 한류 편승 관련 사건 우선지원 예정.

3. 지원절차

- 1) 지원신청: www.kotra.or.kr 기업회원 가입 후, 지원서비스안내 ▶ 해외진출지원 ▶ 해외투자진출 ▶ 지식재산권보호 페이지 내 "지원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 2) 대리사무소 선정: 각 IP-DESK에서 대리사무소를 선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
- 3) 대리사무소 계약
- 4) 출원신청/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기업부담금 납부
- 5) 비용지원: 결과보고서 확인 후 대리사무소에 직접 지원금 지급

중국 해외지식재산센터 설치지역 및 연락처

| 지역 | 연락처 | |
|-----|-----------------------|-----------------------|
| 홍콩 | 852-3465-2921 | ipdesk@kotra.org.hk |
| 베이징 | 86-10-6410-6162(47) | ipkotra@126.com |
| 상하이 | 86-21-5108-8771(118) | nkluyanan@126.com |
| | 86-21-5108-8771(2041) | MF_Jin@kotra.or.kr |
| 칭다오 | 86-532-8388-7931(209) | qdxuxiang@kotra.or.kr |
| 광저우 | 86-20-2208-1630 | shane_bai@aliyun.com |
| 선양 | 86-24-3137-0770(813) | ipdesksy@kotra.or.kr |
| 시안 | 070-4005-8586 | ktm@kotra.or.kr |

지재권 분야의 신용상실 행위에 대한 제재

Q A회사는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B회사를 지방 지식재산권 관리부서에 신고하였으며, 지방 지식재산권 관리부서는 조사 후 B회사의 특허권 침해가 성립된다고 인정하고 침해 행위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A회사는 B회사가 또 다시 동일한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 규정은 없는 건가요?

A 있습니다. 중국은 중복적인 특허권 침해행위를 특허분야의 엄중한 신용상실 행위로 규정하고 ‘연합징계대상 명단’에 포함시켜 여러 부서와 공동으로 제재를 가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복적인 특허권 침해행위란 성(省)내 각급 지식재산권 관리부서에서 인정한 특허권 침해가 성립된다는 행정판결 결정의 법률효력이 발생한 후, 권리를 침해한 측이 다시 동일한 특허권을 침해하여 해당 성(省)내 각급 지식재산권 관리부서에서 다시 권리침해가 성립된다는 판결을 내리고 동시에 관련 결정이 법률효력을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국가지식산권국의 〈특허분야 엄중한 신용상실 연합징계 대상 명단 관리방법(시행)〉 인쇄 발표에 관한 통지, 国家知识产权局关于印发《专利领域严重失信联合惩戒对象名单管理办法(试行)》的通知 제7조]

‘연합징계 대상 명단’에 포함된 법인 및 개인의 징계대상은, 법인인 경우에는 연합징계 대상은 해당 법인과 그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직접적 책임인원과 실제 통제인이고, 자연인인 경우, 연합징계 대상은 본인입니다. (동법 제4조)

징계대상 명단에 포함된 기업은 정책자금 지원, 행정심사, 융자대출, 자질인증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되며, 개인은 부동산 구입, 교통수단 이용, 여행 등 경제활동에 제약 받게 됩니다.

사례 중의 B회사는 아직 중복적인 특허권 침해 행위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나,

A회사가 적극적으로 권리보호에 나서 B회사가 또다시 지방 지식재산권 관리부서의 권리침해 성립 판결을 받게 된다면, B회사는 엄중한 신용상실 명단에 편입되어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5

노무인사

이럴땐 이렇게



01

회사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의 책임

Q 저는 회사와 근로조건, 임금 등을 일단 구두로 합의한 후 근무를 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나도 회사는 저와 노동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의사를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A 서면 계약 없이 고용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남에 따라, 추가 임금 지급 의무 또는 계약 체결 등의 효력이 발생함을 회사 측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유 : 노동계약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권리의무를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나타낸 것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부 회사는 우세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고용 시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채 구두방식으로 약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고용일로부터 1개월 내에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고용 1개월 후부터 근로자에게 매월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또는 근로자는 피고용 1개월 후부터 최장 11개월 동안 매월 2배의 임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일로부터 만 1년간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회사는 이미 근로자와 무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근로자는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계약법 제82조, <노동계약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实施条例)> 제6조 및 제7조).

이처럼 근로자는 회사에게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 줄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위 법에 따라 2배 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한국과 달리 회사에서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형사처벌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노동계약 미 체결시 2배 임금 배상문제

Q B는 상해의 A회사에서 노동계약 체결 없이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8월 1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2019년 8월 1일 B는 노동중재위원회에 노동계약 미 체결 2배 임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B의 2배 임금 배상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본 사례의 경우 실제적 보호기간과 노동분쟁 중재시효를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우선 <노동계약법> 및 <노동계약법 실시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단위가 고용일로부터 만1년까지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일로부터 만1개월의 다음날로부터 만1년까지 근로자에게 매월 2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노동계약 미 체결로 인한 2배 임금의 최장 계산기간은 11개월이며 본 사례로 볼 때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2배 임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노동분쟁 조정 중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분쟁의 중재신청 시효는 1년이며, 당사자가 권리를 침해받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계산합니다. 본 사례에서 B는 2019년 8월1일에 노동중재를 신청하였기 때문에 1년이 지난 2018년 8월 이전의 2배임금 주장은 중재시효가 이미 초과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즉 B는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의 2배의 임금 차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Q 근로자와 2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중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할 수 있나요?

A 근로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수습기간은 최장 2개월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협의사항이 아니며 반드시 법에 정해진 기간을 따라야 합니다.

이유: <노동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에는 법정 수습기간을 초과하면 초과한 기간만큼 임금(수습기간 완료 후의 정상적인 급여)을 기준(试用期满月工资为标准)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제83조), 또한 일선 노동부서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급액의 50~100%를 추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5조).

참고로 수습 근로자의 임금은 회사내 동일직무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이나 노동계약서에 약정한 임금의 80%보다 많아야 합니다. 단, 노동계약서에 약정한 임금의 80%는 회사 소재지의 최저임금기준보다는 높아야 합니다(동법 제20조).

노동계약 기간에 따른 수습기간

| 계약기간 | 수습기간의상한 |
|------------------------|---------|
| 3개월미만 | 설정불가 |
| 3개월이상 ~ 만 1년이하 | 1개월이하 |
| 1년이상 ~ 만 3년이하 | 2개월이하 |
| 3년이상이나 확정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6개월이하 |

<참고: 노동계약법 제19조>

- * 동일사용자와 동일근로자는 1회의 수습기간만 약정할 수 있음
- * 일정한 업무의 완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3개월미만의 계약은 수습기간을 약정할 수 없음



이중재직자의 고용과 책임

Q 다른 회사에 다니는지 알지 못하고 근로자를 고용했는데, 이로 인해 그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면 우리회사가 그 배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A 근로자를 고용하였는데 그 근로자가 다른 회사와의 노동관계를 깔끔하게 처리 (계약종료 또는 계약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회사에 근무함으로써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입혔다면 우리회사는 해당 근로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지야 합니다. [노동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제91조].

이유: 이때 근로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지는 해당 기업은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가 입은 손해의 최소 7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노동법 상 노동계약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배상방법 (违反《劳动法》有关劳动合同规定的赔偿办法)》 제6조 제1항].

따라서 중국에서 근로자 고용 시 다른 회사와 노동관계가 존재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배상책임은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기에 새로운 사용자인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확인서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겸업 근로자에 대한 관리

Q 근로자들이 퇴근 후 다른 자리에서 부가적으로 일하는 등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집중도가 낮아지고 사고 가능성도 높아지는데, 회사 차원에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노동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제39조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부가적으로 일하는 행위를 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만일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부가적 근무행위가 본 회사의 업무활동에 엄중한 영향을 미친 경우 회사는 근로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회사는 관련 성과심사제도, 상벌제도 등을 제정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를 거쳐 회사에서 근로자가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그에 대하여 교육을 하거나 또는 업무를 조정할 수 있고 교육을 거쳐 또는 업무를 조정 후 계속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와의 노동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직방지를 위한 신분증 보관 등의 적법성

Q 최근 근로자들의 이직이 많아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을 보관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A 근로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신분증을 압류하거나 담보 또는 보증금 등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계약법 제9조에 따라 모두 위법한 행위입니다.

이유: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30일 전에만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기에 많은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신분증을 압류하거나 담보 또는 보증금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모두 위법한 행위입니다(노동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제9조). 일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분증(居民身份证)을 압류하면 일선 노동관서는 기한부 반환을 명할 수 있고, 공안기관은 <거주민 신분증법(居民身份证法)> 제16조 제3호에 따라 200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담보 또는 기타 명목으로 재물을 수취한 경우, 일선 노동관서는 기한부 반환명령과 함께 근로자 1인당 500 위안이상 2,000 위안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이로 인해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배상책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노동계약법 제84조 제2항).

근로자의 인력유출 예방

Q 경쟁기업이 계속해서 근로자들에게 스카우트를 제의하고 몇몇 근로자가 이미 이직하였습니다. 이 경우, 회사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귀사에서는 근로자와 체결한 노동계약서 상의 비밀유지조항 또는 연수제공에 관한 협의서 상의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이직한 근로자에게 위약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계약서 상에 이 부분에 대한 약정이 있어야 하므로 이 상황을 발견한 다음 우선 회사의 노동계약서를 검토해 보고 관련 약정이 없을 경우 현재 근로자와 협상하여 사용중인 노동계약서에 이 부분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인력유출을 예방하는 한가지 방법입니다.

또 근로자와의 소통 등을 통하여 상대방 회사의 스카우트 행위에 대한 불법 증명 서류를 수집하여 <반부정당경쟁법(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제7조의 규정과 <최고인민법원의 부정당경쟁 민사안건의 심리 시 법률적용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不正当竞争民事案件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한편, 노동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제23조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노동계약 체결 시 사용자의 상엄비밀 및 지적재산권 관련 비밀 사항에 대한 준수 약정을 체결할 수 있고, 비밀 유지의무가 있는 근로자에게 노동계약서에 경업제한(경쟁업종 취업제한) 약정과 노동계약 종료시 경업제한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매월 경제보상금의 지불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경업제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 약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경업제한 인력은 사용자의 고급관리인력, 고급기술인력 및 기타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인력으로 제한되며, 경업제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위약금 약정

Q 한국인 A는 북경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고 노동계약서 중에 A가 매월 회사에서 배정한 임무를 완성하지 못 할 경우 회사에 3000위안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약정하였습니다. 2016년 8월 A는 회사가 배정한 임무를 완성하지 못하였고 회사는 A에게 노동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3000위안의 위약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A가 이를 거절하자 회사는 A의 월급에서 3000위안을 공제하였습니다. 회사의 이런 행위는 합법적인가요?

A 회사의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노동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제25조는 다음 2가지의 약정을 제외하고, 근로자와 위약금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노동계약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문훈련비용을 제공하여 전문기술 훈련을 받도록 할 경우 근로자와 합의서를 체결하고 복무기간 및 위반시 위약금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노동계약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비밀유지 및 경쟁제한(경쟁업종 취업제한) 약정과 근로자가 경쟁제한 위반 시에 대한 위약금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령 이후의 재고용 및 사회보험

Q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가 조만간 60세가 되어 정년퇴직 연령이 되어 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본인도 계속 근무를 희망하고 있고 회사도 그 근로자가 계속 일해주기를 바랍니다. 이 경우 고용관계 및 사회보험 관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A 이럴 경우 회사는 근로자와 노무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째, 〈노동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법에 의거하여 기본양로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시작하였을 경우 노동계약은 종료되므로 귀사와 근로자간의 노동계약은 종료됩니다.

둘째, 〈사회보험법(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퇴직 연령이 되고 보험가입 기간이 누계 15년이 될 경우 매 월마다 양로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위와 같이 회사와의 노동계약이 종료되고 국가 양로보험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계속 근무하려면 노동계약이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간 노무제공을 약정하는 노무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노무계약에 대해서는 노동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파견근로자가 업무중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책임처리

Q A회사는 회사업무상 필요한 기술지원을 이유로 B회사로 직원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런데 파견직원은 기술지원업무를 하던 도중 B회사의 직원C에게 상해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C의 가족은 B회사를 찾아와 배상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B회사는 파견직원일 뿐 자기회사 직원이 아니므로 직원C를 파견한 A회사에 배상책임을 요구하며 거절했습니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A <권리침해책임법(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파견 직원을 받아 고용하고 있는 B회사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설명 :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권리침해책임법> 제34조(중국민법 제1191조)는 '고용기관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고용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파견기간 중 파견된 직원이 임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노무파견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기관에서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파견 기관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충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가 근무 중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책임은 새로 시행된 <권리침해책임법>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파견직원을 받아 고용하고 있는 B회사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직증명서 발급의무

Q A회사를 퇴사하고 더 좋은 조건의 B회사로 이직하였는데 입사수속을 위해 A회사에 이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더니 이런저런 핑계로 이직증명서를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회사에서 이직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회사에서 이직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당지의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노동감찰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제50조 ‘고용단위는 노동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에 근로자에게 노동계약 해지 또는 종료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89조 ‘고용단위가 근로자에게 서면 노동계약 해지 또는 종료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행정부서에서 시정을 명하며, 근로자에게 손해를 조성하였을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A회사는 이직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A회사가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직증명서 발급을 거절하면 당지의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노동감찰부문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제 91조는 ‘고용단위가 전 직장과 노동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전 직장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근로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비하여 많은 기업은 직원 채용시 이직증명서를 제공하라고 요구하고, 이직증명서를 제공하지 못하면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A회사가 이직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B회사의 채용이 취소되었다면 소송을 통해 A사에 채용취소로 인한 손실을 배상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처의 직원고용

Q 북경에 있는 대표처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노무파견 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원을 직접 뽑았다는 이유로 공상국에서 과태료 5만 위안을 내라고 합니다. 납부해야 하나요?

A 예. 노무파견 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원을 고용했기 때문에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유 :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연락사무소’는 중국에서 ‘대표처(代表处)’, ‘판사처(办事处)’ 또는 ‘상주대표기구(常驻代表机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중국 대표처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 현지직원은 반드시 노무파견 업체를 통해서 고용하여야 합니다. 현재 중국에서 대표적인 노무파견 업체는 북경외자기업서비스그룹회사(北京外企服务集团有限公司), 북경외항서비스회사(北京外航服务公司), 중국쓰다국제경제기술합작회사(中国四达国际经济技术合作公司), 중국국제기술지력합작회사(中国国际技术智力合作公司), 중국국제인재개발센터(中国国际人才开发中心)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경에 있는 대표처가 이러한 노무파견 업체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직원을 고용하였다면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는데(북경시 인민정부,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중국인 직원 고용 관리 규정(北京市人民政府关于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聘用中国雇员的管理规定)> 제11조) 과태료 금액은 각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에서 대표처 직원은 반드시 정부가 지정한 노무파견 업체를 통하여 고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직원 고용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업허가 신청요건

Q 중국에서 합법적인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기 위해서는 대졸 이상의 학력과 유관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경력이 없으면 중국에서 일할 수 없는 건가요?

A 아닙니다. 2017년 4월부터 시행된 ‘외국인 취업허가제’에 따라 유관분야 근무경력이 없어도 취업허가를 받고 합법적인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상 취업허가 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회사에서 부총경리이상의 직무를 담당하고 회사의 등록자본이 비교적 큰 경우, 취업허가를 1~5년 사이에서 비준해 줄 수도 있습니다.

중국 은 그동안 취업허가증 발급의 요건으로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과 2년 이상의 유관분야 근무경력을 요구해 왔는데 학력이나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중국에서 취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2017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취업허가제(外国人来华工作许可制)”에 따르면 앞으로 취업허가 요건은 인재유형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고, 유형별 조건도 단순한 학력, 경력 요건이 아니라 임금이나, 종합점수 기준 등으로 더 세분화 되었습니다.

새 제도는 외국인재를 고급인재 (A유형), 전문인재 (B유형), 기타인재 (C유형) 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세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재유형 | 조건 |
|-------------|-----------------------------------------------------------------------------------------------------------------------------------------------------------------------------------------------------|
| 고급 인재 (A유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외국 인재 유입계획에 따른 인재 △ 국제공인 전문성 인증기준 부합 인재 △ 시장발전 촉진 직무 필요 인재 △ 창신창업 인재 △ 우수청년 인재 △ 종합점수 85점 이상인 자 |

| | |
|------------------------|----------------------------------------------------------------------------------------------------------------------------------------------------------------------------------------------------------------------------------|
| 전문 인재 (B유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 이상 및 2년 이상 유관 경력자 △ 국제통용 기능자격증 취득 또는 기능형 인재 △ 외국어 교육인원 △ 평균임금이 지역 전년평균임금의 4배 이상인 인재 △ 국가 유관부문 규정 또는 사업 부합인재 △ 종합점수 60점 이상인 자 |
| 기타 인재 (C유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외국인취업규정상 중국 내 취업인원 △ 임시성, 단기성 취업 외국인 △ 쿼터로 관리하는 외국인원; 정부간 협의에 따른 인턴실습 인원, 외국유학생 및 해외대학 졸업 외국인 등 |

종합점수는 연봉, 학력 및 기술자격증, 유관분야 경력, 연간 근로기간, 중국어 능력, 취업지역,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산(참고 불입<평가점수 기준표>)

전문인재(B유형)의 경우, 60세미만, 학사이상 및 2년이상 유관 분야 경력이 기본 요건이지만, 평균임금이 지역 전년도 평균임금의 4배이상인 경우에는 학력이나 경력과 관계없이 전문인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종합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도 전문인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허가를 받기 위해서 2년이상의 경력이나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 경우에도 유관부분 경력이나 학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한편, 고급인재(A유형)과 달리 전문인재는 60세 미만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산동성 등 일부 지방은 이를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내 유학생이나 한국에서 대학졸업후 중국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 이 유관분야 경력없이 종합점수 60점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 중국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상해, 광둥 등 중국11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자유무역지구나, 서부내륙지역 등에 위치한 기업에 취업하거나, 성, 시별로 별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추가점수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취업하는 것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염성시와 연태시 등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 부터 전문가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취업허가를 받는데 유리합니다. 전문가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해외취업 과정(KMOVE School)을 이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www.worldjob.or.kr)에서 확인]. 또한 석사 학위 이상은 人力资源部 外交部 教育部 关于 允许 优秀 外籍 高校毕业生 在华 就业 有关事项 的通知 (인사부발 2017년 3호, 2017.1.6 발표) 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관부분 경력을 요구하지 않으나, 일부 지방은 이를 요구하는 지역도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평가점수 기준표

| 항목 | 기준 | 점수 |
|-----------------------|------------------------------|--------|
| 직접 자격부여 | 국내 인재 유입계획 부합 국제공인 전문분야 인정기준 | |
| | 시장 발전방향 부합 직위 | |
| | 창신창업인재 및 우수청년인재 | |
| 채용 기업 연봉 (20점) | 45만 위안 이상 | 20 |
| | 35~45만 위안 | 17 |
| | 25~35만 위안 | 14 |
| | 15~25만 위안 | 11 |
| | 7~15만 위안 | 8 |
| | 5~7만 위안 | 5 |
| | 5만 위안 미만 | 0 |
| 학력 및 기술기능 자격증(20점) | 박사/국제통용 고급 기능자격증 및 기사 상당 | 20 |
| | 석사, 기사 및 상당 | 15 |
| | 학사, 고급기능공 및 상당 | 10 |
| 유관분야 경력 (20점) | 2년 초과시 1년 경력에 1점 부여 | 최고 20점 |
| | 2년 | 5 |
| | 2년 미만 | 0 |
| 연간 근무시간 (15점) | 9개월 이상 | 15 |
| | 6~9개월 | 10 |
| | 3~6개월 | 5 |
| | 3개월 미만 | 0 |
| 중국어 수준 (5점) | 과거 중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있는 외국인 | 5 |
| | 중국어 전공 학사 이상 학위 | 5 |
| | HSK 5급 이상 | 5 |
| | HSK 4급 | 4 |
| | HSK 3급 | 3 |
| | HSK 2급 | 2 |
| | HSK 1급 | 1 |

| | | |
|------------------------------------|---------------------------------------|------|
| 취업지역 (10점) | 서부 지역 | 10 |
| | 동북 지역 등 공업기지 | 10 |
| | 국가급 빈곤 등 특별지역 | 10 |
| 연령 (15점) | 18~25세 | 10 |
| | 26~45세 | 15 |
| | 46~55세 | 10 |
| | 56~60세 | 5 |
| | 60세 이상 | 0 |
| 세계 저명대학 졸업/국제 500대 기업 근무경력 (5점) | 외국 우수대학 졸업 | 5 |
| | 세계 500대 기업근무 경력 | 5 |
| | 지식재산권 보유 | 5 |
| | 연속 5년 이상 중국내 근무 | 5 |
| 지방 재량 부문 (10점) | 지방 경제사회발전 필요 인재(성급 외국인 관리부문 구체 기준 제정) | 0-10 |

이직 시 취업비자 변경

Q 중국에서 정식 취업비자를 받고 근무 중 타기업의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이직하려고 하는데, 취업비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근로자는 근무 중 타기업으로 이직하려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제37조 규정에 따라 30일 전에 고용기업에 통지하여야 하고 고용기업과 노동계약 해지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합니다.

노동계약 해지 후 근무기업으로부터 회사도장을 날인한 이직증명서(퇴직한 이유 및 시간 등을 설명하여야 함)와 원 근무기업에서 발급 받은 근로허가증 원본을 받아야 합니다.

이직증명서와 근로허가증을 갖고 새로 근무할 기업에 대한 '근무기업 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변경 절차는 우선 관할 외국인전문가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근무기업 변경등기를 마친 다음 다시 관할 출입국관리국에서 변경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전 근무기업에서 전문교육비용을 제공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노동계약 중 의무 근무기간을 약정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제22조에 따라 약정 내용에 의거하여 마땅히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한편 취업비자 변경을 하지 않았을 경우, 출입국 관리 규정의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직 시 비자 및 외국인 근로허가증 변경

Q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근무단위 변경시 비자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A 근무단위 변경 시 근로허가증을 변경하고 비자도 새로운 단위 명의로 변경신청을 하여 새로 받아야 합니다.

중국에서 근무단위 변경 시 이전 근무기업에서 외국 전문가국에 근로허가증 말소신청을 하여 원 근로허가증을 말소하여야 하고 말소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음 원 단위에서 근무경력증명서와 이직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주의사항은 근무기간과 근무직위 등 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소증명 취득일로부터 30일 내에 새로운 단위에 취직 후 새로운 단위에서 외국 전문가국에 근무단위 변경신청을 하여 새로운 근로허가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은 근무직위가 변경될 경우에는 근로허가증 변경이 불가능하고 새롭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외국전문가국에서 외국인이 중국에서의 근무허가 서비스 지침(잠행)에 관한 통지 (国家外国专家局关于印发外国人来华工作 许可服务指南 (暂行) 的通知)>

새로운 근로허가증을 가지고 출입국관리국에 비자변경 신청을 하시면 정상적으로 중국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허가증 말소의무

Q 당사 중국법인에서 근무했던 한국인이 사직한 지 2개월이 지나 근로허가증을 말소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꼭 해줘야 하나요?

A 네, 법적으로는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계약 만기 전에 계약을 중지하고 노동관계를 해지할 경우 고용단위는 근무일 10일 내에 말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 근로자가 이전 근무기업에서 근로허가증을 말소해 주어야 새로운 단원에서 쉽게 근무단위변경 신청을 거쳐 새로운 근로허가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시 새로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 근로허가증을 신청하여야 하고 또 원 근로허가증이 말소될 때까지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말소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 외국전문가국 사이트에 등록하여 말소신청을 하고
2. 말소신청표를 작성하여 업로드하고
3. 노동계약 해지 관련 증명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또 말소신청을 하지 않아도 근로허가증 기간이 만기되면 자동적으로 말소됩니다. (외국전문가국에서 외국인이 중국에서의 근무허가 서비스 지침(잠행)에 관한 통지(国家外国专家局关于印发外国人来华工作许可服务指南(暂行)的通知))

외국인 고용업체 불일치 등 불법고용 시 받게 될 처벌

Q 공안국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직원이 F비자라는 이유로 과태료 5만 위안과 강제출국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A 중국의 외국인 고용규정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증(査證, Visa)제도를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국내 회사에 고용된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Z비자(취업비자)를 취득하여야 합니다(〈외국인 중국내 취업관리규정(外国人在中国就业管理规定)〉 제8조).

위 질의처럼 외국인이 불법취업인 경우, 근로자는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및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위법고용한 외국인 한 사람당 1만 위안, 총액 1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과태료 및 위법소득을 몰수 당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2013년 7월 1일부터 실시, 제80조]

즉 회사내 한국직원이 F, X, L 등의 비자로 근무하고 있다면 위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이 Z비자(근로허가증)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반드시 실제 근무 고용단위와 근무허가증에 기재된 고용단위가 일치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외국인이 A회사의 소속으로 된 Z비자(근로허가증)를 가지고 B회사에 근무할 경우, 노동행정부 문에서 근로허가증을 몰수하고 공안국에서 거주자격을 취소한 후 추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중국내 취업관리규정(外国人在中国就业管理规定)〉 제29조]

또한 외국인은 근로허가증에 기재된 고용단위가 변경될 경우, 아래 상황에 따라 근로허가증을 변경하거나 다시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중국내 취업관리

규정(外国人在中国就业管理规定) 제24조

- (1) 외국인은 원 비준구역내(예: 북경시 조양구)에 한해서 원 고용단위에서 사직하고 새로 고용단위에 취직하고 또 계속 원래 업무(原职业)에 종사할 경우, 원 발행기관(근로허가증 발행기관)의 기준을 거쳐 근로허가증 변경수속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해당 근로허가증 변경수속은 근로허가증에 기재된 고용단위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므로 그 절차가 매우 간단합니다.
- (2) 외국인은 원 비준구역(예: 북경시 조양구)을 벗어나 다른 구역(예: 북경시 해전구)에 위치한 고용단위로 새로 취직하거나 혹은 원 비준구역을 벗어나지 않았지만 원래 업무(原职业)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다시 근로허가수속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이 때는 근로허가증을 처음부터 다시 발급받아야 하므로 상기처럼 단순한 고용단위 명칭 변경보다 그 절차가 비교적 번거롭습니다.

외국인 근로허가증 신청

Q 외국인이 중국에서 근로허가증과 근무비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외국인이 중국에서 근로허가증을 취득하려면 우선 기업에 취업하여 근로노동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음 아래 절차에 따라 근로허가증과 근무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1) 고용단위 인터넷 ID등록 (5 근무일)
- (2) 외국인 근무허가 통지 신청 (15 근무일)
- (3) 정내에서 단기 근무허가 비자 신청 (10 근무일)
- (4) 외국인 근로허가증 신청 (10 근무일)
- (5) 장기 근무비자 신청 (10 근무일)

이는 북경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각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대표처의 대표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주한중국영사관에 <외국(지역)기업 상주 대표기구 등기본>을 제출하여 근무비자(z签证)를 받고 중국에 들어오실 경우, 상기 (1), (2), (3)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한중국영사관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fmprc.gov.cn/ce/cekor/chn/lsqz/ls_qz/t1673567.htm

https://www.fmprc.gov.cn/ce/cekor/chn/lsqz/ls_qz/t1673557.htm

취업비자 연기시의 주의사항

Q 중국에서 취업비자를 받고 근무하는 외국인이 취업비자를 연기하려면 언제 신청하는 것이 제일 합당하나요? 주의사항은 무엇입니까?

A 취업비자 연기 신청은 비자 만기 2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취업비자를 연기하려면 근로허가증을 우선 연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비자 연기기간은 법적으로 기간 만기 30일 전에 신청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만 근로허가증을 연기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 시간을 포함하여 시간을 넉넉히 2개월로 잡는 것이 제일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중국 내 취업 외국인 관리규정(外国人在中国就业管理规定)〉 제19조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30일 이내에 사업주(고용단위)가 노동행정부문에 고용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 근로허가증 연장수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외국인 취업비자에 대하여 엄격히 심사하고 또 실무상으로 절차가 자주 바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시간을 넉넉히 확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 및 장애인 취업보장금

Q 중국에도 장애인의 의무고용제가 있다고 하던데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중국의 모든 기업은 총직원수의 1.5% 이상(구체적인 비율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결정, 북경의 경우 1.5%)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취업조례(残疾人就业条例)〉 제8조 및 〈북경시 장애인 취업보장금 징수사용 관리방법, 京財稅 2019, 1333호, 2019. 7. 18 시행〉]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사업자라면 장애인 취업보장금(残疾人就业保障金)을 해당지역 지방세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동 조례 제9조).

장애인 취업보장금(한국의 고용부담금) 계산방식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 취업보장금 징수사용관리방법에 대한 통지(残疾人就业保障金征收使用管理办法)〉 제8조]

년간 장애인 취업보장금 납부금액: (전년도 고용업체의 직원수×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규정한 장애인 고용비례-전년도 고용업체에서 실제로 고용한 장애인 수)×전년도 고용업체의 직원의 평균급여.

최근 중국 국가발전위원회,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세무총국 등 6개 부처가 공동으로 장애인 취업보장금 제도 개선방안(残疾人就业保障金制度更好促进残疾人就业的总体方案)을 발표하였습니다(2020.1.1시행).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장애인 부담금(残疾人就业保障金) 완화
 - 장애인 고용비율이 1% 이상의 경우 3년간 납부 부담금의 50% 감면
 - 장애인 고용비율이 1% 미만의 경우 3년간 납부 부담금의 10% 감면
 - 고용업체의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의 경우, 부담금 징수를 잠정 면제
- 2) 장애인 부담금 산정기준(기수) 통일

- 지역별로 다른 장애인 부담금 산정기준(북경시는 당해 기업 전년도 평균임금)을 도시지역 평균임금으로 일원화

3) 파견업체를 통해 장애인을 채용한 경우 기업이 고용한 장애인 수에 포함

만약 장애인 취업보장금을 납부기한 만료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납 금액 이외에 지체 1일당 0.5%의 체납금을 내야 합니다(동 조례 제27조).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지방정부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니, 해당 지역 주무부처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 고용문제

Q 중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싶은데 미성년자로 보이는 아이들이 일을 구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해도 되나요?

A 미성년자도 만16세이상이면,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 제15조에서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고용을 금지한다. 문예, 체육과 특정 공예분야의 단위는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있으나 필수적으로 국가 유관규정에 따라 허가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그 미성년자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未成年人保护法)〉 제28조는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은 국가의 다른 법규상 예외를 제외하고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하지 못한다.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은 국가유관 규정에 따라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한 경우 영업의 종류, 노동시간, 노동강도와 보호조치 등과 관련된 국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과중하고, 유독하며 유해한 일 등 미성년의 심신건강에 위해를 끼칠수 있는 노동 또는 위험한 일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근로자 특별보호규정(未成年工特殊保护规定)〉은 16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의 고용제한 및 고용시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성년자의 특수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국무원령 〈연소자 고용금지 규정(禁止使用童工规定)〉 제2조에서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 단위, 민간기업단위 또는 자영업자는 모두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해서는 안된다. 어떤 단위 또는 개인도 16세가 안된 미성년자의 취업을 소개해서는 안된다.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개인의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종업원으로 고용할 수 있으나 미성년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임신과 해고

Q A양은 B사에 입사한 후 1년만에 사내 결혼으로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B사는 회사 규칙제도에 사내 연애 금지 규정과 입사 후 2년 내 임신금지 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A를 해고하였습니다. B사의 해고조치는 정당한가요?

A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B사의 회사규칙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B사의 해고도 <노동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이유 : <취업촉진법(就业促进法)> 제27조 제3항에서는 노동계약에 여직원의 결혼이나 임신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최고인민법원에서 발표한 <노동분쟁사건 심리를 위한 법률적용에 있어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关于审理劳动争议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법석(2001)14호) 제19조에서는 “회사가 제정하는 기업규칙은 국가의 법률, 행정법규, 정책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사와 같이 여직원의 사내결혼이나 임신을 제한하는 회사규칙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B사의 해고도 <노동계약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보장

Q 저는 중국의 의류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패션디자이너입니다. 얼마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중국에서는 법적으로 출산휴가를 어느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여성근로자 노동보호 특별규정(女职工劳动保护特别规定)> 제7조에 의하면 여성근로자는 98일의 출산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데, 출산 전에 15일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 : 중국법률상 출산휴가란 여성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2012년 새로 발표된 <여성근로자 노동보호 특별규정(女职工劳动保护特别规定)> 제7조에 의하면 여성근로자는 98일의 출산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데, 출산 전에 15일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난산(难产)인 경우 15일이 추가되고, 다태아 출산인 경우 한 영아 당 15일의 출산휴가가 추가됩니다.

상기는 국가의 일반적인 출산휴가 규정이고 각 지방마다 시행하는 출산휴가 규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북경을 예로 든다면, <북경인구산아계획조례(北京市人口与计划生育条例)> 제18조에 따르면, 여성근로자는 위 98일의 출산휴가 외에도 1개월의 생육장려휴가(生育奖励假)를 추가로 향유받을 수 있으며 또 그 배우자(남편)도 15일의 간호출산 휴가(陪产假)를 향유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들도 북경시와 같이 <여성근로자 노동보호 특별규정>을 초과한 출산휴가와 배우자 휴가를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기간 임금은 <여성근로자 노동보호 특별규정> 제8조에 따라 고용단위가 생육보험(보험료 고용단위 부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생육보험에서 지급하고,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단위가 지급합니다.

임신한 직원의 노동계약기한 연장

Q 회사 여직원의 노동계약 기한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결정하고 통지하였다니 해당 여직원이 자신이 임신하였기에 노동계약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었으니 퇴직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A 맞습니다.

〈노동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제42조에 의하면, 고용단위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기, 출산기, 수유기인 경우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5조에 의하면, 노동계약이 만료된 경우라도 여성 근로자가 임신기, 출산기, 수유기에 해당할 경우 노동계약은 당해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연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87조는 이를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경제보상금의 2배를 근로자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근로자가 자진 사퇴를 하거나 또는 수습기간에 채용조건에 부합되지 않음이 증명된 경우, 고용단위의 규정제도를 엄중히 위반한 경우, 심각한 직무상의 과실을 범하고 부정행위를 행하여 고용단위위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 받는 경우, 사기, 협박 수단으로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등은 고용단위에서 여전히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노동계약법 제36조 및 제38조).



일급계산

Q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일급 계산할 때 월급을 30일이 아니라 21.75일로 나누어야 한다는데, 맞나요?

A 맞습니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일급계산을 위한 근무일을 21.75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일급을 계산할 때에는 월 급여를 21.75일로 나누어야 하고, 시간당 임금은 일급을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text{월근무일수} = (365\text{일} - 104\text{일}) / 12 = 21.75$$

$$\text{일급} = \text{월 급여} / 21.75$$

$$\text{시간급} = \text{일급} / 8\text{시간} (\text{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과거에는 토, 일요일(연간 104일) 이외에 법정공휴일 11일을 휴무일로 보아 월근 무일수를 20.83일로 계산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환산하면서 휴무일에서 제외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주말 잔업비 지급

Q 평일에는 매일 7시간씩 근무를 하고, 토요일에는 오전 5시간 동안만 근무하는 경우 주당 40시간은 초과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도 토요일에 근무한 5시간에 대하여 200%의 잔업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A 토요일에 근무를 시킨다고 하여도 이에 대하여 200%의 잔업비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1주일에 최소 1일의 휴일은 보장되어야만 위와 같은 잔업비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노동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제38조).

이유 : <국무원에서 발표한 근로자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国务院关于职工工作时间的规定)> 제3조에서는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1주일 동안의 총 근무시간도 4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일단 동 규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동 규정 제3조에 위반되지는 않더라도 토요일에 근무를 시키는 경우 잔업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이에 대하여 동 규정 제7조 제1항에서는 '국가기관, 사업단위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일로 하는 통일적인 근무 시간제를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기업과 전항에서 규정한 통일적인 근무시간제를 실시할 수 없는 사업단위는 기업의 상황에 맞게 탄력적인 휴일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토요일에 근무를 시킨다고 하여도 이에 대하여 200%의 잔업비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무시간 종합계산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Q 저희는 업무특성상 1주일에 4일간 매일 10시간을 근무하고 3일을 쉬고 있습니다. 1일 8시간은 초과하지만 주당 총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데, 이럴 경우 산업비 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요?

A 앞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주당 총 근무시간은 40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4일×2시간×150%의 산업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무특성상 집중근무가 필요함에도 이와 같이 산업비를 지급해야 한다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노동국의 허가 하에 ‘근무시간 종합계산제’를 채택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탄력근무 시간제와 종합계산근무 시간제를 실시하는 것에 관한 심사비준방법(关于企业实行不定时工作制和综合计算工时工作制的审批办法) 제 3조).

근무시간 종합계산제는 비록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당 총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업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제도입니다.

근무시간 종합계산제에 적용되는 근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동 방법 제5조).

- (1) 교통, 철로, 우편, 해운, 항공, 어업 등 업종의 특수한 작업상황에 따라 연속작업이 필요한 근로자
- (2) 지질과 자원탐사, 건축, 소금생산, 사탕생산, 관광 등 계절과 자연조건의 제한을 받는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3) 기타 근무시간 종합계산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

또한 근무시간 종합계산제는 회사에서 관련 노동부문에 비준을 받고 진행해야 되며 그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북경시 종합계산 근무시간제와 탄력근무 시간제에 대한 행정허가실시 규정 (北京市企业实行综合计算工时工作制和不定时工作制行政许可实施规定)〉 제3~7조].

- (1) 회사 영업집조 주소지 구, 현의 노동보장행정부문 (区、县劳动保障行政部门) 에 신청서류를 제출
- (2) 노동보장행정부문은 신청서류를 받은 후 해당 서류에 문제가 없을 경우, 5일 내에 수리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달
- (3) 노동보장행정부문은 신청서류를 받은 후 10일내에 종합계산제에 대한 비준 여부를 결정하며, 특수상황 발생 시, 10일 연장 가능

노동보장행정부문에서 종합계산제에 대해 비준 동의할 경우, 그 기간은 1~3년이지만, 회사에서 신청한 업종에 변함이 없을 경우 기간을 두지 않고 장기적으로 시행 가능 함. [〈북경시 종합계산근무 시간제와 탄력근무 시간제에 대한 방법(北京市企业实行综合计算工时工作制和不定时工作制的办法)〉 제16조].

이처럼 기업은 근무시간 종합계산제를 통해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고 불 필요한 잔업비 지급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개수불제(성과급제) 임금

Q A는 입사하면서 개수불제 임금을 채택했습니다. 회사의 호황기에는 주문량이 많아 임금을 많이 받았었지만, 불황으로 주문이 급감하자 A의 급여는 800위안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에 A는 현지 최저임금이 2,200위안 (북경시 2019년기준) 이고, 불황으로 인한 주문 급감은 본인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A 개수불제(計件) 임금을 채택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설명: 우선 개수불제 임금이란 근로자가 생산한 합격품의 수량이나 일정 개수의 완성품에 대해 사전에 규정한 생산개수 단가를 계산 지급하는 임금방식입니다.

중국의 상당수 공장들은 이러한 임금모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성과와 임금을 연계시킴으로써 생산효율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능력에 따라 더 많은 수입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개수불제 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더라도 최저 임금을 하회해서는 안됩니다. <최저임금규정(最低工资规定)> 제12조 제2항에서는 “개수불제 또는 인센티브제 임금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노동기준량의 전제 하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기준을 하회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는 현지 최저임금인 2,200위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직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 가능 여부

Q 저의 과실로 회사가 5,000위안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노동계약서에 약정한 “근로자의 책임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만큼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한다.”는 조항에 따라 매달 임금에서 1,000위안씩 5개월간 공제할 것이라는 통지를 해 왔습니다. 회사의 이런 행위가 합법적인 것인가요?

A 공제 부분이 매월 임금의 20%를 초과하지 않으며 공제 후 임금이 당해 지역의 최저임금 기준에 부합된다면 회사의 공제행위는 합법적이라 할 것입니다.

설명 : 〈임금지불 잠정규정(工资支付暂行规定)〉 제16조는 ‘근로자 본인의 잘못으로 회사에 경제손실을 가져온 경우, 고용단위는 노동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경제손실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경제손실의 배상은 근로자 개인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단, 매월 공제한 부분은 근로자 당월 임금의 20%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며, 만약 공제 후의 임금이 당해 지역의 최저임금 기준에 미치지 아니하면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노동계약서에서 직원의 책임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회사는 노동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서 직접 손해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 부분이 매월 임금의 20%를 초과하지 않으며 공제 후 임금이 당해 지역의 최저임금 기준에 부합된다면 회사의 공제행위는 합법적이라 할 것입니다.

연차 유급휴가와 근무연수의 계산

Q 저는 여행을 가기 위해 회사에 연차유급휴가 신청을 하였는데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일했던 근무연수까지 합치면 3년이라 연차유급휴가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누구의 주장이 맞나요?

A 회사는 귀하가 기존에 2년 이상을 근무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보험, 개인소득세 납부, 계약서, 이직증명서 등을 토대로 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설명 : <근로자 연차 유급휴가조례(职工带薪年休假条例)> 제2조는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 민영 비기업단위, 근로자를 고용한 개체공상호(个体工商户, 개인사업자)등 단위의 근로자가 연속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단위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혜택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연차 휴가기간에 정상적 근무기간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실시방법(企业职工带薪年休假实施办法)> 제4조에 의하면, ‘연차 휴가일수는 근로자의 누계 근무일에 의해 확정된다. 근로자가 동일 또는 서로 다른 고용업체에서의 근무기간 또는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근무기간으로 간주하는 근무기간은 전부 누계 근무일수로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조례(职工带薪年休假条例)> 제3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누계 근무일수가 1~10년일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5일이고; 10~20년일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10일이며; 20년이상일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15일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귀하의 주장이 위 규정들에 부합하므로 회사는 귀하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는 귀하가 기존에 2년 이상을 근무하였다는 것을 증

명할 수 있는 보험, 개인소득세 납부, 계약서, 이직증명서 등을 토대로 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한 근로자가 A회사에서 6년 근무하고 퇴사한 후 2년동안 집에서 놀다가 다시 B회사에 5년간 근무한 경우에도 총 누계 근무일수가 11년이 되므로, 상기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10일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즉 누계기준 산정이 꼭 연속적일 필요가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평일 대체휴무 잔업수당 지급여부

Q 생산직에서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주말근무를 배정하고 평일인 월요일과 화요일에 대체휴무를 하라고 합니다. 회사의 행위는 합법적인가요? 이 경우 회사는 200%의 주말 잔업수당을 주어야 되지 않나요?

A 회사의 행위는 합법이며, 회사는 잔업수당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 제44조는 '1) 평일에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통상 임금의 150% 이상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2) 휴일에 근로자를 근무시키고 대체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통상 임금의 200% 이상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3) 법정휴가일에 근로자를 근무시키는 경우 통상 임금의 300% 이상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을 관철하여 집행하는 것에 대한 몇가지 의견(关于贯彻执行〈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若干问题的意见)〉에서는 휴일에 근로자를 근무시킬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동등한 시간의 대체휴가를 주어야 하며, 대체휴가를 줄 수 없을 경우에는 통상 임금의 200% 이상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직원에게 주말근무를 하게 하는 경우는 마땅히 통상 임금의 200%의 잔업수당을 지불해야 하나 평일로 동등한 시간의 대체휴가를 쉬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잔업수당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사고 발생시 회사 및 책임자에 대한 처벌

Q 중국에서 약기를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현장 직원이 기관지가 좋지 않다고 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왔는데, 회사에 직업병 검사를 신청하였습니다. 검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면도 있고, 작업장 내 분위기도 걱정되기도 하여, 어떻게 결정하여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A 직업병 환자 또는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있는 경우 직원에 대하여 직업병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설명 : <직업병예방치료법(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 제50조에 의하면 기업에서 직업병 환자 또는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적시에 현지 위생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 동법 제55조에 의하면 기업은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적시에 진단을 받도록 해야 하고 진단 및 관찰기간 동안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할 수 없습니다.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환자의 진단, 관찰기간 내의 비용은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동법 제57조에 의하면 진단을 거쳐 직업병으로 확정되면 산업재해보험으로 치료비용을 처리합니다.

또 동법 제72조에 의하면 기업에서 규정에 따라 직업병환자 또는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환자에 대하여 진단 및 치료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경고 및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 영업허가 취소 등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직원에 대하여 직업병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산업재해보험의 적용범위

Q 저희는 일반 기업이 아니라 민간 차원의 한중 교류확대를 위해 설립한 단체입니다. 저희와 같은 단체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면 산업재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A 기업이 아닌 민간단체라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설명 : 개정 전의 <산업재해보험조례(工傷保險條例)> 제2조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내의 각종 기업, 피고용자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본 조례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사업장의 전 근로자 또는 피고용자를 위해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개정 조례에서는 산업재해보험의 적용범위를 기존의 기업과 개인사업자 외에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간이 설립한 비(非)기업단위, 기금회, 법률사무소, 회계사무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아닌 민간단체라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산업재해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어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상금 산정

Q 사회보험료 납부시 기준 급여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였는데,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여 장애보장금 등 공상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장애보상금 등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A 공상으로 받게 되는 보상금 기준은 산업재해보험조례(工傷保險條例)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공상을 입어 치료가 끝난 후 장애가 있어 노동능력에 영향이 있을 경우 마땅히 노동능력 상실율을 감정해야 합니다.

노동장애등급은 10등급으로 나누고 1급이 가장 무겁고 10급이 가장 가볍습니다.

장애보상금은 국가의 산재보험기금에서 장애등급에 따라 일시불로 지불하는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1급 장애는 27개월의 본인 월평균 급여
- (2) 2급 장애는 25개월의 본인 월평균 급여
- (3) 3급 장애는 23개월의 본인 월평균 급여
- (4) 4급 장애는 21개월의 본인 월평균 급여
- (5) 5급 장애는 18개월의 본인 월평균 급여
- (6) 6급 장애는 16개월의 본인 월평균 급여
- (7) 7급 장애는 13개월의 본인 월평균 급여
- (8) 8급 장애는 11개월의 본인 월평균 급여
- (9) 9급 장애는 9개월의 본인 월평균 급여
- (10) 10급 장애는 7개월의 본인 월평균 급여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본인 월급이란 산재를 입은 직원이 사고를 당하기 직전 또는 직업병에 걸리기 직전 12개월의 평균급여를 말합니다. 본인 월평균 급여가 해당 지역 직원 월평균 급여의 300%보다 높을 경우 해당 지역 직원 월평균 급여의 300%로 계산하고, 본인 월평균 급여가 당시 월평균 급여의 60%보다 적을 경우 해당지역 월평균 급여의 60%로 계산합니다.

단,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료 납부시, 근로자의 실제급여보다 낮게 신고했으므로, 장애보상금은 상기 기준보다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서 사회보험료를 낮게 신고함으로 인해 낮게 산정된 장애보상금에 대해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는 장애상황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일시불 산재의료 보조금 및 일시불 장애인취업보조금 등 기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규정합니다.

산업재해 근로자의 의료대우 범위

Q 저는 회사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중 과로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는 어떠한 의료대우를 받을 수 있나요?

A 산재치료에 필요한 접수비, 입원비, 치료비, 의약비 및 치료 중 지출된 교통비 등을 전액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기준을 얻어 타지에서 치료받는 경우 이에 따른 교통비, 숙식비는 해당기업의 출장기준에 따라 청구하면 됩니다

설명 : <산업재해보험조례(工伤保險條例)> 제30조, 제32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산업재해 발생시 다음과 같은 의료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필요한 의료비용이 산업재해보험 진료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 약품목록, 산업재해보험 입원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장기금에서 지급한다.

근로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산업재해의 경우 그의 식대보조비는 산업재해보장기금에서 지급한다.

의료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담당기구의 동의를 얻은 후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필요한 교통비, 숙식비는 산업재해보장기금에서 처리하고, 지급 기준은 관할지역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준에 따른다.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은 근로자가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 규정에 부합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는 산업재해보장기금에서 지급한다.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은 근로자는 노동능력감정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일상생활 또는 취업에 필요한 의지(義肢), 교정기, 의안(義眼), 의치(義齒) 및 맞춤형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장착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규정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보장기금에서 지급한다.

또한 근로자가 산업재해 치료기간에 산업재해 범위 이외의 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치료비는 의료보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병원과 같이 많은 비용이 청구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경우 산업재해보장기금의 자체 기준에 의해 치료비 지급이 일부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치료를 받을 병원을 선택하기 전에 산업재해보장기금의 치료비 지급기준에 대해 사전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 치료기간 중 임금

Q 회사에서 근무중 산업재해를 당하여 현재 병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산업재해 치료기간 중 근로자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산업재해 치료기간 중 일정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매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설명 : 산업재해 치료기간이란 근로자가 근무 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려 업무를 잠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 회사에서 정상적인 임금을 계속 지급하는 기간으로, 산업재해 치료기간은 지정된 산업재해 치료병원 또는 의료기관이 의견을 제출하여 노동능력 감정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관련 기업이나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통지합니다.

중국 〈산업재해보험조례(工伤保险条例)〉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중지에 따른 임금지불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지만 상해가 심하거나 특별한 상황에는 노동능력 감정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업무중지에 따른 임금지불 기간에는 정상적인 임금 복지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회사에서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험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인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업무중지 기간(停工留薪期)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계속해서 산업재해 치료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스스로 거동하기가 힘들어 업무중지에 따른 임금지불 기간에 간호가 필요한 경우 회사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산업재해 치료기간 중 일정 기간 동안 정상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매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퇴근 교통사고의 공상 인정 여부

Q 한국인 김모는 북경에서 회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김모는 퇴근 후 어머니 집에 저녁 먹으러 운전을 하고 가던 도중 자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 조사에서 상대방이 전부의 책임을 지며, 김모는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김모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A 김모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험조례(工伤保险条例)〉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출퇴근 도중 본인의 주요책임이 아닌 교통사고 또는 철도교통, 페리여객, 열차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마땅히 산업재해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산업재해보험 행정안건 심리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工伤保险行政案件若干问题的规定)〉 제6조에서는 ‘사회보험행정부 문에서 아래 상황을 ‘출퇴근 도중’이라 인정할 경우 인민법원에서는 마땅히 지지하여야 한다. (1) 합리적인 시간 내에 업무지와 주소지, 경상거주지, 근무소속의 합리적 노선에서 출퇴근 중, (2) 합리적인 시간 내에 업무지와 배우자, 부모, 자녀 거주지의 합리적인 노선에서 출퇴근 중, (3) 일상 업무생활에서 필요한 활동에 종사하고 합리적인 시간과 합리적 노선에서 출퇴근 중, (4) 합리적인 시간 내에 기타 합리적인 출퇴근 중.’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모는 퇴근길에 부모님 집에 저녁 먹으러 가던 도중 김모의 책임이 없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지하철, 버스 등을 이용(자가용 제외)하여 출퇴근하다가 다친 경우도 산재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중국사회보험 가입의무

Q 저는 현재 한국 본사에서 파견되어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중국에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도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A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에 따라 중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중인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중국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파견 외국인의 경우 양로보험과 실업보험은 한·중 양국 정부가 체결한 사회보험면제협정에 따라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유 :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인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 제97조에서는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취업하는 경우에는 본법의 규정을 참고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근거하여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는 <중국경내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이 사회보험에 가입할 것에 관한 잠행방법(在中国境内就业的外国人参加社会保险暂行办法)>을 발표하고,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임시방법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중인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중국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한·중 사회보험협정이 체결되어 2013년 1월에 발효되어,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중국의 양로보험 및 실업보험이 면제됩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파견된 근로자는 파견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중국 양로보험과 실업보험이 면제됩니다. 다만, 근무수요로 기준을 거쳐 면제기한을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특수상황일 경우, 기준을 거쳐 면제기한을 3년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현지 채용 근로자는 고용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중국 양로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고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5년간 중국 양로보험료가 면제되나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양로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중국 양로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한중 사회보험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중국 사회보험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파견기간이 연장되었거나 현지 채용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가입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청방법)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제협력센터로 제출(EDI, FAX 02-3485-9807, 우편)
- (구비서류) 한-중 사회보험협정에 의한 가입증명 발급신청서 1부
(다운로드 경로 : www.nps.or.kr 연금정보) 자료실'중국'검색)
 - 파견근로자의 경우 : 파견증빙자료, 고용보험가입확인서류
 - 현지채용자의 경우 : 고용계약서
- (문의처) T. 02-2176-8733, 8727, 홈페이지

한-중 사회보험협정에 따른 면제대상 보험과 인적범위, 면제기간

| 대상 | 양로 | 의료 | 실업 | 공상 | 출산 | 면제기간 |
|----------------|----|----|----|----|----|--------|
| 파견근로자 (주재원) | ○ | × | ○ | × | × | 최대 13년 |
| 현지채용자 | ○ | × | ○ | × | × | 5년 |

○ : 면제가능, × : 면제불가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자

Q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중국 내 외국인 취업자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포함되는 건가요?

A 중국 내에서 취업 중인 외국인이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취업한 외국인을 말합니다.

설명: <중국 내 외국인 취업자 사회보험가입 임시방법(在中国境内就业的外国人参加社会保险暂行办法)>(이하 '임시방법'이라고 함) 제2조에서는 '중국 내 외국인 취업자라 함은 법에 따라 외국인 근로허가증, 외국전문가증, 외국상주기자증 등 취업증명서 및 외국인 거류증명서를 취득한 자와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취득하고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한 非중국 국적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증명서 없이 중국 내에서 불법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출입국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의 위반 여부는 둘째 치고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의 의무대상자는 아닙니다.

또한 유학비자를 소지한 유학생, 장기출장비자를 소지한 출장자, 중국내 근로자의 동반 가족 등도 사회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양로보험 가입면제

Q 저는 현재 중국의 외상투자기업에 현지 채용자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본사에서 파견 나오신 주재원분들은 중국 양로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현지 채용자들은 면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A 중국에서 취업중인 현지채용자도 한국의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면 중국의 양로보험 가입을 일정기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설명: 2012년12월28일에 시행된<인력자원사회보장부 관공청에서 중한사회보험 협정과 협의서를 집행할 것에 관한 통지(人力资源社会保障部办公厅关于实施中韩社会保险协定和议定书的通知)>(이하 '통지')에 의하면, 파견근로자(주재원) 및 현지채용자가 한국의 국민연금이 가입하고 있을 경우, 중국의 양로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주재원) 및 현지채용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양로보험 가입면제용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근무지 관할 중국의 사회보험 센터에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 양로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로보험의 면제기간은 파견근로자와 현지채용자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의 중국 양로보험 가입 면제기간은 근무지 소재 사회보험센터에 국민연금이 발급한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최장 13년입니다. 최초 5년의 파견기간에 대해서는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 이후의 파견기간에 대해서는 한국의 국민연금공단과 중국의 사회보험관리센터간 협의에 의해 파견기간이 연장됩니다.

반면 현지채용자의 양로보험 면제기간은 가입증명서를 제출한날로부터 5년으로

파견근로자와 달리 5년을 경과하더라도 추가연장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중국의 사회보험 가입을 면제받게 되는 경우,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만 면제되는 것인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뿐만 아니라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도 모두 면제가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고용시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및 절차

Q 우리나라 진출기업이 중국 근로자를 고용할 때 부담하는 사회보험은 어떠한 것이 있고, 보험료 및 절차는 어느정도 되나요?

A 중국은 양로(养老), 의료(医疗), 실업(失业), 공상(工伤), 생육(生育) 등 5대 사회보험과 주택공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9년 말부터는 중국은 생육보험을 의료보험에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음)

우선 양로보험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시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城镇职工基本养老保险), 근로자가 아닌 기타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 주민 기본양로보험(城镇居民基本养老保险), 그리고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 주민 기본양로보험(农村居民基本养老保险) 등 3가지 종류로 세분됩니다.

의료보험은 우리의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로보험과 마찬가지로 도시근로자 기본의료보험(城镇职工基本医疗保险),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城镇居民基本医疗保险) 및 신형농촌합작 의료보험(新型农村合作医疗保险)으로 구분됩니다. 이중 외국인 취업자가 가입해야 할 보험은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과 도시근로자 기본의료보험입니다.

다음으로 실업보험과 공상보험은 각각 우리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산보험(생육보험)은 여성 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 해당 여성에게 출산급여와 출산의료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회보험입니다(우리나라는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비용은 고용보험, 출산의료비용은 의료보험에서 지원). 출산보험의 경우 수급자가 출산여성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근로자만 가입대상인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만, 남성 근로자 역시 출산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입니다. 참고로 2019. 3. 15 중국정부는 2019년말까지 생육보험을 의료보험에 통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중국 (사회보험법(中华人民共和国保險法))에 의하면, 회사가 설립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회사는 영업집조를 지참하여 당지 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 사회보험등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한 날로부터 30일내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등기를 해야 합니다. (동법 제57조, 제58조)

사회보험 주관부서는 중국 각 지방 인력자원과사회보장국 입니다. 또한 중국은 각 지방마다 시행하는 사회보험료 납부기수와 납부비율이 다르며 2019년도 북경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북경시 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 사이트http://rsj.beijing.gov.cn/csbiz/important/news/201912/t20191218_1_264460.html)

사회보험료 납부 기수(基數)

| 대상 | 양로 | 의료(생육) | 실업 | 공상 |
|---------------|---------|---------|---------|---------|
| 사회보험료 최저 납부기수 | 3613위안 | 5557위안 | 3613위안 | 4713위안 |
| 사회보험료 최고 납부기수 | 23565위안 | 27786위안 | 23565위안 | 23565위안 |

사회보험료 납부비율

| 대상 | 양로 | 의료 | 실업 | 공상 | 생육 |
|----|-----|--------|------------------------|-----------|------|
| 기업 | 16% | 10% | 0.8% | 0.2%~1.9% | 0.8% |
| 개인 | 8% | 2%+3위안 | 0.2%(도시호구) 없음(농촌호구) | 없음 | 없음 |

(주택공적금 관리조례(住房公積金管理條例))에 의하면, 회사가 설립된 날로부터 30일내에 회사는 당지 주택공적금관리센터에 주택공적금 납부등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해당 납부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20일내에 해당 근로자를 위해 주택공적금 계좌를 설립해 주어야 합니다. (동법 제14조)

주택공적금 주관부서는 중국 각 지역의 주택공적금관리센터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기 동등한 금액으로 주택공적금을 납부해야 되며 그 납부비율은 해당 근로자의 전년도 1년간 평균급여의 5%로 보다 낮아서는 않습니다. (동법 제18조)

중국은 각 지방마다 시행하는 주택공적금 납부기수와 납부비율이 다르며, 2019년 도 북경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공적금 납부 기수(基數)

북경시 주택공적금 최저 납부기수는 2200위안이고 최고 납부기수는 27786위안입니다.

2. 주택공적금 납부비율

북경시 주택공적금 납부비율은 5~12% 입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경영상황에 따라 해당 납부비율 범위내에서 임의로 납부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미가입, 연체 및 허위신고 등에 대한 처벌

Q 중국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부를 연체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사용자가 사회보험 가입과 관련된 절차(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담당기관은 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만일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고용기관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을 부과받게 되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보험 담당자에게도 별도로 500위안 이상 3,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사회보험법(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 제84조).

사용자가 상기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 등록절차는 마쳤으나 사회보험료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험 담당기관은 기한부 납부를 명하는 것과 동시에 체납 1일당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5/10,000를 체납금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만일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납부를 지연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체납금 부과와는 별도로 체납 액수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동법 제86조).

아울러 사용자가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근로자의 임금 혹은 근로자 수를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들 역시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회사와 상호 협의하에 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 노동관서에서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허위로 신고한 임금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노동보장감찰조례(劳动保障监察条例)〉 제27조 제1항).

또한 사용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근로자가 산재가 발생하거나 병에 걸려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모든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산재보험조례(工伤保险条例)〉 제62

조. [〈북경시기본의료보험규정(北京市基本医疗保险规定)〉 제58조].

또한, 노동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제38조는 사용자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장기간 연속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사회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 담당기관은 최근 1~3년동안의 사회보험료가 아닌 미 납부된 사회보험료 전부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용기관에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충납부, 체납금과 벌금 부과 외에도 근로자의 모든 산재보험, 의료보험손실을 부담해야 되므로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보험 미가입 약정의 효력

Q 근로자가 낮은 임금을 보충하고자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나중에 이로 인해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추후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A 중국에서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직원에게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험법(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의 규정에 의하여 양로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생육보험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사후에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사인을 하더라도 이는 〈사회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무효이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후에 후회하여 사회보험 관련 행정기관에 고소를 하면 사회보험 관련 행정기관에서는 기업에서 사회보험료를 보충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상당하는 체납금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계약 해지 요건

Q 근로자는 어떤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회사와의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 <노동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제38조는 '고용단위가 다음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① 노동계약의 약정에 따른 노동보호와 근로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②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③ 법정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④ 고용단위의 규장제도(취업규칙)가 법률 법규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 ⑤ 본법 제26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여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노동계약법> 제26조 제1항 '사용자가 사기·협박의 수단 또는 위급한 상황을 이용하여 고용자가 진실한 의사를 위배하는 상황 하에서 노동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
- ⑥ 그 밖에 법률 기타 행정법규에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⑦ 사용자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을 강요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신체상 안전에 위협한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특히 사용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신체상 안전에 위협한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업무내용 변경과 계약 해지

Q 2011년 B사에 판매경리로 고용된 A는 하북성 지역의 마케팅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후 서부지역으로의 판로확장을 모색하던 B사는 A에게 사천성 지역 마케팅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A는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B사가 일방적으로 업무조정을 했다는 이유로 노동계약 해지 및 경제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A 노동계약의 변경을 기반으로 한 A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 : <노동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제17조에서는 노동계약 체결시 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업무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계약서에 기재된 업무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35조).

따라서 업무내용을 너무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이후 이를 변경하기 위해 근로자와 하나하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게 되고, 반대로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A의 업무내용을 변경한 B사의 조치는 회사의 경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내부관리 행위로 노동계약의 변경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큼니다.

만일 노동계약서에 '판매경리가 아닌 '하북성 담당' 판매경리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위와 같은 회사의 일방적인 업무내용 변경은 노동계약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노동계약의 변경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고 탄력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는 노동계약 체결시 업무내용을 가능한 넓게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회사의 징계해고 요건

Q 저희 회사 창고관리 직원을 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해고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미 지급된 급여를 산정해 주고 직원을 해고하려고 하는데, 직원 본인은 8년간 근무를 했으니 8개월분 급여를 경제보상금으로 달라고 합니다. 회사는 해당 직원이 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일방적인 강제해고)를 할 수 있는지요?

A 본 사안과 같은 경우 우선 직원의 관리부실이 '중대한 직무상 과실(严重失职)' 여부를 판단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직원의 관리부실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었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회사는 아래 사항중 하나에 부합되는 경우, 징계해고를 할 수 있으며 직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제 39조].

1. 기업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수습기간에 고용조건에 맞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3. 중대한 직무상 과실(严重失职) 또는 사리추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4. 근로자가 동시에 다른 사용자와 노동관계에 있어 그 회사의 업무 완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5. 노동계약서가 무효인 경우
6. 근로자가 형사책임을 추궁받는 경우

만약 직원의 관리부실행위로 인해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야기시켰을 경우, 회사는 상기 법률규정에 따라 징계해고를 할 수 있으며 경제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관리부실이라 하여 반드시 징계해고사유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에 근거하여 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직원의 관리부실이 경하고 또 회사에 끼친 손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징계해고를 할 경우, 위법한 해고에 해당되어 2배의 경제보상금(근속연수가 매1년마다 1개월 임금, 6개월 이상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임금,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일 경우 15일분 임금을 지급해야 됨)을 지급해야 할 리스크가 있습니다.(동법 제47조, 제48조, 제87조)

고정기한 계약 연속 2회 체결 및 무기한 노동계약 해지

Q 고정기한 계약을 연속 2회 체결할 경우 3번째부터는 노동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A 예, 맞습니다.

설명 : 근로자가 회사에서 10년 이상 연속근무 또는 고정기간 노동계약을 연속 2회 체결 후 근로자가 무기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면 회사는 제3회부터는 반드시 무기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즉 고정기간 노동계약을 연속 2회 체결 후, 근로자가 무기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원할 경우, 자동적으로 제3회째 노동계약은 무기한 노동계약이 됨으로 제2회 노동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기한 노동계약, 즉 종신 고용적인 성격을 지닌 이 계약을 체결하면 절대 그 사람을 해고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정사유가 발생하거나 쌍방합의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무기한 노동계약은 '계약의 종료를 정하지 아니한' 계약이기는 하나 기업규칙 등의 중대한 위반, 업무불능 또는 불감당, 정리해고가 필요한 경우 등의 법정사유가 발생하거나 쌍방합의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하여도 기업규칙 위반, 근로자 과실, 무능, 형사책임 추궁 등의 경우에 중도해지가 가능하므로 법률의 범위 내에서 기업규칙상의 징계사항, 업무평가 등 회사의 관련 규정을 꼼꼼히 작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수습기간 중인 직원의 해고

Q 회사경영의 악화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해져 우선적으로 수습기간 중인 A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A는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경제보상금을 요구하는데 합리적인가요?

A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는 고용조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만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설명: 많은 기업들이 수습기간 내에 있는 직원은 언제든지 무조건 해고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제39조 제1항에서는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는 고용조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만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그에 대한 해고는 위법한 것이며, 그 결과 경제보상금 지급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수습기간 중 고용조건에 미 부합됨을 이유로 노동계약을 해지 할 경우에는

- ① 고용조건의 작성 및 근로자와 약정서 체결
- ② 고용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할 입증자료 확보
- ③ 근로자 본인에 대한 노동계약 해지통지서 송달 및 해고 이유 설명 등의 절차를 거쳐야 적법한 해고로 경제보상금 지급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해고

Q 시간제 근로자도 노동관계 종료시 경제보상금을 주어야 한다고 하던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시간제 근로자는 노동관계가 종료되더라도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 시간제 근로자(非全日制用工)는 매일 평균 근무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매주의 누적 근무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노동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제68조).

시간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구두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수습기간은 약정하지 못합니다(동법 제69조, 제70조).

노동계약의 종료는 쌍방 당사자가 수시로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임금은 15일마다 지급해야 하며 노동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전일제 근로자와는 달리 사용자가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동법 제71조).

즉 시간제 근로자는 노동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종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와 상관없이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무태만에 따른 해고

Q 외부 영업을 맡고 있는 직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출퇴근 관리도 되지 않고, 회의 소집 등에도 불성실하게 응하는 경우, 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A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제39조는 직원이 규장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직원에 대한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규장제도 등을 잘 작성하여 업무시간, 업무제도, 노동규칙, 상벌제도 등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직원이 근무 중 직무태도가 불량할 경우 회사에서는 직원관리제도 중의 상벌제도에 따라 경고, 면직 등의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약법 제4조는 사용자의 규장제도 수립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노동보수, 업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보험복리, 직원교육, 노동규율, 장려, 징계 등 근로자의 이익에 직접 연관되는 규장제도 또는 중대사항을 제정, 수정, 또는 결정할 경우, 마땅히 종업원대표대회 또는 전체직원의 토론을 거쳐 방안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직원대회 또는 직원대표와 평등협상하여 확정하여야 합니다.

또 회사에서는 근로자 이익에 직접 연관되는 규장제도와 중대사항을 공시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규장제도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절차적 합리성뿐 아니라 규장 내용이 노동법에 부합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규장제도가 근로자 또는 공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일반 사회 상규상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 그 규장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만일 회사에서 직원이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그에 대하여

교육을 하거나 또는 업무를 조정할 수 있고 교육을 거쳐 또는 업무 조정 후에도 계속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제40조에 의하여 아래 상황중의 하나가 발생할 경우 고용단위는 30일 전에 서면형식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별도로 근로자에게 1개월 월급을 지불 후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근로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비 산재로 부상을 입고 규정된 치료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원래의 기능직에 종사할 수 없고 고용단위가 새로 배치하는 직무에도 종사할 수 없는 경우
- (2) 근로자가 업무수행능력이 없고 기능강습 이후 또는 직종을 다시 배치하여도 여전히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3) 노동계약 체결 당시에 의거하였던 객관적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고 고용단위와 근로자가 협상을 통해 노동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

위와 같이 고용단위에서는 사전에 규장제도 등을 자세히 하는 것이 종업원 관리 측면과 근로자와의 우호적 관계 보장 측면에서 모두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정리해고의 절차와 방법

Q 기업경영이 어려워져 정리해고를 통해 불필요해진 인력을 감원하려고 계획 중인데, 합법적인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와 유의사항은 어떤가요?

A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상황 중 하나로 기업경영이 어려워져 감원하려는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거나 또는 20명 미만이지만 기업 근로자 총수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기업은 30일 전에 공회 또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공회 또는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근로자 감축 방안을 노동행정부서에 보고하고 근로자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1) 기업파산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 재생을 행하는 경우
- (2) 생산경영에 중대한 곤란이 발생한 경우
- (3) 기업의 생산전환, 중대 기술혁신 또는 경영방식 조정으로 노동계약의 변경을 행한 후에도 인력감원이 필요한 경우
- (4) 기타 노동계약 체결 당시의 객관적인 경제상황에 중대한 변화발생으로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만 근로자 감축 시에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우선 기업에 남기고 감축대상을 선정해야 합니다.

- (1) 해당 기업과 비교적 긴 기간의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2) 해당 기업과 무고정기한의 노동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3) 가족 중 기타 취업자가 없고 노인을 공양하여야 하거나 미성년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근로자

기업은 근로자를 감축한 후 6개월 내에 다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감축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 동등한 조건에서는 감축한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여야 합니다.

경제보상금 지급 사유 및 지급액

Q 노동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면,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주어야 한다는데, 맞나요? 또한 경제보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고정계약 만료시 누가 재계약을 거부했는 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보상금을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기존조건 또는 그 이상을 제시하고 재계약을 원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제보상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계약 종료 및 해지와 이에 따른 경제보상금 지급 여부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계약 종료 사유별 경제보상금 지급 여부

| 유형 | 구체적 요건 | 법적 근거 | 지급 |
|------------------|----------------------|---------------|----|
| 계약종료 (기간만료) | 사용자가 재계약 거부 | 노동계약법 제46조 | 필요 |
| | 근로자가 재계약 거부 | 노동계약법 제46조 | 불요 |
| 계약 종료 (자동 종료) | 양로보험 대우 항유 | 노동계약법 제44조 2항 | 불요 |
| | 근로자 사망 또는 실종 | 노동계약법 제44조 3항 | 불요 |
| | 사용자의 파산 | 노동계약법 제44조 4항 | 필요 |
| | 사용자 영업집조 취소 또는 사전 해산 | 노동계약법 제44조 5항 | 필요 |
| 합의해지 | 사용자 제기 | 노동계약법 제36조 | 필요 |
| | 근로자 제기 | 노동계약법 제36조 | 불요 |
| 근로자의 일방적 해지 | 자의적 퇴직 | 노동계약법 제37조 | 불요 |
| | 사용자 귀책사유 | 노동계약법 제38조 | 필요 |

| | | | |
|-----------------|---------------------------|----------------------------------|----|
| 사용자의 일반적 해지 | 징계처분 해고 | 노동계약법 제39조 | 불요 |
| | 근로자비과실성 해고 | 노동계약법 제40조 | 필요 |
| | 인력감원 | 노동계약법 제41조 | 필요 |
| 의료기간 만료 후 해지 | 의료기간 만료 후에도 원치되지 않은 경우 | <노동법>상 노동계약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배상방법 | 필요 |

한편, 경제보상금을 산정하는 월임금은 근로자가 취득해야 할 모든 임금을 가리킵니다. 즉 노동계약 해지 또는 종료하는 날로부터 직전 1년간의 모든 수익(월임금, 상여금, 세급, 수당 및 교육비보조, 식대보조, 교통보조 등 각종 보조비용 포함)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경제보상금을 산정하는 월임금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또 노동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전 12개월의 근로자 평균임금이 당해 지역의 최저임금 표준보다 낮을 경우, 당해 지역의 최저임금표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근로자의 근속년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실제 근속년수에 따라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보상금의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근로자의 근속년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 (1)근로자가 매1년 근무시, 1개월 임금기준으로 경제보상금을 지급
- (2)근로자가 6개월이상 1년미만 근무시, 1개월 지급
- (3)근로자가 6개월미만 근무시, 0.5개월 임금 지급

예를 들어, 한 근로자의 근속년수가 총 5년 4개월일 경우, 사용자가 지급해야 되는 경제보상금은 5.5개월 임금 입니다. 만약 근속년수가 총 5년 8개월일 경우, 경제보상금은 6개월 임금 입니다.

여기에서 유의하실 점은 근로자의 월임금이 사용자 소재지 구역내 작년도 직원의 평균임금의 3배를 초과할 경우, 경제보상금은 최고로 12개월 임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의 경제보상금

Q 한국인 A는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근무조건이 더 좋은 요식업체로 이직하여 약 1년여 넘게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요식업체 근무기간 동안 전 직장에서 만든 외국인 근로허가증을 가지고 근무를 하였는데요. 얼마전 갑자기 회사로부터 해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경우 A는 경제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A씨와 요식업체 간의 근로관계는 <노동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의 보호를 받는 적법한 근로관계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경제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설명: <외국인의 중국내 취업 관리규정(外国人在中国就业管理规定)> 제8조에 따르면 중국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근로허가증”을 발급받아야만 적법한 근로관계로 인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의 A씨와 같이 외국인 근로허가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만든 것이 아닌 이상 현재 근무하는 회사와 적법한 근로관계를 맺고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고 불법근무로 간주되게 됩니다. 그 결과 A씨와 요식업체 간의 근로관계는 <노동계약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관계가 아닌 일반 민사법규의 적용을 받는 노무관계로 인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A씨는 회사로부터 해임 당하더라도 <노동계약법>에 근거한 경제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직장에서 아직 받지 못한 임금에 있을 경우에는 일반 민사법규에 따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노동중재의 신청절차, 비용, 기간 등

Q 부당해고 관련하여 중국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절차, 비용, 기간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노동분쟁 조정중재법(劳动争议调解仲裁法)> 제28조에 의하면 신청인은 노동계약 이행지 또는 기업 소재지 노동중재위원회에 서면 중재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① 근로자의 성명, 성별, 연령, 직업, 근무지와 주소, 기업의 명칭 및 주소와 법정 대표자의 성명, 직무 ② 중재신청사항 및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③ 증거와 증거 출처, 증인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노동중재는 신청인이 신청인의 이익이 침해 당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즉 본 사안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통보를 받은 1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분쟁 조정중재법> 제53조에 의하면, 노동분쟁중재는 비용을 수취하지 않으며 노동분쟁중재위원회의 경비는 재정에서 보장합니다.

중재 처리기간은 <노동분쟁 조정중재법> 제43조에 의하면 중재 접수일로부터 45일 내에 중재를 종료해야 하며 사안이 복잡한 경우 중재위원회 주임의 승인을 받아 1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노동분쟁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고 그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중재에 대한 이의 신청

Q 한국인 김모는 중국회사를 상대로 노동분쟁중재위원회(중재위원회)에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것에 관한 노동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재위원회는 경제보상금 청구에 대한 입증기한을 2016년 9월 15일까지라고 지정하였습니다. 그 후 김모씨는 2016년 9월 28일에 또 회사에서 특근수당 2만 위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특근수당 2만 위안을 병합하여 지급할 것을 중재위원회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재위원회는 특근수당 지급에 대한 청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중재위원회의 이런 행위는 합법적인가요? 김모는 어떻게 자신의 권익을 합법적으로 수호해야 할까요?

A 중재위원회의 행위는 합법적입니다. 단, 김모는 특근수당을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노동인사분쟁중재안건처리규칙 (劳动人事争议仲裁办案规则)〉의 규정에 의하면 입증기한이 지난 후에 중재청구를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 별도로 신청하여 별도 안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에 김모는 특근수당에 대한 추가 청구는 노동중재위원회에 별도로 중재신청을 하여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중재판결의 취소 신청

Q 김모는 회사의 월급 체납으로 인하여 노동분쟁중재위원회(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재위원회에서는 심리를 거쳐 회사에서 김모에게 체납한 월급 2만 위안을 지불하라는 최종판결을 내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지불할 수 밖에 없나요?

A 회사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단 지불을 유보하고 중재판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争议调解仲裁法)> 제49조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보수, 산재의료비, 경제보상금 또는 배상금에 대한 청구금액이 당시 최저임금 기준으로 12개월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분쟁과 국가에서 규정한 노동표준의 집행으로 업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등의 측면에서 발생한 분쟁은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중재위원회의 중재판결을 최종판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상황 중의 하나가 발생할 경우에는 30일 내에 인민법원에 중재판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법규의 적용에 잘못이 있을 경우
- (2) 노동분쟁중재위원회의 관할권이 없을 경우
- (3) 법정절차를 위반하였을 경우
- (4) 재판 근거로 사용한 증거가 위조된 경우
- (5) 상대방 당사자가 공정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를 은닉하였을 경우
- (6) 중재원이 중재 본안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사적 동기로 부정행위를 하거나 또는 사적동기로 법률을 무시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따라서 회사에서는 중재판결은 최종판결이지만 위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판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6

환경과 기업

이럴땐 이렇게

산란오 기업 (散乱污企业) 정리 및 구제절차

Q 저희 회사는 2017년8월28일 “산란오 기업 (散乱污企业)”으로 분류되면서 생산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산란오 기업 관련 정책을 알고 싶고, 또한 저희 회사는 사법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베이징을 비롯해 수도권권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중국 생태환경부와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지방정부는 공동으로 <징진지 대기 오염 방지 강화 조치 (2016-2017년), 京津冀大气污染防治强化措施 (2016- 2017年)>를 발표하고, 특히 2+4 도시(베이징, 톈진, 바오딩, 랑팡, 당산, 창조우시) 등 징진지 및 주변 지역의 대기오염 방지 역점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일환으로 “산, 란, 오”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정리, 퇴출 작업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추진 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란오”의 “산”(散)이란 현지 산업분포 등 관련 계획에 부합하지 않고, 공업단지 입주 조건에 미달하는 공업기업을 말하고, ‘란’(乱)이란 국가 혹은 지방정부 산업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규획, 토지, 환경보호, 공상(현 시장감독 관리), 품질, 안전, 에너지소모 등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혹은 등기를 하지 않은 기업 및 주거밀집 지역에 불법으로 존속하는 기업을 말하며, ‘오’(污)는 법령에 따라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이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오염 방지 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기업 및 배출 허용 기준을 안정적으로 실현하지 못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广东省“散乱污”工业企业(场所)综合整治工作方案 참조).

즉, “산란오 기업”이란 산업 정책 및 산업배치 계획에 부합하지 않고 환경보호 등의 인허가 수속이 미비하거나 환경 오염물질을 기준보다 초과 하여 배출하는 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생태환경부 및 국무원은 <징진지 및 주변 지역 2017년 대기오염 방지 업무방안>, <푸른 하늘 보위전 승리 3년 행동 계획, 打赢蓝天保卫战三年行动计划>을 발

표하여, 수도권 일대에서 중점적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대폭 줄여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산란오 기업을 대상으로 공장이전, 영업 정지, 퇴출 등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베이징시, 톈진시 및 허베이성, 산시성(山西省), 산둥성, 허난성 등 정진지 지역은 2018년말까지, 상하이시, 장수성, 안후이성 등의 강강삼각주 지역 및 산시성(山西省), 허난성, 산시성(陝西省) 일부 도시를 포함한 편웨이(汾渭)평원 지역은 2019년말까지, 전국적으로는 2020년말까지 기본적으로 정비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북경은, 2017년 “산란오” 기업 5,500개소의 영업을 정지시켰고, 2013년 이후 2,600여 개소의 인쇄, 주조, 가구 등 업종의 오염기업을 폐쇄한바 있습니다. 또한 2020년 말까지 1000개 기업을 추가로 퇴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란오 기업에 대해 생산 정지를 시키거나 혹은 영업정지, 공장폐쇄 등을 통한 퇴출 조치는 “오염물질 배출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오염 물질을 배출하거나,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초과하였거나, 혹은 중점 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지표를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였거나, 혹은 감독관리를 회피하는 방식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 생태환경 주무기관은 시정 명령 혹은 생산 제한, 생산정지와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폐쇄 등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법률 규정(대기오염방지법 제 99조 제2호, 수오염 방지법 제83조 제2호 참조)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생산 정지 혹은 영업 정지 명령을 받은 기업이 이와 같은 행정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60일 내에 당해 기관 혹은 상급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결정서(复议决定书)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란오 기업으로 분류되어 이와 같은 행정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정부 당국의 산업정책이나 산업배치계획에 따라 퇴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전에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갖추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 한 후 합법적인 경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공장 신·증설시 환경영향평가 실시

Q 저희 회사는 자동차부품 생산 업체로서 회사 설립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으나 공장을 증축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는데 준공검사를 받을 때 문제가 되는지요? 나중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A 회사 설립 당시 혹은 공장 신축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증축을 하게 될 경우 중국 <환경영향평가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건설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환경영향보고서나 환경영향보고표 혹은 환경영향등 기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①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면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② 경미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보고표를 작성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거나 특별 평가를 하여야 하며, ③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환경영향등기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제16조). 구체적으로는 생태환경부가 공포하는 건설프로젝트 의 환경영향평가 분류관리 목록을 참조하여 어떤 문건을 작성하여야 할지 정하여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있어서는 특히 “三同時 원칙”의 준수가 중요한데, 이는 신설, 개축, 확장 건설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문건 및 생태환경 주관부문의 승인결정 요구사항에 따라 환경보호시설을 건설하고 환경보호 조치 실시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환경보호시설은 주된 생산공정과 동시설계, 동시시공, 동시사용 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제25조 및 제26 조)

이를 위반하여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보고표에 대해 관련 인허가를 받지 않고 시공하는 경우 현금 이상의 생태환경 주무기관은 공사 정지와 건설프로젝

트 총 투자액의 1% 이상 5%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건축주의 직접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그 밖의 직접 책임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영향등기표 작성 대상의 건축주가 비안(备案, 신고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천 위안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제31조). 여기에서 유의하실 점은 해당 비안시 신고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식 수리가 되어야 하므로 최종 수리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환경영향보고서나 환경영향보고표의 기초자료가 현저히 부실하거나, 내용상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누락 혹은 허위가 있거나, 환경영향 평가 결론이 부정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건축주는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고 법정대표인, 주 책임자, 직접 책임자 등은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32조).

배출허가증 신청

Q A회사는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오폐수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A회사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환경보호법>은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오염물질 배출허가관리 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오염물질 배출허가관리를 실시한 기업 등은 오염물질 배출허가증의 요건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하고, 오염물질 배출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오염물질을 배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5조).

또한 <수오염방지법(水汚染防治法)>에서는, 폐수와 오수를 배출할 수 있는 기업, 사업단위와 기타 생산업자는 배출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1조). 이 경우 배출허가증에는 배출 오염물질의 종류, 농도, 총량, 배출방향 등을 정확히 밝혀야 하며, 배출허가증 없이 또는 배출허가증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수와 오수를 배출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배출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의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시정을 명하거나 생산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하거나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83조).

화학 제품을 생산하면서 오폐수를 배출하는 A회사는 <오염물질배출 허가관리 방법(시험시행), 排污许可管理办法(试行)> 제4조에 따라 오염물 질배출허가증을 취득하고 이 허가증의 허용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 하여야 하나, 오염물질 배출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 관리방법 제57조에 따라 관할 생태환경 주무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 혹은 생산제한, 생산정지 처분과 함께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 병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폐쇄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

서 오염물질 배출이 불가피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오염물질 배출 방지 시설이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당해 지역의 생태환경 주무기관으로부터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출허가증 제도의 시행시기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는바, 각 사업장이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는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언제까지 취득 해야 하는지는 생태 환경 부서에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관리

Q A회사는 허베이성 랑팡시에서 사무용 가구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 배출과 관련한 단속이 잦은데 중국 정부 당국의 VOCs 관련 기본 정책을 어떻게 따르나요? 정책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은 기후변화의 원인물질이 될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 형성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당국도 최근 VOCs 배출 규제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정진지 대기오염방지 강화조치 (2016-2017년)의 내용에 따르면 VOCs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유 기용제 사용 과정의 환경관리 및 오염방지 시설 운영에 대한 감독을 강화 하고, 유기용제 페인트 생산과 피치 방수재료 생산, 합판 생산, 유기용제 페인트를 사용하는 가구 제조, 목제품 가공 사업장에 대한 정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인쇄, 자동차수리 등 업종의 VOCs 배출 억제 및 방지 조치를 강화 하고, 자동차 도장에 사용되는 유성페인트를 수성페인트로 대체하게 하고, VOCs 배출 억제 및 방지 조치가 기준에 미달하는 주유소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등 배출을 줄이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진지 및 주변지역 2017년 대기오염방지업무방안 (京津冀及周边地区 2017年大气污染防治工作方案))에서도 석유화학, 의약, 농약 등 화학 분야 및 자동차 제조 기계설비 제조, 가구 제조 등 공업 도장 분야, 포장 인쇄 등 분야 VOCs 배출 억제 및 방지 정책을 시행하고, 특히 저VOCs함량의 도료, 유기용제, 접착제, 인쇄 잉크 등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방지법〉은 VOCs를 함유한 폐가스가 발생하는 생산·서비스 활동은 밀폐된 공간, 방지설비 설치·사용, 밀폐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배출 저감조치를 해야 하며(제45조), 도장기업은 저휘발성 도료 사용, 대장에 생산원료, 보조제 사용량, 폐

기량, 경로 및 VOCs 함량을 최소 3년 기록 하도록 규정(제46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제108조에 따라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생산정지 처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중점오염배출기업 지정

Q A회사는 최근 중점오염물질 배출기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법적규제 및 제한을 받는지요?

A <기업 사업단위 환경정보 공개방법(企业事业单位环境信息公开办法)>에 따르면 중점감시통제기업으로 확정되었거나 최근 3년 비교적 큰 돌발적인 환경사건 혹은 환경오염문제로 인해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끼친 기업 등은 중점오염물질배출기업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조).

<중점오염물질 배출단위 명단 관리규정(시험시행) 重点排污单位名录管理规定(试行)>에 따르면 수환경, 대기환경, 토양환경, 소음환경, 기타 중점오염물질배출기업 등 5분야로 나누어 중점오염물질배출기업 명단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중점오염배출기업으로 지정된 A회사는 <기업사업단위 환경정보 공개방 법>에 따라 생태환경 주무기관이 중점오염배출기업명단을 공포한 후 90일 내에 홈페이지나 환경정보공개플랫폼 혹은 현지 신문, 잡지 등을 통해 회사의 기본정보 및 오염배출정보,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및 운영 상황,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보호인허가 사항, 환경돌발사건 응급조치 방안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추가 및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30일 내에 공개하 여야 합니다(제9조 내지 제11조).

만약 공개를 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공개한 경우는 생태환경 주무기관은 공개를 명하고 3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16조).

구체적으로 중점오염배출기업명단은 시급 이상의 지방 정부 생태환경 주무기관이 국무원 생태환경 주무기관의 규정에 따라 당해 행정구역의 환경 수용능력과 중점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지표의 요구, 오염물질의 종류, 수량, 농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확정하게 됩니다 (대기오염방지법 제24조 제2항 및

수오염방지법 제23조 제2항).

참고로 북경시 중점오염배출기업명단은 아래 북경시 생태환경국 사이트 에서
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thj.beijing.gov.cn/bjhrb/index/xxgk69/sthjlyzgw/wrygl/1751304/index.html>)

오염물질 검측 (모니터링)제도

Q 모든 오염물질 배출 기업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하나요?

A 오염물질 배출기업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중점오염물질 배출기업은 오염물질 배출 자동검측설비를 설치하고 생태환경 주무기관의 모니터링과 연계(네트워킹)해야 하고, 유독-유해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배출구 및 주변환경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대기오염방지법 제24조 제1항, 제78조, 수오염방지법 제23조 제1항 참조).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여 ① 측정관측설비나 자동측정설비를 불법으로 훼손하거나 이동한 경우, ② 측정관리를 규정에 따라 이행하지 않고 측정기록 원본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③ 중점오염물질 배출기업이 자동측정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고(대기오염방지법 제100 조), 고의로 조작 및 미 보고 등 위법행위를 한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중점감시통제기업 자가 검측 및 정보공개방법(시행시행), 国家重点 监控企业自行监测及信息公开办法(试行)〉에 따라 국가 중점감시 통제 기업은 자가 모니터링 방안 등을 공개하고 생태환경 주무기관에 비안(신고수리) 해야 하며(제4조). 자가 모니터링 진행 상황 및 결과를 홈페이지, 신문 등을 통해 공개하고 동시에 모니터링한 환경정보를 성급 혹은 시급 생태환경 주무기관의 플랫폼에도 공개해야 합니다(제18조, 제19조).

만약 자가 모니터링을 거절하거나 모니터링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자가 모니터링 보고 및 정보 공개 과정 중 허위 날조 행위가 있는 경우는 오염물질배출허가증 발급을 잠정적으로 정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라 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제23조).

〈환경감측관리방법, 环境监测管理办法〉에 따라 국가 중점 감시통제 기업으로 지정된 오염물질 배출 기업은 암모니아성 질소(NH₃-N) 및 질소 산화물 (NOX) 자가 검측 설비를 설치하고 생태환경 주무기관과 네트워킹 하여야 합니다(제4조 제1항). 한편, 기업은 지방정부의 감독차원에서 실시하는 검측에 자료 등을 제공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중점 오염물질 총량 관리제도

Q 중점 오염물질 총량은 누가 정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오염물질 배출 총량통제 제도는 중국의 환경보호법의 기본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총량통제 제도는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 및 오염물질 배출 지역, 오염물질 배출 시간 등 크게 3가지 분야에서 규제를 하게 됩니다.

중국 중앙정부는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에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및 아황산가스(SO₂) 두 가지 주요 오염물질 외에 암모니아성 질소(NH₃-N) 및 질소산화물(NO_x)도 총량통제 지표 체계에 포함시켰으며, 각 지역은 현지 환경상황 및 오염 특성에 따라 지방별로 통제 대상 오염물질을 추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점 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지표는 국무원이 하달하면 성, 자치구, 직할 시 지방정부가 이를 분석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중점 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 목표는 국무원 생태환경 주무기관이 국무원 유관기관 및 성, 자치구, 직할시 지방정부의 의견을 징구한 후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지방 정부에 하달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대기오염방지법 제21조 제2항, 수오염 방지법 제20조 제2항).

성, 자치구, 직할시 지방정부는 국무원이 하달한 총량 통제목표에 따라 당해 행정구역의 중점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통제 혹은 감소시켜야 합니다(대기오염방지법 제21조 제3항, 수오염방지법 제20조 제3항).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하거나 혹은 중점 오염물질 배출총량통제지표를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생산제한, 생산정지와 함께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 처분 받을 수 있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기오염 방지법 제99조 제2호 수오염방지법 제83조 제2호).

만약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결정한 행정기관은 시정 명령일로부터 원 과징금 액수에 따라 매일 연속으로 누적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법 제59조, 대기오염 방지법 제123조, 수오염방지법 제95조)

기업환경신용평가

Q A회사는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하여 국가중점감시통제기업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환경신용평가 대상이 되어 환경기관의 평가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환경불량기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A회사는 환경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징계 조치를 받게 될 건지 궁금합니다.

A 기업환경신용평가제도는 오염물질배출기업의 환경보호법률 및 법규 준수상황, 환경보호책임 이행 등 정보를 환경신용평가체계에 등재하고, 평가 결과는 사회에 공개하며, 정부구매, 공공자금의 지원 등의 중요근거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A회사와 같이 <기업환경신용평가방법(시범시행), 企业环境信用评价办法 (试行)> 규정에 따라 생태환경 주무기관으로부터 환경불량기업으로 평가를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 환경개선 계획 혹은 승낙을 공포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환경신용 평가관리 및 당해 기업의 일상 환경에 대한 감독관리를 하는 환경 주무기관에 기업환경 신용평가 중 발생한 문제의 개선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명령 (여기서 환경개선 계획 혹은 승낙의 내용은 내부 환경 관리 강화, 신용을 잃은 행위의 개선, 자체 모니터링 횟수 증가, 환경보호 투자 확대, 환경 책임자 등 구체적인 조치 및 완성 기한 관철 등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2) 신용을 잃은 행위의 분류 및 구체적인 상황을 결부시켜 행정 인허가 사항에 대해 엄격히 심사
- (3) 단속 횟수 증가
- (4) 각종 환경보호 관련 자금 지원 잠정 중단
- (5) 재정 등 유관기관에 정부 구매목록 확정 및 조정 시 해당 제품 혹은 용역 취소 건의

- (6) 환경 주부기관이 우수기업 심사, 포장 수여 심사 시 배제
- (7) 금융기관에 신용 심사에 신중을 기해 환경신용등급이 오르기 전까지 신규 대출을 해주지 말 것과 상황에 따라 대출 규모를 점차적으로 축소하도록 건의
- (8) 보험기관에 환경오염 책임보험료 비율을 높이도록 건의
- (9) 환경보호 불량기업 명단을 국유자산감독관리 주부기관, 공회 관련 단체, 관련 산업협회, 기타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환경보호 불량기업 및 그 책임자가 선진기업 혹은 선진개인 등의 영예 칭호를 받을 수 없도록 건의
- (10) 국가 혹은 지방의 그밖의 징계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35조).

중오염 예·경보 시 기업활동제한

Q A회사는 베이징에 소재하는 회사로서 지난 대기 중오염 황색경보기간에 현지 지방 정부로부터 생산 작업을 중지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대기 중 오염 경보등급에 따라 어떠한 규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중국 곳곳에서 장시간 동안 상당한 규모의 중오염 날씨가 자주 발생 하자 2015년부터 강화된 대기오염방지법이 시행되었고, <대기오염방지행 동계획 (대기10조)>과 <푸른하늘보위전 행동계획>의 시행으로 인해 최근 공기 질이 대폭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지역이 많은 까닭에, 기상 조건이 좋지 않을 때에는 쉽게 중오염 날씨가 발생하고 있어서 중국 정부 당국은 중오염 날씨 응급 대응을 지방정부의 돌발사건 응급 관리 체계에 포함시켜 대응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부에서 발표한 <중오염 날씨 응급관리 업무에 관한 지도의견, 关于加强重污染天气应急管理工作的指导意见> (국 발 [2013] 37로) 에 의하면 중오염 날씨 경보는 청색, 황색, 오렌지색, 적색 등 4등급으로 나누어 발령되며(제3조 제5항), 경보가 발령되면 당해 지역 지방정부는 응급 대응방안에 따라 응급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과 대응방안은 지방정부별로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청색 경보 발령 시에는 건강에 유의하도록 홍보를 하고 동시에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 감소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황색 이상의 경보 발령 시에는 강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감소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제3조 제6항).

베이징, 상하이 경보 발령 단계

| 분류 | 베이징 | 상하이 |
|------------|------------------------------------------------------------|-------------------------------------------------------------------------|
| 청색 경보 | - | AQI가 101 이상 200 이하로 예보되는 경우 |
| 황색 경보 | AQI가 200 이상으로 48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 AQI가 200 이상 300 이하로 예보되는 경우 |
| 오렌지색 경보 | AQI가 200 이상으로 73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 AQI가 301 이상 400 이하로 예보되는 경우 혹은 앞으로 2일 이상 AQI가 201 이상 300 이하로 예보되는 경우 |
| 적색 경보 | AQI가 200 이상으로 96시간 이상 지속되고 300 이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 AQI가 400 이상으로 예보되는 경우 |

경보 발령 단계에 따른 베이징의 강제 조치

| | |
|------------|---------------------------------------------------------------------------------------------------------------------------------------------------------------------------------------------------------------------------------------------------------------------------------------------------------------------------------------------------------------------------------------------------------------|
| 황색 경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 도로 청소 작업 매일 1회 증가 · 옥외 건축현장 작업 정지 · 대기 중오염 황색경보기간 생산 정지, 생산 제한 명단에 있는 제조업 기업 생산 정지, 생산 제한 |
| 오렌지색 경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 도로 청소 매일 1회 증가 · 옥외 건축현장 작업 정지 · 국 I 및 국 II 배출기준의 휴발유 경소형차량 운행 금지 · 건축 쓰레기, 폐기물이 섞인 흙, 사석 운수 차량 운행 금지 · 대기 중오염 오렌지색경보기간 생산 정지, 생산 제한 명단에 있는 제조업 기업 생산 정지, 생산 제한 · 폭죽 및 노천 구이 금지 |
| 적색 경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 도로 청소 매일 1회 증가 · 옥외 건축현장 작업 정지 · 국 I 및 국 II 배출기준의 휴발유 경소형차량 운행 금지, 국 III 및 그 이상의 배출 표준 자동차 2부제 실시(순수 전기자동차 제외), 공무용자동차 2부제 실시와 동시에 차량 총수의 30% 운행 정지 · 건축 쓰레기, 폐기물이 섞인 흙, 사석 운수 차량 운행 금지 · 대기 중오염 오렌지색경보기간 생산 정지, 생산 제한 명단에 있는 제조업 기업 생산 정지, 생산 제한 · 폭죽 및 노천 구이 금지 · 발전 부하를 낮출 수 있도록 외지와 전력 협조 강화 |

고오염, 고에너지 소비 업종의 구조조정

Q 저희 회사는 베이징 외곽에서 공장을 임차하여 소규모 화공약품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3고(고오염, 고에너지소모, 고수자원소모)기업으로서 퇴출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던가 사업을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가 퇴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요?

A 국무원의 〈산업구조조정 촉진 잠정시행규정〉에 따르면, 중국 정부 당국은 자원과 에너지 절약에 불리하거나 환경보호와 생태계통의 회복에 불리한 산업을 제한 사업으로 분류하고(제15조), 일체의 신규 인허가와 대출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제18조 제1항)

또한 환경오염이 심각하거나 생태환경 훼손이 심각한 산업 및 자원과 에너지 낭비가 심각한 산업을 도태 산업으로 분류하여(제16조) 각 금융기관의 여신 지원 정지와 더불어 대출금을 회수하고, 규정한 기한 내에 도태시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태기한 내에는 전기료 인상 등 조치를 취하게 되고 제 때에 공정기술, 장비, 제품을 도태시키지 않는 경우 생산정지나 폐쇄 명령을 하거나 생산허가증, 오염물질 배출허가증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전기공급을 차단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제19조) 점차적으로 퇴출 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무원의 〈에너지절약 배출감소 종합성 업무방안, 节能减排综合性工作方案〉에서도 신규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엄격하게 통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경시의 고오염, 고에너지소모, 고수자원소모 공업기업 퇴출 가속에 관한 의견, 北京市关于加快退出高污染、高能耗、高耗水工业企业的意见〉에서도 국가 요구에 의한 퇴출 및 도태 산업, 수도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산업, 3고(고오염, 고에너지소모, 고수자원소모) 기업은 퇴출시킨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강철제련, 소규모 시멘트, 소규모 제지, 소규모 화공, 소규모 화력발전, 소

규모 구조, 소규모 날염, 전기용접, 관유리, 제혁, 유색제련, 코크스, 클로우알칼리, 채광 등 14개 업종이 중점 퇴출 산업에 해당합니다.

또한 각 구는 구역 내 사양 산업 및 3고 기업 퇴출 계획을 제정하고, 기업도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을 근거로 스스로 퇴출 계획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시 공업축진국이 유관부처와 함께 연도별 업무추진 요구 및 구역 퇴출기업 조건에 따라 <연도 3고 기업 퇴출 계획>을 제정, 시행하여, 3고 기업이 계획에 따라 퇴출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험폐기물 관리

Q A회사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산업폐기물에서 카드뮴과 비소 성분이 검출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A 카드뮴, 비소와 같이 독성, 부식성, 가연성, 반응성 또는 감염성 등의 위험특성을 가지고 있고 <국가위험폐기물목록(國家危險廢物名錄)>에 포함된 폐기물은 위험폐기물로 분류되고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과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에 따르면 위험폐기물이 배출되는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계획을 제정하고 위험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보관 처리 등의 관련 자료를 현지 현급 이상의 지방정부 생태환경 주무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제53조), 위험폐기물은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제57조> 및 <위험 폐기물경영허가증관리방법 제2조>, <의료폐기물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경영허가증을 취득한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한편, 위험폐기물의 용기나 포장물, 위험폐기물을 수집, 보관, 운송하는 시설, 장소에는 위험폐기물 식별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제52조), 위험폐기물 보관은 국가 환경보호표준의 방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위험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혼합하여 보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질이 서로 다르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위험폐기물을 혼합하여 수집하거나 보관, 운송,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58조).

기업이 배출된 위험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거나 쌓아두고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태환경 주무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그래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거나 처리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지정한 업체가 대신 처리하게 하고 그 처리비용은 위험폐기물 배출 기업에 부담시키게 됩니다(제55조).

만약 현지에 위험폐기물을 처리할 곳이 없는 경우에는 위험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처리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기업은 <위험폐기물 이전전표관리방법>에 따라 사전에 위험폐기물 이전계획에 대해 비준을 받고, 생태환경 주무기관으로부터 전표를 수령하여야 합니다. 위험폐기물 반출 3일 전에 반출 지역의 생태환경 주무기관에 보고하고 동시에 도착지 생태환경 주무기관에 도착 예정시간을 보고하여야 합니다(제4조).

위험폐기물 식별 표지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위험폐기물을 일반폐기물에 혼합하여 보관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성질이 다른 위험폐기물을 혼합하여 수집, 보관, 운송, 처리하는 경우, 상응하는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험폐기물이 흩어지거나 혹은 유실되거나, 누출되거나, 그 밖의 다른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경우, 위험폐기물의 우발사고 방지조치 및 응급조치 방안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 등은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폐기물 집중 처리 설비, 장소를 임의대로 폐쇄, 방치, 철거하는 경우, 위험폐기물을 경영허가증이 없는 업체에 제공하거나 위탁하여 경영활동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위험폐기물 이전 전표를 규정에 따라 작성하지 않거나 비준을 거치지 않고 위험폐기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배출된 위험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그 처리비용도 부담하지 않은 경우 그 처리비용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제76조).

한편, 불법으로 위험폐기물을 수집, 보관, 이용, 처리함으로써 중대한 환경오염 사고를 일으킨 경우 범죄가 구성되면 형사처벌될 수 있고(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제83조), 불법으로 방사능이 함유된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가 함유된 폐기물, 유독물질, 기타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버리거나, 처리함으로써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킨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구역과 벌금 병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 병과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338조).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관리

Q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은 중국에서 공장을 신축할 때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규제가 있는지요?

A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도시 미세먼지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방지법〉 및 〈도시 비산먼지오염 유효 통제에 관한 통지〉, 〈건축현장 시공 비산먼지 특별방지 업무방안〉 등의 규정에 따라 건축주는 비산먼지 오염방지 비용을 공사비에 포함시켜야 하며 시공도급계약서에 시공 업체의 비산먼지 오염방지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시공 업체는 구체적인 시공 비산먼지 오염방지 실시 방안을 제정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둘레에 단단한 재질의 가리개를 설치하고 각종 먼지 저감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도심에서 공사를 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반죽하는 작업을 엄격히 통제하고 점차적으로 금지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규정된 구역 안의 공사현장에서는 콘크리트 반죽과 콜타르 반죽을 사용하여야 하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혹은 콜타르를 반죽하는 경우에는 밀폐, 먼지 및 소음 저감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공사 차량이 공사 현장을 드나들 때에는 진흙이 묻어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시공 과정에서 쌓아놓은 흙은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멘트와 같이 쉽게 날리는 가루 형태의 건축자재는 밀폐보관 혹은 덮개로 덮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주요 도로는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살수를 하여 먼지가 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도시 비산먼지오염 유효 통제에 관한 통지, 시공부지 및 도로 비산먼지 관리통제업무에 관한 통지 참조).

북경시의 경우 2020년 푸른하늘보위전의 중요 추진과제 가운데 하나로 공사현장 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공사장 비산먼지 비디오 모니터링 플랫폼 마련과 정보공유의 범위 확대, 공사장 비산먼지 규제 강화, 위법한 폐토사 운송차량 정비, 비산먼지 규제 특별감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디젤차 규제

Q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A 회사는 10여 대의 국(國)Ⅲ 배출 기준의 대형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형 화물 차량에 대한 규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A 중국 정부는 <국가환경보호총국의 경자동차 및 디젤자동차 생산정지 기한 차량 모델 목록 발표에 관한 통지>에 의해 <경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제한수치 및 측정방법(I)>(GB18352.1-2001)에 따라 2001년도 10월1일부터 생산을 정지하는 차량 모델 리스트와 <차량용 압축연소식 엔진 배기오염물질 배출 제한수치 및 측정방법>(GB17691-2001)에 따라 2001년9월1일부터 생산을 정지해야 하는 차량 모델 리스트를 발표하고 배기가스 오염이 심한 디젤자동차는 퇴출시키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2015년 1월 1일부터 국Ⅲ 디젤자동차 제품 판매를 금지시키면서 제조업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기가스 배출 관련 품질 개선 준비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공업정보화부 공고 2014년 제27호 참조).

노후 디젤자동차는 정리를 하고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장착하고 실시간 배출 감시통제 단말기를 갖춰 생태환경 등 관련 기관과 네트워킹을 하여 미세먼지(PM), 질소산화물(O₂)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배출 온라인 검사를 면제하고 조건이 갖춰진 도시는 정기적으로 택시의 3월 촉매장치(유해성 유기물질을 무해한 물질로 정화시켜 주는 장치)를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푸른하늘보위전 승리 3년 행동계획).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형 디젤자동차에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배기가스 저감 장치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배출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거나 기준에 부합하는 배기가스 저감 장치로 교체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대기오염방지법 제59조), 만약 이를 위반하여 대형 디젤자동차에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추가 설치 혹은 교체하지 않는 경우에는 5천 위안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기오염방지법 제114조).

아울러, 디젤자동차 정비의 일환으로 중점 구역에서는 디젤자동차 등록 시 환경보호 심사를 실시하고 화물차, 승합차, 버스 등에 대하여 환경보호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3차 5개년 계획” 생태환경보호규획).

참고로 베이징시의 경우 시교통위원회와 환보국, 교통국이 2017년 8월23일 발표한 <일부 화물적재차량에 대한 교통관리조치를 취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것에 관한 통지, 关于对部分载货汽车采取交通管理措施降低污染物排放的通告>에 따라 2019년9월21일 이후 베이징 차량을 포함한 모든 국Ⅲ 디젤화물자동차의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비도로 이동기계 (건설중장비 등) 규제

Q A회사는 토목건축업에 종사하는 업체로서 로드 롤러 5대와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 및 아스팔트 피니셔 각 4대씩 8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모두 노후화 되어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지난 주에 공사 현장에서 단속반의 측정 결과 배기가스 기준 초과라는데 비도로 이동기계에 대해 어떠한 규제가 있는지요?

A <대기오염방지법>에 따르면 비도로 이동기계는 오염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못하며, 오염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비도로 이동기계의 생산, 수입,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대기오염방지법 제51조). 생산, 판매 되는 비도로 이동기계는 현장 검사와 샘플링 검사 등 방식으로 배기가스 오염물질 배출 상태를 검사하며, 각종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리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51조, 제52조 제58조).

한편, A 회사와 같이 사용 중에 있는 비도로 이동기계에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혹은 오염 저감장치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배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하여 장착하거나 배출 기준에 부합하는 장비로 교체하여야 합니다(제59조). 만약 이를 위반하여 대형 비도로 이동기계에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추가 장착 혹은 교체하지 않는 경우에는 5천 위안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14조).

또한 지역별 추동계 대기오염 응급대응방안에서는 중요염이 발생할 경우에 비도로 이동기계의 가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인 환경법 위반행위

Q A회사는 위험물질인 납 성분이 함유된 산업폐기물을 인근 공터에 무단으로 매립했다가 현지인의 신고로 발각이 되었습니다. A 회사 혹은 법정대표나 관련 책임자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A 환경오염과 관련되어 다음과 같은 법률규정을 위반하여 상황이 엄중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기오염방지법>
-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 <수오염방지법>
- <환경소음오염방지법>
- <의료폐기물관리조례>
- <의료위생기구의료폐기물관리방법>
- <돌발사건대응법>
- <환경평가법>
- <건설항목환경보호관리조례>

중국의 형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방사능이 함유된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가 함유된 폐기물, 유독물질, 기타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버리거나, 처리함으로써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구역과 벌금 병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 병과의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38조).

이와 관련하여, 최고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이 엄중한 환경오염(严重污染环境的)에 속하는 18가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하달(17.1.1 시행)했으며, 그내용은 아

래와 같습니다.

- (1) 상수원1급보호구, 자연보호구 핵심구역에 방사성, 전염병, 유독 물질을 투하
혹은 배출한 경우
- (2) 불법 배출한 위험폐기물이 3톤 이상일 경우
- (3) 납, 구리, 카드뮴 등을 국가나 지방기준의 3배 이상 배출한 경우
- (4) 아연, 동, 은 등을 국가나 지방기준의 10배 이상 배출한 경우
- (5) 지하도관, 수챗구멍, 갈라진 틈새를 통하여 관리감독을 피하여 위해물질을 배
출한 경우
- (6) 2년 내에 국가의 관련 환경규정을 위반하여 2번 이상 행정처벌을 받은 후, 다
시 관련 환경규정을 위반할 경우
- (7) 중점배출단위에서 모니터링 데이터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위조한 경우
- (8) 불법으로 오염방지시설의 운영 관련 지출비용을 100만 위안을 감소한 경우
- (9) 위법소득 혹은 공적, 사적재산의 손실이 30만 위안일 경우
- (10) 생태환경에 엄중한 손상을 조성한 경우
- (11) 향진 이상의 집중식 상수원의 취수가 1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 (12) 농경지, 방호림지가 5무(亩) 이상 기본기능을 상실하거나 영구적으로 파괴된 경우
- (13) 삼림 혹은 기타 수림이 50 m² 이상 고사한 경우
- (14) 5,000명 이상 주민이 전염된 경우
- (15) 30명 이상 중독된 경우
- (16) 3명 이상 경상, 경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 (17) 1명 이상 중상, 중급 장애가 발생한 경우
- (18) 기타 엄중한 환경오염 상황.

이처럼 A 회사가 불법으로 매립한 납 성분이 함유된 위험폐기물량이 국가나 지방 정부의 오염물질 배출기준보다 3배 이상일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환경 오염 형사안건 처리 적용법을 약간 문제에 관한 해석, 关于办理 环境污染刑事案件 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1조 제3호 참조).

행정구류 대상인 환경법 위반행위

Q A회사는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정화하기 위해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생산을 해 오고 있었으나 현지 지방정부 생태환경국의 점검 시 정화시설에 문제가 발생해 오폐수가 기준치를 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 회사의 책임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A <환경보호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로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 과징금 처분 이외에도 그 직접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경미한 경우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 동법 제63조)

- (1)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건설 정지 명령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 (2) 오염물질 배출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오염물질 배출 정지 명령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 (3) 관을 몰래 설치하는 등 법령으로 정한 배출구를 통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혹은 검측 데이터를 왜곡, 위조하거나 오염방지 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등 감독관리를 피하여 불법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4) 국가가 생산, 사용을 금지한 농약을 생산, 사용하여 시정을 명령을 받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한편, <수오염방지법>을 위반하여 심각하거나 혹은 특별히 큰 수오염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비준 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의 기준을 거쳐 폐쇄를 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책임이 있는 담당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전년도 당해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수입의 5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불법 수오염물 배출 행위가 있었으나 범죄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간기관이 직접 책임이 있는 담당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상황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4조).

환경법 위반으로 인한 생산제한, 생산중지

Q A회사는 현지 생태환경국의 특별 단속 때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하여 생산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생산제한 혹은 생산 중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되는지요?

A <환경보호법>에 따르면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중점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지표를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해당 기업이나 사업단위, 기타 생산경영자에게 생산 제한, 생산 중지 또는 정비를 명령할 수 있으며,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비준 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 영업을 중지하거나 폐쇄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0조).

<수오염방지법>에 따르면,

- (1) 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 (2) 수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중점수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지표를 초과하여 수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 (3) 관로를 몰래 설치하는 등 법령으로 정한 배출구를 통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혹은 검측 데이터를 왜곡, 위조하거나 오염방지 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등 감독관리를 피하여 불법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4) 규정에 따라 사전처리를 하지 않고 오폐수 집중처리시설에 배출하는 공업폐수가 처리공정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산 제한 혹은 생산 중지를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비준 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영업 중지, 폐쇄 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3조).

<대기오염방지법>에 따르면,

- (1) 오염물질 배출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 (2)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한 경우 혹은 중점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지표를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 (3) 감독관리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에는 생산 제한, 생산 증지를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비준 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영업 정지, 폐쇄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제99조).

한편 <환경소음오염방지법>에 따르면 정해진 기한이 경과하여도 정비 임무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위협을 끼친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이전, 폐쇄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제53조).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에 따르면 동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도태된 설비를 생산, 판매, 수입 혹은 사용하는 경우이거나 도태된 생산 공정(기술)을 적용한 경우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서 개선을 명하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혹은 폐쇄될 수 있습니다(제72조).

또한 고체폐기물로 엄중한 환경오염을 일으킨 경우로써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 임무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혹은 폐쇄될 수 있습니다(제81조). 고체폐기물로 환경오염 사고를 일으킨 경우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에 처하고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직접 손실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최고 100만 위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고체폐기물로 인해 중대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급 이상의 지방정부에서 영업정지 혹은 폐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82조).

환경법상 행정처벌 및 관련 청문제도

Q 최근 시 생태환경국은 우리 기업의 오염물 배출량이 배출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생산작업을 정지하라는 행정처벌을 하였습니다. 만약 해당 행정 처벌에 불복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중국 〈환경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제60조에 의하면, 기업 또는 기타 생산경영자가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혹은 중점 오염물질 배출총량 지표를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생태환경국은 기업의 생산을 제한,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상황이 엄중할 경우, 비준권이 있는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조업정지, 폐쇄를 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벌 통지에 대해서, 당사자는 진술권 및 방어권을 가지며, 행정청은 당사자 의견을 청취할 의무가 있고 당사자는 사실, 이유, 증거 등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행정처벌법 제32조). 이처럼 행정관청이 처벌을 결정하기 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제도를 진술청취제도(听证制度)라고 하며, 여기서 당사자는 적극적으로 사실관계 등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고, 서면으로도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결국 행정처벌이 내려졌고, 만약 기업이 생태환경국의 기업생산 제한, 정지 등의 행정처벌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 이의(行政复议)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생태환경국의 행정처벌에 불복할 경우, 기업은 행정처분결정서를 수령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상급 생태환경국 또는 인민정부에 행정이의(行政复议)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행정이의 신청을 제기하는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이의기관(行政复议机关)은 행정이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5일내에 심사

를 거쳐 수리여부를 결정하고, 수리일부터 60일 내에 행정이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3. 상기 행정이의 결정에 불복할 시, 기업은 15일 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안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1심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4. 기업은 1심판결에 불복할 경우, 15일 내에 상급법원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급법원은 상소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2심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행정이의법(行政復議法)>,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

이처럼 생태환경국에서 내린 행정처벌은 최종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기업에서 해당 행정처벌에 불복할 경우, 행정이의 신청 및 관할 법원에 기소, 상소를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설비 투자에 대한 소득세액 감면

Q 저희는 중국 하북성에 있는 식품가공기업인데 올해 환경설비를 5대 구입하여 생산에 투입시키려고 합니다. 혹시 저희가 환경설비를 구입하게 되면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중국 정부에서 규정한 세금우대혜택 대상 환경설비에 해당 될 경우,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소득세법(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제34조에 의하면, 기업이 환경보호 전용설비에 투자한 투자금액에 대해 일정한 비례로 세무감면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기업소득세법〉제34조의 세무감면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이 〈환경보호전용설비 기업소득세무 우대혜택 목록(环境保护专用设备企业所得税优惠目录)〉에 해당되는 환경보호 전용설비를 구입하고 실제 사용할 경우, 해당 투자금의 10%를 당해년도 기업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해년도에 대상 금액을 전액 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5년내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동법 실시조례 제100조)

중국정부는 지금까지 총 24종의 환경설비 세금우대혜택 품목을 제정,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환경보호전용설비 기업소득세 우대혜택 품목은 중국세무총국 홈페이지 (<http://www.chinatax.gov.cn/>)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최근 도양오염방지설비, 휘발성유기화합물처리설비, SCR (선택적 환원촉매장치) 탈질 설비, 암모니아 분석기 등 추가.

환경보호세법에 의한 환경보호세 부과

Q 중국 제조업 기업에서 이산화황(二氧化硫) 폐기가스를 직접 배출할 경우, 환경보호세를 납부해야 되나요?

A 네, 이산화황은 환경보호세가 부과되는 오염물질에 해당되어 환경보호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중국 <환경보호세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税法)> 제2조에 의하면, 기업이 직접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에는 법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세의 구체적인 부과대상 오염물질은, 동법의 <환경보호세 세목세금표(环境保护税税目税额表)>, <환경보호세 납부 오염물질 및 당량수치표(应税污染物和当量值表)>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수오염물질, 고체폐기물과 소음입니다(제3조).

<환경보호세 납부 오염물질 및 당량수치표(应税污染物和当量值表)>에 의하면 이산화황은 환경보호세 납부대상에 해당되며, 이산화황의 당량수치는 0.95/kg입니다. <환경보호세 세목세금표(环境保护税税目税额表)>에 의하면, 대기오염물의 환경보호세액은 매 오염당량당 1.2위안 이상 12위안 이하입니다. 구체적인 환경보호세액은 세목세금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각 지방정부가 자신의 환경보호 실정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기업에서 6월에 이산화황 폐기가스를 95톤 배출하였고, 당해 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세액기준이 1.2원/오염당량(톤), 이산화황의 오염당량수치가 0.95인 경우, 구체적인 환경보호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기업의 배출량과 오염당량수치를 바탕으로 오염당량을 산정합니다.

즉, $95 \times 1000 \div 0.95 = 100,000$ 위안

오염당량수와 세액기준에 의해 세액을 산정합니다.

즉, $100000 \times 1.2 = 120,000$ 위안

한편 <환경보호세법>은 특정 기업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가 국가와 지방에서 규정한 오염물질 배출기준보다 30% 이상 낮을 경우에는 환경보호세의 75%만 징수하며, 50% 이상 낮을 경우에는 환경보호세의 50%만을 징수하고 있어, 환경관리를 우수하게 하고 있는 기업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13조)

환경보호세의 세목, 세액은, <환경보호세 세목세액표>에 의해 집행하되,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세액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가 지역의 실제상황을 고려하여 <환경보호세 세목세액표>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확정합니다.

환경보호세 세목세금표

| 세목(税目) | | 세액산정단위 (计税单位) | 세액(税额) | 비고(备注) |
|--------|-----------------------------------------------------|---------------|----------|--------|
| 대기오염물질 | | 每오염당량(污染当量) | 1.2元~12元 | - |
| 수질오염물질 | | 每오염당량 | 1.4元~14元 | - |
| 고체폐기물 | 석탄폐석(煤矸石) | 每톤 | 5元 | - |
| | 광산폐석(尾矿) | 每톤 | 15元 | |
| | 위험폐기물 | 每톤 | 1000元 | |
| | 제련찌꺼기 `비산회(粉煤灰)` `광재(炉渣)` `기타 고체폐기물 (반고상, 액상폐기물 포함) | 每톤 | 25元 | |

| | | | | |
|----|------|-------------|----------|-----------------------------------------------------------------------------------------------------------------------------------------------------------------------------------------------------------------------------------------------------------------------------------------------------------------------------------------------------------------------------------------------------------------|
| 소음 | 공업소음 | 기준초과1~3dB | 每月350元 | |
| | | 기준초과4~6dB | 每月700元 | |
| | | 기준초과7~9dB | 每月1400元 | |
| | | 기준초과10~12dB | 每月2800元 | |
| | | 기준초과13~15dB | 每月5600元 | |
| | | 기준초과16dB 이상 | 每月11200元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기업의 경계에 여러 곳에서 소음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장 높은 곳을 기준으로 계산; 100미터를 초과하는 거리의 2곳 이상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 단위로 계산 2. 한 기업이 상이한 작업 장소가 있는 경우, 각각 세액을 계산하고 합계하여 징수 3. 주간, 야간 모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각각 세액을 계산하고 누계를 징수 4. 소음기준을 초과한 일수가 1개월 이내에 15일 미만인 경우, 세액의 반액을 감액 야간에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빈번하게 그리고 우연히 발생 하는 경우에는 등가 소음과 최고소음 양 지표 중 기준초과 데시벨이 높은 항목으로 계산 |

내부고발 및 주민신고제도

Q 중국에서 제조기업의 직원이 자기 회사의 환경오염 불법행위 (예: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기가스를 배출하는 행위, 비밀배출구를 설치해 몰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 생태환경국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해당 직원을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아니면 직원의 신고행위에 대한 장려제도가 있는건가요?

A 중국 생태환경부는 기업의 환경관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대중들의 적극적인 환경보호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보호법〉과 〈대기오염방지법〉 등으로 각 지방마다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제보) 장려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방지법〉의 경우, 국민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결과를 법에 의거하여 사회에 공개하고 신고인을 장려하도록 하는 한편, 신고인이 소속된 업체는 노동계약을 해지, 변경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신고인에 대해 보복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1조).

지방의 경우, 예를 들면, 〈하북성 환경오염 제보장려 실시세칙(河南省环境污染防治举报奖励实施细则)〉은, 배출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 양에 따라 제보자에게 2000 위안에서 최고 50000위안의 장려금을 지급하며 생태환경국은 환경오염 불법 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실제 사실을 확인한후 15일내에 제보자에게 장려금을 수령할 것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즉 실제 사실 확인 후, 배출된 오염물질이 배출기준의 3배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2000위안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3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50000위안의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정부는 기업 환경오염활동의 제보행위에 대해 상응한 장려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기업이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규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와 위반시 벌칙

Q 저는 중국 북경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제때에 쓰레기 분류를 하지 않아 냄새가 많이 나는데, 북경에서도 쓰레기 분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나요?

A 네. 2020년 5월 1일부터는 북경에서 쓰레기를 규정에 맞게 분류하여 배출하지 않을 경우, 개인은 최고 2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고 회사는 최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각 지방정부마다 여건에 맞게 규정을 각 제정하여 쓰레기 분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경에서는 회사와 개인이 각자 생활쓰레기 분류의 책임주체로 되어, 아래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를 해야 합니다. <북경시 생활쓰레기 관리조례(北京市生活垃圾管理条例)> 제33조.

1. 음식물 쓰레기(야채잎, 과일껍질, 남은 음식과 밥, 폐기 식품 등 부패되기 쉬운 쓰레기), 회수가능 폐기물, 유해 쓰레기, 기타 쓰레기에 대해 쓰레기 분류에 따라 상응한 표시가 있는 쓰레기 수집용기에 버려야 합니다
2. 폐기 가구, 가전제품 등 부피가 비교적 큰 폐기물품에 대해서는 생활 쓰레기 분류 관리자가 지정한 장소에 단독으로 버려야 합니다
3. 건축물 쓰레기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자가 지정하는 시간, 장소, 요구에 따라 단독으로 버려야 합니다

또한 개인이 상기 생활쓰레기 분류규정을 위반할 경우 생활쓰레기 관리자는 시정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도시관리종합집행부문에 신고하여 동 집행부문에서 서면 경고를 하며, 그럼에도 재차 분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50위안 이상 200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만약 기업에서 상기 생활쓰레기 분류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도시관리종합집행부문은 즉시 시정을 명하고 동시에 1000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럼에도 재차 생활쓰레기 분류규정을 위반할 경우,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북경시 생활쓰레기 관리조례(北京市生活垃圾管理条例)> 제67조

Section 7

부동산

이럴땐 이렇게



01

토지소유권

Q 저희 회사는 자동차부품2차 벤더 업체입니다. 중국의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여 공장을 짓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A 중국에서는 토지공유제를 토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 : 토지공유제는 중국 사회주의 공유제의 중요한 내용이자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는 국가(全民所有)와 집체(集体所有)뿐입니다. 즉, 중국에서 국가와 집체를 제외한 자는 토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토지사용권은 취득뿐만 아니라 법에 따라 양도도 가능합니다(헌법(中华人民共和国宪法) 제10조, 〈물권법(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제45조~제63조 (중국민법 제246~제265) , 〈토지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제2조).

위 제도는 다른 나라의 토지제도와 구별되는 가장 독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이 분리되어 모든 소유권은 국가와 집체에 있으므로 귀사는 토지사용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의 토지소유권 관련 법규정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을 확정하는 몇가지 규정〈确定土地所有权和使用权的若干规定〉제3조 ~ 제8조)

| 분류 | 법규 | 내용 |
|-------------|-------------------------------------|----------------------------------------------------|
| 국유토지 소유권 | 헌법 제10조 | ○ 도시의 토지는 국가소유임 |
| | 물권법 제47조 (중국민법 제249조) | ○ 도시의 토지는 국가소유, 법률에서 정한 국가소유의 농촌과 도시 근교의 토지는 국가소유임 |
| | 토지관리법 제2조 | ○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유제인 전민소유제와 집체소유제를 실시함 |
| | 토지관리법 제9조 | ○ 도시의 토지는 국가소유임 |
| 집체토지 소유권 | 헌법 제10조 | ○ 법률로 정한 국가소유 이외의 농촌과 도시근교의 토지는 농민집체소유임 |
| | 물권법 제58조~제63조 (중국민법 제260~ 제265조) | ○ 집체소유의 부동산과 동산을 규정 |
| | 토지관리법 제9조 | ○ 법률로 정한 국가 소유 이외의 농촌과 도시근교의 토지는 농민집체소유임 |

획발(무상불하)토지 양수

Q 외상투자기업이 중국법인이 취득한 획발토지를 양수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나요?

A 외국기업이 획발의 방식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 : 중국에서 국유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는 방식에는 출양(出让), 획발(划拨)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획발은 무상취득이라는 점에서 다른 방식에 비해 경제적인 부담이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획발은 사회공익사업을 위해 국가기관용지, 군사용지, 도시인프라시설 용지, 공익사업용지, 국가중점지원사업인 자원 · 교통 · 수리(도시부동산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城市房地产管理法) 제24조) 등의 용도에 한해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외상투자기업이 획발토지를 취득하려는 목적이 위의 용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획발토지를 양수할 수 없습니다.

설사 위와 같은 용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외국기업(외국인 포함)이 획발의 방식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선례를 찾기 어려워 주의를 요합니다.

국유토지사용권 출양방식

Q 상업적인 목적으로 토지사용권을 수의계약으로 출양 받으려고 합니다. 중국에서의 국유토지 사용권의 출양방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출양받아야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 : 중국은 토지이용 용도에 따라 건설용지를 거주용지, 공업용지, 상업용지, 오락용지 등으로 구분합니다.

그중 공업, 상업, 관광, 오락, 주택 등 경영성 용지 및 동일 토지에 2개 이상의 토지 사용 의향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招标), 경매(拍卖), 가격공개입찰(挂牌) 등의 경쟁방식으로 출양하게 되어있습니다(〈물권법(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제 137조 제2항 (중국민법 제347조 제2항)).

따라서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입찰 또는 경매의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상업용지를 출양받게 되면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그 계약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업용도로 토지를 출양받을 경우, 반드시 입찰, 경매 또는 가격 공개입찰 등을 통해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야만 법률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발구와 체결한 토지출양 계약서의 효력

Q 2년 전에 현 인민정부 고위층의 도움을 받아 주택을 건설할 토지를 출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출양은 위법행위이고 무효이므로 강제로 토지를 회수해 간다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A 권한이 있는 시, 현의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와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양과 관련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유 : 〈토지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도시부동산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城市房地产管理法)〉과 〈도시국유토지 사용권 출양과 양도 잠정조례(中华人民共和国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사용권은 시, 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가 토지사용자와 출양계약을 체결하며, 기타 부서는 출양할 권리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 〈국유토지사용권 계약분쟁사건의 심리시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涉及国有土地使用权合同纠纷案件适用法律问题的解释)〉은 ‘개발구 관리위원회가 출양자가 되어 피출양자와 체결한 토지사용권 출양계약은 무효이다. 다만, 본 해석 실시 전에 개발구 관리위원회가 출양자가 되어 피출양자와 체결한 토지사용권 출양계약 중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시, 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가 추인한 경우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사는 2006년 개발구 관리위원회와 토지 출양계약을 체결했으며, 본 계약은 위 〈해석〉의 실시 이후에 체결한 출양계약이므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 투자시 토지 출양계약은 반드시 권한이 있는 시, 현의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개발구 관리위원회와 계약할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진출해서 활동하고 있는 기

업의 경우에는 토지사용권 출양계약서를 점검해보고 계약상대방이 개발구 관리위원회로 되어있고 <해석>의 실시 전에 체결한 계약이라면 해당 지역 시, 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의 추인을 받아주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사용권의 양도와 임대

Q 50년의 국유토지사용권을 출양받은 A씨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도중에 철수를 하려고 합니다. 남은 기간의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나요?

A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고, 그 사용 기간 내에서 이를 양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도시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과 양도 잠정조례(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 제4조.

이유 : 토지사용권의 양도는 매매, 교환, 증여 등이 포함됩니다.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경우 공장 건물 및 기타 건축물과 부착물을 함께 양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즉, ① 토지대금 미완납, 토지사용증 미수령, ② 출양계약서에서 정한 기간과 조건에 따른 토지 개발을 미완료하고, 건설투자액이 총 투자액의 25% 미만인 경우(동 조례 제 19조).

또한 동법 제40조, 제41조에 의하면, 상기 토지사용기간(출양기간)이 만료된 후, 국가에서는 무상으로 해당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 부착물을 회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토지사용기간 만료 전 토지사용자는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토지관리부문에서 이를 동의할 경우, 토지사용자는 토지사용권 출양비용을 지급하고 출양계약서를 다시 체결해야 합니다.

그 중 거주용지(주택용지)는 <물권법(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제149조(중국민법 제359조)에 의하여, 토지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관련 토지관리부문의 비준 없이 자동 연장됩니다.

유휴토지에 대한 강제 회수

Q 부동산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사용권을 출양 방식으로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기악화 및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2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에서 토지사용권을 강제로 회수 해 간다고 합니다. 그럴수 있나요?

A 토지를 출양받아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후 규정된 기한을 초과하여도 개발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로 인정되어 중국에서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강제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 : 한국에서는 유휴토지 관련 법률이 폐지되면서 법률상으로는 이러한 개념이 사라졌지만, 중국에서는 토지사용자가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를 비준한 原인민정부의 동의 없이 규정된 기한을 초과하여 개발을 하지 않고 있는 건설용지를 유휴토지라고 합니다. [〈유휴토지처리방법(闲置土地处置办法)〉 제2조 제1항].

따라서 토지를 출양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사용권 출양계약서에 약정한 용도 및 착공기일에 따라 토지를 개발하여야 합니다.

만약 출양계약에서 약정한 착공기일을 만 1년 이상 초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사용권 출양금의 20% 이하에 상당한 토지유휴비를 징수할 수 있고, 만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도시부동산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城市房地产管理法)〉 제26조, 동 방법 제4조).

따라서 토지를 출양 방식으로 취득한 후 2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하고 있지 않다면 유휴토지로 인정되어 중국에서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강제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분양허가증의 취득 전 분양

Q 부동산개발상이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주택분양허가증'을 미취득한 상황을 숨기고 건물을 분양했습니다. 분양을 한 부동산 개발상과 분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관련 법규에 따라 현금 이상 인민정부 부동산개발 관련 주무부처에서 불법행위의 중지, 불법소득의 몰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유 : 부동산 개발회사는 부동산 관리부문에 예매허가를 받고 주택분양허가증(商品房预售许可证)을 취득한 후에 주택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주택분양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주택을 예매할 수 없습니다(도시주택분양 관리방법(城市商品房预售管理办法)) 제6조.

주택분양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예매할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부동산개발 관련 주무부처에서는 불법행위의 중지, 불법소득의 몰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지급 받은 선불금의 1%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동 방법 제13조, 〈도시부동산 개발경영 관리조례(城市房地产开发经营管理条例)〉 제39조). 또 법원에 사건이 제소되기 전까지 주택분양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법원은 주택매매 계약을 무효로 인정하게 됩니다(주택매매계약 분쟁사건의 심리시 법률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가지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商品房买卖合同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2조.

따라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회사가 주택분양허가증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이를 취득하지 않고 분양한 경우라면 법원에 제소하여 주택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분양면적의 차이

Q 부동산 개발회사와 체결한 분양계약서상의 부동산 면적은 140평방미터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받은 부동산의 건축 면적은 128평방미터입니다. 계약서상에 이에 관한 약정이 없는데 매수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관련 법규에 따라 이에 따른 분양대금 결산 방법을 정하거나 분양계약 해지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유 : 부동산 면적은 여러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건축 면적, 설계 면적, 실제 사용 면적 등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통상 계약 체결 전에 계약상의 면적이 어느 면적을 뜻하는지를 명확하게 약정할 필요가 있으며, 면적의 의미에 대한 쌍방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적에 대한 쌍방의 이해가 일치할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약정 면적과 실제 면적 간에 오차가 발생했을 경우의 해결방법에 대하여 규정해야 하며, 이를 정하지 않았을 경우 ① 면적의 오차 비례 절대치가 3% 이내이면 실제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결산하도록 하며, ② 면적의 오차 비례 절대치가 3% 이상이면 매수인은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주택판매관리방법(商品房销售管理办法) 제20조 제2항 제2호).

매수인이 분양계약을 해지할 경우, 부동산 개발회사는 해지 후 30일 이내에 매수인이 이미 지불한 분양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동시에 그에 대한 이자도 지불하여야 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분양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증에 기재된 면적이 약정 면적보다 크면 그 면적의 오차 비례 3% 이내의 부분에 대한 분양대금은 매수인이 부담하고, 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양대금은 부동산 개발회사가 부담하고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됩니다.

반면, 부동산등기증 상 면적이 약정 면적보다 작을 경우 그 오차 비례 3% 이내의 부분에 대한 분양대금은 부동산 개발회사에서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절대치가 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양대금은 부동산 개발회사가 2배로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토지 임차기간

Q H사는3년 후에 공항이 들어선다는 곳의 부지에 공장을 세우기 위하여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전대가 가능한 50년 임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50년이 아닌 20년만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맞나요?

A 토지사용권이 아닌 토지임차권의 경우 20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 :만약 H사가 토지사용권을 취득했다면 보호기간은 50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사용권은 용도에 따라 기간이 상이한데 공업용지의 경우에는 최장 출양기간이 5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도시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과 양도 잠정조례(中华人民共和国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 제12조).

단, 위 사례에서 H사가 취득한 것은 토지사용권이 아닌 토지임차권입니다.중국 <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제214조 제1항(중국민법 제705조 제1항)은 '임대기간은 최장 20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한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H사가 50년의 임차권을 취득했다라도 20년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처리되고, 그 결과 해당 부지에 공장을 짓더라도 20년 밖에 보호받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장 부지를 선정할 때에는 전문가와 법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상가 임차인의 인테리어 비용 회수

Q A씨는 B씨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당 운영이 잘 되지 않아 10개월째 임대료 10만 위안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경우 A씨가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 등을 미지급 임대료와 상계하자고 주장할 수 있나요?

A 상계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 됩니다.

이유 : 중국의 현행 법규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후 임대건물에 투자하여 인테리어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허가 없이 인테리어를 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를 책임지고 철거해야 하고 임대인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허가를 얻어 인테리어를 한 경우, 인테리어 부분의 보상에 관하여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되게 됩니다. [《도시건물임대계약 분쟁사건 심리시 구체적 법률적용에 관한 몇 가지 해석(关于审理城镇房屋租赁合同纠纷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11조].

- ① 임대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이 잔여 임대기간 내 인테리어의 잔여가치 손실 배상요구를 제기하면 인정됩니다.
- ② 임차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이 잔여 임대기간 내 인테리어 잔여가치 손실 배상요구를 제기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임대인이 이용을 허가한 경우 이용가치 범위내 적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③ 쌍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잔여 임대기간 내 인테리어 잔여가치 손실은 쌍방이 각자의 과실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④ 쌍방의 귀책사유가 아닌 기타 사유로 인해 계약 해지된 경우 잔여 임대기간 내 인테리어 잔여가치 손실에 대해서는 쌍방이 공평의 원칙에 따라 부담합니다. 단, 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임대차 계약해지의 책임이 A씨에게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부분을 가지고 상계처리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무효, 해지 및 계약기간 만료 후 인테리어 비용처리에 대해 명확하게 약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인테리어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도 서면으로 받아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차인의 우선구매권에 대한 특례

Q A는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해 B소유의 점포에 대해 1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몇달 뒤 B가 친동생인 C에게 150만 위안에 그 점포를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도 그 가격에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결국 그 점포는 C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이 우선구매권을 갖고 있는데도 제3자에게 매각했으므로 B와 C의 매매가 무효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경우 A에게 우선구매권이 인정되나요?

A A에게 우선구매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선구매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우선구매권이 있음을 이유로 매매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유 : 중국 〈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제230조(중국민법 제726조)는 ‘임대인이 임차건물을 매매하는 때에는 매매 이전에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동등한 조건 하에 우선구매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건물 임대계약 분쟁사건 심리시 구체적 법률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가지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城镇房屋租赁合同纠纷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24조는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임차인의 우선구매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① 공유자가 우선구매권을 행사하는 경우 ② 임대인이 건물을 친척 즉,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에게 매각하는 경우 ③ 임대인이 통지한 후 임차인이 15일 이내에 구매의사를 명확히 표명하지 않은 경우 ④ 제3자가 선의로 건물을 매입하고 동시에 건물 등기수속을 완료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면 이 사례에서 B와 C는 형제이므로 임차인의 우선구매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A는 자신에게 우선구매권이 있음을 이유로 B와 C사이의 매매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국유토지 건축물 철거시 임차인 보호

Q 국유토지상의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동 건물이 정부에 의해 철거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국유토지상의 건물 철거시 건물 임차인은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각 지방 정부에서는 임차인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아 보상규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 : 최근 중국에서는 경제발전에 따른 급격한 도시화로 많은 도시에서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의 분쟁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철거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무원은 2011년 1월 20일 <국유토지상 건물의 수용 및 보상조례(国有土地上房屋征收与补偿条例)>를 제정했습니다.

동 조례에 따르면 국유토지상의 건물을 철거할 경우 보상대상은 소유권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국유토지상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은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 지방 정부에서는 국유토지상의 건물 철거시 임차인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비교적 많습니다. 따라서 임차한 건물이 철거될 경우에는 해당 지방 정부 관련 부처에 임차인에 대한 보상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체토지 건축물 철거시 임차인 보호

Q A촌민위원회 소유의 집체토지 상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건물이 정부에 의해 철거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협상하여 보상을 받는 수 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유 :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유토지상의 건물 철거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를 통해 보상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집체토지상의 건물이 재개발로 인해 철거 당할 경우, 임차인이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률규정이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집체토지상의 건물이 정부의 개발계획으로 철거된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철거인에게 보상을 요구하거나 건물 철거 관리부서에 중재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 결과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협상하여 보상을 받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체토지상의 건물을 임차할 때에는 임대인과 정부의 재개발 계획으로 인해 건물이 철거될 경우의 보상문제에 대하여 명확하게 약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일부 지방 정부에서는 집체토지상의 건축물이 보상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국유토지상 건물 임차인에 대한 보상기준을 참고하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계약서 작성시에도 이러한 기준을 참고하여 보상문제에 대한 약정을 해놓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불법 건축물 철거시 임차인 보호

Q A사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5년간 사용하고 있었는데 최근 시정부로부터 철거대상으로 지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임차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철거 당하게 될 때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유토지상 건물의 수용 및 보상조례(国有土地上房屋征收与补偿条例)> 제24조.

이유 : 우선 불법 건축물이란, 이미 건축된 건물 및 그 부속시설이 관련 도시규획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허가에 따라 건축되지 않은 건물 및 부속시설을 말합니다.

따라서 불법 건축물이 철거당하는 경우 임차인뿐만 아니라 건물소유자 역시 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건물 임차 시 임차 건축물의 합법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불법 건축물을 시공할 때 개발구나 토지소유자와 계약 후 건축했다면 개발구나 토지소유자의 과실책임도 있으므로 불법 건축물의 철거로 인한 손실을 개발구나 토지소유자에게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권리관계는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차한 농촌 토지 관련 분쟁

Q 한·중 국교 수립 직후 1995년에 북경시 인근 집체토지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임차를 받았습니다. 토지사용권을 출양받은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생각에 거액을 투자하여 공장을 증설,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그 후에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임대기간은 20년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A 중국의 부동산 관계 법령에 따르면 토지의 사용권은 용도에 따라 그 기간이 상이한데, 공업용지의 경우 최장 출양기간이 5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국의 〈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이 제정된 1999년 이전에는 공업용지의 임대차 계약 또한 위 출양기간과 같이 50년 동안 보장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1999년에 제정된 중국의 〈계약법〉 제214조 제1항에서 '임대기간은 최장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뒤 중국의 경제 성장으로 인하여 토지의 임대료가 크게 상승했고, 임대인 측인 촌민위원회 등은 위 〈계약법〉 규정을 근거로 최초 50년으로 계약한 임대차 기간을 20년으로 축소하고 임대료를 인상하여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면서 법적인 분쟁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급을 금지하는 원칙에 따라 사후에 제정된 법률로 인하여 그 이전에 형성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는 없지만, 중국의 경우 그러한 일반적인 법원칙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실제로 현재 중국의 법원에서는 중국의 계약법 제정 이전에 체결된 장기간의 임대차 계약은 〈계약법〉이 제정된 1999년부터 20년 간의 효력을 가진다는 판결을 대부분 선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계약법 제정 당시 이미 20년의 임대차 기간이 남지 않은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그 임대차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평소 임대인 측인 촌민위원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등기건물 저당권 설정 가능 여부

Q A사는 출양 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에 15층짜리 오피스텔을 건설할 계획이며, 모든 심사비준 절차를 마친 상태입니다. 오피스텔을 10층까지 건설한 후 자금 부족으로 나머지 공정을 진행할 수 없자 A회사는 미완성된 건축물을 저당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A 미완성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물권법(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제180조 제5호(중국민법 제395조 제5호)).

이유 :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에는 건축물 점용 범위 내의 건설용지 사용권에도 저당권이 함께 설정됩니다(동법 제182조 제1항).

만약 건설용지 사용권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해당 신축건물은 저당권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건설용지 사용권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에는 건축물도 동시에 처분되게 됩니다(동법 제200조 제2문 전단).

참고로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기 위하여 건설 중인 부동산을 담보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은 각 지역별, 시기별로 관련기관에 문의하여 자금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법인의 중국내 부동산 구매

Q 외국법인 A가 중국 부동산업에 투자하기 위해 북경시 조양구 부동산을 선정하여 부동산개발상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부동산개발상은 외국법인 A는 구매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외국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중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나요? 또 외국법인이 중국 국내에 대표처를 설립하고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상가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나요?

A 외국회사 A가 중국 국내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려면 우선 중국 국내에 외상투자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고 외상투자기업의 명의로만 관련 비자가용 부동산투자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건설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인민은행,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외환관리국의 <부동산시장 외자진입과 관리의 규범화에 관한 의견(关于规范房地产市场外资准入和管理的意见)> (건주방[2006]171호) 제1조는 '외국기업과 개인은 중국 국내에 투자하여 비자가용 부동산을 구매하려면 마땅히 상업 존재 원칙에 따라야 하고 외상투자부동산업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여야 한다. 관련 부문의 비준을 거쳐登記 후에야 비준받은 영업범위에 따라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회사 A는 마땅히 우선 중국 국내에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여 비준받아야 관련 비자가용 부동산 투자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이 중국 국내에 대표처를 설립하고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상가를 구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동 의견 제10조 '외국기업이 중국 국내에 설립한 지사, 대표기구(비준을 거쳐 부동산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제외함)와 중국 국내에서 근무 혹은 학습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한 외국 개인은 실제수요에 부합하는 자가거주용, 자가사업용 부동산(商品房)를 구매할 수 있고 비 자가사업용, 비 자가거주용 부동산은 구

매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대표처는 자가용 상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현재 북경에서는 외국개인이 중국에서 근무할 경우 자가거주용 부동산 1채를 구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구매에 관한 규정은 각 시기, 각 지방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동산 구매시 각 지방 관련 부문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매에 따른 임차인 보호

Q 한국회사가 투자한 합자회사 A가 북경에서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집주인이 그 부동산을 은행에 저당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이 제때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은행에서 부동산을 경매로 타 회사 B에 매각했습니다. 임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B는 A에게 부동산을 빼달라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A는 임차기간 내에 계속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물권법〉 제190조(중국민법 제405조)는 ‘저당계약 체결 전 저당한 재산이 이미 임대됐을 경우 원 임대관계는 저당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 임대차계약 유효기간 내에서는 계속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미납된 임차료는 누구에게 납부하여야 하는지를 신, 구 집주인과 확인하여야 하고 또 전에 집주인이 위약 상황이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검토해야 하며 원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신 집주인과 동등 조건에서 우선 임차권에 대한 권리 등도 확인하여야 하므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사용권 이중 양도시 대책

Q A회사는 북경시 순의구의 토지사용권을 B회사로부터 양도받고 양도대금을 지불했으나 토지사용권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B회사가 토지를 타 회사에 양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법원에 고소하여 B회사에 토지사용권 변경등기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A는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이럴 경우에는 B회사와 상대방 회사의 토지사용권 변경등기, 점유, 대금지불 여부 및 계약시점 등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유토지사용권 계약분쟁 사건의 심리시 법률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最高人民法院 关于审理涉及国有土地使用权合同纠纷案件 适用法律问题的解释)〉 제10조는 '토지사용권인이 양도인으로서 동일한 출양토지사용권으로 복수의 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양도계약서가 모두 유효한 상황 하에서 양수인이 모두 계약이행을 요구할 경우 아래 상황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토지사용권 변경등기를 한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토지 교부 등 계약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경우 마땅히 지지하여야 한다.
- (2) 모두 토지사용권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우선 합법적으로 투자개발토지를 점유한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토지사용권 변경등기 등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경우 마땅히 지지하여야 한다.
- (3) 모두 토지사용권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투자개발토지를 점유하지 않았을 경우 우선 토지양도대금을 지불한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토지교부와 토지사용권 변경등기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경우 마땅히 지지하여야 한다.
- (4) 계약의무를 전부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계약 체결한 양수인이 계약이행을 요구할 경우 마땅히 지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토지사용권 변경등기를 했거나 토지를 이미 점유하고 있을 경우 귀사는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상대방이 계약만 체결하고 양도대금도 지불하지 않았거나 또는 귀사보다 늦게 지불했을 경우에는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양도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어 계약사기가 성립된다면 그 양도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아파트 임차와 숙소등기

Q 한국인이 여행비자 또는 학생비자로 중국에 와서 취업한 경우의 처벌은? 그리고 파출소에 주숙(숙소) 등기를 인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요?

A 중국에서 여행비자 또는 학생비자로취업을 하면 불법취업에 해당됩니다.

〈중국 출입국관리법제80조에 의하면, 외국인이 위법 취업한 경우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및 상기와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동법 제81조에서는 외국인이 실제 종사하는 업무와 거주 사유가 불일치할 때 기한내에 출국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숙박업소 이외의 장소에 거주할 경우에는 입국 후 24시간 내에 거주지 공간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동법 제39조에 의하면 숙박업소는 업주가 대신 등록합니다.

만일 기한 내에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76조에 의하여 경고 또는 2천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 상하이시는 외국인이 직접 파출소에 찾아가 거주지 등록을 할 필요가 없이 인터넷상 〈외국인 거주 등록 인터넷 셀프신고시스템(境外人员住所登记互联网自助申报系统)〉을 이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유의사항

Q 매월 55,000위안에 건물을 임차했으나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8개월 동안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당장 나가라고 하네요. 이게 가능한가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언제든지 임대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유 : 임대차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임대차로 간주됩니다(〈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제215조(중국민법 제707조)).

이와 같이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임대차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합리적인 상당한 기간을 두고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32조).

장기적으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한편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차 관계를 증명해주는 것으로, 임차인은 계약 체결시 아래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① 임대인이 부동산을 임대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부동산 소유자라면 부동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부동산이 불법 건축물 또는 임시 건축물이라면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대(재임대)를 하는 것이라면 그와 부동산 소유자 간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소유자가 전대에 동의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후 '동일 부동산의 이중임대(一房兩租)'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를 요구해야 합니다.
- ③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불할 경우, 계약서에 보증금 금액(임대인에게 영수증 작성을 요구해야 함)과 임대차 기간 만료시 임대인은 부동산을 명도 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 ④ 매번 임대료를 납부하는 시기,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 ⑤ 부동산 임대차 기간을 명확히 약정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를 해지하고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할 때 임차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 ⑥ 부동산 인도시 부동산 내부의 가구 종류, 상태 등에 대해 명확히 하여 분쟁을 피해야 합니다.
- ⑦ 부동산 또는 주택 내 시설에 문제가 생긴 경우, 임대인의 수리의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 ⑧ 마지막으로 임대인의 신분증 원본을 확인하고 사본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세금 관련 약정

Q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중국인 소유자의 요구에 못이겨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세금(임대인 부담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약정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반드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을 부담해야 하나요?

A 중국의 세금 관련 강행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조항에 해당하여 임차인은 세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 : 우선 <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제52조 (중국민법 제153조) 에서 '법률이나 행정법규의 강행 규정을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세금징수관리법 실시세칙(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实施细则)> 제 3조에 의하면 '어떠한 부서, 단위 및 개인도 세금에 관한 법률이나 행정법규에 위반한 결정은 무효이며, 법률이나 행정법규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임대차계약서에 약정한 세금납부 조항은 중국의 세금 관련 강행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무효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효인 계약조항은 계약 당시부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세금납부 의무는 소유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임차인인 귀하께서는 임대인인 소유주의 요구에 따르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차 등기 미이행시 처벌 여부

Q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던데 맞나요?

A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목적물 소재지 인민정부의 건설(부동산) 주무부서에서 임대차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유 : 건물의 임대차는 서면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고, 부동산관리부서에 등기 및 비치등록을 해야 하며, [〈도시부동산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城市房地产管理法)〉 제54조,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목적물 소재지 인민정부의 건설(부동산) 주무부서에서 임대차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관리처리법(商品房屋租赁管理办法)〉 제14조.

만일 위 기간 내에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무부서가 기한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인 경우 1,000위안 이하, 회사 또는 기관인 경우에는 1,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동법 제23조).

임대차 등기의 구체적인 절차나 불이행에 따른 처벌은 각 지방마다 조금씩 다른데 북경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건물 소재지의 기층관리 서비스센터(服務站, 실무적으로 지역마다 다름)에서 건물임대 등기를 해야 합니다(북경시 주택임대관리에 관한 몇가지 규정(北京市房屋租赁管理若干规定)〉 제11조).

또 위 절차에 따라 건물임대차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공간기관에서 임대인에게 시정을 명하고, 동시에 200위안 ~ 500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동 규정 제35조 제1항).

임차아파트 사업용도 변경

Q 주거용으로 아파트를 임차한 후 인터넷 소핑몰 사업을 하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A 임차 목적을 주거용으로 계약한 후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과 주민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유 : 위 사안의 경우처럼 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아파트에서 사무를 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즉 임대인과 주민위원회의 동의 없이는 아파트를 회사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회사를 설립하여 유지비용을 최소화하고 주거공간과 사무공간에 지출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이런 형태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자의적으로 임대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제219조 (중국민법 제711조)], 임차인은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관리방법(商品房屋租赁管理办法)〉 제10조].

임차한 아파트의 매매와 임차인 보호

Q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집주인이 그 임대 아파트를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새 집주인이 비워 달라고 하는데 이사를 가야 하나요?

A 임차기간이 남아 있는 3개월간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법> 제229조(중 국민법 제725조)에는 '건물주가 임대기간 내에 임대건물을 매도할 경우, 임대차 계약의 효력에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임대인이 그 임대건물을 매도할 경우에는 건물을 매도하기 전에 합리적인 기간을 두고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하고, 임차인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우선 매수권이 있습니다(동법 제230조).

임대인이 임대차 건물을 판매할 때 합리적인 기한 내에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기타 임차인의 우선구매권을 침해했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제3자와의 주택건물 판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도시부동산 임대차계약 분쟁사건의 심리시 구체적 법률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城镇房屋租赁合同纠纷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21조).

따라서 임대인이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동 건물매매의 무효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임차기간이 남아 있는 3개월 간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우선구매권을 침해했을 때는 임대인에게 배상요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아파트와 임차인 보호

Q A씨는 중국인B씨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임차했습니다. 그런데 위 아파트는 A씨가 임차하기 1년 전 B씨가 C씨로부터 200만 위안을 빌리면서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B씨는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게 되자 위 아파트를 C씨에게 매각했습니다. 이때 위 아파트를 임차한 A씨는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위 사례에서 A씨는 C씨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의 지속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선구매권 행사의 주장도 어렵습니다. 다만 담보설정 사실 통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유 : <도시부동산 임대차계약 분쟁사건의 심리시 구체적 법률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해석> 제20조는, 임대기간 중 임대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어 임차인이 건물 매수인에게 임대계약의 지속을 요구하는 경우 건물 매수인은 기존의 임대계약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임대하기 전에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고 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현으로 임대건물이 매각 된 경우, 임대건물을 임대하기 전에 이미 법원으로부터 압류된 경우 등에 해당될 때는 건물매수인이 기존의 임대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A씨는 아파트에 대한 담보권이 설정된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C씨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의 지속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선구매권을 행사하여 위 아파트를 구매하겠다고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단, 임대차 계약 체결시 B씨가 A씨에게 담보설정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아파트 전대(재임대)

Q 임차인이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귀국하게 되어 월세4,000위안인 아파트를 전대(재임대)했습니다. 전차인(재임차인)은 남은 6개월의 임차료를 주고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어느날 집주인이 와서 자기는 전대에 동의한 적이 없으니 나가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A 위 사례의 경우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전차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건물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세(转租)를 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건물을 전대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야하고(〈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제224조(중국민법 제716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관리방법(商品房屋租赁管理办法)〉 제11조 제2항). 또 임대인의 동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동 방법 동조 제1항).

만약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계약은 계속 유효하지만, 전차인이 임대건물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임차인은 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동조 제2항).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전차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수리의무

Q B는 A의 집을 임차했습니다. 그런데 큰 방과 욕실 등에 벽이 갈라져 A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해도 A는 '알아서 고쳐가며 쓰라'고만 합니다. B는 A와 끝내 다툼까지 했는데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나요?

A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자기비용으로 수리를 하고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지불하여야 할 월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유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집수리 문제로 분쟁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이에 대해서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제221조(중국민법 제 713조)에서는 '임대물을 수리하여야 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합리적인 기간 내에 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자기비용으로 수리할 수 있고 그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임대물의 수리로 인하여 임차인의 사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임대료를 이에 상응하게 감면하거나 또는 임대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리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리를 하지 않으면 목적물(집)을 사용, 수익할 수 없을 때나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파손된 경우에 임대인은 수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을 사용, 수익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통상적인 파손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람에 유리창이 깨지거나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는 정도의 파손은 임차인이 수리해야 할 것입니다.

위 사례를 보면 집 안의 벽이 갈라졌다고 했는데 벽이 갈라진 정도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를 판단해야 하겠지만 법은 원칙적으로 수리의무를 임대인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는 사전에 자세한 합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의 아파트 구입 및 주의사항

Q 2016년 10월부터 중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나요?
또한 어떤 사항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A 중국에서 1년 이상 근무 또는 유학한 외국인은 필요에 따라 자가사용 또는 자기 거주 목적으로 주택(商品房)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시장 외자진입 규제 및 관리에 관한 의견〉 제10조).

이유: 여기에서 말하는 '1년 이상 근무 또는 '유학'은 공안국 출입국관리국에서 발급한 '외국인 국내거류상황증명(境外个人在境内居留狀況证明)'으로 증명할 수 있고, 외국인은 중국 경내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1인 1주택에 한하여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외국기관과 개인의 주택구입 규제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规范境外机构和个人购房管理的通知) 제13조).

그러나 중국은 영토가 광활하고 각 지역별 경제적 편차도 심하기 때문에 각 지방 정부가 해당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여 외국인의 중국 경내 주택구입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경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은 상기 1년 이상 근무조건이 없어도 취업비자만 있으면 북경에서 자신의 실제 필요성에 근거하여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외국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의 투입과 관리에 관련한 정책에 대한 통지(关于调整房地产市场外资准入和管理有关政策的通知)〉).

한편 외국인이 주택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주거용 주택 구매 자격 확인: 중국은 특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기관과 외국인에 한하여 주거용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에서 지사와 대표처를 설립한 외국기관은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비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중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은 1인 1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②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 : 부동산 개발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분양 받을 경우 개발회사가 국유토지 사용증, 건설용지계획 허가증, 건설공사계획 허가증, 건설공사 시공증, 주택예매 허가증 등을 취득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는 주택품질보증서, 주택사용설명서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에는 매도인이 부동산권리증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및 부동산을 양도할 권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덧붙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에는 표준계약서(模範合同)를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상당수 도시의 건설위원회 공상관리부문에서는 상품방 매매계약 시범문서(商品房买卖合同示范文本)를 제공하고 있는데, 표준계약서는 개발회사와 분양자의 권리, 의무를 상세히 기재하고 있어 주택구입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는데 유리합니다.

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 ① 만약 부동산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금전의 성격이 계약금(定金)인지 아니면 선금급(訂金)인지 명확히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금이라면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2배의 반환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유리합니다.
- ② 개발회사로부터 상품주택을 구매할 경우, 계약서 상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에 대한 약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인 부동산 사용면적, 건축면적, 공용면적과 부동산 인도시기 및 예상 인도조건, 그리고 관리비, 위약책임 및 입주조건, 부동산 보수기간 등입니다.
- ③ 계약서에 부동산 권리증 이전절차와 이에 대한 지연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약정해야 합니다.
- ④ 쌍방이 부담하는 세금 및 비용에 대해 계약서에 명확하게 약정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매도인이 부동산의 면적, 소유권, 대금 지급방식, 지급기간, 면책조항 등에 대한 보충계약서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보충협약서는 흔히 매수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매수인에게 더욱 많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므로 체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허위 광고

Q 부동산개발회사의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들어선다고 되어 있어서 아이를 생각하면서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입주 2년 후에도 초등학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 관련 규정에 따라 위약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유 : 아파트의 일반적인 판매광고는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지만, 매도인이 부동산 개발구획 내의 건물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설명과 약속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또한 분양계약의 체결 및 건물가격의 확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 이는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약정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합니다(주택매매계약 분쟁사건의 심리시 법률적용에 관한 몇 가지 해석(关于审理商品房买卖合同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3조).

따라서 구체적인 분양광고를 통해 계약서를 체결했다면 그 광고내용은 계약 내용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언급할 사항은 부동산 개발회사의 주택판매 광고에 명시한 사항은 반드시 주택분양 계약서에 약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주택판매관리방법(商品房销售管理办法) 제15조).

따라서 관련 설명과 약정이 주택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계약 내용으로 보아야 하고 당사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동 해석 제3조).

인테리어 보수기간

Q 중국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후 시공업체를 통해 인테리어를 하고, 반년 후 주방, 욕실 등의 타일이 떨어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계약상 보수기간인 4개월이 지났다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4개월이 아닌 최소 2년 동안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유 : 아파트나 가게 등을 인테리어 할 때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그 계약서를 보면 인테리어 업체가 하자보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기간을 3개월 또는 1년으로 약정하거나 또는 아예 하자보수 조항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법률규정에 반합니다. 즉,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조건하에서 주택 실내 인테리어의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검사 합격일로부터 최소 2년이고, 방수를 요하는 주방, 화장실, 외벽의 방수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은 최소 5년입니다(주택실내 인테리어 및 내장 관리방법(住宅室内装饰装修管理办法) 제32조).

위 사안의 경우 계약서 상에 하자보수 기간을 4개월로 약정했다면 그 조항은 법률 규정에 반하므로 무효인 조항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4개월이 아닌 최소 2년 동안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권리등기증 취득 전 아파트의 양도

Q 아파트를 구입한지 1년이 되었는데 아직 건물권리등기증을 발급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위 등기증 없이 양도가 가능한가요?

A 부동산의 명의변경은 등기를 해야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고(물권법(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제9조(중국민법 제209조)), 건물권리등기증이 없으면 명의변경을 할 수 없으며, 또한 매매도 할 수 없습니다(도시부동산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城市房地产管理法) 제38조 제6회).

하지만 중국에서는 건물권리등기증 발급이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위 등기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실무적으로 부동산매매 계약서 상에 '건물권리등기증을 수령하는 시점에 명의변경을 한다.'는 약정을 하고, 계약서를 공증하는 형식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통상 양도인, 양수인, 부동산 개발회사 3자가 참여하여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의 재산처분행위의 효력

Q 한국인 A는 중국인 B명의로 건물을 구입하여 등기했습니다. 그런데 B의 처인 C는 B가 건물을 매도할 당시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등기가 무효라고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C의 소송청구는 가능한가요?

A C의 소송청구는 가능합니다.

이유 : 중국에서는 부부 중 1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소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부부 중 1인이 그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을 남편 또는 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매도했을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그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 또한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당연히 C의 소송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중국의 등기 실무상 등기를 위하여 부부가 함께 공증한 서류(매매계약서 등)를 요구하기 때문에 본 사례와 같은 상황은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이나, 건물 매입 시에는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건물이 1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의 혼인 여부 및 혼인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부동산의 매매

Q 한국인 A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채무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자 중국에 있는 아파트를 매각하고 중국생활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아파트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재산보전 처분에 들어가 매도할 수 없다고 하네요. 정말 재산보전 처분에 들어가면 아파트를 매도할 수 없나요?

A 재산보전 처분 목적물이 된 아파트는 매각 할 수 없습니다.

소송을 함에 있어서 장래 또는 현재의 재산을 이전, 은닉, 훼손하는 행위 또는 기타 객관적 정황으로 인하여 이해관계인의 합법권익이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임박해 있을 경우, 이해관계인은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중에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부동산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城市房地产管理法)〉 제38조 제2호는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에서 법에 따라 부동산의 압류를 판정, 결정하거나 또는 기타 방식으로 부동산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그 부동산은 매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권리의 제한’에는 법원에서 결정한 재산보전 처분도 해당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재산보전의 조치에는 봉인(查封), 압류, 동결 또는 법률이 정하는 기타의 방법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民事诉讼法)〉 제103조).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신청을 하고, 결정이 된 재산보전처분 목적물(이사의 아파트)은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담보 제공된 부동산 등기사항 확인

Q 김사장은 중국 친구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받고 50만 위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건물등기증이 가짜일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정말 이런 일도 있나요?

A 중국은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등기(방산증)를 부동산 권리의 가장 유력한 증명문서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 부동산 증명문서는 해당 부서에서 권리인에게 발급하여준 권리증명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산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기타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극히 드문 일이긴 하지만 이러한 권리증명 문서의 권위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가짜 부동산 증명문서를 위조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급적 부동산 등기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여 부동산 등기상황을 확인하여 보시고 관련 부동산 등기부서에서 당해 부동산에 대해 지당권을 설정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당부동산의 변제 방법

Q 갑은 을에게 30만위안을 빌려주면서 을 소유의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을이 차용금을 제때에 상환할 수 없게 되자 갑은 그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변경해 줄 것을 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야 하나요?

A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변경해 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라 할 것입니다. 저당권의 법률적 성질은 을이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를 갑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을이 기한 내에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하여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일 갑과 을이 아파트 처리방식에 대하여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 갑은 〈물권법(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제195조(중국민법 제410조)에 따라 법원에 저당물의 경매, 판매를 신청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자기채권의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변경해 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라 할 것입니다.

토지용도의 무단 변경

Q 호수를 끼고 있는 농지를 200만위안에 구입하여 별장형 펜션을 지었는데 토지용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철거명령을 받았습니다. 철거해야 하나요?

A 만약 토지 용도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별장을 지었다면, 건축물과 기타 시설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이유 : 중국의 토지는 용도에 따라 농업용지, 건설용지, 미이용지(未利用地)로 나뉩니다.

- ① 농업용지는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를 가리키고, 이는 경지(耕地), 임지(林地), 초지(草地), 농경지 수리시설용지(农田水利用地), 양식수면(养殖水面) 등을 포함합니다.
- ② 건설용지는 건축물, 구조물을 건설하는 토지를 가리키고, 이는 도농주택과 공공시설용지, 공업·광업용지, 교통·수리시설용지, 관광용지, 군사시설용지 등을 포함합니다.
- ③ 미이용지(未利用地)는 농업용지와 건설용지 이외의 토지를 가리킵니다(토지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제4조).

따라서 별장은 농업용지가 아닌 건설용지에 지어야 합니다. 만약 농업용지에 별장을 지으려면 소재지 인민정부에서 농업용지를 건설용지로 변경하는 용도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 용도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별장을 지었다면, 건축물과 기타 시설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합니다(동법 제74조).

따라서 위 시안과 같은 시행착오를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증서(国有土地使用证, 集体土地使用证)를 확인하신 후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기 바랍니다.



토지 사용기간

Q 1990년대에 지은 상가건물을 구입했는데 그 상가의 토지는 약 13년 정도 사용할 수 있고 차후에 이를 연장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맞나요?

A 중국에서 토지사용기간은 토지사용자가 국가에 토지사용권출양금(出让金)을 지급하고, 국가가 토지사용자에게 토지사용권을 부여해 주는 기간을 가리킵니다(〈도시 국유토지사용권 출양 및 양도 잠정조례(中华人民共和国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 제8조).

토지사용권의 출양기간은 토지용도에 따라 5종류로 나뉘며, 그기간은 최단 40년에서 최장 70년에 달합니다.

토지용도에 따른 토지사용권 출양기간

| 토지용도 | 출양기간(년) |
|----------------------------|---------|
| 거주용지 | 70 |
| 공업용지 | 50 |
| 교육 · 과학기술 · 문화 · 위생 · 체육용지 | 50 |
| 상업 · 관광 · 오락용지 | 40 |
| 종합 또는 기타 | 50 |

따라서 90년대에 지은 상가를 구입하셨다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출양기간은 약 10여년 정도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동법 제40조, 제41조에 의하면, 상가 토지사용기간(출양기간)이 만료된후, 국가에서는 무상으로 해당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 부착물을 회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토지사용기간 만료전 토지사용자는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토지 관리부문에서 이를 동의할 경우, 토지사용자는 토지사용권 출양비용을 지급하고 출양계약을 다시 체결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 중, 거주용지(주택용지)만은 <물권법(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제149조(중국민법 제359조)에 의하여, 토지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관련 토지관리부문의 비준이 필요없이 자동 연장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실무상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출양기간과 토지용도에 따라 양도, 임대, 매매에 따른 각각의 조건이 상이하므로 건물 및 토지사용권 거래에 있어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저당권 신청절차

Q A는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B로부터 100만 위안을 빌리면서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그 후 A의 사업이 부도가 나고 B가 그 집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고 했으나 이 집에 대해서는 아직 저당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 부동산의 저당은 저당등기를 해야하고, 저당권은 등기한 일자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물권법(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제180조, 제187조(중국민법 제395조, 제402조)). 그러므로 저당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저당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없게 됩니다.

부동산 저당이란 저당권 설정자인 A가 합법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B(저당권자)에게 채무이행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참고로 중국에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실무적으로는 약 2주 정도가 소요되며, 필요한 서류는 ①신청서, ②신청인 신분증(외국인일 경우 중국 공증처에서 공증한 여권 중문번역 공증서), ③건물권리등기증, ④국유토지사용증, ⑤채권채무계약서, ⑥저당권 설정계약서, ⑦혼인관계증명(부부 공동채산일 경우) 등을 부동산관리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북경시 기준, 지역마다 상이).

따라서 B가 A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법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 절차에 따라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저당권 설정시 필요한 서류 중 건물권리등기증이 있는데, 부동산과 관련한 기타 인허가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 인허가 서류

| 명칭 | 취득주체 | 발급부서 | 내 용 |
|--------------------------|-------------|----------------------------|-------------------------------------------------------------------|
| 건설용지계획허가증 (建设用地规划许可证) | 건설단위 | 도시계획행정 주관부문 | 동 건설공정에 관한 위치와 범위가 도 시계획에 부합함을 확인하는 증서 |
| 건설공사계획허가증 (建设工程规划许可证) | 건설단위 | 도시계획행정 주관부문 | 동 건설공사가 도시계획에 부합함을 확인하는 증서 |
| 국유토지사용증 (国有土地许可证) | 부동산 개발회사 | 국토자원행정 주관부문 | 국유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증서 |
| 건물권리등기증 (房屋所有权证) | 부동산 구입자 | 부동산 등기기관 | 건물의 합법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에 따라 건물에 대하여 점유,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귀속의 증명서 |
| 건설공사시공증 (建设工程开工证) | 건설단위 | 건설행정 주관부문 | 공사를 시작하도록 허가하는 증서 |
| 주택매매허가증 (商品房预售证) | 부동산 개발회사 | 시, 현 인민정부 부동산행정 관리부문 | 주택을 분양하도록 허가하는 증서 |
| 주택품질보증서 (商品房质量保证书) | - | 부동산 개발회사 | 분양한 주택에 대하여 품질책임을 보 증하는 증서 |
| 주택사용설명서 (商品房使用说明书) | - | 부동산 개발회사 | 부동산 개발회사에서 작성하는 주택 의 합리적인 사용에 대한 메뉴얼 |

부동산 구입 관련 은행 대출 시 계약금(首付款) 납입 비율

Q 한국인 A는 북경에서 몇 년간 근무한 후 북경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최소로 얼마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외국인 뿐만 아니라 중국인도 마찬가지로 북경에서 부동산 구매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최소한 지불해야 하는 계약금 제한이 있습니다.

이유: <북경시 인민정부관공청의 시 주택도농건설위 등 부문의 본 시 부동산 시장의 평온, 건강한 발전의 촉진에 관한 몇 가지 조치 통지에 대한 재발신(北京市人民政府办公厅转发市住房城乡建设委等部门《关于促进本市房地产市场平稳健康发展的若干措施》的通知)>에는 은행대출을 통해 처음 자가거주용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계약금(首付款)납입 비율은 35% 이하이면 안되고 이미 보동산 한채를 구입한 가정은 두번째 부동산 구입시, 납부해야 될 계약금 비율은 50%이하이면 안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 지방정부마다 소득금액의 다소, 각 은행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계약금의 비율도 달라지므로 부동산 구매 전에 각 지방의 부동산관리국과 은행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아파트 구매 후 인테리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

Q 중국 북경에서 아파트 구매 후 인테리어 중 가스관과 가스계량기 등 설비위치가 보기 좋지 않아 벽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가 끝난 후 설비를 무단으로 옮겼으며 아파트관리회사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말이 됩니까?

A 가스관과 가스계량기를 옮긴 행위는 관련 규정을 위반했지만, 아파트관리회사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도시부동산 행정주관부문에서는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유 : 〈주택 실내 인테리어장식 관리방법(住宅室内装饰装修管理办法)〉 제38규정에 의하면 주택 실내 인테리어 장식 활동 중 스스로 난방, 가스관, 시설 등을 뜯어 고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도시부동산 행정주관부문에서 개정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동시에 동 행위를 한 자에게 5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한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관리회사에서 과태료를 직접 부과할 수는 없고, 아파트관리회사에서 도시부동산 행정주관부문에 신고하면 도시부동산 행정주관부문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쓰레기를 쓰레기통이 아닌 복도에 방치해 두었다는 이유로 아파트관리업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기관이 아닌 아파트관리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행정기관에서 부과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 부동산에 대한 한국 법원 판결의 효력

Q 저와 남편은 한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서에서는 남편 명의로 된 중국 부동산이 저에게 귀속된다고 판결해 주었는데요, 명의 이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중국의 관할권이 있는 중급인민법원에 부동산 소유권 또는 재산분할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부동산 소유권자를 확인하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중국과 한국은 사법공조협정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호 상대국 판결을 인정 및 집행해야 하는 약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법원은 한국법원의 판결을 직접 인정 및 집행하지 않으며, 관할권이 있는 중급인민법원에 한국법원 판결서의 인정 및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국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법원은 한중 양국간의 호혜원칙에 근거하여 해당 신청의 접수 여부를 심사합니다. 단 중국법원은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 중 혼인관계에 대한 인정과 집행을 조건부로 받아들이며 재산분할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해주지 않습니다. <중국공민의 외국법원 이혼판결문 인정신청 절차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中国公民申请承认外国法院离婚判决程序问题的规定) 제2조>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우선 중국법률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중국법원에 부동산 소유권 또는 재산분할 등의 소송을 제기하고, 중국법원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를 확인하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은 후 부동산 소재지의 부동산등록센터에 명의 변경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입주민간 공사 소음 문제의 처리

Q 한국인 A는 중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차한 지 2개월 후 옆집에 이사온 B는 아침 7시부터 저녁9시까지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 A의 정상적인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는 B와의 협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A는 아파트관리업체에 신고하여 B의 인테리어 시간을 조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유 : 〈신규건설 상품주택 가정거실 장식인테리어 관리의 강화에 관한 몇 가지 규정, 关于加强新建商品住宅家庭居室装饰装修管理若干规定〉(경 건법[200 1]616호) 제10조에서는 가정거실 인테리어 시 마땅히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 시공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이웃들의 정상적 거주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없애야 하고, 매일 12시부터 14시까지, 18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의 치고, 파고, 깎고, 뚫는 소음이 발생하는 인테리어 활동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B의 행위는 분명히 위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아파트관리업체에 B의 행위를 제지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아파트관리업체에서는 이를 지지하여야 합니다.

그외에도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차고의 부동산등기

Q 북경에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개발업체가 차고와 함께 구매할 것을 건의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차고도 부동산등록을 할 수 있나요?

A 차고는 소유권 차고와 비소유권 차고로 분류됩니다.

소유권이 있는 차고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부동산등록 수속을 할 수 있으며, 판매가 가능합니다.

비소유권 차고는 주민 방공용(防空用) 공간을 사용하여 개조한 것으로 부동산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소유권은 없고 사용권만 있기 때문에 판매할 수 없고 임대만 가능합니다.

차고의 부동산등록은 차고 소재지의 부동산등록센터에 가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한 후 부동산등록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차고가 부동산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현지 부동산등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부동산 판매 시 주의사항

Q 저는 북경에서 생활하는 동안 아파트를 한채 구입했습니다. 지금 중국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가려고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매각시 어떤 주의사항이 있나요?

A 중국에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아래의 몇가지 사항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1) 주택 가격: 여러 곳의 중개업소를 통해 해당 건물의 시세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각 부동산 중개업소나 공식 앱에서 인접한 지역, 단지의 주택 거래가격을 비교해 보고, 신규 분양하는 단지의 분양가격 등을 알아야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2) 매매절차: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받고 부동산등록센터에서 소유권 이전 수속을 해야 합니다.
- 3) 거래 리스크: 주택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매매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지와 주택 시세가 변함으로 인해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등을 사전에 매매계약서에 약정해 놓으면 분쟁발생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 4) 관련 수속: 주택 소유권자 본인이 직접 거래 및 소유권 이전 수속을 할 수 없어 타인에게 위탁해야 할 경우, 수권위탁서와 관련 자료를 공증인증해야 합니다.
- 5)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거래를 할 경우, 기업 신용이 양호하고 비교적 잘 알려진 중개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현지의 시장감독관리국 등 사이트에서 중개업체에 대한 처벌조치를 공시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사이트에서 알아보거나 중국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 사이트(<http://www.gsxt.gov.cn/>)에서 해당 중개업체가 처벌받은 기록 또는 불량기록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기본상황 조사방법

Q 북경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계약체결 전에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자, 기타 권리 제한 사항 존재 여부 등과 같은 기본상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부동산 소재지의 부동산등기센터를 방문하여 조회하는 방법과 인터넷 조회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부동산등기센터 방문 조회

아파트의 소유권자와 함께 그의 신분증 및 아파트 관련 증서(원본 및 복사본)를 가지고 아파트 소재지의 부동산등기센터에 가서 해당 아파트의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가능한 정보는 ① 부동산 기본 정보, ② 관련 권리 정보, ③ 부동산의 공유 존재 여부, ④ 저당권등록, 예고등록, 이의 등록 존재 여부, ⑤ 부동산 가압류등록 또는 기타 제한성 처분 존재 여부

2) 인터넷 조회 신청

북경시 부동산등록 온라인 서비스 사이트(bdc.ghzrzyw.beijing.gov.cn/eo)에 접속 -> 가입등록 -> 신원정보 입력 -> 조회 신청 -> 심사결과 확인 등의 절차로 이루어지며, 조회 가능 내용은 부동산 소유권자가 조회 신청한 경우, 부동산센터 방문을 통해 조회 가능한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조회 신청한 경우, ① 부동산 기본상황 정보, ② 부동산 공유상황, ③ 저당권등록, 예고등록, 이의등록 상황 존재 여부, ④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록 또는 기타 제한성 처분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북경시의 경우, 온라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자 부동산 등기증서의 효력

Q 중국의 부동산 등기증은 종이가 아닌 전자등기증서도 있나요? 만약 전자등기증서가 있다면 부동산 소유권자에게 어떤 효력이 있나요?

A 전자 부동산 등기증서도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부동산등기증서 전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경은 2019년 10월부터 시작하여 동성구, 서성구, 조양구 등 11개 구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생성된 전자 부동산 등기증서로 종이증서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강소성은 이미 전자 부동산 등기증서가 정식으로 사용되고 있고 기타 지역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 일반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 부동산 등기증서는 부동산 등기 등록 완료 시 자동으로 생성되며 종이증서와 동등한 법률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전자 부동산 등기증서는 세무, 공안, 학교, 은행 등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직접 지정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에서 조회, 다운 받아 제시할 수 있으며 관련 부문은 부동산조회 공유시스템을 통해 진위와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어 업무처리 절차와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소산권방(小产权房)의 법적리스크

Q 중국 모 도시에서 분양 중인 소산권방(小产权房)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구입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A 농촌집체토지상에 지어진 건물은 소산권방(小产权房)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물은 토지출양금을 지불하지 않은 건물로 그 소유권증서는 중국의 부동산 관리부문에 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향정부 또는 촌정부에서 발급합니다.

이런 유형의 건물은 국가에서 발행하는 토지사용증 및 판매허가증을 얻지 못하며 방산국에서 주택매매계약서 등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공식 발급하는 합법적인 부동산 소유권증서가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하면, 소산권방은 해당 집체 구성원이 아닌 자에게 양도 또는 판매할 수 없으며 구입 후 합법적으로 소유권 명의 이전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소산권방은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양도나 상속 등 권리 행사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을 입지 않도록 신중한 선택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Part 2 -

교민생활법률

민법과 생활 / 민사소송법과 생활 /
형법과 생활 / 형사소송법과 생활 / 일상 생활



Section 8

민법과 생활

이럴땐 이렇게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성립 여부

Q A는 B 부동산 회사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한달 후 입주하기로 약정했는데, A만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했고 B 부동산 회사는 나중에 서명, 날인하기로 한 후, A는 1년치 임대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B 부동산 회사는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받은 임대료도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나요?

A 임대차 계약은 성립되었습니다.

이유 : 중국 〈계약법〉 제32조(중국민법 제490조)는 '당사자가 계약서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쌍방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때 계약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사례와 같이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은 채,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의 주요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법 제37조(중국민법 제490조)는 위 원칙에 예외를 두어 '계약서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서명 또는 날인 전에 일방 당사자가 주요한 의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였다면 계약은 성립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사례의 경우 B 부동산 회사가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지만, A는 임대료를 지급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의 주요한 의무를 이행하였고, B 부동산 회사는 이를 수령하였기 때문에 사례의 임대차 계약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의 효력

Q A는 2013년 5월 B 회사에 5만 위안의 가격으로 컴퓨터를 납품하였고, B 회사는 그 대금의 일부인 3만 8천 위안을 수표(支票)로 지급하였습니다. B 회사는 나머지 대금 1만 2천 위안을 2013년 6월 말에 지급할 것을 구두로 약속하였고, 이 때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7월까지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A는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하였는데, B 회사는 관련 담당자가 사직을 했고 납품 대금은 완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통지하면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B 회사를 상대로 나머지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A와 B 회사가 실제로 거래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컴퓨터의 인도와 관련된 자료, B 회사가 위 거래를 인정하여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했다는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면, 구두 계약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어 A는 B 회사에 나머지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유 : 중국 (계약법) 제10조(중국민법 제469조)는 '당사자의 계약 체결은 서면, 구두 또는 기타의 형식으로 한다. 법률, 행정법규가 서면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한 경우, 서면의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에 대하여 서면의 형식으로 요구하는 법률 또는 행정법규가 없으므로, 사례의 경우 구두 계약의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한편, 동법 제36조(중국민법 제490조)는 '서면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당사자가 서면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일방이 이미 주요한 의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면 그 계약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 계약을 체결한 사례와 달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A가 계약의 내용대로 컴퓨터를 인도하였다는 사실과 B가 이를 받아들여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매매계약의 성립을 인정받아 나머지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 17세 미성년자의 민사상 책임능력

Q 만 18세인 A는 고등학생으로 만 17세인 B와 친구 사이입니다. B는 서안(西安)에서 북경(北京)으로 와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북경에서 사업을 하는 외삼촌이 있어서 그 집에 거주하면서 외삼촌의 사업장에서 야간에 일을 하는 등 스스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A와 B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말다툼이 생겨 화가 난 B가 A를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A는 B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B는 완전한 민사상 행위능력자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A의 치료비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유 : 중국〈민법통칙〉 제11조(중국민법 제17, 18조)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의 사람은 성인이며, 완전한 민사상 행위능력을 가집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진 사람은 책임능력도 가진다고 보므로,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합니다. 반면, 만 18세 미만의 사람은 미성년자로 일반적으로는 행위능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만 1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사람이 자신의 노동으로 얻은 수입을 주요한 생활 원천으로 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민사상 행위능력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만 17세인 B는 외삼촌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여 그 수입으로 생활을 영위하므로 완전한 민사상 행위능력자로 취급되어, A의 치료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A는 B에게 직접 그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와 유사한 사건에서 북경시 법원은 동일한 취지로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충전한 게임머니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Q 8살 아들이 제 핸드폰을 이용해서 게임을 할 때 게임머니를 1만 위안 충전했는데, 회사와 합의하여 이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어떠한 법적 조치가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법원에 게임회사에 소송을 제기하여 게임회사가 충전비용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8세 아이는 '제한 민사행위능력자'에 속합니다. 중국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제한 민사행위능력자 중에 미성년자는 그 연령과 지능에 상응하는 민사활동, 기타 민사행위를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충전한 금액을 고려하면, 위 연령의 아이가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를 이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충전행위는 그 연령, 지능에 걸맞지 않은 민사활동에 속하여 그 행위가 법정대표인에 의하여 추인되지 않는다면 무효인 민사 법률 행위에 속합니다.

처분권이 없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

Q A는 친구 B에게 자전거를 빌려주면서 “새 자전거를 사려고 하니 지금 사용하는 자전거는 팔아버릴 계획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B는 A의 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마음대로 자기의 친한 친구 C에게 500위안의 헐값으로 그 자전거를 팔아버렸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 양도행위의 효력과 A의 구제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A A는 C에게 자전거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유 : B는 A가 자전거를 양도할 생각이 있다는 것만 알고 위임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A의 소유인 자전거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는 처분권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일반적으로는 무효행위로 인정됩니다.

중국 〈계약법〉 제51조(중국민법 제66조)는 처분권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재산을 처분하였을 때, 권리인의 추인을 거치거나 처분권이 없는 사람이 계약 체결 후 처분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계약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B가 A의 위임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자전거를 타인에게 양도하였고 사후에도 A의 추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B의 행위는 무효입니다.

또한 헐값에 자전거를 산 친구는 자전거가 B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몰랐던 점에 과실이 있다면 자전거를 선의취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A는 B의 친구에게 자전거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헐값에 매도한 B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박을 받아 체결한 계약의 효력

Q A는 친구 B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로 끌려간 후, B가 도망갔으니 대신 빚을 갚으라는 협박을 받아서 대신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문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협박을 받아 서명한 채무 문서는 효력이 있나요?

A A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채무 문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취소권은 취소사유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유 : 중국 〈계약법〉 제54조(중국민법 제150조)는 '당사자 일방이 사기, 협박의 수단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위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경우,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법원이나 중재기구에 계약의 변경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5조(중국민법 제152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취소권은 소멸한다.
(1) 취소권을 가진 당사자가 취소 사유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채무 문서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사유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자 지급기한에 대한 약정 없이 금전을 빌려준 경우

Q A는 친구 B에게 5만 위안을 2년 동안 빌려주면서 은행이자율에 따른 이자 지급을 약정하였지만, 이자 지급기한을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자 지급기한의 약정 없이 금전을 빌려준 경우 대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이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A와 B가 이자 지급기한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협의의 하여 이자 지급기한을 보충할 수 있고, 협의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중국민법의 규정에 따라 B는 차용일로부터 매 1년마다 약정한 은행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유 : 중국 〈계약법〉 제205조(중국민법 제674조)는 ‘이자 지급기한을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약정이 불명확하고,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해서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금전 차용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금을 상환할 때 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하고, 금전 차용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이자를 지급하고 1년에 이르지 않는 나머지 차용기간에 대해서는 원금을 상환할 때 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61조(중국민법 제510조)는 ‘당사자는 품질, 가격 또는 보수, 이행지 등의 내용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계약의 효력 발생 후에도 보충 협의를 할 수 있다. 보충 협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 계약의 관련 조항 또는 거래 관습에 따라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와 B가 이자 지급기한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동법 제61조에 따라 협의하여 이자 지급기한을 보충할 수 있고, 협의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중국민법”의 규정에 따라 B는 차용일로부터 매 1년마다 약정한 은행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자 지급기한을 약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자 자체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동법 제211조(중국민법 제680조)에 따라 이자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연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이자지급

Q A는 자신에게 돈을 빌린 사람이 약정 기한에 돈을 갚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지연기간에 상응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만약 청구할 수 있다면 어떤 기준에 따라 청구해야 하나요?

A 민간인 간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금액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합의에 의한 약정이율에 의하여 산정하거나, 약정이율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법정이율에 의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민간 대여금 사건의 심리시 법률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가지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제29조는 ‘지연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을 따른다. 다만 연이율은 24%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간에 지연이자를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불명확할 때에는 (1) 대여기간 중의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고, 지연이자도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 대여자는 차용인의 연체일로부터 자금 점용기간 동안 연 6%의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한다. (2) 대여기간 중의 이자를 약정하였으나, 지연이자를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 대여자는 차용인의 연체일로부터 자금 점용기간 동안 위 대여기간 중 약정 이자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민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은 피집행인이 판결, 재정, 기타 법률문서의 지정기간 내에 금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위 지정기간 이후부터는 2배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은 경우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연이자에 관한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을 경우 연 이율 2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정에 따라 지연이자를 산정하며, 지연이자를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지연이자를 산정하면 됩니다.

개인 대출이자율의 제한 문제

Q 지인 A로부터 1만 위안을 연 이자율 30%의 이자로 빌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 같은데, 중국에는 고율의 이자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나요?

A 중국에서도 고리 대금업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민간 사채업의 이자율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연 이자율 36%까지만 합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 : 민간인이 사채업을 할 경우 반드시 국가의 법률, 행정법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민간 사채업의 경우 대어자는 대어 자금을 반드시 자신의 합법적인 수입에 의한 자유 화폐 자본에서 충당하여야 합니다.

민간 사채 이자율은 대어자와 차용자 간의 협상으로 확정할 수 있으나, 그 이자율은 중국인민은행이 공포한 금융기구의 이자율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중국 〈계약법〉 제211조(중국민법 제680조)에 의하면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고리의 규정에 의하면 상술한 기준을 초과한 이율은 고리 대차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최고인민법원에서 민간대차안건을 심리함에 있어 법률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제26조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대차 연이자가 24%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약정한 연이자가 36%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정 제31조는 ‘당사자 사이에 대차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으나 자신이 원하여 스스로 이자를 지급거나, 또는 약정한 이율을 초과였지만 자신이 원하여 스스로 이자를 지급하고 동시에 국가, 단체, 개인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 연이자 36%를 초과하는 많은 부분은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간 사채업의 이자율은 일정한 조건하에 연 이자 36%까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定金)과 약정금(订金)의 차이

Q 명품 가방 매니아인 A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던 중 명품 가방 매장에서 한정판으로 출시된 가방을 사려고 했지만, 마침 현금이 부족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매장 직원은 A에게 약정금으로 1,000위안을 지급하면 가방을 팔지 않고 남겨두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A는 1,000위안을 지급하고 매장으로부터 '약정금(订金) 1,000위안'이라고 적혀 있는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A는 같은 가방을 선물 받아 더 이상 가방을 살 필요가 없게 되어, 백화점 명품 가방 매장을 방문해서 약정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장 직원은 A가 지급한 1,000위안은 계약금이므로 반환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약정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A A는 약정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유 : 중국 〈계약법〉 제115조(중국민법 제586, 587조)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금(定金)을 지급하여 채권 담보로 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한 후, 계약금은 대금에 충당되거나 회수되어야 한다. 계약금을 지급한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보법의 적용에 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若干问题的解释)〉 제118조는 '당사자 간에 유치금(留置金), 담보금(担保金), 보증금(保证金), 정약금(订约金), 압금(押金) 또는 정금(订金) 등이 교부되었으나, 계약금(定金)의 성격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당사자의 계약금 권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와 같이 A가 매장에서부터 받은 영수증에 '약정금(订金) 1,000위안'이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계약금(定金)으로 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위 금원은 계약금으로 볼 수 없어서, A는 매장에 대해 약정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위약금 약정에 대한 법적 제한

Q 저는 중국인 A로부터 자동차를 10만 위안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선불금으로 3만 위안을 지급하였습니다. 1주일 후 잔금으로 7만 위안을 지급하고 자동차를 인도받기로 하였는데, 돈이 마련되지 않아 기한을 3주나 넘겼습니다. A는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연체된 1일당 미지급 대금의 0.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약금이 너무 과도한 것 같은데 감액할 방법이 없나요?

A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감액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 중국 〈계약법〉 제114조(중국민법 제585조)는 당사자는 일방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를 예정하여 일정한 액수의 위약금을 약정할 수 있고, 위약으로 인한 손해 배상액의 계산방법을 약정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정한 위약금이 발생한 손해보다 적은 경우 당사자는 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증액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약정한 위약금이 발생한 손해보다 과도하게 많은 경우 당사자는 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적당하게 감액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실제 손해를 기초로 계약 이행 상황, 당사자 과실 정도 및 예상된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금이 실제 발생한 손해의 30%를 초과하는 경우를 발생한 손해보다 과도한 것으로 봅니다(〈계약법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가지 해석(2)〉(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若干问题的解释(二)) 제29조).

이 사례에서 A가 요구하는 연체된 1일당 미지급 대금의 0.5%에 해당하는 위약금은 은행의 연체이자율에 따른 손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위약금이 과도하게 책정되었음을 이유로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할 지급 계약에서 매수인의 위약 책임

Q A 회사는 B 회사에 설비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B 회사로부터 계약 체결시 대금의 20%를 지급받고, 설비 인도 후 3일 내에 대금의 40%를 지급받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B 회사는 A 회사로부터 설비를 인도받은 후부터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한달이나 경과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A 회사는 B 회사에게 대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설비 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유 : 중국 〈계약법〉 제167조(중국민법 제634조)는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매매 계약의 매수인이 지급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전체 매매대금의 5분의 1에 도달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전체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의 계약에 의하면 B 회사는 설비를 인도 받은 후 3일 내에 대금의 40%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지만, B 회사는 설비를 인도 받은 후 한 달이 지나도록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전체 대금의 5분의 1을 넘었습니다.

따라서 A 회사는 B 회사에게 매매대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설비 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과정에서 계약과 다를 경우 여행사의 책임

Q A는 국경절을 맞이하여 북경에 있는 B 여행사를 통하여 계림으로 여행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림에 도착한 후 여행사를 통해 미리 예약해둔 호텔을 찾아가니 호텔 측에서는 A 이름으로 예약된 방이 없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여행사 측의 과실로 잘못된 날짜에 예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A는 주변의 다른 호텔에서 묵게 되어 미리 입금한 호텔비용과 대신하여 머무른 호텔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B여행사 측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A는 B여행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 : <여행법(中华人民共和国旅游法)> 제74조 등에 의하면, 여행사는 여행객의 위탁을 받고 그 위탁에 따라 교통, 숙박, 식음, 유람, 오락 등 여행 용역에 대한 대행 예약을 위한 수수료를 받으면, 위탁 사무를 스스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여행사의 잘못이 여행자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여행사는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여행사가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유상으로 여행 계획 설계, 여행 정보 자문 등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 계획이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하며, 그 정보가 시기 적절하고, 확실하다는 점을 보증해야만 합니다.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

Q A는 B에 대하여 3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 변제일이 다가오자 B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400만 원에 상당하는 유일한 아파트를 이러한 시정을 잘 알고 있던 친구인 C에게 200만 원만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A의 채권 중 일부를 변제한 후 변제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는 B의 저가 매도행위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채권자인 A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법원에 B가 행한 매도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유 :중국 <계약법> 제74조(중국민법 제539조)는 ‘채무자가 현저히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양수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B는 400만 원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친구 C에게 200만 원만에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현저히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현저히 불합리한 저가는 평균금액의 70% 이하를 의미함). [(계약법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가지 해석(2)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若干问题的解释(二))] 제19조

또한, 위 아파트는 B의 유일한 재산이므로 위 매도행위로 인해 채권자인 A에게 손해를 입혔으며, 또한 양수인인 C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채권자 A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B의 매도행위를 취소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취소하면 그 매도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인정됩니다 [(계약법의 적용에 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1) (最高人民法院

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若干问题的解释(一)) 제25조.

이와 같이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법원에 취소할 권리를 주도록 청구할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한 채권을 포기하거나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 사유를 알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5년 내에 취소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그 취소권은 소멸합니다.

공동 연대보증인 상호 간의 구상권 관계

Q A와 B는 친구 C의 부탁을 받고 공동으로 C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실패로 C는 한국으로 도망을 간 상태입니다. 이에 C의 채권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때에 A에게 채무 전액인 300만 위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A는 B와 공동으로 연대보증을 하였기 때문에 그 절반인 150만 위안만 부담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보증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A와 B는 공동연대 보증인이므로 A는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채권 전액인 300만 위안의 보증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 후 A는 채무자 C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공동연대 보증인 B에게 부담 부분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만약 부담 부분 약정이 없다면 균등하게 50%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유 : 중국〈담보법〉 제12조(중국민법 제699조)는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두명 이상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은 보증계약에서 약정한 부담 부분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부담 부분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은 연대 보증책임을 부담하며, 채권자는 어느 보증인에 대하여도 보증책임 전부를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모든 보증인은 채권 실현의 전부를 담보한다. 보증책임을 부담한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연대책임을 지는 다른 보증인에게 그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보법의 적용에 대한 몇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若干问题的解释)〉 제20조는 ‘공동연대 보증의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래한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어느 보증인에게든 보증책임 전부를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공동연대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부담한 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 부분은 나머지 연대 보증인이 부담 부분에 관한 내부 약정의 비율에 따

라 부담한다. 약정이 없는 경우 균등하게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와 B는 공동연대 보증인이므로 A는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채권 전액인 300만 원의 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 후 A는 채무자 C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공동연대 보증인 B에게 부담 부분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담 부분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균등하게 50%의 보증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

Q A는 B에게 돈을 빌려준 후 변제기 도래 전에 개인 사정으로 그 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B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B는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은 후 아무런 의사를 표명하지 않다가, 변제기에 이르러 C가 채무이행을 독촉하자 자신은 채권양도에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돈을 갚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 B는 채권양수인 C에게 돈을 갚아야 하나요?

A A가 B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이상 B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B는 C에게 돈을 갚아야 합니다.

이유 : 중국〈계약법〉 제79조(중국민법 제545조)는 원칙적으로 채권양도를 허용하고 있으며, 다만 계약의 성질상 양도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가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양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80조(중국민법 제546조)는 '채권자는 채권을 양도할 때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하지 않는 경우, 그 양도는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채권자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취소할 수 없으나, 다만 양수인이 동의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양도는 채권자의 채권양도 통지가 있으면 채무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고 별도로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례의 A가 이미 B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이상 B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B는 C에게 돈을 갚아야 합니다.

채권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의 변제 방법

Q A는 사정이 다급해야 할 수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5개월의 기간 동안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말로는 사채업자 중에는 변제기일에 일부러 만나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A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공증기관에 원금과 이자를 공탁하면 채무가 소멸하므로, 공탁을 통해 불의의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유 :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업자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가 추세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채업자와 관련된 사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일부 악덕 사채업자 중에는 비싼 담보물을 헐값에 취득할 목적으로 변제기일에 일부러 만나주지 않거나, 변제기일을 연기해 주겠다고 속여서 채무자를 안심시킨 뒤 변제기일이 지나면 변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담보물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경우가 생기면 공탁(提存)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공탁은 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채권자의 이익 실현을 위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채권의 목적물 또는 담보물에 대하여 공증기관이 위탁, 보관을 진행하고, 조건이 성취되는 때에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탁공증규칙(提存公证规则)> 제2조, <계약법> 제101조(중국민법 제570조).

채무의 변제기에 달하였으나,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미루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이행지에 없고 채무이행지에 돌아와 변제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불분명하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실종 또는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채권자가 행위능력을 상실하였으나 그 법정 대리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채권자는 채권의 목적물을 공증기관에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동 규칙 제5조).

이 사례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공증기관에 원금과 이자를 공탁하면 채무가 소멸하므로, 공탁을 통해 불의의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의 불안 항변권

Q A는 B 가구 공장에 10만 위안의 대금으로 사무용 가구의 제작을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A는 계약 체결 후 1주일 내에 선불금으로 4만 위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B 공장은 계약 체결 직후 소방 당국의 현장 불시 점검에서 안전시설 미비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그 결과 납기일을 맞추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는 반드시 계약 체결 후 1주일 내에 선불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A A는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B 공장에 자신의 선이행의무인 선불금 지급을 보류한다고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B 공장이 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자신의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유 : 중국(계약법) 제68조(중국민법 제527조)는 '선이행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1) 경영 상황이 심하게 악화되거나, (2) 채무 면탈을 위하여 재산을 이전하거나 자금을 도피시키거나, (3) 상업신용을 상실하거나, (4) 채무 이행능력을 상실하거나 상실할 기타 상황 하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할 증거가 있는 경우, 채무의 이행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B 가구 공장은 소방당국으로부터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납기일을 맞추기 어렵다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가 선불금을 지급하게 되면 A는 적지 않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A는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B 공장에 자신의 선이행의무인 선불금 지급을 보류한다고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B 공장이 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자신의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술을 강권하여 사망한 경우의 법적 책임

Q 애주가인 A는 친구 B와 술을 마시러 가서 B에게 폭탄주를 연속으로 권했습니다. 평소 술을 잘 못 마시는 B는 여러 번 거절하였으나 A의 강권에 어쩔 수 없이 몇 잔을 마셨다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으로 호송되던 중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의 배우자는 A에게 B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였는데, A는 B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는가요?

A 이 사례에서 B의 사망에 대한 A의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 민법전의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 경우 B자신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존재하므로 법원은 A의 민사책임을 감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 〈민법통칙〉 제106조(중국민법 제1165조)는 ‘공민 또는 법인이 과실로 국가 또는 단체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를 침해하는 경우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31조(중국민법 제1186조)는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에 과실이 있는 경우 가해자의 민사책임을 감경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B의 사망에 대한 A의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민법통칙〉의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 경우 B자신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존재하므로 법원은 A의 민사책임을 감경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 부동산 화재에 대한 책임

Q A는 B 소유의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하여 오던 중 원인불명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상가가 일부 소실되었습니다. A는 이 화재로 인한 손해를 B에게 배상하여야 하나요?

A 임차인은 임차한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하므로, 이 화재가 임차인의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다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B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유 :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은 임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여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목적물이 훼손, 멸실된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거나, 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계약법〉 제222조(중국민법 제714조)) [〈주택임대관리방법(商品房屋租赁管理办法)〉 제10조].

다만, 임차인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임대 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되거나 멸실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의 감액을 요구하거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 목적물의 훼손, 멸실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법〉 제231조(중국민법 제729조))

실무상 소방서 발행의 화재 발생 책임인정서의 내용에 따라서 그 책임을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민법상의 자구행위 인정여부

Q 채권자 A는 자신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빌린 B가 공항으로 몰래 도망간다는 소식을 듣고 뒤쫓아 갔습니다. A는 B의 목살을 잡고 공안국(경찰서)에 가자고 하니 B가 반항을 하여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B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는데, A는 이에 책임을 져야 하나요?

A 막대한 채무를 진 채무자가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경우, 채권자가 이를 발견하고 실력으로 공안국으로 데려가려고 한 행위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구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중국에서는 정당방위로 취급됩니다. A가 이러한 정당방위로 채무자에게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해행위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유 : 중국에서도 개인 간의 복수나 권리의 실력적 해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권리의 실현은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례처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권리를 해결하려면 시간이 촉박하고 또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력으로 그 권리를 실현할 수도 있는 자구행위(내지 자력구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중국에서는 자구행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구행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중국에서는 권리의 실력적 해결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을까요?

중국에는 정당방위 제도가 있고(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20조), 이 제도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자구행위의 일부도 포함하여 해석,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첫째, 국가 공공이익,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부당한 침해가 받아야 하고, 둘째, 부당한 침해가 진행 중이어야 하고, 셋째, 방위자는 제3자가 아닌 부당한 침해자에 대하여 방위행위를 하여야 하며, 넷째, 정당방위

가 그 정도를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사례와 같이 막대한 채무를 진 채무자가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경우, 채권자가 이를 발견하고 실력으로 공안국으로 데려가려고 한 행위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구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중국에서는 정당방위로 취급됩니다. A가 이러한 정당방위로 채무자에게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해 행위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중국에서도 정당방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모든 사정과 상황을 참작하여 결정되지만, 다른 수단이 없었다거나 정당방위 행위라도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인신상해 면책약정의 유효여부

Q A는 택시를 잡았는데 운전기사인B는 A에게 “큰 눈이 내려 길이 미끄러우니 사고가 나도 책임을 못진다.”라고 하였고, A는 시간이 급한지라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차가 전봇대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은 후 A는 B에게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B는 사전에 약정을 한 것을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이 경우 A는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해당 약정은 무효인 면책조항으로 B는 A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유 : 이른바 면책조항이란 당사자가 협의하여 장래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항을 가리킵니다. 면책조항은 쌍방의 합의로 이루어지지만 모든 면책조항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중국〈계약법〉 제53조(중국민법 제506조)는 ‘계약 중의 아래 열거한 면책조항은 무효이다. (1)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상대방의 재산에 손해를 야기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에서 A와 B는 사전에 구두로 합의를 하였으며 이로써 계약관계는 성립됩니다. 다만 B가 말한 “사고가 나도 책임을 못진다.”는 내용은 〈중국민법〉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무효인 면책조항에 속합니다. 따라서 B는 이러한 약정을 하였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없으며 마땅히 A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법은 면책조항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두었는데 특히 표준계약서를 제출한 일방이 만약 계약서에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상대방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면 자기의 책임을 면제합니다.”라고 약정하더라도 그 면책조항은 무효라고 인정됩니다.

강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의 손해배상 문제

Q A는 길을 가던 중 B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부딪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B가 운전하던 자동차는 C의 소유였고, C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는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 사고를 직접 일으킨 B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나, 차량의 강제보험에 의한 한도액 내에서 C에게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유 : C는 차량의 소유자이고 동시에 관리인으로서 제때에 보험에 가입하여 제3자에 대해 차량사고에 따른 배상을 해줄 강제보험 가입의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B가 C의 강제보험 미가입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교통사고의 발생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지 여부, 피해자 또한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C의 배상 책임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일차적으로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B의 재산이 없는 등의 상황으로 인하여 전부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 C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대책임에서의 가해자 책임범위

Q A는 처음 만난 B, C와 다툰 중 상해를 입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조정을 받은 후 B와 C는 A에게 5,000위안의 배상을 한다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B는 지방에 장기간 출장을 갔고, C는 2,500 위안을 A에게 지불한 다음 자신의 의무는 모두 이행하였으니 나머지 배상액은 B가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데, C의 말이 맞는지요?

A 위 사례에서는 공동 침해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연대책임을 진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A는 B와 C 각자에게 전부의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도 있고 한 사람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C는 나머지 배상액인 2,500 위안 역시 A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이후 B에게 B의 배상 부담부분을 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유 : 연대책임은 민사책임 중의 하나로 법률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속에 의하여,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책임자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권리침해책임법(侵权责任法)) 제13조(중국민법 제1168조)는 '2명이상 가해자의 공동 침해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국민법 제178조는 '2명이상 가해자가 법에 따라 연대책임을 부담할 경우, 권리자(피해자)는 각 가해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 책임을 부담하도록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에 대한 제한

Q A는 노트북을 수리점에 맡기고 그 수리비는 7일 후에 찾으러 올 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달 뒤에야 노트북을 찾으러 갔습니다. 수리점은 이미 노트북을 팔아버렸다고 하면서 자신은 유치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뿐이며 나머지 잔액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A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위 사례의 경우, 중국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리점은 A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채무이행)을 주지 않았다는 점과 채무자인 A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물건들을 매각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A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이유 : 〈물권법(物權法)〉 제230조(중국민법 제447조)는 ‘채무자가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합법적으로 점유한 채무자의 동산을 유치할 수 있으며, 그 동산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36조(중국민법 제453조)는 ‘유치권자는 동산 유치 후 채무자와 채무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약정하지 않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유치권자는 채무자에게 60일 이상의 채무이행기간을 주어야 한다. 단, 변질우려 등 보관이 어려운 동산은 예외로 한다. 채무자가 기한을 경과하였음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치권자는 채무자와 협의하여 유치물을 환가하거나 유치물을 경매, 매각하여 그 소득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의 환불 문제

Q A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타오바오에서 티셔츠 한벌을 샀습니다. 그런데 배송되어 온 물건을 보니 옷의 색깔이 모니터로 보았던 것과 많이 달라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A의 변심으로 환불이 가능한가요?

A 인터넷 쇼핑을 통하여 상품을 구입한 경우,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 : <소비자권익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제25조에 의하면, 경영자가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통신 판매 등의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환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의 특성상 환불할 수 없는 것은 제외합니다.

중국 혼인신고 연령 및 국제결혼 신고 절차

Q A는 북경에서 유학 중인 만 24세의 한국인 유학생입니다. 만 21세의 중국인 여자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약혼식을 마치고 부부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부가 아니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몇 살부터 법적으로 혼인이 가능하고,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A 중국에서는 남자 만 22세, 여자 만 20세의 혼인 연령에 이른 후에 법적 혼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사례와 같은 국제결혼의 혼인신고인 경우에는 신고를 먼저 중국에서 하느냐, 아니면 한국에서 하느냐에 따라 혼인신고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유 : 먼저 중국〈혼인법〉제6조(중국민법 제1047조)는 법적 혼인 연령을 남자 만 22세 이상, 여자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에서는 남자와 여자 가 반드시 위 혼인연령에 도달해야만 자유로이 결혼이 가능합니다.

한편 한국은 성년(민법상 만 19세이상)이 되면 약혼 및 혼인의 자유가 인정되며, 만 18세에 도달하면 제한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제22조는 혼인 관련 수속은 혼인 체결지의 법률, 일방 당사자의 거주지 법률 또는 국적국 법률 어느 것에 따르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은 국제결혼의 혼인신고인 경우에는 신고를 먼저 중국에서 하느냐 아니면 한국에서 하느냐에 따라 아래 와 같이 혼인신고 절차가 달라집니다.

1)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후 중국에서 혼인신고하는 경우

① 중국 배우자가 미(재)혼증명을 호구지 공증처에서 공증을 받습니다. ② 중국 배우자는 그 공증문서를 중국 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외사관공실(外

事办公室)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③ 중국에서 확인 완료된 문서를 한국의 혼인신고 등록지에 제출합니다. ④ 한국 소관공무원은 혼인사실이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합니다. ⑤ 그 혼인관계증명서를 한국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중문번역공증)을 받습니다. ⑥ 한국 외교부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⑦ 인증 받은 문서를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⑧ 확인 완료된 문서를 중국 배우자의 호적공무원에게 제출하고 혼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한국에 먼저 혼인신고를 마친 후, 중국에 혼인신고를 할 경우 대부분의 파출소에서 혼인 상황만 변경하며, 결혼증은 따로 발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는 경우

① 한국 배우자는 한국에서 최근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② 한국 배우자는 그 혼인관계증명서를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중문번역공증)을 받습니다. ③ 그 공증문서를 한국의외교부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④ 그 인증 받은 문서를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⑤ 한국에서 확인 완료된 문서를 중국 배우자 호적관서에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합니다. ⑥ 중국에서 중국 배우자는 결혼증 또는 결혼 증명서를 발급받아 호구지 공증처에서 공증(한글번역 또는 영문번역)을 받습니다. ⑦ 그 공증문서를 중국 외교부 또는 각성, 자치구, 직할시의 외사관공실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⑧ 중국에서 확인 완료된 문서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을 경우 한국 가족관계 등록부가 등록된 지역의 시(구) 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혼인증서의 등본을 발송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중국 민정국에 먼저 혼인신고를 한 경우, 중국 내 장기 체류 비자소지자는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를 통해 한국측에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한국에 혼인신고를 할 경우, 관할 구청에 따라서 중국인 배우자의 국적 공증 또는 친족관계공증을 요구할 수 있으니 관할 구청으로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생 아이의 국적 및 산아제한정책

Q 한국인인 A는 중국인 아내와 결혼을 하였고, 현재 중국에 거주 중입니다. 얼마 전 아내가 중국에서 딸을 낳았는데 이 경우 A의 딸은 어느 나라의 국적을 갖게 되나요? 또 각 나라에 출생신고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한국과 중국 모두 부모 중 한 사람이 해당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녀도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질 수 있는 속인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중국 <국적법(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제3조, 제5조, 대한민국 <국적법> 제2조).

따라서 양국의 국적 모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만 22세이상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음)과 중국 모두 원칙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한 나라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실무상 한국과 중국의 출생신고는 별개이며, 각각 출생신고를 하면 각 나라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국가에만 신고할 수도 있고, 양쪽 국가에 모두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출생신고 하는 방법] 재외공관을 통해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경우, 등록기준지로 발송되어 가족관계증명서에 출생 사실이 등재되기까지 약 2~3달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신생아의 출생신고는 반드시 한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가 본인 여권을 지참하여 영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중국배우자가 신청하는 것은 불가).

출생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① 자녀의 출생 의학증명(중국 병원에서 발행)의 원본 및 사본, ② 출생 의학증명의 한글 번역본 (본인 또는 번역소 번역 모두 가능), ③ 출생신고서(당관 양식비치), ④ 부모의 여권 사본입니다.

아이가 한국 국적을 갖게 될 경우 중국기관에서는, 출생 후 1~2개월 안에 반드시

중국 체류 비자를 발급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외공관에서 아기의 출생신고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오니, 관할 공안국 출입경 관리처로 아기의 중국 체류비자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체류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부모 쌍방 중 일방 여권에 아기를 동반자로 추가시키거나, 아기의 신 여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국에 출생신고하는 방법] 중국 병원에서 발행해준 자녀의 출생의학증명서를 지참하여 중국 파출소의 호구부 담당 부서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편 참고로 중국에서도 현재는 둘째 아이를 출산하더라도 사회부양비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은 산아제한정책을 두고 1자녀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회부양비라는 명목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구 및 계획생육법(中华人民共和国人口与计划生育法)>은 둘째 자녀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즉, '국가는 한 쌍의 부부가 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장려한다.'는 기존의 문구를 '국가는 한 쌍의 부부가 두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둘째 아이를 출산하여도 사회부양비를 납부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혼인 중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경우

Q A는 중국인 남편과 결혼5년째입니다. 결혼 후부터 모아둔 돈이 있는데 남편은 친구의 말을 듣고 돈을 어느 사업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A는 반대를 하였습니다. 많이도 다투었지만 혼인상태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은행 통장이름은 남편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혼인을 해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재산을 분할할 방법이 없는가요?

A 혼인을 해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 결혼 후의 부부쌍방의 소득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공동공유재산으로 인정합니다.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쌍방의 각자 개인재산으로 분할하려면 결혼 전 또는 결혼 후 쌍방이 개인 재산협의를 체결해야 합니다.

이혼할 때 재산을 분할할 수 있지만 혼인존속 상태에서는 협의하지 않는 이상 소송으로는 재산을 분할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도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지만 단 특별한 상황일 때는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혼인법의 적용에 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3),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若干问题的解释(三)〕 제4조는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부부 일방이 법원에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소를 제기할 때에는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단, 아래의 중대한 사유 또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상황을 제외한다.

(1) 일방이 부부공동재산을 숨기거나 이전, 매도, 훼손 또는 부부 공동채무를 위조하여 부부 공동재산이익을 해하는 경우; (2) 법적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일방이 중대한 질병을 치료해야 하는 경우, 상대방이 상응한 치료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의 경우 혼인을 해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과 중국의 이혼절차 차이

Q 북경에 거주하는 A(한국인)는 광신에 가까운 종교생활로 인하여 가정을 돌보지 않는 B(중국인 부인)와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혼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A 만약 한국에서 이혼을 먼저 하게 된다면 합의(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조정 이혼의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이 세가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이혼유형 비교

| 정의 | | 절차 |
|--------|------------------------------------|--------------------------------------------|
| 합의이혼 | 배우자 서로가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 | 법원 - 판사 - 관할구청 이혼 신고(3월 이내) |
| 재판상 이혼 |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에 의해 이혼하는 것 | 법원 - 조사 - 조정위원회 - 판결 - 관할구청 이혼신고(1월 이내) |
| 조정이혼 | 당사자 신청에 의한 법원 직권으로 조정절차에 의해 이혼하는 것 | 법원 - 조정 - 합의(종료) - 관할구청 이혼신고(1월 이내) |

* 자세한 절차 및 구비서류는 한국내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으로 문의

이와 같이 한국에서 먼저 이혼절차를 마쳤다면, 이혼신고 및 판결(조정서) 등을 소지하고 이혼신청 및 등기기관(街道办事处/ 민정부문/ 정부)에서 결혼증을 말소하고 이혼증을 발부 받으면 될 것입니다.

만약 중국에서 이혼을 먼저 하게 되었다면, 합의(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조정 이혼의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이 세가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의 이혼유형 비교

| 정 의 | | 절 차 |
|--------|------------------------------------|-------------------------------------------|
| 협의이혼 | 배우자 서로가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 | 법원 - 판사 - 관할구청 이혼 신고(3월 이내) |
| 재판상 이혼 |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에 의해 이혼하는 것 | 법원 - 조사 - 조정위원회 - 판결-관 할구청 이혼신고(1월 이내) |
| 조정이혼 | 당사자 신청에 의한 법원 직권으로 조정절차에 의해 이혼하는 것 | 법원 - 조정 - 합의(중료) - 관할구청 이혼신고(1월 이내) |

이와 같이 중국에서 먼저 이혼절차를 마치셨다면, 이혼등기증 및 판결(조정서) 등을 소지하고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혼 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분할

Q 한국인A와 중국인B는 최근 이혼하기로 결정하였고, 결혼후 A의 부모님이 시준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위 아파트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A 위 사례의 경우, 우선 해당 아파트가 누구 명의로 구입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만약 A의 혼자 명의로 구입되었을 경우, 그 아파트는 A의 개인재산으로 간주되고 부부 쌍방의 명의로 구입되었을 경우, 해당 아파트는 부부 쌍방에 대한 증여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유 : [〈혼인법의 적용에 대한 몇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2),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若干问题的解释(二)〉] 제22조는 ‘당사자의 결혼 이전에 부모가 쌍방을 위해 건물을 매수한 경우 그 매매자금은 반드시 자기 자녀 개인에 대한 증여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가 쌍방에게 증여한다고 명백하게 표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당사자가 결혼한 후 부모가 쌍방을 위해 건물을 매수한 경우 그 매매자금은 부부 쌍방에 대한 증여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가 일방에게 증여한다고 명백하게 표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법의 적용에 대한 몇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3),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若干问题的解释(三)〉] 제7조는 ‘결혼 후 일방의 부모가 출자하여 자기 자녀에게 부동산을 구입해 주고 명의를 해당 자녀 앞으로 해준 경우, 중국〈혼인법〉 제18조 제3항(중국민법 제106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아파트는 해당 자녀의 개인재산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시 상대방 명의 재산 및 예금의 분할

Q 한국인 여자 A는 중국인 남편 B와 결혼하여 B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생활하던 중, 불화로 인하여 A는 B와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 B가 자기 명의로 된 예금을 모두 인출해 갔습니다. 그 후 A와 B는 실제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A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는 남편인 B가 인출해간 예금을 나누어 가질 수 있을까요?

A 부동산은 B의 명의로 구입하였지만 이는 A와의 결혼 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예외 규정에 속하는 부동산의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A는 당연히 B가 인출해간 예금의 돈을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이유 : 먼저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입니다. 부부 공동재산으로는 (1) 급여, 상여금, (2) 생산, 경영수익, (3) 지적재산권 수익, (4) 상속 또는 증여로 얻은 재산(일방의 결혼 전 재산, 일방이 상해를 입어 받게 된 치료비, 장애인 생활보조비, 유서 또는 증여계약서상 부부 중 일방에게만 주는 재산, 일방에 한해 사용되는 생활용품, 기타 일방 소유의 재산 제외), (5) 기타 공동소유의 재산 등이 있습니다. <혼인법> 제17조, 제18조(중국민법 제1062조)

그러므로 혼인관계 존속기간 중에 어느 일방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다 할지라도 부부 쌍방이 이 재산에 대한 특약(일방소유, 부분공유)이 없는 한 이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 부부는 부부 공동재산에 대하여 평등한 처분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부동산은 B의 명의로 구입하였지만 이는 A와의 결혼 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11년 8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혼인법의 적용에 대한 몇 가지 문제

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3),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若干问题的解释(三))은 이혼시 부동산 재산분할에 대하여 위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결혼 후 일방 부모가 출자하여 자녀에게 부동산을 구입해 주고 명의를 해당 자녀 앞으로 해준 경우, 그 부동산은 해당 자녀 개인의 소유로 인정됩니다(동 해석 제7조 제1항).
- ② 양가 부모가 함께 출자하여 부동산을 구입해 주었으나 명의를 일방 자녀 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부부 쌍방이 각 측 부모의 출자액에 비례하여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동 해석 제7조 제2항).

따라서 이러한 부동산은 혼인관계 존속기간 중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혼할 경우 배우자 명의로 된 예금은 당연히 그 돈을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중국<혼인법> 제47조(중국민법 제1092조)는, '이혼 시 일방 당사자가 부부 공동 재산을 은닉, 이전, 매도, 훼손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차지하려고 시도한 경우,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 시 부부 공동재산을 차지하려고 한 그 일방 당사자에게 재산을 적게 분할하거나 분할하지 않을 수 있다. 이혼 후에도 상대방이 위와 같은 행위를 알게 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부부 공동재산을 다시 분할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남편이 이혼소송 전에 부부 공동재산을 빼돌린 행위가 상기 <중국민법>에서 규정한 부부 공동재산을 이전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차지하려고 시도한 경우로 인정된다면, 법원은 남편에게 재산을 적게 분배하거나 분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후에도 A가 남편인 B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부부 공동재산을 다시 분할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아이의 양육권

Q 한국인인 A는 중국인 남편B와 결혼하여 남자 아이를 한명 낳았습니다. 그런데 두달 전 남편B와 합의하여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현재 생후 3개월입니다. A가 아이를 계속 키울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경우 남편B에게 양육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A 중국〈혼인법〉 제36조(중국민법 제1084조)에 의하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이혼 후 자녀는 부와 모 어느 쪽이 직접 부양하는가에 관계없이 여전히 부모 쌍방의 자녀이며, 이혼 후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여전히 부양과 교육의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이혼 후 만2살 미만의 자녀는 모가 양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2살 이상의 자녀는 쌍방이 양육문제로 다툼이 있고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경우는 법원이 자녀의 권익과 쌍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결합니다. 따라서 생후 3개월의 수유기 자녀는 엄마에게 양육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양육비에 관하여 살펴보면 동법 제37조(중국민법 제1085조)는 이혼 후 일방이 부양하는 자녀에 대해 다른 일방이 필요한 생활비와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하며, 비용부담의 액수와 기간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법원이 판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재 부동산의 상속

Q 한국인이 중국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중 사망하여, 자녀들이 이를 상속받으려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A 이 사례의 경우 중국 소재 아파트의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중국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유 : 중국 〈상속법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제36조(중국 민법에는 관련 규정 없음)는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유산을 상속받을 경우, 동산은 피상속인의 소재지 법률을 적용하며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중국 소재 아파트의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중국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법에 따른 상속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산 상속일 경우 유서의 내용에 따르며, 법정 상속일 경우 제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부모이며, 제2순위는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입니다. 제1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 제2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중국 소재 아파트를 상속받음에 있어서 진행하여야 하는 절차 및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당해 부동산 상속에 대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공증(继承公证)이라 함은 공증기관에서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상속인의 상속행위의 진실성, 합법성을 증명하며 상속인의 상속권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한국의 공증사무소에서 상속공증을 받은 후 당해 공증서에 대한 외교부의 인증을 받고 나중에 주한중국대사관의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공증 완료 후 아파트 소재지의 부동산거래센터(房地产交易中心)에 아파트 상속과 관련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부동산 상속절차를 진행합니다.

- (1) 부동산권리증서
- (2) 상속공증서
- (3) 상속인의 신분증명(여권, 주민등록등본)
- (4) 부동산권리등기신청서(부동산거래센터에서 제공함)

여러 상속인 중 1인에게만 아파트 권리를 넘겨줄 경우 기타 상속인의 서면동의(이하 서면동의서)를 거쳐야 하며, 당해 서면동의서에 대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서면동의서에 대한 공증 후 전술한 상속공증절차와 같이 인증 및 영사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중국인 계부 재산에 대한 상속

Q A는 한국에서 한 번 이혼하여 중학생인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중국인 남편을 만나 재혼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현재는 중국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인 남편이 사망하면 제 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부모와 부양관계에 있다면 그 자녀는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이유 : <중국민법>은 배우자, 자녀, 부모는 제1순위의 상속인이며 그들은 모두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상호 모두 상속권을 가지며, 상속권을 갖는 자녀는 친생자녀, 입양 자녀와 부양 관계에 있는 양자녀를 포함합니다.

위 내용 중 자녀에게 상속권이 있는지의 문제는 부모와 부양 관계에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례의 경우 부양관계가 있다면 그 자녀는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중국 <상속법> 제10조(중국민법 제1127조)에 의하면, 유산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상속됩니다.

- (1)제1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 (2)제2순위는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즉 상속이 개시된 후,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며, 제2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합니다. 만약 제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제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동 순위의 상속인 사이에서는 동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자녀는 혼생자녀와 비혼생자녀, 입양자녀와 부양관계에 있는 양자녀를 포함합니다. 부모는 생부모, 입양부모와 부양관계에 있는 양부모를 포함합니다. 또 형제자매는 부모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 부가 같거나 모가 같은 형제자매, 양형제자매, 부양관계에 있는 양형제자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중접객업자의 보관물 책임

Q A는 북경에서 사우나를 경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 손님B가 가방의 보관을 부탁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에 그 가방이 분실되었습니다. 그러자 B는 가방 안에 현금 2만 위안과 3만 위안 상당의 시계, 옷 등이 들어 있었다고 하면서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가 가방을 맡길 때 현금 등의 이야기를 한 적도 없으며, 실령 위와 같은 현금 등이 들어 있었다 해도 그 액수도 알 수 없었는데, A는 B가 요구하는 전액을 배상해 주어야 하나요?

A 한국의 경우 목욕탕, 미용실과 같은 공중접객업소에는 많은 손님이 출입하기 때문에 손님 소지품의 안전과 공중접객업자의 신용을 위하여 경영자인 공중접객업자에게 특별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이러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단, 관례를 보면 '목욕탕에서 무료로 손님의 소지품을 보관하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서비스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이는 마땅히 유상보관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공중접객업소는 손님의 재산에 대하여 보관상 주의의무 및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계약법) 제374조(중국민법 제897조)에 따라 보관자가 보관기간 내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물건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보관자가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단, 무상보관인 경우에는 보관인이 자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공중접객업소에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귀금속, 골동품, 고서화 등)을 수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맡기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버스에서 분실한 물건의 배상책임

Q A는 장거리 버스를 타면서 여행용 가방을 짐칸에 넣어 두었는데, 도착을 하고 보니 여행용 가방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운송업자에게 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계약 운송업자에게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유 : 중국〈계약법〉 제303조(중국민법 제824조)는 ‘운반과정 중에 여행객이 가져온 물품이 손상, 멸실되어, 계약 운송업자가 과실이 있을 경우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승객이 구매한 차표로 차량에 탑승함으로써 승객과 계약운송업자 사이에 여객운수 업무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버스회사는 계약 운송업자이고, 따라서 계약서에 근거하여 여행객의 수화물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배송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회사가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여행객의 수화물을 분실하였으므로, A는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실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

Q A 회사는 B사로부터 원단을 구매하여 가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 원단으로 제조한 가방을 바이어에게 판매하였는데 가방 품질에 문제가 생겨 바이어로부터 배상요구를 받았습니다. A는 B사로부터 원단을 받았을 때 품질검사 없이 바로 제품 생산에 들어갔는데, B사와의 계약서에는 원단 수령 후 10일 내에 품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B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A 사례에서는 계약서에 10일이라는 품질 이의제기 기한이 이미 약정되어 있었음에도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B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 중국〈계약법〉 제158조(중국민법 제621조)에 따르면 구매자는 약정한 기한 내에 품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매자가 납품한 화물은 품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판매자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약정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 품질 이의제기 기간 내에 품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기한은 품질하자를 발견하거나 마땅히 발견하여야 할 합리적인 기한을 말하는데, 가장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일 품질보증기한이 있다면 위와 같은 2년의 기한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매자 자신이 납품한 물건이 약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경우에는 위 2년의 기한 제한 및 품질보증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제3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상환 요청 가능여부

Q A는 친구 B에게 10만 위안을 빌려주었는데, 친구B가 기한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고 A에게 현재 갚을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후에 듣기로는 친구 C가 B에게 12만 위안을 빚지고 기한이 지나도 갚지 않는데도 친구 B는 C에게 갚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A는 직접 친구 C에게 자신의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중국 (계약법) 제73조(중국민법 제535조) 에 따르면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의 행사를 게을리하여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영향을 미칠 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법원에 신고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의 성립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합법적인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 (2) 채무자에게는 반드시 권리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 (3) 채무자가 그 권리 행사를 게을리하여야 합니다. 소위 권리 행사를 게을리한다는 것은,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권리 행사를 게을리한다는 표현은 주로 근본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지 않거나 늦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 (4) 채무자가 권리 행사를 게을리하는 행위가 채권자가 합법적으로 채권을 실현할 방법이 없을 것을 초래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빌린 돈을 반환하는데 쓸 기타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 본인이 부동산 등의 기타 재산이 있으면 채권자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조건부 계약 이행

Q 조건부 계약에서 계약의 일방이 계약의 이행을 교묘히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장애를 초래하여 계약이 약정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었고, 계약을 이행할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계약의 다른 일방은 이행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에게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 중에 일정한 조건을 특별히 규정하여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계약의 효력 발생 혹은 소멸이 결정되는 계약입니다.

만약 정지조건부 계약에서 조건이 성취되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의 이행이 시작됩니다. 일단 조건에 부합하고 일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만약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계약의 쌍방당사자는 계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쌍방은 또한 계약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상황의 정지조건부 계약에서 조건이 성취될 수 있는데도 일방당사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고의로 장애를 초래하여 계약조건을 성취를 저지하면, 법률은 계약에서 약정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의 쌍방당사자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법정 대표자의 월권행위의 효력

Q 법정 대표자가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권한을 넘어서 체결한 계약에 대해 회사는 계약의 상대방에게 쌍방이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회사는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정 대표자는 법률로 정해진 회사 행위의 집행자로 법정 대표자가 회사의 명의로 민사행위를 할 때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것은 회사입니다. 기업법인의 법정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행하는 경영 활동이 타인에게 경영상의 손실을 끼치면 기업법인은 민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 대표자의 월권은 회사의 월권이며 회사 법정 대표자의 회사에 대한 월권행위는 모두 유효합니다. 회사는 계약의 약정에 근거하여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약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회사가 책임을 진 후에는 회사의 정관 혹은 기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회사 법정 대표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상대방 당사자가 회사 법정 대표자가 권한을 넘었음에도 여전히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실히 알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라면, 법정 대표자가 체결한 계약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회사 합병 후의 채무승계문제

Q A회사가 우리 회사에 100만 위안의 물품대금을 미지급했다는 전제 하에 B회사와 합병하여 C회사가 되었습니다. 이때 저희는 C회사에게 직접 물품대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네 직접 C회사에 물품대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업 합병 후 원 기업의 채권채무는 합병 후의 기업으로 이전하며, 이러한 채무의 이전은 법정 이전에 속하기 때문에 상대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통지 또는 공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지의 방식은 단독통지로 가능하며 만약 채무인의 수가 많을 때에도 공고 통지가 가능합니다.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거나 공고 기간 만료 시에는 원래의 채권채무는 즉시 합병된 새 기업으로 이전하고 그 기업은 채권채무 관계의 당사자가 되어 채권을 취득하고 채무를 부담합니다.

상술한 상황에서 A회사와 B회사가 합병하여 C회사가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는 C회사에게 물품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품판매량에 따라 할인비율을 정하는 것의 합법성

Q 회사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A 회사와 B 회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중 “B 회사의 상품 구매량이 100개 이상일 때는 10%의 할인가로 판매하고, 상품 구매량이 500개 이상일 때는 15%의 할인가로 판매합니다.”라고 약정하고 상술한 할인율을 사실대로 장부에 기재했습니다. 이는 합법인가요?

A 이와 같은 행위는 합법입니다.

경영자는 거래 활동 중 명시적인 방식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할인대금을 지불하거나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자는 거래 상대방에게 할인대금을 지불하고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에 사실대로 장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할인대금과 수수료를 받은 경영자도 장부에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단, ‘상업성 뇌물’은 일종의 직권 혹은 직무상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익을 교환하는 행위로서 경영자의 경쟁 대상 배척을 목적으로 하고, 거래 기회를 얻기 위해 몰래 거래 상대방에게 관련자와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관련자에게 재물 또는 기타의 혜택을 주는 부정당 경쟁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률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Section 9

**민사소송법과
생활**

이럴땐 이렇게

중국 법원의 조직

Q 중국의 법원은 어떻게 조직되어 있나요? 우리나라와 같이 3심제가 맞나요?

A 중국의 심판기관은 법원입니다. 또한 중국은 최고법원 외에 지방 각급 법원 및 군사법원 등의 전문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헌법(中华人民共和国宪法)> 제123조, 제124조, <인민법원조직법(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组织法)> 제1조, 제2조.

최고법원은 최고 심판기관입니다. 최고법원은 지방 각급 법원과 전문법원의 심판업무를 감독합니다. 지방 각급 법원은 기층법원, 중급법원, 고급법원으로 나뉘고, 전문법원으로는 군사법원, 해사법원, 철도운수법원이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4급2심 중심제로서 1개의 최고법원이 베이징에 있고, 각 쑤 및 직할시에 각 1개씩 총 31개의 고급법원이 있으며, 각 시에는 중급법원(총 300여개), 각 현과 구에는 기층법원(총 3,000여개)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층법원과 동급의 법정(人民法庭)이 전국에 걸쳐 약 1만 5천여 개가 있는데, 이곳은 최소 3명 이상의 판사(審判員)가 있는 상설재판소로서 민사사건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기층법원은 형사심판정, 민사심판정, 경제심판정을 둘 수 있고(동법 제18조), 중급법원 이상의 법원은 형사심판정, 민사심판정, 경제심판정 및 기타 필요에 따라 기타 심판정을 둘 수 있습니다(동법 제23조, 제26조, 제60조).

중국의 법원체계는 기본적으로 기층법원, 중급법원, 고급법원, 최고법원의 4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급2심 중심제란 민사사건이 위와 같은 4급의 법원에서 두 심급의 심리를 거쳐 종결을 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4급의 법원은 모두 1심으로 민사사건을 심리할 수 있고, 1회에 한하여 직근 상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최고법원이 1심으로 심리하는 사건은 단심으로 종결됩니다.

2심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고급법원이 1심으로 관할하는 민사사건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서 최고법원에 의한 판례형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심급의 확정은 한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및 법률전통 등 여러가지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이 2심 종심제를 시행하는 것은 역사적 경험의 산물이자 현실상황의 기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조항 중 중재 또는 소송약정에 대한 분쟁

Q A회사와 B회사는 매매계약을 체결 시 계약서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북경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여 해결할 수도 있고, 법원에 제소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 후 A의 채무불이행으로 B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 A는 관할권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B가 소송을 제기한 법원에 관할권이 있나요?

A B가 소송을 제기한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 : 중국 〈중재법(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제5조는 ‘당사자들이 중재합의를 하고 일방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단,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중재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若干问题的解释)〉 제7조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하여 해결할 수도 있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해결 할 수도 있다.’라고 약정한 경우 중재에 대한 합의는 무효이다. 단, 일방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한 후 상대방이 〈중재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재위원회를 분쟁해결 관할기구로 약정할 경우, 최대한 중재위원회의 정확한 명칭과 주소지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재위원회의 약정이 불명확하다고 인정되어 중재에 대한 합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면 A회사와 B회사 간 매매계약서상의 분쟁해결조항의 중재합의는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B가 소송을 제기한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민사소송 절차와 소송비용

Q 북경에 살고 있는 B는 친구 A가 사업자금이 모자라 부탁하자 60만 위안을 빌려 주었으나 A가 좀처럼 갚지 않았습니다. B는 소송을 해서 돌려 받고 싶은데 그 절차와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A 재판을 하려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소송을 진행하여 나가는 높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싶으면 우선 변호사에게 상담한 다음 절차를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사건은 본인이 직접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재판의 줄거리를 설명하면, 만약 그 사건이 간이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입안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심리가 종결됩니다.

만약 그 사건이 보통절차(1심)에 의한 것이라면 그 절차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중국의 보통절차(1심)

| 절 차 | 내 용 |
|------------------------------|-------------------------------------|
| 1 소제기 (민소법 제120조) | 법원에 소장 제출, 피고의 수에 따라 본부 제출, 구두로도 가능 |
| 2 소제기의 심사와 입안 (민소법 제123조) | 법원(立案庭)은 심사를 거쳐 7일 이내에 입안(立案) 함 |

| | |
|----------------------------|----------------------------------------------------------------------------------------------------------------------------------------------------------------------------------------------------------------------------------|
| 3 심리전 준비 (민소법 제12장 제2절) | 가. 소장부분과 답변서 부분의 송달 :법원은 피고에게 5일내(입안)소장부분 송달 :피고는 법원에 15일내(송달)답변서 제출 :법원은 원고에게 5일내(답변서)피고의 답변서 송달 나. 소송권리의무와 합의정 구성원의 고지 :구성원의 회피신청권 행사 다. 증거제출 시한의 지정 및 증거의 교환 라. 소송자료의 심사와 필요한 증거의 수집 마. 당사자의 추가 |
| 4 개정심리 | 가. 개정준비(민소법 제128,129조) :개정 3일전에 당사자와 기타 소송참여인에게 통지 나. 법정조사(민소법 제138조) 다. 법정변론(민소법 제141조) 라. 평의와 판결선고(민소법 제142조) :조정불가 시 마. 법정조서(민소법 제147조) : 서기원 기록서 바. 심리의 연기(민소법 제146조) 사. 심리종결 기한(민소법 제149조): 6개월내(입안)종결 |
| 5 소취하 | 그 허가여부는 법원이 재정(裁定) 함(민소법 제145조) |
| 6 결석판결 | 민소법 제144,145조 |
| 7 반소 | 민소법 제51,140,119조 |
| 8 소송중지와 종결 | 가. 소송중지의 사유(민소법 제150조) 나. 소송종결의 사유(민소법 제151조) |
| 9 판결,재정,결정 | 가. 판결(민소법 제152조) 나. 재정(민소법 제154조) 다. 결정(민소법 제46조, 제83조, 제117조) |

중국에서도 민사 합의사건은 판사 또는 판사와 배심원이 3명 또는 그 이상의 홀수로 합의정(合議庭)을 구성하여 재판하고, 단독 사건은 판사 1명이 혼자서 재판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법원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4급(최고법원, 고급법원, 중급법원, 기층법원)의 법원은 모두 1심으로 민사사건을 심리할 수 있고, 위 4급의 법원은 전국에 골고루 설치되어 있으므로 보통의 경우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내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사건수리비(案件受理费), 신청비, 기타 소송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소송비용납부방법(诉讼费用交纳办法)> 제 6조). 위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비용 납부방법

(1) 민사소송청구비용

(단위: 위안)

| | 조건 | 비용 | |
|---------------------------------|----------------------------------|-------------------------|-----------------------|
| 이혼 | | 50 ~ 300 | |
| | 20만원 < 재산분할금 | (50 ~ 300) + 0.5% 재산분할금 | |
| 이혼 성격권, 상소권, 초상권, 명예화 및 인격화 | 손해배상 관련 | 배상금액 ≤ 5만 | |
| | | 5만 < 배상금액 ≤ 10만 | (100~500) + 1% 배상금액 |
| | | 10만 ≤ 배상금액 | (100~500) + 0.5% 배상금액 |
| 기타 비재산사건 | | 50 ~ 100 | |
| 노동분쟁 | | 10 | |
| 지적재산권 민사 | | 500 ~ 1,000 | |
| | 분쟁이 있는 부분 | 지산사건 접수비용 기준 | |
| 상표, 특허, 해상행정 | | 100 | |
| 관할권 이의 | | 50 ~ 100 | |
| 재산사건 | 소송가액 ≤ 1만 | 50 | |
| | 1만 < 소송가액 ≤ 10만 | 2.5% | |
| | 10만 < 소송가액 ≤ 20만 | 2% | |
| | 20만 < 소송가액 ≤ 50만 | 1.5% | |
| | 50만 < 소송가액 ≤ 100만 | 1% 소송가액 | |
| | 100만 < 소송가액 ≤ 200만 | 0.9% 소송가액 | |
| | 200만 < 소송가액 ≤ 500만 | 0.8 소송가액 | |
| | 500만 < 소송가액 ≤ 1,000만 | 0.7 소송가액 | |
| | 1,000만 < 소송가액 ≤ 2,000만 | 0.6% | |
| 판결, 재정, 조정 및 집행 신청에 관한 승인 및 집행권 | 2,000만 < 집행비용 | 0.5% | |
| | 집행비용=0 | 50 ~ 500/건 | |
| | 집행비용 ≤ 1만 | 50/건 | |
| | 1만 < 집행비용 ≤ 10만 | 1.5% | |
| | 50만 < 집행비용 ≤ 500만 | 1% | |
| | 500만 < 집행비용 ≤ 1,000만 | 0.5% | |
| | 2,000만 < 집행비용 | 0.1% | |
| | 미등기 권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본 기준에 따름 | | |

(2) 지급명령 신청비용

(단위: 위안)

| 항목 | 조건 | 비용 |
|-----------|----|-------------------|
| 지급명령 신청사건 | | 재산사건 접수비용 기준의 1/3 |

(3) 가압류 비용

(단위: 위안)

| 항목 | 조건 | 비용 |
|-----------|----------------------|---------------------|
| 지급명령 신청사건 | 가압류 금액 ≤ 1,000 | 30/건 |
| | 1,000 < 가압류 금액 ≤ 10만 | 가압류 금액 1% ≤ 5,000 |
| | 10만 < 가압류 금액 | 가압류 금액 0.5% ≤ 5,000 |

(4) 기타

| | | |
|---------------------------------------|--------|--------------------------------|
| 합의방식으로 종결 | | 접수비용 반감함 |
| 소송취하 | | |
| 간이절차 | | |
| 피고가 제기한 반소 | | |
| 독립적 청구권이 있는 제3자가 제출한 본안 과 관련된 소송청구 | 합병 처리시 | |
| 재산사건 상소 | | 1심 판결 불복 부분의 상소 청구액을 기준으로 함 |
| 소송비용납부방법 제9조에 따른 재심안건 | | 재심 청구액을 기준으로 함 |

재판은 개정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소를 제기한 측(원고)과 소송을 당한 상대방측(피고)이 서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여 다투고 법관이 쌍방의 주장을 듣고 판단을 내리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나의 주장이 옳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이 아니고, 그 것을 뒷받침할 증거(위 사례의 경우라면 돈을 빌려준 것이 증명될 계약서, 차용증서, 제3자의 증언)가 있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에서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판은 1회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2심제라고 하여 2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순서는 앞에서 설명한 민사사건의 구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1심의 재판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사건을 가지고 가는 것을 '상소'라고 합니다.
① 최고법원 (1심으로 종결) , ② 고급법원 - 최고법원 , ③중급법원 - 고급법원, ④
기층법원 - 중급법원

상소하려면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상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2심까지 다투었는데도 소송에서 졌을 때 그 사건은 다시 다룰 수 없게 되고 그 판결은 확정됩니다 (확정판결).

확정판결을 받으면 다시 법원에 신청하여 그 판결의 내용대로 상대방에게 강제적으로 이행시키는 소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는 것은 이 확정판결을 얻어 강제집행하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B는 A의 재산을 강제집행을 통하여 환가처분을 하여 그 환가대금에서 판결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A가 재산의 명의를 바꾼다든지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법원에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의 소송관할

Q A시에서 사업을 하는 K는 B시에 있는 부동산 회사와 C시에 있는 집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대금을 전부 지불한지 몇 년이 지나도록 등기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값이 크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집의 소유권을 하루 빨리 확보하고 싶은 K는 부동산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확인 받고 등기 이전을 받으려고 A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K는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요?

A K는 부동산 소재지인 C시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유 : 중국 〈민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제33조제1항에 의하면, '아래의 안건은 본 조항에서 규정한 법원에서 전적으로 관할한다.'

(1) 부동산 분쟁으로 인하여 제기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서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의 경우 자신의 거주지인 A시에서 소를 제기하였으나, A시 법원은 본 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던 것이며, K는 부동산 소재지인 C시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Q B는A가 북경에서 경영하는 금속제품 제조공장에서 작업도중 기계 작동불량으로 우측 손목을 절단 당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산재보상금을 받았으나 보상금이 너무 적어 A를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승소한 경우 소송에 소요된 변호사 대리비용을 상대방인 A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한국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에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의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는 소송물 가액에 따라 산입할 보수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아직 변호사 대리비용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 사이에 변호사 비용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법원은 패소자에게 변호사 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판결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중국에서 1심 사건의 소송비용(법원의 수수료)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소송비용 납부방법(诉讼费用交纳办法)> 제29조). 그 부담 비율은 승소의 형태에 따라 법원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시, 먼저 전액 지급하고, 나중에 법원판결이후 판결문에는 원고와 피고간에 각자 부담해야 될 소송비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부담해야 될 소송비용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의 부담방식

| 상황별 | 부담자 |
|--------------------|------------------------------------------------|
| 일부 승소, 일부 패소한 경우 | 각 당사자가 비례하여 부담 |
| 조정을 거쳐 합의한 경우 | 쌍방 협의/미협의를 법원 결정 |
| 소(상소)를 취하한 경우 | 사건수리비 = 원고 또는 상소인 * 소취하 : 사건수리비는 50% 감하여 수납 |
| 이혼사건인 경우 | 쌍방 협의/미협의를 법원 결정 |
| 소송청구금액의 감소를 제출한 경우 | 당사자가 스스로 부담 |
| 독촉절차에 이의제기하지 아니함 | 신청비 = 채무자 부담 |
| 독촉절차에 이의제기함 | 신청비 = 신청인 부담 |
| 공시최고 | 신청비 = 신청인 부담 |

법원소송 중 증인의 출석의무

Q 북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와 B는 거래상의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 거래를 중개한 C에게 증인으로 나와 달라'는 법원의 소환장이 왔습니다. 그러나 A, B 모두 C가 잘 아는 사람이라 C는 어느 쪽에도 편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나가고 싶지 않은데, 꼭 출석하지 않으면 안되는 건가요?

A 중국의 <민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은 증인의 소환불응, 증언거부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C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 : 재판에서는 원, 피고가 서로 대립하여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들은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증거재판주의).

증거로는 계약서, 영수증 등 문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제3자를 증인으로 내세워 그의 증언을 듣는 것, 그리고 사건에 관계 있는 것을 검증하게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증인은 일반적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구두로 증언하나, 만약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서면증언도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72조와 제73조).

재심 신청

Q 북경에서 A는 B가 운영하는 공장의 시공을 하였고, 시공비인 150만 위안을 수령하였으나, 2차 추가 공정에 따른 비용은 계약서와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B가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A는 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였는데, B가 재심신청을 하였습니다. 재심이 가능한가요?

A 아래 재심 요건에 부합될 경우, 법원에서 재심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재심신청의 제기는 ① 법원의 직권으로 하는 것, ② 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하여 개시하는 것 ③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이미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재정 또는 조정서는 직접 당사자의 민사권익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 법률문서를 작성한 절차가 공정한지, 그 법률문서의 내용이 공정한지는 당사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조정서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당사자의 재심신청은 심판 감독절차를 개시하는 아주 중요한 경로입니다. 사법실무상 원재판이 오류가 있는지는 주로 당사자의 재심신청을 통하여 발견되고, 법원은 재심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재심을 개시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당사자의 재심신청은 재심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재심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형식적 요건 즉

- ① 주체는 원심사건의 당사자
- ② 대상은 이미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재정, 조정서
- ③ 기한은 판결, 재정, 조정서가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 후 6개월내(〈민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제205조)와 실질적 요건 13가지(동법 제200조)

에 부합하여야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질적인 요건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 ① 새로운 증거가 있어 원판결을 충분히 뒤집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 ② 원 판결에서 인정한 기본사실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할 경우;
- ③ 원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에 대한 주요증거가 위조된 경우;
- ④ 원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에 대한 주요증거를 대질(质证)하지 않은 경우;
- ⑤ 본 안전심리에 필요한 주요증거에 관해 당사자가 객관적원인으로 자체 수집이 불가능하여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법원에서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법원에서 조사하지 않은 경우;
- ⑥ 원 판결에 적용한 법률규정이 틀린 경우;
- ⑦ 법원의 심사원은 안전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횡령과 수뢰하거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불법행위를 하거나 법을 어기는 심판하는 경우.

위 사안에서 법원이 재심을 진행한 후에는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할 것입니다.

- ① 1심 절차에 따라 심리한 재심사건이 만약 원재판의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법률적용이 부당한 경우, 법에 따라 새로이 판결하고 원판결을 취소하며, 새로이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확정할 것입니다.
- ② 원재판의 인정사실이 명확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한 경우, 판결로 재심재정을 취소하고 원판결을 유지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중국은 2심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판결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3심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보다는 많습니다.

때문에 중국에서는 재심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심 재판까지 끝났다고 하여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소송 중 화해의 법적 효력

Q 북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와 B는 부동산 문제로 2년 정도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데 재판장이 화해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A는 어느 정도 자신의 희망을 이야기하여 상대방이 들어 준다면 화해를 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 중에 화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재판중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 : 소송 중에 있는 사건이라도 재판 진행 중에 당사자(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잘 될 듯한 경우에는 화해를 하고 싶다고 재판장(판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서도 판결을 내려 일방적으로 승패를 결정하는 것보다도 당사자가 화해를 하여 사건을 끝내도록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판결보다는 화해 쪽을 환영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주도적으로 화해를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화해절차가 진행되면 그 사이에 재판은 중단되고, 합의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재판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이 화해조서에 기재된 것은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사자 중 일방이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다른 일 방은 그 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송상의 화해는 조정과 같이 분쟁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여 사건이 끝나는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중재와 소송의 비교

Q 중국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거래생활에서 생긴 분쟁에서 중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무슨 연유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건가요?

A 중재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출된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중재의 본질은 그것이 사적 재판이라는 데에 있으며, 그 점에서 당사자의 상호양보에 의한 자주적 해결인 재판상의 화해 및 조정과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중재제도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에 비하여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 분야의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정함으로써 실정에 맞는 분쟁해결을 할 수 있고, 특히 국제상사거래상의 분쟁에서는 분쟁해결에 가장 적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소송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쟁해결로서의 중재와 소송의 비교

| | 중 재 | 소 송 |
|------|---------------------------------------------------------------------------------------------------------------|-----------------------------------------------|
| 수리조건 | - 쌍방 당사자간의 합의 관할임 - 쌍방 당사자가 분쟁발생 전/후, 서면으로 중재합의를 체결하여 공동으로 중재기관을 선택하여 중재신청할 경우만이 위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신청을 수리할 수 있음 | - 강제관할임 - 명확한 피고와 구체적인 소송청구와 사실, 이유가 있어야 함 |
| 관할권 | 중재위원회 | 법원 |
| 선택권 | 당사자는 중재위원을 선택 가능 | 당사자는 법관을 선택할 수 없음 |

| | | |
|------------------|-------------------------------------------------------------------------------------------------------------------------------------------------------------------------------|----------------------------------------------------------------------------------------------------------------------------------------------------------------------------------------|
| 심리방식 및 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심리 - 1심중국판결 (판결 후 당사자가 동일한 사안으로 재중재 신청 또는 법원에 기소를 하여도 법원 또는 중재위원회에서 수리하지 않음) - 일반적으로 6개월, 특수 정황 연장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밀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사항 외에 일반적으로 공개심리 - 당사자가 1심에 불복할 경우 상소가 가능 - 1심 6개월 (사안이 복잡한 경우 12개월 이상) - 2심 6개월 |
| 집행관할 | 피집행인 소재지 또는 재산소재지 | 1심 법원 또는 재산소재지 법원 집행 |

단, 실무상 중재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기층법원에 비해 수준이 높고 기간 및 비용 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아 섭외사건인 경우에는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명확한 증거 제시와 섭외중재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하우, 해박한 법률지식, 중재인 명부상의 중재인과의 유기적인 관계형성 정도, 한국인과 중국인의 사건 분석에 따른 Legal Mind의 견해차를 적정하게 조정 할 수 있는 운용의 기교 등이 중재재판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전제조건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쟁해결방법으로 중재를 선택하더라도 중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사소송 중 중국에서 출국이 금지된 경우

Q 한국인A는 중국에서 사업하면서 중국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고 그 대출에 대한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지나도 빚을 갚지 못하여 은행이 법원에 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A씨의 회사와 재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A씨의 여권을 압수하고 출국금지를 하였는데 이것이 합법인가요?

A 이 사례의 경우 법원에서 필요에 따라 A의 여권을 압수하는 것은 합법이므로 A는 사건이 완료되기 전까지 출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유 : <출입국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제28조의 외국인 출국금지 사항 중 제2항은 '민사사건이 채 완료되기 전까지는 법원에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통 출국이 금지 된 후 출국을 하려 해도 출입국관리국의 컴퓨터에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출국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법원, 최고검찰원,公安部, 국가안전부에서 내린 <관련 법규에 따른 외국인과 중국인의 출국 문제에 관한 몇 가지 규정(关于依法限制外国人和中国公民出境问题的若干规定)> 제3조는 '법원, 검찰원,公安部과 국가안전기구에서 외국인 및 중국인의 출국을 금지할 때에는 당사자의 여권 또는 기타 유효 출입증서를 압수할 수 있다. 또한 안건의 성질과 당사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재산담보를 제공하거나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제공할 경우, 출국을 동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 중 증거를 훼손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

Q 민사소송 중 자기에 대한 불리한 중요한 증거를 훼손했는데 발각된 당시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A 사건의 경중에 따라 벌금, 구류 등 처벌을 내릴 수 있고, 범죄일 경우에는 상응한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소송참여자 또는 기타 인원들이 소송증거의 수집, 조사에 방해하거나 소송진행을 저지, 교란할 때에는 강제성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 사건의 경중에 따라 벌금, 구류 등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범죄일 경우에는 상응한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제111조는 '소송참여자 또는 기타 인원들이 다음의 경우, 법원에서 상황의 경중에 따라 벌금, 구류 결정을 할 수 있다.

- ① 중요한 증거를 위조, 훼손하여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는 경우
- ② 폭력, 위협, 뇌물의 방법으로 증인한테 방해를 주거나 또는 지시, 뇌물, 협박의 형식으로 타인에게 위증하게 하는 경우
- ③ 법원에서 이미 억류, 차압한 재산 또는 점검하고 보관하여 할 재산을 숨기거나 이전, 매도, 훼손하는 것과 동결한 재산을 이전 하는 경우
- ④ 사법인원, 소송참여자, 증인, 통역인원, 감정인, 검증인, 집행을 협조한 사람에 대해 모욕, 비방, 모함, 구타하거나 보복 하는 경우
- ⑤ 폭력, 위협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사법인원의 직무 집행에 방해를 주는 경우
- ⑥ 법원에서 내린 이미 효력이 발생한 결정이나 판결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만, 위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법원에서는 주요 책임자 또는 직접 책임자에게 벌금, 구류를 정할 수 있다. 범죄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의 금액과 구류기한은 〈민사소송법〉 제115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벌금은 10만 위안 이하이고, 단위에 대한 벌금은 5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입니다. 구류기한은 15일 이하로 정해져 있고, 구류기한 내에 피구류자가 승인하고 잘못을 시정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앞당겨 구류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투자지분을 통한 채권회수

Q A는 C에게 사업자금으로 100만 위안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정기한이 지났음에도 C는 돈을 갚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A는 법원에 반환청구소송을 하여 결국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C에게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거의 없고 재산이라고는 개인적으로 투자한 모 회사의 지분이 전부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A는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A A는 우선 C가 투자한 회사지분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지분이전을 동결시켜 권리를 확보한 후 법원 집행청에 지분 이전을 신청하여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 그 집행문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국에 지분변경을 하거나 지분에 대해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여 차용금을 반환 받으면 될 것입니다.

이유 : 〈법원의 집행업무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法院执行工作若干问题的规定)〉 등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채무자의 회사지분에 대한 강제 집행을 법원에 신청하려면 집행이 가능한 유효한 법률문서가 있어야 한다.
- (2) 법원은 투자지분을 경매를 통해 현금화시켜 변제시킬 수 있고, 또는 직접 지분 이전을 명령할 수도 있다.
- (3) 법원은 필요에 따라 지분에 대한 동결을 실시하여 배당금 지불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공상행정관리국에 지분 이전을 금지시킬 수도 있다.
- (4) 법원은 같은 회사의 다른 투자자가 지분 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매나 기타 방식으로 지분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다른 투자자의 의견이 법원의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
- (5) 채무자의 투자회사가 외국인 투자회사인 경우 대외경제무역 위원회 (상무위원회) 의 비준과 외국인 투자자의 동의를 얻은 후 지분 동결이나 지분 이전을 할 수 있다.

- (6) 채무자의 재산이 외자기업 투자지분인 경우는 다른 투자자에게 우선 구매권을 주고, 이전 받지 않으면 경매나 지분 이전을 실시한다.
- (7) 채무자의 회사가 독자회사이며 반환금액이 회사지분을 초과하면, 전체 회사 지분 이전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중국의 지급명령제도

Q 북경에 사업체가 있는 A는 어떤 회사로부터 구입한 기계 때문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A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대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그 회사에 통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원에서 '지급명령(支付令)'이라는 것이 우송되어 왔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A가 지급명령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재판 없이 강제집행 당할 수 있습니다.

이유: 대여금이나 외상대금을 받을 것이 있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이나 변명을 듣지 않고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증거만으로 "채무자는 그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명령을 우편으로 배달받은 채무자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돈을 갚지 않고, 법원에 이의신청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법적효력을 발생합니다. [〈민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제216조]. (재판으로 확정 판결이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임).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지급명령은 A가 15일간 방치해 두면 재판 없이 강제집행 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A가 15일내에 상기 지급명령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출할 경우, 해당 지급명령은 무효가 되며 채권자는 반드시 보통 재판절차(법원에 기소해야 함.)로 자신의 채권을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A가 언어상의 이해력 문제 또는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15일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출하지 못하여 지급명령이 법적효력을 발생할 경우, A는 재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구제방법은 법원장이 해당 지급명령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결과 본 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법적효력을 발생한 후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대한 처리통지(关于支付令生效后发现确有错误应如何处理的复函)〉]

재산보전 처분 및 그 담보

Q 북경에서 유학을 하던 B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A가 운전하는 차에 치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A는 유일한 재산인 대지와 건물을 사촌 형인 C명으로 도피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B는 재산보전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재산보전시 어떠한 점들이 문제가 되나요?

A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사고 당시의 운전자와 그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 및 운행이익을 갖는 운행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A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도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승소 판결문으로 실제 배상을 받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조사하고 재산보전처분(봉인(查封)), 압류(扣押), 동결, 기타의 방법을 미리 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자기 재산을 빼돌리려고 할 것이므로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선 대지와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사고가 발생한 날과 근접한 시일에 권리 이전이 되었는지의 여부 및 재산도피사실을 알 수 있으나, 중국에서는 대지와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는 것이 실제로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려면, 개인적으로 조사가 안되므로, 일반적으로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판사의 직권에 근거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중국은 중국울사사무소에서 회사의 공상등기정보, 건물의 등기정보 등에 대해 일정한 범위내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조금씩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의 경우에는 각종 민사사건을 신청(가압류, 가집행, 가처분 신청 등)함에 있어 권리자(피신청인)의 손해보전을 위해 법원이 담보제공을 원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해야 할 공탁금액에 대신하여 활용되는 상품(보증보험)이 있습니다.

반면 중국에는 이러한 상품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 법원에 재산보전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청인이 담보로 제공할 가액은 보전을 청구한 액수에 상당하여야 합니다(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법 적용에 있어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若干问题的意见) 제98조).

실무상 법원에 재산보전을 신청할 경우 재산보전을 결정할 재판부와 의논하여 부동산, 금융기관의 이행보증서, 현금 등을 제공하고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에서 재산보전을 신청한다면 위와 같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기 바랍니다.

소송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Q 채무자A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A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A 먼저 심리를 종료하고, 사망자의 승계인이 누가 될지를 확정된 후 심리를 재개 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사망한 경우, 유산이 없고, 의무를 상속하게 되는 자가 없는 경우 법원은 소송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유 : 〈민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제150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소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일방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인이 소송을 승계할지 여부를 표명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경우.

또한 동법 제151조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소를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 (1) 원고가 사망하였으나 승계인이 없거나 승계인이 승계하지 않기로 한 경우
- (2) 피고가 사망하였고, 유산이 없으며 의무를 승계하는 자가 없는 경우
- (3) 이혼 소송 중 일방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 (4) 부양비 청구 소송, 부양비 및 양육비 지급 중지 청구 소송에서 일방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한국법원 판결문에 대한 중국에서 집행 거부

Q 한국의 A회사는 중국의 회사B와 국제무역 계약분쟁이 발생하여, A는 B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최종 승소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국회사 B는 한국에 재산이 없고 중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A는 한국 법원에서 내린 판결문을 가지고, 중국 법원에 신청하여 B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요?

A 현재 한국과 중국은 민사판결을 상호 승인하고 집행하는 내용의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중국 법원에서 한국 법원의 판결문을 인정받아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019년 3월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근거로 한국 법원의 판결문의 효력을 인정한 사실이 있으니, 관련 대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민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제282조 및 제283조에서는‘당사자가 외국 법원에서 내린 효력을 발생한 민사판결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중국의 해당 중급 법원에 그 판결 또는 재정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법원은 해당 국가(예: 한국)와 체결한 민상사법 공조조약이나 양국이 함께 가입하고 있는 국제조약에 따라 상호호혜의 원칙에 근거하여 중국의 법률과 국가주권, 안전, 사회이익을 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그 효력을 승인하고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간에 현재 한중 민상사법 공조조약에서는 상대국 법원판결에 대한 집행승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A는 집행할 재산이 있는 중국의 중급법원에 집행을 신청하여도 그 효력을 승인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9년 3월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근거로 한국 법원의 판결문의 효력을 인정한 사실이 있으니, 결과를 장담할 수 없지만 이를 참고하여 중국 법원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 사안은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A가 중국 내 거주하는 한국인 B를 상대로 한국법원에서 채무변제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B가 한국에 없고 재산도 대부분 중국에 있음을 근거로, B의 주거지 소재 중국 법원에 한국 법원의 판결문의 승인을 신청한 것입니다. 다만 이는 예외적으로 인정받은 사례인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이처럼 양국간은 법원 판결문은 서로간의 집행승인 공조조약이 없어,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상대방 국가에 있는 재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가급적 국제무역 계약서 체결 시, 현재 양국간에 모두 가입되어 있는 국제조약(뉴욕조약)에 따라 법원이 아닌 중재위원회를 양당사자간의 분쟁관할기구로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집행효력을 확실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 단계에서 관할권에 대한 규정을 전문가와 잘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주택에 대한 강제집행 제한

Q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K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하고 판결서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서 상대방은 돈을 갚을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조사에 따라 상대방의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지만, 상대방은 그 부동산이 본인 및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일한 거주 주택이라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A <법원의 집행이와 재심 사건의 처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가지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法院办理执行异议和复议案件若干问题的规定)> 제20조는 ‘금전 채권의 집행 중 다음 중 하나의 상황에 해당할 경우, 집행물이 피집행인 본인 및 그 부양가족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거주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피집행인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집행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는 기타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거주 부동산이 있는 경우; (2) 집행문서(执行依据)가 효력이 발생한 후,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집행인이 그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3) 집행신청인이 현지의 저렴한 임대주택의 보장면적 기준에 따른 거주 부동산을 피집행인 및 그 부양가족에게 제공하거나, 집행신청인이 집행물의 처분 가격에서 현지 부동산 임대시장의 평균 임대료를 기준으로 5년 내지 8년의 임대료를 공제하는데 동의한 경우.

집행문서에 의해 피집행인의 거주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확정된 경우, 집행통지의 송달일로부터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었으나 그 기간을 경과한 후, 집행물이 피집행인 본인 및 그 부양가족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거주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피집행인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피집행인의 명의로 된 유일한 거주 주택이라 하더라도 위에서 규정한 상황에 해당한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Q 저는 현재 중국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중국의 판결서는 인터넷에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제 개인정보가 누설되지는 않을까요?

A 중국에서는 공개 조건에 부합하는 판결서를 ‘중국재판문서망(中国裁判文书网)’이라는 사이트에 공개합니다. 바이두(百度)에서 ‘중국재판문서망(中国裁判文书网)’를 기입하고 클릭하시면 이 사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인터넷상 재판문서 공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法院在互联网公布裁判文书的规定)〉 제10조는 ‘법원이 인터넷에 재판문서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1) 자연인의 가정 주소, 통신방식, 신분증번호, 은행계좌, 건강상태, 차량번호, 동산 또는 부동산의 권리증서번호 등 개인정보 (2)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은행계좌, 차량번호, 동산 또는 부동산의 권리증서번호 등 정보 (3) 상업상 비밀과 관련된 정보 (4) 가사, 인격권 등의 분쟁에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5) 기술조사조치에 해당하는 정보 (6) 법원이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타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이름이나 명칭을 제외한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누설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사판결 불이행과 소비제한

Q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A 사장은 계약 분쟁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상대방에게 100만 위안의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법원의 판결에 따른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중국에 돌아온 후 A 사장은 법원의 '소비제한령'을 받았습니다. 소비제한령에는 어떠한 소비가 포함되나요? 만약 소비제한령을 어기고 과도한 소비를 하였다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소비제한령이란 피집행인이 법적효력이 발생한 법률문서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를 집행통지서가 지정한 기간 동안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피집행인에 대한 조치로서 피집행인의 고액 소비 또는 생활이나 업무에 필수적이지 않은 소비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절차상 집행신청인은 우선 법적효력을 발생한 법률문서를 가지고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해야 하며, 집행판사가 확정된후, 다시 집행판사에게 소비제한신청을 해야 합니다.

〈피집행인의 과소비 제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限制被执行人高消费的若干规定)〉 제3조는 '피집행인이 자연인으로 소비제한조치를 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고액 소비 또는 생활이나 업무에 필수적이지 않은 소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비행기, 열차의 고급 침대칸, 기선의 이동석 이상인 좌석의 선택 (2)성급(星级) 이상의 숙박시설, 나이트 클럽, 골프장 등에서 진행되는 고액 소비 (3) 부동산의 구매, 신축, 증축 또는 고급 인테리어의 시공 (4) 고급 사무실, 숙박시설,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무 장소로 사용 (5) 경영상 필수적이지 않은 차량의 구매 (6) 여행, 휴가 (7) 고액 사립학교에 자녀를 취학 (8) 고액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재테크 상품의 구매 (9) G형 고속 열차(G字头动车)의 좌석 전부,

그 외 고속 열차의 1등석 이상의 좌석 등 생활이나 업무에 필수적이지 않은 소비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 제11조는 '피집행인의 소비제한령 위반 행위는 이미 효력이 발생한 법원의 판결, 재정의 위반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조사를 거쳐 사실로 인정될 경우, 민사소송법 제111조에 따라 구류, 벌금에 처하며, 정상이 엄중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 사장과 같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고액 소비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참고:

〈민사소송법 제111조〉에 의하면 소송참여인 또는 기타 제3자가 아래 사항중 하나에 부합될 경우, 인민법원은 상황의 엄중성에 따라 벌금, 구역을 명하며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적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중요한 증거를 위조하고 훼손하여 법원의 안전심사에 장애를 줄 경우;
2. 직접 또는 타인을 사주하여 폭력, 협박, 뇌물을 주는 방법으로 증인이 증언을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3. 이미 봉인, 압류된 재산을 숨기고 매도하거나 훼손할 경우;
4. 사법인원, 소송참여인, 증인, 번역인원, 감정인, 검사인, 집행협조인에게 모욕, 비방, 무함, 구타, 보복하는 경우;
5. 폭력, 협박 혹은 기타 방법으로 사법인원의 집행직무를 방해하는 경우;
6. 법원의 이미 법적효력을 발생한 판결, 재정에 대해 집행하지 않는 경우.

또한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313조(판결, 재정에 대한 불이행죄)에 의하면 법원의 판결, 재정에 대해 이행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아, 상황이 엄중할 경우, 3년이하 유기징역, 구역, 벌금을 내리고; 상황이 특별히 엄중할 경우, 3년이상 7년이상의 유기징역 및 벌금을 내린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법한 보전조치 해제에 대한 구제

Q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A는 계약분쟁으로 인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중국법원에 재산보전 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법률이 규정한 보전조치의 해제 사유도 없고, A의 동의도 받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에 대한 보전조치를 해제하였고, 이 틈을 타 상대방이 재산을 이전하는 바람에 A는 비록 승소를 하였으나,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A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민사, 행정소송의 심리 중 사법배상 사건에 대한 법률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가지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民事`行政诉讼中司法赔偿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1조는 ‘법원이 민사, 행정소송의 과정에서 위법하게 강제조치, 보전조치, 가집행조치를 취하여 소송을 방해하거나, 판결, 재정, 그 외 효력이 발생한 법률문서를 잘못 집행하여,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청구인은 법에 따라 법원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해석 제3조는 ‘위법하게 취한 보전조치는 다음 상황을 포함한다. (2) 법에 따라 해제하지 않아야 할 보전조치를 해제하거나, 법에 따라 해제하여야 할 보전조치를 해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법원은 법에 따른 보전조치의 해제 사유가 없고, 신청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보전조치를 해제하여 A가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A는 〈국가배상법(国家赔偿法)〉에 따라 귀책사유가 있는 법원에 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원은 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배상 여부에 대해 결정을 해야 되며, 배상에 동의하지 하지 않을 경우, 배상결정 이후 10일내로 신청인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배상 불가 통지서를 받은 이후, 30일내에 상급 법원에 복심신청(申请复议)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중 외국인의 권리

Q 외국인, 무국적자 또는 외국기업과 그 관련 조직이 중국 인민법원에서 제소 또는 응소를 함에 있어 중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나요?

A 외국인, 무국적자 또는 외국기업과 그 조직은 중국 인민법원에서 제소 또는 응소할 경우 중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 중국 법률은 '법률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어떠한 민사 주체라도 독립적이고 평등한 인격을 보유하며 구체적인 민사 법률관계 앞에서 서로를 종속하지 않고 평등한 지위를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그 적법한 보호이익은 모두 평등하게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법원은, 외국인이 소를 제기하거나 응소할 때 중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고, 외국의 개인과 기업이 어떠한 경시 혹은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특정한 외국에서 중국 국민과 관련되어 민사상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면, 중국에서도 대등하게 그 특정한 나라 국민의 민사상의 권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임의적인 결석판결

Q 민사 소송 진행 중, 법원이 소송상 피고에게 소송자료 및 개정통지서(原文: 개정전표)를 수령하라고 전화 통지를 하였고 피고가 거절한 경우, 법원이 바로 결석판결을 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이유: 민사소송 중의 이른바 결석판결은 법원의 일방 당사자가 결석하였을 때의 판결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당사자는 자신의 소송결과가 불리하게 진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모두 적극적으로 담당 법원에 응소하고 법정 재판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일부 당사자는 소송 진행 중에 소송 제기 절차와 관련된 자료를 수령하지 않고 법정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석판결에 대하여서는, 인민법원은 똑같이 법정의 방식과 절차에 의거하여 피고에게 소송자료 및 개정 전표를 송달하여야 합니다.

만약 당시의 사람이 법원의 전화 통지를 받고도 담당 법원의 소송자료 및 개정전표 수령을 거절한다면, 법원은 소송자료 및 개정전표를 직접 본인 혹은 동거 성년 가족에게 송달할 수 있고, 당사자가 행방불명이고 대리하여 수령할 사람이 없는 경우 혹은 기타 방식으로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공고란에 송달을 받는 자의 원주소지에 대하여 공고를 붙일 수 있고 신문에 공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공고는 발송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이 소송자료 및 개정전표를 피고에게 송달해야만 법원은 비로소 결석판결이 가능하고, 결석판결과 피고가 정상적으로 법정에 출석한 판결은 동등한 법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본 판결에 불복하면 당사자는 공고 기간 만기일로부터 15일 내에 법원에 상소장 및 부본을 제출할 수 있고, 판결 기일을 넘기면 법률 효력이 발생하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건물 매매가 착오로 집행되었을 경우의 대응방법

Q 이씨는 중국에서 집 한 채를 매수하였는데, 어느 날 이 집이 법원 집행국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씨는 법원에 집행 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유: 법원에 의하여 이씨가 매수한 집이 압류된 이유가, 집행신청을 한 자가 신청법원에 잘못된 집행근거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라면, 이씨는 자신의 건물구매계약서, 매수비용납부증명서, 건물 매수 영수증 등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 집행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집은 이씨 본인의 명의로 매수한 것이고, 이씨는 그 집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해당 압류한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민법원은 위 서면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당해 서면을 심사하고 집행 이의 사유를 인정할 수 있으면 그 집행대상에 대하여 집행 중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이씨가, 자신이 집의 모든 권리를 갖고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데 상응하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이씨가 제출한 집행이의는 법원에 의하여 기각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이씨가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결정 송달일로부터 15일내에 인민법원에 대하여 집행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외국변호사 신분으로 중국에서 소송대리 가능 여부

Q 미국인 A는 계약 분쟁으로 인해 중국에서 소 제기를 당하였습니다. A는 미국에 있을 때 알게 된,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고 중국 법률에 정통한 친구 B가 있어서, 그 B 변호사에게 소송 사무를 위탁하여 A의 대리변호사로서 소송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A 불가능합니다.

이유: 중국 법률규정에 근거하면,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기업과 조직은 인민법원에서 제소, 응소시 변호사로 하여금 소송대리를 하도록 위탁하여야 하고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변호사에게 위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본국 변호사에게 위탁하여 비 변호사의 신분으로 소송대리인을 맡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술한 당사자가 만약 본국변호사에게 위탁하여 중국법원의 소송에 대위 참가하도록 한다면, 그 나라의 변호사는 변호사신분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없지만 비변호사신분으로 소송대리인을 맡을 수는 있습니다.

원고 소재지 법원의 관할권

Q 북경 조양구에 거주하는 왕씨가 장씨에게 10만 위안을 빌려주었으며, 장씨는 신장 출신이고 상하이에서 2년간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장씨는 변제기일 내에 빌린 돈을 갚지 않았는데, 이 경우 왕씨가 북경 조양구 인민법원에 장씨를 대상으로 위 대금의 상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A 왕씨는 북경 조양구 인민법원에 장씨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유: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분쟁으로 인하여 제기된 소송은, 피고가 주재하는 지역 혹은 계약이행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합니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 제18 조 제2항 규정에 근거하면, ‘계약 이행지에 관하여 약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대상이 금전인 경우에는 금전을 받게 될 일방의 소재지가 계약이행지에 해당합니다.

즉 위 사례에서 빌려준 돈을 받을 일방 당사자인 왕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북경 조양구의 인민법원에서 장씨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관의 회피제도

Q 왕씨는 A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왕씨는 위 소송 주심 판사의 배우자가 A회사의 법정대리인임을 발견하였다. 이 경우 왕씨는 위 법관의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

A 왕씨는 법관에게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유: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관은 당해 사건과 이해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건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민사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은 판사와 본안 당사자 간에 또는 소송 대리 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는 사건의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판사는 반드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고, 당해 사건의 당사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들의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법원의 소송문서의 송달방식

Q 인민법원은 사건의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는 소송문서를 팩스,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을 사용하여 송달할 수 있습니까?

A 송달 받는 사람의 동의를 거쳐서, 인민법원은 팩스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 등 서신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송문서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송달하려는 문서가 판결서, 조정서 또는 재정서인 경우를 제외합니다.

이유: 인민법원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소송서류는 원칙상 송달 받을 자에게 직접 송달하여야 합니다. 송달 받는 자가 공민인 경우, 송달 받을 본인이 부재중이면 그와 함께 거주하는 성년인 가족이 송달 받을 수 있습니다. 송달 받을 자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법인의 법정대리인, 기타 조직의 주요 책임자 또는 그 법인, 조직에서의 수취 책임자가 송달 받을 수 있습니다.

송달 받을 사람이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에게 송달합니다. 송달 받을 사람이 이미 법원에 송달영수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이 송달 받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법원이 팩스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송달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인민법원은 팩스, 전자우편 등 서신의 내용을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소송문서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막론하고 법원은, 판결문, 재정서, 조정서를 팩스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송달할 수 없습니다.

Section 10

형법과 생활

이럴땐 이렇게

한국에서의 범죄를 중국에서 다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Q 한국인 A는 한국에서 중국인 B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후 A는 중국에 입국하였는데, 같은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A 예,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A가 한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중국의 형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달리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이는 중국에서 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에 불과합니다.

이유 : 중국〈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8조는 ‘외국인이 중화인민공 화국 영역 외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하고,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최저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범죄지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형법〉 제10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외에서 죄를 범하여 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비록 외국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모두 이 법에 따라 추궁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이미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저지른 행위가 중국 형법상 그 최저형이 징역 3년 이상에 해당하고, 범죄지인 한국의 법률에 따라 범죄로 성립하면, 비록 한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중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A가 이와 달리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이는 중국에서 형을 면제 또는 감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유일뿐이므로, 다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정당방위의 범위

Q 한국인 A는 북경에서 길을 가던중 병을 들고 공격하는 중국인 B의 손을 발로 차서 병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 병을 잡으려고 앞드리는 B의 복부를 차서 B를 체장파열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A는 중국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이러한 경우는 중국(형법)에 따른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20조는 ‘국가와 공공의 이익, 본인 또는 타인의 신체, 재산과 기타 권리가 현재 진행 중인 불법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행한 불법침해 제지행위가 불법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정당방위에 속하여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정당방위가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진다. 다만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흉포한 행위,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및 기타 신체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기타 폭력범죄에 대하여는 방위행위를 행하여 불법 침해자의 사망 또는 상해를 초래한 경우라도 과잉방위에 속하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형법〉은 신체의 안전에 가해지는 폭력에 대하여는 우리나라보다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그 형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병을 들고 폭력을 가하는 B의 행위는 현재 진행되는 흉포한 행위 내지는 신체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기타 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A의 제지행위는 과잉방위가 아닌 정당방위로 판단되어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중지의 경우 형사책임

Q 북경에 거주하는 한국인 A는 평소 미워하던 B의 공장에 불을 붙였으나, 타고르는 불길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며 도망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불을 꺼주어 B의 공장은 일부만 타는데 그쳤습니다. A는 파출소에 지수를 하였는데, 방화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A A는 불을 끄는데 스스로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결과 발생도 방지하지 못하여 범행중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방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이후 공간기관에 지수한 사실은 양형에 있어서 정상 참작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이유 :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24조는 ‘범죄의 과정 중에 스스로 범죄를 포기하거나 스스로 범죄결과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한 것을 범죄중지라 한다. 중지범에 대하여는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하여야 하고, 피해가 야기된 경우에는 처벌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예비하던 중 실행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포기하는 것은 범행 중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미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거나, 실행행위를 마친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그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고, 객관적으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중지범에 해당합니다.

이 사례와 같이 공장에 불을 지른 A가 타고르는 불길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며 도망간 것만으로는 불을 끄는데 스스로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결과 발생도 방지하지 못하여 범행중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방화죄가 성립되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114조).

다만, 범행 이후 공간기관에 지수한 사실은 양형에 있어서 정상 참작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식중독 사고와 형사책임

Q 중국 북경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국인 A가 중국기업 아유회에 배달한 김밥 300개 및 반찬 등을 먹은 사람들이 식중독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A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식중독 증상과 결과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유 :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143조는 ‘충분히 엄중한 음식물 중독 사건 또는 기타 음식으로 인한 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식품을 생산,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는 동시에 벌금을 병과한다. 인체 건강에 엄중한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기타 엄중한 경우 일 때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동시에 벌금을 병과한다. 결과가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에 처하는 동시에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재산 몰수를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43조에서 말하는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식품을 생산, 판매한 죄(生产、销售不符合安全标准的食品罪)란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식품을 생산, 판매하여 심각한 식중독 사고 또는 기타 음식에 기인한 심각한 질환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제 34조는 ‘아래 식품의 생산 경영이 금지되어 있다.

- (1) 비식품 원료로 생산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제 이외의 화학물과 기타 인체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 식품, 또는 회수된 식품 등 원료로 생산하는 식품
- (2) 질병성 위생물, 농약잔류, 수의약 잔류, 중금속, 오염물질 등 및 다른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함유량이 식품안전기준 한도를 넘는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

- (3) 품질보증 기간이 넘은 식품원료, 식품첨가제로 생산한 식품, 식품관련 제품
- (4) 식품첨가제의 범위와 수량을 초과한 식품
- (5) 영양성분이 식품안전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전용 영유아 및 기타 특정된 사람의 주요 또한 보조적 식품
- (6) 부패 변질, 기름 재사용, 곰팡이 또는 기생충이 생긴 경우, 오물, 이물질이 들어 있거나 가짜 물건이 섞인 것, 감각적 이상이 있는 식품, 식품 첨가제
- (7) 병사, 독사하거나 사인이 불분명한 조류, 가축 등 수산 동물의 육류와 그 제품
- (8) 관련 규정에 따라 검역을 진행하지 않았거나 검역에 불합격한 육류, 또는 미검정 또는 검정이 불합격한 육류 제품
- (9) 포장한 재료, 용기, 운수 기구에 의해 오염된 식품, 식품 첨가제
- (10) 허위 생산 일자과 보증기간을 표기하거나 또는 보증기간을 초과한 식품, 식품 첨가제
- (11) 상표가 없는 사전 포장식품
- (12) 국가가 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생산 유통을 금지하는 식품
- (13) 기타 법률 법규 또는 식품안전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 식품 첨가제, 식품 관련제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물 유포의 형사책임

Q 중국에 살고 있는 A는 중국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무료로 다운 받아 한국의 인터넷 사이트에 다시 업로드 하였습니다. A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A가 영리를 목적으로 500편 이상의 영화와 드라마를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 한 경우에는 중국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유 :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217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저작물 침해 상황이 있고, 위법소득액이 비교적 크거나 기타 엄중한 정상이 있는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액이 거대하거나 기타 정황이 특별히 중한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 (1)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문자로 된 작품, 음악, 영화, 텔레비전 및 비디오 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타 작품을 복제, 발행한 경우
- (2) 타인에게 전용출판권이 있는 도서를 출판한 경우
- (3) 녹음, 녹화물 제작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복제, 발행한 경우
- (4) 다른 사람의 서명을 허위로 모방한 미술작품을 제작, 판매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형사사건의 입건 기준에 관한 최고 인민검찰원과 공안부의 규정(1); 最高人民法院、公安部关于公安机关管辖的刑事案件立案追诉标准的规定(一)> 제26조에서 ‘(1) 위법소득 액수가 3만원 이상일 경우, (2) 불법경영 액수가 5만원 이상일 경우, (3)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않고 복제, 발행한 문자작품, 음악, 영화, 드라마, 비디오제품, 소프트웨어 및 기타작품의 수량이 500장(부) 이상일 경우, (4) 녹음 제작자의 허가없이 복제 발행한 녹음제품이 500장(부) 이상일 경우, (5) 기타 엄중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되며 저작물을 인터넷상에 올리는 행위도 역시 복제발행에 속한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가 영리를 목적으로 500편 이상의 영화와 드라마를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한 경우에는 중국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처벌기준에 미달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가 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배상책임은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짝퉁명품 생산을 하는 공장임대인에 대한 형사처벌

Q 한국인 A는 아는 중국인 친구가 가짜 명품 의류 생산공장을 운영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부탁에 따라 자신이 소유한 공장을 임대하고 고액의 임대료를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공안에 의해 중국인 친구의 공장이 적발되어 처벌을 받을 처지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경우 공장을 임대해 준 A도 처벌을 받게 되는가요?

A A도 형사 처벌 또는 행정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A도 형사 처벌 또는 행정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적재산권침해 형사범죄 처리에 있어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관한 해석 (关于办理侵犯知识产权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은 상표권을 침해하여 불법 제작한 상표수가 2만개 이상 또는 불법 매출액이 5만 위안 이상 또는 영업 이익이 3만 위안 이상이고; 2개 이상 종류의 상표를 불법 제작한 상표수가 1만개 이상 또는 불법 매출액이 3만 위안 이상 또는 영업 이익이 2만 위안 이상일 경우, 형사 범죄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해석 제16조는 ‘지적재산권 침해 형사범죄에 대하여 자금, 은행계좌, 영수증(세금계산서), 문서위조, 생산장소, 창고, 운수, 수출입 대리 등 편의를 제공한 사람은 지적재산권침해 형사범죄의 공범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의 A는 중국인 친구가 가짜 명품 의류를 생산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임대하여 준 것이므로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중국인 친구가 생산한 가짜 명품이 수량 또는 불법소득상 형사 범죄로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A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불법 제품의 수량과 매출액 또는 이익이 형사 처벌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하더라도 〈상표법(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침해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하고 침해 제품과 사용 도구를 불법 영업액이 인민폐 5만 위안 이상일 경우, 해당 불법 영업액 5배 이하의 벌금을 내리고, 불법 영업액이 인민폐 5만 위안 이하일 경우, 인민폐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문화재 밀수

Q 한국인 A는 북경 골동품 시장에서 골동품을 구매하여 한국으로 가져가곤 하였는데, 어느 날 북경 수도공항에서 문화재를 밀수하였다는 이유로 체포 되었습니다. A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A A가 골동품을 매수하여 반출하는 과정에 매수한 골동품이 문화재에 해당 할 수도 있다는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세관의 관리감독을 회피하여 반출하였다면 문화재 밀수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 <형법> 제151조 제2항은 '국가가수출을 금지하는 문화재, 금, 은, 기타 귀금속 또는 국가가 수출입을 금지하는 진귀한 동물 및 그 제품을 밀수(走私)한 사람에 대하여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정상이 비교적 가벼우면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구성요건은 주관적 측면에서 행위자에게 밀수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 측면에서 행위자는 세관의 관리감독을 회피하여 운수, 휴대, 우편발송 등 방법을 사용하여 불법으로 물품을 국경내외로 반입 또는 반출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고, 구성요건상 밀수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모든 수출입 금지대상 물품의 밀수행위는 범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위 조항의 문화재라 함은 <문화재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 제2조 에서 규정한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가 있는 소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A가 골동품을 매수하여 반출하는 과정에 매수한 골동 품이 문화재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세관의 관리감독을 회피하여 반출하였다면 이 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골동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통관회사에 의뢰하여 문화재 여부 판정을 받은 후 반출하여야 법률상 분쟁시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고공투하물에 대한 형사처벌

Q 한국인A는 아파트 단지 8층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어느 주말 남편이 집에 안 앉아 컴퓨터게임만 하는 것을 보고 화김에 컴퓨터를 8층 창문 밖으로 내던지게 되었습니다. 마침 아래 층에는 애들 놀이터가 있어 어린애들과 부모들이 모여서 놀고 있었지만, 다행히도 사람들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한국인A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비록 고공투하물 행위로 인해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충분히 공공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로 인정될 경우, 공공안전위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 : 중국최고인민법원에서 2019년10월21일에 발표한 <법에따라 합리하게 고공투물, 추락물을 심리할 것에 관한 의견(关于依法妥善审理高空 抛物、坠物案件的意见)> 제2조에 의하면, 고의적으로 고공투물 행위를 하여 엄중한 후과는 초래하지 않았지만, 본 행위로 인해 충분히 공공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형법 제114조에 따라 위험한 방식으로 인한 공공안전위험죄로 형사처벌을 내린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114조에 의하면, 방화, 결수, 폭발행위 또는 독살성, 방사성, 전염성 병원체 등 물질 혹은 기타 위험한 방식으로 공공안 전에 위협을 가져다 주었지만 엄중한 후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고공투하물과 같은 공공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위는 비록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지 않았지만 그 위험한 행위자체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대금 연체에 대한 형사처벌

Q 한국인 A는 중국에서 다년간 생활하고 있으면서 중국 교통은행에서 신용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A는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이 순조롭지 않자 생활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신용카드를 전부 사용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최근 A는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고 모든 연락을 끊어버린 상황입니다. 만약 A가 신용카드 상환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신용카드 사용대금 액수가 인민폐 5만 위안 이상에 달하고 또 은행에서 2번 상환 요구를 한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여전히 반환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 중국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신용카드 관리 방해 형사 안건 처리의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관한 문제의 해석〉의 수정 결정(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修改《关于办理妨害信用卡管理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的决定)에 의하면, 신용카드 소지자가 불법점유의 목적으로 사용 한도 또는 사용기간을 초과한 상황에서 카드발행 은행의 2차례 유효한 상환 독촉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연체금액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를 형법 196조에서 규정한 악의적 연체로 인정합니다.

또한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196조는 악의적 연체 상황이고 신용카드 사기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신용카드 연체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구역형에 처하고 동시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비록 A는 처음부터 주관적인 사기행위는 없었지만, 상기 규정을 위반하여 반환 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악의적 연체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질서문란죄

Q 중국 소주시에 살고 있는 한국인 A는 타인과의 부동산 매매 분쟁건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소송하는 기간 A는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달라고 여러번 담당판사에게 요구했지만 담당판사가 이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A는 틈만 나면 담당판사에게 늦은 밤에 전화로 협박하거나 퇴근 길에서 길을 막는 등 수단으로 판사를 괴롭혔습니다. 이런 경우, A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요?

A 만약 한국인A의 상기 행위가 엄중(情节恶劣)할 경우, 공공질서문란죄(寻衅滋事罪)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293조는 '타인을 쫓거나, 가로막고, 욕설, 협박하여 행위가 엄중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타인을 불러 모아 여러차례 전향 행위를 실시하고, 사회질서를 엄중히 파괴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동시에 벌금형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공공질서문란 형사안건 처리의 법률 적용에 관한 문제의 해석(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办理寻衅滋事刑事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러차례 타인을 쫓거나 가로막고, 욕설, 협박하여 엄중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한 경우 를 형법 제293조에서 규정한 '행위가 엄중한 경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가끔씩 당사자들은 담당판사가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고 상대방 편만 들어준다고 생각하여, 판사에게 늦은 밤에 전화를 한다거나 퇴근길에 길을 막는 방법으로 자신의 불만을 털어놓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행위가 여러번 발생하거나 그 상황이 엄중할 경우에는 공공질서문란죄(寻衅滋事罪)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되겠습니다.

비방죄(誹謗罪)

Q A는 B에게 1만 위안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하자 화가나 B가 부인 몰래 다른 내연녀를 만나고 있고, 주변에 빛이 많아 문제가 심각하다.'는 허위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B의 회사 동료들에게 발송하였습니다. A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A의 행위는 비방죄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 중국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246조에 의하면,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을 비방하고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비방죄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권리 박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A가 사례와 같은 허위 내용의 편지를 B의 회사 동료들에게 발송한 행위는 그 정상이 엄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A는 비방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국 형법상 비방죄는 친고죄(親告罪)이므로 B가 A를 법원에 직접 신고하여야만 A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이버에서의 비방 문제

Q 채팅 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던 중 다툼이 생겼는데 상대방은 게시판에 저에 대해 가짜 사실을 위조하여 욕설글을 10건도 넘게 올려 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채팅방에서도 이런 위조정보가 전파되어 저는 명예에 큰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가요?

A 상황이 엄중할 경우, 비방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 : 2013년9월10일부터 실시한 <정보통신망이용한비방등형사 사건의처리 시범률적용에관한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의몇가지문제대한해석(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办理利用信息网络实施诽谤等刑事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에 따르면,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 246조의 비방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례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위 해석 제1조는 '아래의 예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형법 제246조 [모욕죄, 비방죄] 제 1항에 규정된 '사실날조와 타인비방'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1) 타인의 명예와 관련된 사실을 위조하여 정보통신망상에서 전파시키거나 사람을 사주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타인의 명예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
- (2) 타인에 관한 원래 정보의 내용을 바꾸어 정보통신망상에서 전파시키거나 사람을 사주하여 전파시켜 타인의 명예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사실날조와 타인비방'이 정보통신망상에서의 전파로 타인의 명예에 대해 손해를 입혀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제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법 제 246조 제1항에 규정된 '경위가 엄중한것'으로 간주한다.

- (1) 게시된 비방 정보가 5000번이 상 열람되거나 클릭된 경우, 또는 500회 이상 전파된 경우

- (2) 피해자 또는 근친들의 정신적인 이상, 자해, 자살등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 (3) 3년 이내에 이전의 비방으로 인해 행정 처벌을 받거나 거듭 타인을 비방한 경우
- (4) 기타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상술한 내용 중 그 상대방이 정보통신망상 비방하는 정보를 전파한 경우 <해석>의 모든 규정 조항 내용에 따라 법에 근거하여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혼죄의 인정에 관하여

Q 한국인 A는 한국에서 결혼해서, 주재원으로 중국에 나와 생활하다가 중국인 여자와 함께 부부처럼 행세하면서 살았습니다. A는 중혼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만약 중국인 여자는 A가 한국에서 이미 결혼하지 몰랐다면 중국인 여자도 중혼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A의 행위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타인과 부부로 행세하면서 동거를 한 경우(사실중혼)에 해당하므로 중혼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혼죄가 성립되자면 주관적으로 고의성이 있어야 되므로, 만약 중국인 여자는 A가 결혼한지 몰랐다면 중혼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유 :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258조는 ‘배우자가 있으면서 중혼한 자 또는 타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와 결혼한 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혼죄는 〈중국민법전(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에 규정된 일부일처제에 위반하는 범죄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결혼한 남녀가 혼인관계 존속기간 내에 다시 타인과 결혼하는 행위이고 [범죄주체를 소위 중혼자(重婚者)라고 지칭], 둘째는 현재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타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와 결혼하는 행위[범죄주체를 소위 상혼자(相婚者)라고 지칭]입니다.

또한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결혼이란 결혼동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부부로 동거하는 상태[소위 사실중혼(事实重婚)]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있는 자가 다시 타인과 함께 부부관계로 동거를 하거나, 타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와 부부관계로 동거를 하는 경우 비록 그 결혼동기를 경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중혼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A의 행위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타인과 부부로 행세하면서

동거를 한 경우 (사실중혼)에 해당하므로 중혼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중혼죄는 피해자의 자소(自訴)가 필요한 죄이므로 A를 형사 처벌 받게 하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여 법원에 자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중국에서 간통죄 인정 여부

Q 한국인 A는 한국에서 가정이 있으면서도 중국에서 중국인B와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의 아내는 중국에서 A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간통죄가 성립되는가요?

A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간통죄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A의 아내가 중국에서 A를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에는 중혼죄(<형법> 제258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중혼하거나 타인이 배우자가 있는 것을 명확히 알면서도 그와 결혼하였을 경우 성립하는 죄로서 만약 원래의 배우자가 합법적인 혼인 등기를 한 부부관계라면 그 후의 중혼이 법률혼, 사실혼(주위에 부부로 사칭하여 동거)을 막론하고 모두 중혼죄에 해당됩니다.

만약 원 결혼이 합법적인 등기를 하지 않은 결혼이라면 중혼이 법률혼, 사실혼인 지와는 관계없이 중혼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중혼죄 외에 군혼과피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역 군인의 배우자임을 알면서 그와 동거하거나 결혼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구역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혼과피죄는 당사자가 결혼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현역군인의 배우자와 동거 또는 결혼할 경우 즉시 성립되는 죄로서 장기적으로 동거하기 어려운 현역군인들의 혼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규정입니다.

절도사건의 입건 기준

Q 중국 북경에 있는 대학을 다니던 한국인 A는 교무실에서 선생님의 돈 3,000위안, 노트북 1개(시가 5,000 위안), 카메라(시가 2,000 위안), 만년필 1개, USB 1개 등을 훔쳐 달아나다 붙잡혔습니다. 학교측의 신고로 공안에게 넘겨진 A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중국 사법실무에서 정하는 양형기준에 따라 경우 북경에서 절취금액이 2,000 위안 이상이므로, 비교적 많은 금액의 절도사건에 해당되어 구속 수사하여 실형이 선고되며,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 습니다.

이유 :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264조는 ‘공사(公私)의 재물을 절취(盜竊)하고 액수가 비교적 크거나 수회 절취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액수가 거대하거나 기타 정상이 엄중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액수가 특별히 거대하거나 기타 정상이 특별히 엄중하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 몰수를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절도죄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점유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남의 것을 가져가고, 그것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 사법실무에서는 절도죄의 경우 절취한 금액에 따라 그 양형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양형기준은 다음의 도표와 같습니다.

공안부에서 제정한<절도사건 입안 통계방법 개정에 관한 통지(关于修改盜竊案件立案统计办法的通知)>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고소한 절도사건을 접수한 경우 절취액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수리, 등기하고 수사하여야 한다.’고 입안 기준의 조항을 마련하고 있고, 또한 ‘해당 소재지 절도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절취한 경우에는 형사 안건으로 입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도 형사사건 처리에 적용하는 사법해석에 관한 북경시고급 인민법원의 몇 가지 의견

(北京市高级人民法院关于适用办理盗窃刑事案件司法解释的若干意见) (북경시 특별규정) 제1조에서는 절도죄의 경우 '비교적 많음'이란 2,000 위안이상, '거액'이란 6만 위안이상, '특별히 거액'이란 40만 위안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중국 사법실무에서 정하는 양형기준에 따를 경우 북경에서 절취금액이 10,000위안 이상일 경우에는 비교적 많은 금액의 절도사건에 해당되어 구속 수사하여 실형이 선고되며,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도의 경우 그 처벌의 정도가 한국보다 무거우므로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절취금액과 양형기준 (전국기준)

| 구분 | 절취액(위안) | 법정형 |
|------------|-----------------|-------------------------------------|
| 비교적 많음(较大) | 1000~3000이상 | 보호관찰(管制), 구류 3년 이하 징역과 벌금 병과 |
| 거액(巨大) | 30000~100000이상 | 3~10년 징역과 벌금 병과 |
| 특거액(特巨大) | 300000~500000이상 |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과 벌금(또는 재산몰수)병과 |

참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절도 형사사건 법률 적용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检察院关于办理盗窃刑事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第一条)

강도죄의 형사책임

Q A는 새로 여자 친구를 사귀게 되어 지출이 평소의 배로 늘었습니다. 더 이상 소비할 돈이 없게 되자, A는 늦은 밤 칼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자를 납치하여 그 여자에게 가진 돈을 전부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A는 하는 수 없이 그 여자를 놓아 주었습니다. A의 이러한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나요?

A A의 행위는 강도죄에 해당합니다.

강도죄는 중국에서 위해성이 가장 크고 가장 엄중하게 처벌하는 범죄 중의 하나로, 중국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263조는 ‘폭행, 협박, 그외 방법으로 공적, 사적 재물을 강탈한 사람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 몰수를 병과한다. (1)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한 경우 (2) 공공 교통수단에서 강도한 경우 (3) 은행, 그 외 금융기구에서 강도한 경우 (4) 여러 차례 강도하였거나 그 액수가 거대한 경우 (5) 강도로 인하여 중상 또는 사망을 야기한 경우 (6) 군인이나 경찰을 사칭하여 강도한 경우 (7) 총기를 휴대하여 강도한 경우 (8) 군용 물자 또는 긴급구조, 재해구조, 구제물자를 강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A는 비록 돈을 강탈하지는 못하였지만, 이미 강도행위를 실행하였습니다. 따라서 A가 재물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또는 강탈한 재물이 지닌 가치정도를 막론하고, A가 불법적인 점유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등의 수단을 채택하였다면 강도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태아 성별 감정의 위법성

Q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 A사장은 산부인과를 찾아가 B의사로부터 임신한 아내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성별 감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성별 감정을 요청한 A사장과 이에 응한 B의사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의뢰자인 A사장에 대한 별도의 형사 처벌 규정은 없으나, 이에 응한 의사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므로 B의사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 : 〈인구 및 산아 제한법(中华人民共和国人口与计划生育法)〉 제35조, 제36조의 규정에 따르면 의학기술로서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성별 감정을 하는 것을 금지하며 비의학적 필요로 성별을 이유로 유산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경고 처분하며 동시에 벌금을 내리고 의료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으며, 형사에 저촉될 경우 형사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성별 감정을 요청한 A사장은 처벌을 받지 아니하나, 이에 응한 의사 B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국에서는 병원 및 의사에 대한 태아 성별 감정에 따른 처분이 아주 엄한만큼 통상 정규적인 병원에서는 이러한 성별 감정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상해죄의 입건 기준

Q 중국에서 대학교에 다니는 A는 다른 사람과 싸우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대방의 코뼈를 부러뜨렸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

A 병원에서 판단한 치료일수가 아니라 사법 감정절차를 거쳐 결정된 상해 정도에 따라 형사 입건 여부가 결정되고, 만약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형사 입건은 되지 않으나 행정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 :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234조는 ‘고의로 타인의 인신에 상해를 가할 경우 3년 이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타인에게 중상을 입힐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잔인한 수단으로 타인에게 중상을 입히거나 엄중한 장애인으로 되게 할 경우 10년 이상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피해자의 인신 상해를 경미상, 경상, 중상, 사망 등으로 분류하고, 고의 상해죄의 경우 경상 이상의 피해가 있어야 형사적인 입건 수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형사 입건 여부는 병원이 아닌 지정된 사법감정기구에서 결정하며, 최고법원, 최고검찰원, 사법부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인체경상감정 표준(人体轻伤鉴定标准)’에 따라 경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병원에서 판단한 치료일수가 아니라 사법감정절차를 거쳐 결정된 상해 정도에 따라 형사 입건 여부가 결정되고, 만약 상해 정도가 경미상으로 판단된다면 형사 입건은 되지 않으나 행정처벌(최고 15일 이하 구류 및 인민폐 1천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의 대상이 되거나 민사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조지폐를 사용한 경우의 형사책임

Q 중국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A는 어느날 자신이 받은 돈중에 위조지폐로 의심이 되는 300 위안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받은 돈 중 300위안이 위조 지폐임을 알고 이를 사용할 경우 마땅히 소추해야 할 대상은 아니지만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안기관에 의해 벌금,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위조지폐로 의심되는 돈을 취득하였을 경우 이를 은행에 신고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이유 :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172조는 '위조된 화폐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소지(持有), 사용(使用)한 경우,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액수가 거대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액수가 특별히 거대하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 몰수를 병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는 소지 또는 사용한 위조화폐의 액수가 비교적 크거나 거대하거나, 특별히 거대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공안기관 관할의 형사사건의 입건기준에 관한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의 규정(2); 最高人民法院、公安部关于公安机关管辖的刑事案件立案追诉标准的规定(二)>은 소지하거나 사용한 위조화폐의 액수가 총액이 4천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마땅히 소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민은행법(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 제43조에서는 '위조, 변조한 인민폐를 구입하거나, 위조, 변조한 인민폐임을 명확히 알면서 소지 또는 사용하여 범죄가 구성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범죄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공안기관에서 15일 이하의 구류 또는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조 지폐 몰수 및 감정관리방법 (假币收缴鉴定管理办法)>는 금융기관에서 업무를 진행할 때 위조지폐를 발견하였을 경우 2명 이상의 업무인원이 현장에서 몰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20장 이상의 위조 인민폐 (액수는 불문) 또는 10장 이상의 위조 외화를 발견하였을 경우 공안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받은 돈중 300 위안이 위조 지폐임을 알고 이를 사용할 경우 마땅히 소추해야 할 대상은 아니지만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안기관에 의해 벌금,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위조 지폐로 의심되는 돈을 취득하였을 경우 이를 은행에 신고하거나 폐기해야 할 것이지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착오 송금된 돈을 반환 거부한 경우의 형사처벌

Q A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해서 송금을 하던 중B에게 송금할 돈을 C에게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A는 C에게 송금한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C는 이미 그 돈을 다 써버렸으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C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C가 A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C의 소유가 아니므로 C는 A에게 그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C는 이를 임의로 사용한 뒤 반환을 거부하였으므로 불법침점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유 :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270조는 ‘대신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횡령하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크고, 반환을 거부한 자는 2년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액수가 거대하거나 기타 정상이 엄중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타인의 유실물 또는 매장물을 불법으로 차지하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크고, 교부를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죄를 정하고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가 A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C의 소유가 아니므로 C는 A에게 그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C는 이를 임의로 사용한 뒤 반환을 거부하였으므로 불법침점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불법침점죄는 친고죄이므로 A는 직접 법원에 신고하여C에 대한 형사 처벌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중국 형법의 공소시효에 관하여

Q 알고 지내는 중국인으로부터 밤중에 칼로 위협을 당하여 지갑을 강탈당하였습니다. 알고 지내는 사람이고 무섭기도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인데, 중국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상 강도죄의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A 공소시효에 대해 중국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87조는

- (1) 법정최고형이 5년미만 유기징역인 경우 5년이 경과한 때
- (2) 법정최고형이 5년이상 10년미만 유기징역인 경우 10년이 경과한 때
- (3) 법정최고형이 10년이상 유기징역인 경우 15년이 경과한 때
- (4) 법정최고형이 무기징역, 사형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한 때(만약 20년이 경과한 후에도 반드시 소추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최고검찰원에 보고하고 심사비준을 얻어 소추할 수 있음)에는 소추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와 같은 강도죄의 경우 구체적 상황에 따라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사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사 처벌등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른 형사 처벌등급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경찰에 본 안건을 신고하여 경찰에서 이를 입건(立案)할 경우, 상 기 공소시효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중국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88 조 참조)

미성년자의 형사책임 범위

Q 14세인 한국인 유학생A는 북경에서 옆집에 들어가 노트북 컴퓨터 1대를 훔쳐 공안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성년자인 A는 별도의 형사재판에 따라 처벌되는가요?

A A는 이제 만14세로서 중국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에서 규정하는 만 14세 이상 16세 이하의 제한된 형사책임 주체입니다. 또한 A의 절도행위는 아래의 8가지 종류의 형사 처벌대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형사책임을 지지않습니다.

이유 : 중국에서 형사 책임을 지려면 형사 책임연령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중국 〈형법〉제17조는 ‘① 만 16세 이상의 자가 죄를 범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② 만 14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자가 고의살인, 고의상해로 인한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搶劫), 마약(毒品)판매, 방화, 폭발(爆炸), 위험물질 투입(投放危險物)의죄를 범하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③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자가 죄를 범하면 경하게 처벌하거나 감경하여 처벌해야 한다. ④ 만 16세 미만으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 행위자의 가장 또는 후견인이 관리, 교육해야 하고, 필요시 정부가 수용·선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형사 책임연령은 14세, 16세, 18세로 나누어지며 나이는 만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4세 미만일 경우 어떠한 형사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만14세 이상 16세 미만일 경우 위 조항에 정해진 죄의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고, 이 경우 위 죄명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형사 처벌된다는 뜻입니다. 또 마약의 경우 중국 〈형법〉에서는 제조, 운수, 구입, 소지, 판매 등 행위가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지만, 만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서는 판매행위만 형사 처벌되고 있습니다.

16세 이상이라면 완전한 형사책임 주체로 인정되어 형법에서 규정한 모든 범죄행

위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형사 처벌될 수 있지만,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여 통상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경감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A는 이제 만 14세로서 중국 〈형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만 14세 이상 16세 이하의 제한된 형사 책임 주체입니다. 또한 A의 절도행위는 상술한 8가지 종류의 형사 처벌대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책임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도박죄의 입안 기준

Q 중국에서 살고 있는 A는 주말에 가끔씩 친구를 불러 자기집에서 마작판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친구 3명 이상을 조직하여 도박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 도박죄에 해당되어 3년 이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안관리처벌법(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제70조 규정에 따르면 도박 또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중국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303조에는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사람들을 모아 도박을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도박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의 구체적인 법률 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办理赌博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에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형법〉 제303조 상의 ‘사람들이 모여 도박을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3명 이상의 도박조직이 사람들을 모아 도박을 하였고 그 수수료가 5000위안 이상을 받았을 경우
- (2) 3명 이상의 도박조직이 도박에 사용한 자금이 5만 위안 이상일 경우
- (3) 3명 이상의 도박조직이 20명 이상을 모아서 도박을 하였을 경우
- (4) 중화인민공화국공민 10명 이상의 조직이 외국으로 가서 도박을 했을 때 중간에서 수수료, 소개비를 받았을 경우

따라서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 아닌 소액의 재물로 도박 및 보드 게임방 등에서 오락활동을 하고, 그에 대해 장소 제공 등을 하면서 서비스 비용을 받는 행위는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도박 장소를 제공한 경우의 형사처벌

Q A는 평소에 scommis가 해퍼 자주 용돈부족에 시달리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던 친구 B는 A에게 좋은 용돈 벌이라며 집에 마작 설비 두 대를 들여놓은 후 마작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아 볼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A는 그 말을 믿고 마작 설비를 집에 들여놓은 후 몇 번의 임대를 통해 적지 않은 수입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의 단속에 걸려 법적 추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는 어떤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나요?

A <치안관리처벌법(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제70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비교적 큰 금액으로 도박에 참여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정황이 심각할 경우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와 500위안 이상 3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A는 본인이 직접 도박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도박 장소를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어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상황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이며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및 기타 관련된 사법해석에 따라 본인이 도박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장소 등 편의를 제공하여 그 정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벌금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3조).

마약범죄의 처벌 기준

Q 중국은 마약 범죄에 대해서 한국보다 더 무겁게 처벌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약 범죄로 인하여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나요?

A 중국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347조는

- (1) 마약을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한 경우에는 수량에 관계없이 모두 형사책임을 추궁하여 형사 처벌한다.
- (2) 마약을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 ① 1,000그램 이상의 아편, 50그램 이상의 헤로인 또는 메스암페타민 또는 기타 많은 수량의 마약을 밀수·판매·운송·제조한 경우
 - ② 마약을 밀수·판매·운송·제조한 집단의 주모자
 - ③ 마약의 밀수·판매·운송·제조를 무장비호한 경우
 - ④ 검사, 압류, 구속에 폭력으로 저항하고 정상이 엄중한 경우
 - ⑤ 조직적인 국제마약 판매활동에 참가한 경우
- (3) 200그램 이상 1,000그램 미만의 아편, 10그램 이상 50그램 미만의 헤로인 또는 메스암페타민 또는 기타 비교적 많은 수량의 마약을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 (4) 200그램 미만의 아편, 10그램 미만의 헤로인 또는 메스암페타민, 기타 소량의 마약을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정상이 엄중한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 흡입행위를 수용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Q 한국인 A는 중국 북경에서 다년간 민박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어느 날 남자3명이 민박에 입주하게 되었는데, A는 저녁 늦게 방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남자3명이 마약을 흡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A는 공안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입주자들이 숙박비를 더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결국 그들의 마약 흡입행위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A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중국에서는 타인의 마약흡입행위 수용죄(容留他人吸毒罪)가 있으며, 한국인 A는 본 죄에 해당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 :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354조에 의하면, 타인의 마약 흡입, 주사행위를 수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혹은 관제에 처할 수 있으며 동시에 벌금까지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용이란, 타인이 마약을 흡입할 수 있도록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장소를 마약 흡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한국인 A는 타인이 마약 흡입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상기 형법 규정에 따라 타인의 마약흡입행위수용죄(容留他人吸毒罪)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

Q A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취하여 옆자리에 앉은 손님들과 싸움을 하였습니다. 이에 공안이 출동하여 A를 파출소로 데려가 조사하려 하였으나, A는 파출소로 가지 않겠다고 반항하며 출동한 공안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공안을 밀쳤습니다. A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중국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277조는 ‘폭력, 위협의 방법으로 국가기관 공무원의 법에 의한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벌금에 처한다. 폭력, 위협의 방법을 사용하기 전이라도 고의로 국가안전기관, 공안기관의 법에 의한 국가안전 직무수행을 방해하여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위와 같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와 같이 A가 출동한 공안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공안을 밀친 행위는 폭력 및 위협으로 볼 수 있으므로 A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고죄

Q 중국에 살고 있는 A는 B에게 빌려준 5만 위안을 받지 못하자 돈을 받기 위해 B가 A의 집에서 돈을 훔쳐갔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공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A는 어떤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A의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당된다면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될지 여부는 A가 공안에 신고할 때 B로 하여금 형사 책임을 추궁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이러한 무고행위가 실제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였는지 여부 등의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이유 : 중국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243조는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모함함으로써 타인에게 형사 책임을 추궁 받게 하려고 하였으며 그 상황이 엄중할 경우 3년 이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절도죄는 일정 금액 이상이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 A는 없는 사실을 공안에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B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즉, A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합니다.

만약 A의 행위가 상황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형사 책임을 지지 않게 되더라도 <치안관리처벌법(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제42조에 따라 최고 10일 이하의 구류 및 인민폐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집회, 시위, 행진제도

Q 중국에 소재한 한국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A는 회사 급여제도에 불만을 품고 중국 측 회사 직원들을 조직하여 집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집회, 시위 등에 대하여 엄하게 단속한다고 들었는데 집회를 가질 경우 처벌받게 되는지요?

A 중국은 <집회행진시위법(中华人民共和国集会游行示威法)>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집회, 시위, 행진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행정 처벌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법에 따라 집회, 시위, 행진을 하는 경우만 법률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집회, 시위, 행진을 하려고 할 경우 반드시 명확한 조직자가 있어야 하며, 예정일 5일 전에 관할 현급, 시급 공안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컨대 이 사례와 같이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하는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위의 책임자에게 통지하여 협상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수 있으며, 신청 진행시간을 5일 늦출 수 있습니다. 관할부서에서는 신청한 진행 일자 2일 전에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서면으로 조직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외국인이 집회, 시위, 행진을 하려고 할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되며, 만약 이러한 신청을 거치지 않고 집회를 가질 경우 책임자 또는 조직자는 15일 이하의 구류(拘留) 또는 기타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동법에서는 '외국인은 중국에서 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치지 않는 한, 중국 국민이 진행하는 집회, 시위, 행진에 참가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은 중국에서 벌어지는 집회, 시위, 행진에 참가할 경우, 관련 주관부문의 비준을 받을 것을 주의하여야 하겠습니까.

성추행에 대한 처벌

Q 중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A는 직원들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회사 여직원을 강제로 성추행했습니다. A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A가 회사 여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성추행을 하였다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폭행,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정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유 : 중국〈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237조에 의하면, ‘폭력, 협박 또는 기타 방법으로 부녀에게 모욕적이거나 음란한 행동을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폭행,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직원을 성추행하는 행위에 대해 중국〈치안관리처벌법(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제26조에 따라 최고로 15일 이하의 구류 및 인민폐 1천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타인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공공장소에서 고의적으로 자신의 나신을 드러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정상이 중할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있습니다. 중국〈치안관리처벌법(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제44조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

Q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한국인 A는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던 중 갑자기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A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A 중국에서 일반적인 성매매 행위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며 <치안관리 처벌법(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에 의해 행정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유 : <치안관리처벌법> 제66조는 '성매매를 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5,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고 정상이 가벼울 경우에는 5일 이하의 구류를 하거나 5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공장소에서 성매매 호객행위를 하면 5일 이하의 구류를 하거나 5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는 행정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치안관리처벌법>을 위반하여 행정 처벌을 받은 외국인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출국 조치도 병과받을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구류 또는 벌금과 강제출국을 병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이러한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성관계 동영상 유포의 형사책임

Q 중국에 살고 있는 A는 평상시에 여관, 호텔 등 장소에 몰래카메라를 장치하고 타인의 성관계 등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 동영상 일부를 취미로 인터넷상으로 유포도 하고 있는데 A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우선 A가 몰래카메라로 타인의 성관계 등 사생활에 대해 촬영하는 행위는 중국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행정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비영리목적으로 40개 이상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경우, 또 중국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유 : <치안관리처벌법(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제42조에 의하면, 남몰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 사진 찍거나 촬영한 행위에 대해 상황이 엄중할 경우, 최고로 10일 이하의 구류와 인민폐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364조에 의하면, 음란서류, 음란사진, 음란동영상 혹은 기타 음란물을 전파하여 상황이 엄중할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혹은 관제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인터넷, 이동통신종단, 전화정보서 비스센터를 이용하여 음란전자정보를 제작, 복사, 출판, 판매, 전파하는 형사안건에 대한 구체적으로 법률 적용하는 데에 관한 해석(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办理利用互联网、移动通讯终端、声讯台制作、复制、出版、贩卖、传播淫秽电子信息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3조에 의하면, 제작, 복사, 출판, 판매, 전파한 동영상이 40개 이상일 경우, 상기 형법 제364조에 따른 상황이 엄중할 경우에 해당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즉, 위 법률규정에 따라 A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40개 이상의 음란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경우, 중국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형법 처벌기준에 미달하여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가 된다고 하더라도 <치안관리처벌법(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제68조에 의하여 최고 15일 이하의 구류 및 인민폐 3천 위안 이하의 병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몰래카메라로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 촬영한 행위에 대해, 동법 제42조에 따라 최고 10일 이하의 구류와 인민폐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자금 유용 및 자금유용죄

Q 중국 북경 소재 법인의 지사 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인A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 중 26만 위안을 자기의 개인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잠시 사용하였으나 3개월 이내에 이를 원상회복시키지 못하였습니다. A는 어떤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한국인 A의 행위는 자금유용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A가 유용한 자금은 규모가 거대한 경우에 해당하여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불법영득의사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점에서 직무침점죄(한국의 업무상횡령죄와 유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 : 중국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272조 제1항은 ‘회사,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의 업무 종사자로서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해당 단위의 자금을 유용(挪用)하여 개인이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주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크며, 3개월을 초과해도 반환하지 못하거나 또는 3개월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액수가 비교적 크고 이를 이용하여 영리활동을 진행하거나 또는 불법 활동을 진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유용한 해당 단위의 자금 액수가 거대하거나 비교적 큰 액수의 돈을 반환하지 않은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안기관관할의형사사건의입건기준에관한최고인민검찰원과공안부의규정(2) ; 最高人民檢察院、公安部關於公安機關管轄的刑事案件立案追訴標準的規定(二)〉 제85조는

- ① 유용한 자금이 1만 ~3만 위안 이상이고, 3개월이 초과되었음에도 미상환한 자
- ② 유용한 자금이 1만~3만 위안 이상이고, 영리 활동을 한 자
- ③ 유용한 자금이 5,000원 ~ 2만 위안 이상이고, 불법행위를 한 자는 반드시 소추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 A의 행위는 자금유용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A가 유용한 자금의 규모가 거대한 경우에 해당하여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회사자금 횡령 및 직무침점죄

Q A는 B회사의 재무 인원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자 마음대로 회사 자산에서 5만 위안을 꺼내어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B 회사는 이를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A의 행위는 직무침점죄에 속하나요?

A A의 행위는 직무침점죄에 해당합니다.

직무침점죄란 회사, 기업 또는 그의 단위의 인원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본 단위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서 점유하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를 말합니다. 한국의 업무상횡령죄와 비슷합니다.

중국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271조는 ‘회사, 기업 또는 그의 단위의 인원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본 단위의 재물을 불법 영득의사로서 점유하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그 액수가 거대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재산 몰수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액수가 비교적 큰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회사, 기업 또는 그의 단위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서 점유한 행위만 있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본 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형사사건의 입건기준에 관한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의 규정(2); 最高人民法院、公安部关于公安机关管辖的刑事案件立案追诉标准的规定(二)〉에 의하면, 인민폐 5천 위안부터 1만 위안 이상 이면, 직무침점죄(职务侵占罪)의 입건기준에 도달하여 직무침점죄가 성립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A는 직무의 편리를 이용하여 B 회사에서 5만 위안을 횡령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직무침점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B 회사는 A가 횡령한 금액 5만 위안에 대해 반환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과 달리 도착한 물품이 폐자재인 경우와 계약사기죄

Q A사는 중국 회사로부터 건축 자재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중국 회사 B로부터 대리석 타일을 수입하기로 하고 신용장을 개설하였는데, 도착한 물품을 확인하여 보니 주문한 물품과는 완전히 다른 폐자재를 실어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적으로 중국 회사를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A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224조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계약체결, 이행의 과정 중에 상대방 당사자의 재물을 편취하여,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액수가 거대하거나 기타 정상이 중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액수가 특별히 거대하거나 기타 정상이 특별히 중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 몰수를 병과한다.'

- (1) 허구의 단체 또는 타인의 명의를 모용(冒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2) 위조·변조·실효(作废)된 유가증권 또는 기타 허위로 작성된 재산권증명서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 (3) 실제 이행능력도 없이 소액의 계약을 먼저 이행하거나 계약을 부분 이행하는 방법으로 상대방 당사자로 하여금 계약을 계속 체결하고 이행하도록 속인 경우
- (4) 상대방 당사자가 공급한 화물, 상품대금, 선금금, 담보재산을 받은 후 도주 은닉한 경우
- (5) 기타 방법으로 상대방 당사자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형법>상의 계약사기죄(合同诈骗罪)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제활동 과정에서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이 조항이 규정하는 각종 기망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재물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와 계약사기죄

Q 중국 상해시에 살고 있는 A는 자신의 부동산을 이미 B에게 판 상황에서 또 다시 C에게 해당 부동산을 133만위안에 팔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A는 C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중 40여만 위안을 받은 후 연락을 끊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러한 A의 행위는 어떤 범죄를 구성하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A의 행위는 계약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계약사기죄란 허위의 사실을 표시하거나 진실을 숨기는 등 기망의 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점유할 목적으로, 계약의 체결,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중국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224조에서 규정하는 계약사기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설명은 35 번에서 상술한 <계약과 달리 도착한 물품이 폐자재인 경우와 계약사기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시 고급인민법원에서 <일상적인 범죄의 양형에 대한 지도의견(2)(시행)의 시행세칙 [关于常见犯罪的量刑指导意见(二)(试行)]>《实施细则》에 의하면,

- (1) 계약사기 금액이 인민폐 2만 위안 이상일 경우, 상기 형법에 따른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기준에 해당됩니다.
- (2) 계약사기 금액이 인민폐 20만 위안 이상일 경우, 상기 형법에 따른 '그 액수가 거대한' 기준에 해당됩니다.
- (3) 계약사기 금액이 인민폐100만위안 이상일 경우, 상기 형법에 따른 '그 액수가 특별히 거대한' 기준에 해당됩니다.

이 사안에서 A가 편취한 액수는 40여만 위안으로 '그 액수가 거대한' 경우에 속하므로, 법원에서 3년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및 벌금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A는 피해자인 C에게 40여만 위안을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진단서를 위조하여 병가 처리한 직원에 대한 형사처벌

Q 중국 천진시의 모자동차 부품회사에 출근하는 직원 A는 회사에 출근하기 싫어 가짜 병원진단서를 위조하여 3달간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그런 줄도 모르고 3달간 해당 직원에게 급여를 총인민폐 5만 위안을 지급했습니다. 최근 회사는 너무도 의심스러워 병원에 찾아가 확인해 본 결과, 직원A가 지금까지 제출한 병원진단서가 전부 가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사기죄로 해당 직원을 공안에 신고할 수 있나요?

A 해당 직원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사기죄란 허위의 사실을 표시하거나 진실을 숨기는 등 기망의 수단으로 상대방의 재물을 편취하고, 동시에 그 액수가 비교적 큰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안에서 A는 허위적인 사실을 꾸며내어 회사의 재산을 편취하였고 또 편취한 금액이 형사 처벌기준에 도달하였기에 사기죄로 공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유 :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266조는 '공공과 개인의 재물을 사취하고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벌금만 처한다. 액수가 거대하거나 기타 엄중한 상황일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액수가 특별히 거대하거나 기타 특별히 엄중한 상황일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재산을 몰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형사사건의 처리시 구체적 법률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과최고인민검찰원의 몇가지 해석(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办理诈骗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1조에 의하면, '편취한 공적, 사적 재물의 액수가 '3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인 경우,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인 경우, '50만 위안 이상'인 경우를 각각 형법 제266조에서 규정한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그 액수가 거

대한, '그 액수가 특별히 거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급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당지의 경제 사회 발전상황에 근거하여 상기 금액범위 내에서 당지에서 시행하는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연구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A가 편취한 액수는 5만 위안으로서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원에서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및 벌금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A는 피해자인 회사에게 5만 위안을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공갈협박한 직원에 대한 형사처벌

Q 저희는 중국 연태시에서 식품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외자기업입니다. 저희 회사 인사담당자가 업무에 소홀하여 근무연수가 6개월 되는 직원A에게 지금까지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직원A은 회사에서 자신한테 인민폐 20만 위안을 주지 않을 경우, 사회보험국에 신고하여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겠다고 계속 협박하여 회사는 마지 못해 20만 위안을 주었습니다. 비록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책임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회사를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직원A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직원A는 회사에 공갈협박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것은 공갈협박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 :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274조는 '공갈 협박하여 공공과 개인의 재물을 갈취한 경우, 액수가 비교적 크거나 혹은 여러 차례 공갈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 처한다. 액수가 거대하거나 기타 엄중한 상황일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액수가 특별히 거대하거나 기타 특별히 엄중한 상황일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갈협박 형사안건 처리 법률적용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办理敲诈勒索刑事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갈협박으로 갈취한 공공과 개인의 재물 가치가 2,000~5,000위안 이상, 30,000~100,000위안 이상, 300,000~500,000위안 이상인 경우를 형법 제274조에서 규정한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 '액수가 거대한 경우', '액수가 특별히 거대한 경우'로 각각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회사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노동법상으로 법적책임을 부담해야 되지만, 직원A가 이를 빌미로 삼아 회사에 공갈협박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것은 상기처럼 공갈협박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표 부도시 형사책임

Q A는 중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던 중 거래처에서 물품 대금을 제때 지급해주지 않아 발행한 수표가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A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A가 수표를 발행하였을 당시 이미 그 수표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을 경우 그 발행한 수표의 금액이 일정 금액이상이 되면 어음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A가 수표 발행당시 거래처에서 대금을 지급해 줄 것으로 생각하여 수표 부도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유: <형법> 제194조는 금융어음 편취활동을 행하고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액수가 거대하거나 또는 정상이 중하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액수가 특별히 거대하거나 또는 정상이 특별히 중하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 몰수를 병과한다.

(1) 위조·변조된 환어음·약속어음·수표임을 분명히 알고도 사용한 자 (2) 실효된 환어음·약속어음·수표임을 분명히 알고도 사용한 자 (3) 타인의 환어음·약속어음·수표를 자신의 것인양 사용한 자 (4) 공수표를 발행하거나 또는 미리 신고한 인감과 부합하지 않는 수표를 서명, 발행하여 재물을 편취한 자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가 수표를 발행하였을 당시 이미 그 수표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을 경우 그 발행한 수표의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어음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A가 수표발행 당시 거래처에서 대금을 지급해 줄 것으로 생각하여 수표부도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민사상 배상책임은 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죄 중 중대사고 및 처리 절차

Q 북경에 거주하는 A는 2008년 12월 14일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5명을 들이받아 그 중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A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A A의 무면허 운전 등은 사고 발생 관련 전부 또는 중요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원인에 해당하고, 사고로 인해 3인 이상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야기하였으므로 교통사고 범죄(交通肇事罪)에 해당하여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 :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133조는 ‘교통운수관리법규를 위반 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중상,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공공 또는 개인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교통운수 사고를 낸 후 도주하거나 기타 특별히 나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도주함으로써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중대교통사고(重大交通事故)의 발생을 전제로 하므로, 어느 정도의 교통사고가 중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표준을 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심리에서 구체적 법률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가지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交通肇事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은 이 죄를 구성하는 교통사고의 유형을 열거하고, 또한 법정형이 가중되는 특별히 나쁜 정황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위 사법해석 제2조 제1항은 ‘①사망 1인 또는 중상 3인 이상 이며 사고발생과 관련 전부 또는 중요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②사망 3인 이상이며 사고발생과 관련 동등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③ 공공재산 또는 타인재산에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하였고, 사고 발생 관련 전부 또는 중요책임을 부담하며, 배상할 능력이 없는 액수가 30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제2항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 1인 이상이고, 사고발생 관련 전부 또는 중요책임을 부담하며 다음과 같이 ① 음주 또는 마약흡입한 후 운전한 경우, ② 무면허 운전한 경우, ③ 안전장치, 안전부품이 불완전함을 알고도 운전한 경우, ④ 이미 폐기된 차량임을 알고도 운전한 경우, ⑤ 엄중히 초과 적재하여 운전한 경우, ⑥ 법률추구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죄(交通肇事罪)」로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해석 제4조는 '① 사망 2인 또는 중상 5인 이상이며 사고발생과 관련 전부 또는 중요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② 사망 6인 이상이며 사고발생과 관련 동등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③ 공공재산 또는 타인재산에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하였고, 사고발생 관련 전부 또는 중요 책임을 부담하며, 배상할 능력이 없는 액수가 60만 위안 이상인 경우는 이 조항이 규정하는 《기타 특별히 나쁜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A의 무면허 운전 등은 사고발생 관련 전부 또는 중요책임을 부담하는 원인에 해당하고, 사고 결과 사망 3인 이상의 결과를 야기하였으므로 교통사고 범죄(交通肇事罪)에 해당되어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 해석에서 언급하지 않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경상만을 입힌 경우, 한국에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 받지만, 중국에서는 위와 같은 사법해석을 적용하면 중대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이보다 경한 행정처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상인지 아닌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교통사고 발생시 일반적인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주 경미하고 책임부담에 분쟁이 없는 교통사고는 당사자간에 협의를 거쳐 바로 현장에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1. 교통사고 처리 신고전화인 122에 연락하여 교통경찰을 사고현장에 불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책임부담에 대해 교통사고 책임인정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2. 교통사고 책임인정서에 기재된 각 당사자가 부담해야 될 책임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며, 차량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관련 보험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인 일방은 교통사고 발생지 또는 피고 소재지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범죄유형에 따른 처벌〉

| 유 형 | | 처벌 |
|-------------------------------------------------|------------|-----------------------|
| 상해지수 및 손해정도 | 사고책임 | |
| 사망 1인 | 전부 또는 주 책임 | 3년 이하 징역 또는 구역(拘役) |
| 중상 3인 이상 | 전부 또는 주 책임 | |
| 사망 3인 이상 | 50% | |
| 공공재산 또는 타인 재산에 대한 직접 손해 *30만 위안 이상의 배상능력 없음. | 전부 또는 주 책임 | |
| 교통사고 후 도주 | | 3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
| 도주정황 불량 + 사망 | | 7년 이상 징역 |

경미한 교통사고의 형사책임 범위

Q 경미한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A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와 배상할 수 능력이 없는 손실 금액의 액수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유 : 〈교통사고형사사건의심리에서구체적법률적용에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交通肇事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 2조 제3항은 '타인 또는 공공재산에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킨 사고에서 전부 또는 주요한 책임을 지며, 배상할 능력이 되지 않고 그 손실 금액이 30만 위안 이상일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미한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고 사고의 전부 또는 주요한 책임자가 아니거나, 손실이 30만 위안 미만이거나 혹은 손실이 30만 이상지만 배상할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로 타인의 재산을 훼손했을 경우 행정처벌(최고 15일 이하의 구류 및 인민폐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대상이 되며, 또한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됩니다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 제49조 참조)

차문을 열면서 부딪쳐 발생한 교통사고의 처리

Q 술에 취한 A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가 나와 택시기사 보고 차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A는 너무 급한 나머지 택시가 제대로 멈추어 서기 전에 차문을 열어 버렸습니다. 이때 마침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 B는 택시 차문에 부딪쳐 넘어지면서 머리가 땅에 크게 부딪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A는 「교통사고죄(交通肇事罪)」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A A는 본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므로 교통사고죄(交通肇事罪)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의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도로교통안전법실시조례(道路交通安全法实施条例)>의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 차문을 열거나 사람이 차에 타거나 내려서 안되며, 차문을 열고 달을 때 기타 차량과 행인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상기 '교통운수관리 법규를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중상,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공공 또는 개인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133조

따라서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심리에서 구체적 법률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가지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交通肇事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사망 1인 또는 중상 3인 이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또 본 교통사고의 전부 또는 중요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량이 완전히 멈추어 서기 전에 차문을 열게 되면 타인의 안전에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사람이 사망될 경우 교통사고죄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택시에서 차문을 열 때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법상 처벌과 행정처벌

Q 북경에 거주하는 A는 직장 회식자리에서 4홀들이 맥주를3병 정도를 마시고 운전하던 중 공안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A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단속 당시 측정한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형법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겠지만, 마신 술의 양과 종류를 고려할 때 이는 만취운전이 아닌 일반적인 음주운전에 해당되어 <도로교통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상의 행정처벌인 10일 이하의 구류 및 2,000 위안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유 :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에서는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로 경주하며 뒤쫓거나 도로에서 만취운전(醉酒驾车)할 경우 구역(拘役)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도로교통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에서는 처벌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음주운전(饮酒驾车)한 경우 운전면허증을 6개월 동안 압수하고 1,000 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재범인 경우 10일 이하 구류하고 1,000 위안 이상 2,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② 만취운전(醉酒驾车)한 경우 공안기관에서 교통 부문에 넘겨 술이 깰 때까지 구인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하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지며, 5년 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다. ③ 술을 마셨거나 술에 취한 후 차량을 운전하여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범죄에 해당할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공안기관에서 교통 부문에 맡겨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종신토록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혈중알콜농도의 양을 기준으로, 형법상의 형사처벌인 '술에 취하여 운전(醉酒驾车)하였다'는 것은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80mg/100ml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안전법의 행정처벌인 ‘술을 마셨다’는 것은 운전자의 혈중 알콜농도가 20mg/100ml(0.02 퍼센트) 이상 80mg/100ml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참고로 한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규정(한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하고 있어, 중국보다 기준이 0.01 퍼센트 더 높습니다.

또한 중국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계산할 경우, 통상 맥주컵 한잔의 맥주(啤酒)를 마셨을 경우에도 혈중알콜농도가 20mg/100ml 정도에 해당하고, 소주잔 석잔 정도의 낮은 도수의 백주(白酒)를 마셨거나 두병의 맥주를 마셨을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80mg/100ml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정해지겠지만, 마신 술의 양과 종류를 고려할 때 10일 이하의 구류 및 2,000 위안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형법상의 <위험운전죄(危險駕駛罪)>는 만취운전, 도로에서 고속 운전하며 경주하는 등 위험 운전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실제로 한국인이 중국에서 위험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정처벌을 받는 외국인에 대하여서는 강제출국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국의 출입국법을 감안하여 볼 때 중국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아주 중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운전하지 마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기사를 불러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측정에 대한 이견 진술기회

Q 한국인 A는 친구들과 회식 자리에서 맥주1잔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 집에 돌아가던 중 호기음주측정(呼气酒精测试)을 당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측정량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공안의 음주측정에 대해 혈액검사 등 방법으로 반박할 방법이 있는지요?

A 예, 있습니다.

공안기관의 <행정사건처리절차에대한규정(公安机关办理行政案件程序规定)> 제95조에 의하면,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공안기관의 교통경찰은 음주측정을 할 수 있으며 아래 사항 중 하나에 부합될 경우, 즉시 혈액검사를 진행하여 혈액중 알코올함량을 검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당사자가 호기음주측정결과(呼气酒精测试结果)에 이의가 있을 경우
2. 당사자가 호기음주측정을 거절할 경우
3. 만취운전 혐의가 있을 경우
4.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당사자가 호기음주측정 결과에 이의가 없을 경우, 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싸인 확인 후 다시 이의를 제출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당사자는 처음 호기음주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즉시 이의를 제출하여 병원에서 혈액검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에 의한 교통사고

Q A는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하여 모퉁이를 돌다 반대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B를 보지 못하고 그를 자전거로 치었습니다. 이에 A는 급정거를 하였지만 피해자 B는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A의 자전거에 부딪혀 튕겨져 나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으나 곧 사망하였습니다. A는 이 교통사고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A 이 사례의 A는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겠지만, 동력 차량과 비동력 차량이 충돌할 시에는 동력 차량이 주요 책임을 지는 것 이므로 비동력 차량을 운전한 A의 책임은 감경될 것입니다.

이유 : 〈도로교통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의 규정에 따르면 차량에는 비동력 차량이 포함되며 동력 차량과 비동력 차량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심리에서 구체적 법률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가지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交通肇事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8조 제2항은 ‘공공 교통관리 범위 내 동력 차량 또는 기타 교통도구를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 사람이 사상되었거나 공공재산 또는 타인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 형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력 차량과 비동력 차량이 충돌할 시에는 동력 차량이 주요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비동력 차량의 책임은 감경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정폭력과 형법상 학대죄

Q 한국 여성 A는 중국 남성 B와 결혼한 뒤 계속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1년 전 쌍방은 감정문제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 쌍방은 자녀의 교육을 고려하여 계속 한 집에서 동거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이혼 후 자주 술을 먹고 들어와서는 A를 욕하고 발로 치는 각종 구박을 해 왔습니다. 이럴 경우, A는 B를 학대죄(虐待罪)로 공안에 신고할 수 있나요?

A 만약 B의 학대행위가 엄중할 경우(情节恶劣), 학대죄(虐待罪)로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260조는 '가족 구성원을 학대했고 그 행위가 엄중한 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전항의 범죄를 범하여 피해자가 중상, 사망하게 한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안건을 처리 관련 의견(关于依法办理家庭暴力犯罪案件的意见)>에서는 후견, 부양, 양육, 동거 등 관계가 있는 인원을 가정폭력범죄의 주요 범위로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이혼한 부부사이에 여전히 동거관계가 존재하고 그 중 한측의 학대행위가 (1) 지속적 학대이고, (2) 학대 횟수가 비교적 많으며, (3) 학대 수단이 잔인한 등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면 정상이 악랄한 정도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대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 형법상 학대죄는 친고죄이므로 A가 B를 법원에 신고하여야만 B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구제

Q 중국인 남편은 사업에서 실패한 후 항상 술에 취하여 저와 아이를 때립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 외에 저와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A 중국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6년 3월 1일부터 최초의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인 <반가정폭력법(中华人民共和国反家庭暴力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가정폭력법>은 가정폭력을 가족 구성원 간의 구타, 결박, 상해, 인신자유의 속박, 상습적 욕설과 협박 등의 방법으로 신체와 정신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로 규정했고, 당사자가 가정폭력 또는 가정폭력의 현실적인 위협에 직면하여 법원에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법원은 인신안전보호령의 신청을 수리한 후 72시간 내에 인신안전 보호령을 발령하거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며,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24시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반가정폭력법> 제29조에 의하면 인신안전보호령은 다음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피신청인의 가정폭력 행위의 금지 (2) 피신청인이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가까운 친족을 괴롭히거나, 스토킹하거나, 접촉하는 행위의 금지 (3)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거주지에서 전출할 것을 명령 (4) 신청인의 인신안전을 보호하는 기타의 조치.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이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그 위협에 직면한 경우 공간기관에 신고하고, 또한 법원에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자신과 아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신안전보호령은 유효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인신안전보호령의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신청인은 신청의 철회, 변경,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Section 11

**형사소송법과
생활**

이럴땐 이렇게

형사소송 중 변호인의 자격

Q 중국에서 공안에 폭행죄로 구속되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예정인데,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는 경우, 일반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요?

A 예,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일반인도 범죄혐의자 또는 피고인의 위탁을 받고 법정에서 변호할 수 있습니다.

중국 〈형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제33조에서는 ‘범죄혐의자, 피고인은 본인이 스스로 변호권리를 행사하는 외에 1인 내지 2인을 변호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사람들은 위탁을 받고 변호인을 담당할 수 있다. ① 변호사, ② 단체 또는 범죄혐의자, 피고인 소재단위에서 추천하여 준 사람, ③ 범죄혐의자, 피고인의 보호자, 친구, 친척. 다만, 형집행기간에 있거나 법에 따라 인신자유를 제한 또는 박탈당한 자는 변호인을 담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이 경제적 또는 기타 원인으로 전문적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거나 선임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 규정에 부합하는 중국인 또는 자신의 근친족, 보호자 등을 변호인으로 지정 위탁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선임

Q 한국인 A의 아들 B는 북경 소재 대학교 기숙사에서 옆방 룸메이트의 컴퓨터를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혀 현재 경찰서 간수소(看守所)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는 아들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예, 가능합니다.

중국 〈형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제34조, 제97조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중국에서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개입될 수 있는 시간 단계는 수사 단계(공안, 검찰원), 기소 단계(검찰원), 재판단계(법원) 등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데, 중국은 수사 단계에 범죄혐의자의 친구, 친척들의 면회를 대부분 허가하지 아니하고 위탁을 받은 변호사만이 관련 위탁증서와 변호사 자격증명 등 문서를 소지하고 범죄혐의자를 면회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처음으로 범죄혐의자 에 대하여 신문하거나 강제조치를 취한 이후, 범죄혐의자는 변호사의 법률자문, 탄원서 제출, 고소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보석(保释)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일 경우 가급적 일찍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선변호인 제도

Q 한국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데, 중국에서도 외국인이 그러한 국선 변호인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요?

A 예,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중국 〈형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제35조에서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하거나 기타 원인으로 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법원은 법률지원 의무가 있는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하여 주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이 중국에서 피고인으로 되었다면 관할 법원에 변호사를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의 선임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사항이지만, 실무상 외국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잘 받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사형에 처하여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지정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지정한 변호사도 현지 사법국의 등록에 따라 임의로 지정되는 것이므로 변호사의 능력 및 경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 중 변호사의 권리

Q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의 권리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A 중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인도 변호인으로 될 수 있지만, 변호사는 일반 변호인보다 먼저 사건 절차에 참여하고, 더 많은 권리가 인정되므로 당사자의 권익을 보다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한 변호사의 권리에 대하여 중국의 법률 및 사법해석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 단계

- ① 범죄혐의자에게 법률자문, 소송대리 및 고소, 고발(控告)를 제공합니다.
- ② 범죄혐의자가 체포되었을 경우 변호사는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범죄혐의자가 어떠한 범죄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볼 권리가 있습니다.
- ④ 범죄혐의자를 만나볼 때 범죄혐의자로부터 사건에 관련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 ⑤ 법원, 검찰원, 공안기관의 강제조치가 법정기한을 초과할 경우 강제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기소심사 단계

- ① 기록, 기술감정자료를 열람, 발췌기록, 복사 또는 복제할 수 있습니다.
- ② 구속 중의 범죄혐의자를 접견 및 통신할 수 있습니다.
- ③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련 기관에 증거를 수집, 조사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의견발표 권리가 있습니다.

- ⑤ 보석 신청권이 있습니다.
- ⑥ 법원, 검찰원, 공안기관의 강제조치가 법정기한을 초과할 경우 강제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재판 단계

- ① 소송문서, 기술감정자료를 열람, 발취기록, 복사 또는 복제할 수 있습니다.
- ② 구속 중의 범죄혐의자를 접견하거나 통신할 수 있습니다.
- ③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련 기관에 증거를 수집, 조사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보석 신청권이 있습니다.
- ⑤ 증거 이의제기권, 신청권, 변론권이 있습니다.
- ⑥ 비독립적인 상소권이 있습니다.

중국의 묵비권

Q 한국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범인을 체포할 때 묵비권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등의 미란다 원칙을 반드시 설명해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범죄혐의자에게 묵비권이 인정되나요?

A 중국은 <형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상 범죄혐의자에게 묵비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에 대해 진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0조는 '수사인원이 범죄혐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먼저 범죄혐의자의 범죄행위의 유무를 신문하고, 범죄혐의자로 하여금 유죄에 대한 상황설명 또는 무죄에 대한 변명을 진술하게 한 후, 그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야 한다. 범죄혐의자는 수사인원의 질문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과 관계없는 질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안기관형사사건처리절차규정(公安机关办理刑事案件程序规定)> 제198조는 범죄행위의 유무를 신문할 때, 사실대로 자신의 범죄를 진술하면 감경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함께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합의

Q 한국인 A는 평소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중국인 B와 싸워 중상을 입히게 되었고, 피해자가 신고하여 공안에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공안에서 조사 단계에 있는데 피해자로부터 10만 위안을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실무적으로 이 사례와 같이 형사사건에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민사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손해배상의 문제이고, 형사는 개인의 행위가 형법에 위반되었을 때 국가에서 처벌하는 것이므로 별개의 문제라 하겠습니다.

고의 상해 행위는 객관적인 상해 행위 및 상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받게 되므로, 당사간에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충분한 배상을 하였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형에 있어서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피해자가 형사부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형사법정을 주관하는 재판부에서 민사소송까지 같이 심리하여 배상여부를 결정하며, 그 배상 결과에 따라 양형에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합니다.

보석 석방제도

Q 저의 친구A가 폭행죄로 구속되어 있던 중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나요? 보석으로 구금에서 풀려난 자가 주의해야 할 의무는 무엇이 있나요?

A 만약 친구A의 폭행행위가 비교적 경하고 또 아래 보석석방 조건을 만족할 경우, 보석 석방이 가능합니다.

중국 〈형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제67조에 따르면, (1)유기징역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보석 석방을 해도 사회에 위험이 없을 경우 (2)엄중한 질병환자, 생활능력 상실자, 임신부 또는 부유기에 있는 부녀이고 보석 석방을 해도 사회에 위험이 없을 경우 (3)구속기한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안건 조사가 종결되지 않아 보석 석방이 필요한 경우에 공안국, 검찰원, 법원에서는 보석 석방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록 상기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유기징역 이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사회에 위험이 없을 경우, 보석 석방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무상으로 만약 친구A의 폭행행위가 비교적 엄중하여 유기징역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는 보석 석방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보석 석방을 받은 범죄혐의자 또는 피고인은 중국 〈형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제71조에 따라 아래 의무를 준수해야 됩니다.

- ① 집행기관의 허가 없이 거주하고 있는 시, 현을 떠날 수 없음
- ② 주소, 직장단위 및 연락방식에 변동이 생긴 경우 24시간 내에 집행기관에 보고해야 함
- ③ 신문을 위하여 소환하는 경우 즉시 출두해야 함
- ④ 어떠한 방식으로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하여서는 안됨
- ⑤ 증거를 인멸, 위조하거나 통모하여 진술을 날조하여서는 안됨.

또한 보석으로 석방된 범죄혐의자, 피고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미 보증금을 납부하였으면 이를 몰수하고, 각 상황에 따라 범죄혐의자, 피고인에게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다시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보증인을 세우도록 명하거나 또는 주거감시하거나 구속합니다.

범죄혐의자,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된 후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석기간 종료 시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주거감시 제도

Q 공간기관에서 범죄혐의자 A에게 주거감시를 명했는데, 주거감시가 무엇인가요?

A 주거감시란 일부 법정조건에 해당하는 범죄혐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강제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구치소에 구속하지 않고 범죄혐의자, 피고인의 거주 장소 또는 공간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중국 〈형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제74조에 따르면, (1) 엄중한 질병 환자, 생활능력 상실자 (2) 임신부 또는 부유기에 있는 부녀 (3) 안건의 특수상황 혹은 안건의 필요성에 의해 주거감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우 (4) 구속기한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안건조사가 종결되지 않아 주거감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공안국, 검찰원, 법원에서는 주거감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석석방 조건에 부합되는 범죄혐의자 또는 피고인이 보증인을 제공할 수도 없고 보증금도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주거감시 명령을 받은 범죄혐의자, 피고인은 그 기간 중 〈형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의무를 엄격히 준수해야 됩니다.

- ① 집행기관의 허가 없이 감시거주지를 떠날 수 없음
- ② 집행기관의 허가없이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통신할 수 없음
- ③ 신문하기 위해 소환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두해야 함
- ④ 어떠한 형식으로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하여서는 안됨
- ⑤ 증거를 인멸, 위조하거나 통모하여 진술을 날조하여서는 안됨
- ⑥ 여권 등 출입국증서, 신문증, 운전면허증 등은 집행기구에서 보존해야 함

만약 주거감시를 받은 범죄혐의자, 피고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엄중한 경우에는 구속을 합니다.

중국 가석방 제도의 범위

Q 중국에서 사기죄로 10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인데, 중국에도 가석방이 가능한지요?

A 예, 가능합니다.

중국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81조의 규정에 따르면,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선고형의 절반 이상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실제로 13년 이상을 복역하고, 교도소의 규칙을 착실히 준수하였으며, 교육을 받고, 반성하며, 재범할 위험이 없다면 가석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살인, 강간, 강탈, 납치 등 폭력성 범죄로 10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하여서는 가석방 할 수 없습니다.

가석방 후 관찰기간을 두어 그 기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새로 발견된 예전의 범죄가 없으며, 법률의 규정과 관련 부서의 규정에 따라 착실하게 생활하였을 경우 관찰기간 만료 후 형의 집행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석방 관찰기간에 법률, 법규 및 국무원 공안부서의 가석방에 대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가석방은 취소되고 나머지 실형을 다시 집행하게 됩니다.

가석방의 관찰기간은 유기징역일 경우 선고형 중 집행을 완료하지 않은 형기이고, 무기징역일 경우 10년으로 합니다.

중국 법률 중 친고죄의 범위

Q 중국 형법상 고소가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는 친고죄가 있나요?

A 예, 있습니다.

중국에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친고죄는 다음 4가지입니다

① 모욕, 비방죄

(단, 사회질서 또는 국가이익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는 제외)

② 혼인간섭죄

③ 학대죄

④ 침점죄 (한국의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유사)

즉 이러한 죄명들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고하여야만 형사처벌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불법 녹음의 형사처벌 여부

Q 중국인 파트너와 사업상 마찰이 생겨 계속적으로 갈등관계에 있으며, 민사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민사상 중요한 증거로 중국인 파트너와 대화 내용을 녹음한 자료를 증거로 내려 하는데, 상대방 몰래 녹음한 것이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지요?

A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의 녹음행위는 증거수집 방식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될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녹음 행위 자체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수집한 녹음에 상업기밀이거나 사생활에 속하는 내용이 있으며 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유출시키거나, 이를 근거로 상대방을 협박, 공갈한다면 이러한 행위가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의 규정에 저촉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피해자의 형사소송 참여

Q 북경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중 중국인 남자 3명으로부터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여 앞니가 부러지고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공안에 신고하여 가해자들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중국 〈형사소송법〉상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로서 진술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요?

A 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기소는 국가기관인 검찰원에서 맡고 있지만, 형사 사건에서 가장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자이므로, 형사재판 진행과정에서 피해자도 충분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중국 〈형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제191조에 의하면 공소인이 법정에서 공소장을 낭독한 후에 피고인, 피해자는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에 대한 진술을 할 수 있고, 공소인은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형사부대 민사소송의 원고 및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피고인에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감옥외집행 범위

Q 중국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한국인A는 허리 통증 때문에 수감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외부에서 수술을 받기 위하여 일시 석방이 가능한지요?

A 예,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제265조는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해진 범죄자가 아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로 감옥 외부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형집행정지제도와 유사)

- (1) 중대한 질병이 있어 외부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 (2) 임신 또는 자신의 영아에게 수유 중인 부녀자인 경우
- (3) 기동이 불가능하고 외부에서 집행하여도 사회적 위험성이 없는 경우

무기징역인인 범죄자가 제2항인 경우일 때는 외부에서 집행하여도 된다. 다만 외부치료를 하면 사회적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 범죄자 또는 자해(自害)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는 외부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범죄자의 병이 확실히 위중하여 반드시 외부 치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성급 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증명서를 발급하고, 법률이 규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심사·비준하게 됩니다.

만약 외부 치료를 받는 범죄자가 외부치료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또는 외부치료에 관련된 규정을 심각히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감하게 됩니다.

유기징역, 구역에 처해져 스스로 생활할 능력이 없고, 임시 옥외집행을 적용하여도 사회위험성이 없는 범죄인인 경우에는 임시 옥외집행을 시행할 수 있으며, 임시 옥외집행을 적용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거주지 공안기관이 집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건에 부합된다면 질병을 원인으로 임시 옥외집행을 신청하여 교도소 외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 요건

Q 한국인A는 중국인B와 싸움을 하여 B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하여 A는 공안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데, 구속될 염려는 없는지요? 중국법상 구속요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중국〈형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구속은 검찰원의 비준 또는 법원의 결정을 거쳐 공안기관에서 집행합니다.

〈법에 따라 구속조치를 취하는 문제에 대한 규정(关于依法使用逮捕措施有关问题的规定)〉에서는 구속의 조건으로

- ① 계속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사회에 위해를 줄 경우
- ② 증거를 인멸, 위조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간섭하거나 공모할 경우
- ③ 자살하거나 도망갈 가능성이 있을 경우
- ④ 보복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 ⑤ 기타 사건의 수사에 방해가 될 경우
- ⑥ 기타 사회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구속요건에는 부합되지만 중대한 질환이 있거나, 임신 중이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부녀들에 대해서는 보석 또는 주거감시조치 등으로 석방할 수 있습니다.

공안의 불입건 조치에 대한 피해자의 불복방법

Q 한국인A는 중국인B로부터 폭행당하여 중상을 입어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A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불입건 결정을 내릴 경우, 해당 불입건 통지서를 작성하여 3일 내로 피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불입건 통지서에는 반드시 입건을 불허가 하는 원인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동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원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원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에서는 7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 관할 검찰원에 공안기관에 대한 입건감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공안기관이 마땅히 수사하여야 할 사건에 대하여 입건 조사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검찰원에 요구서를 제출하면 검찰원은 공안기관에서 불입건 처리의 근거를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근거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공안기관에서 입건 처리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 피해자가 만약 증거가 충분하다면 직접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에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의 재심청구 요건

Q 한국인A는 중국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A는 당시 술에 취하여 상대방을 쥐고 흔들었을 뿐 절대 때린 사실이 없는데, 다시 구제받을 기회는 없는가요?

A 중국에서는 법적으로 2심 종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별도로 심판감독 절차를 두어 문제가 있는 재판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국 〈형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제252조는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근친족은 이미 법률효력이 발생한 판결, 결정에 대하여 법원 또는 검찰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판결, 결정의 집행은 정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53조는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근친족의 상고가

- ① 원 판결, 결정에서 인정된 사실에 확실한 착오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새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형량 확정 of 근거가 되는 증거가 불확실·불충분하거나 사건 사실을 증명하는 주요 증거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는 경우
- ③ 원 판결·결정에 적용된 법률에 확실한 착오가 있는 경우
- ④ 법률범규에 규정된 소송절차를 위반하고 공정심판에 영향을 준 경우
- ⑤ 법관이 사건의 심리할 때 독직수뢰, 부정불법, 법을 왜곡하여 재판하는 행위 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는 법원이 재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 큰 문제가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어 원판결의 사실인정 또는 재판에 큰 영향을 줄 경우 당사자는 재심신청을 하여 다시 재판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으나, 위 사건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형사판결 상소시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Q 한국인A는 중국 형법에 저촉되어 1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벌이 너무 중하다고 생각되어 상소를 고려하고 있으나, 2심 법원에서 더 중한 벌을 내리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여기에 관계되는 규정은 없는지요?

A중국〈형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제237조는 ‘제2심 법원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변호인, 친족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하여서는 안된다. 제2심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법원으로 파기 환송하여 원심 법원에서 다시 심판하는 사건에 새로운 범죄사실이 추가되거나, 검찰원이 보충 기소하는 경우 외에는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인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원의 1심 형사처벌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상소를 제기할 경우, 원 재판보다 더욱 중한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2심에서 형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여 상소를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공소를 제기한 검찰원 또는 형사 자소사건의 자소인이 1심 재판에 불복하여 상소한 경우라면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 중 수사기간과 구류기한

Q 한국인A는 폭행 혐의로 공안기관에 구류된 상태인데, 어느정도 기한이 지나야 구속 여부가 결정되나요?

A 공안기관에서 원칙적으로 37일까지 형사구류를 할 수 있습니다.

중국 〈형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보면 공안기관은 혐의자를 형사구류한 후 24시간 이내에 신문하여야 하며 형사구류 후 3일 이내에 검찰원에 구속비준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특수상황에 대하여 형사구류 기간을 1일 내지 4일 더 연장할 수 있고, 도피 중의 범죄행위, 상습적 범죄행위, 집단 범죄행위의 중대 혐의자에 대한 구속비준 신청기간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공안기관에서 짧은 시간 내에 사건을 조사하기 어려우므로 대부분 사건에 대하여 30일을 기준으로 수사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안기관에서 기초적인 수사를 거친 후 검찰원에 구속비준을 신청하게 되면 검찰원은 7일 이내에 구속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수사기간은 원칙적으로 37일(30일+7일)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당사자의 행위가 형사범죄에 해당 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사건은 공안기관에서의 구속수사 및 검찰원의 기초심사를 거쳐 형사재판이 열리게 되며 이러한 경우 구속기간은 별도로 계산되게 됩니다.

검찰원의 공안에 대한 보충수사 요구 제도

Q 중국 공안국은 한 절도안건에 대해 수사를 완료한 후 검찰원에 안건을 넘겼습니다. 만약 검찰원에서 공안국에서 보내온 형사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 안건 자체를 다시 공안국에 돌려보내 재 수사(보충 수사)를 진행하게 할 수 있나요? 보충수사는 최고 몇번 할 수 있나요?

A 검찰원은 공안국에서 보내온 형사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 안건 자체를 다시 공안국에 돌려보내 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 수사는 최고 2번까지만 가능합니다.

중국〈형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제175조에 의하면, ‘인민검찰원에 서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충수사가 필요할 경우, 공안국에서 안건을 돌려보내 다시 보충수사를 요구하거나 자체적으로 수사를 할 수도 있다.

보충수사를 요구한 안건은 1개월 내에 보충수사를 완료해야 되며 보충수사는 최고 2번까지 할 수 있다. 보충수사가 완료되어 다시 검찰원에 이송된 안건은 새로 다시 심사기한을 계산한다.

또한 공안국에서 보충수사 2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거가 부족하여 공소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원은 불 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검찰원은 최고 2번까지 공안국에서 보충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보충수사 2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거가 부족하여 공소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회피 제도

Q 한국인A는 폭행죄로 검찰원에 의해 공소 제기되어 법원의 개정을 기다리던 중 그의 사건을 맡은 담당 판사가 피해자의 친삼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불공정한 판결을 받을 것이 염려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회피관 수사인원, 검찰인원, 재판인원이 사건 또는 사건당사자와 이해관계 또는 기타 일부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형사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동 사건의 형사처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중국 〈형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제29조에 따르면 ‘재판인원, 검찰인원, 수사인원이 ① 당해 사건의 당사자거나 또는 당사자의 근친족인 경우, ② 본인 또는 그의 근친족이 당해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③ 당해 사건의 증인, 감정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맡은 적이 있는 경우, ④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고,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그들의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 중의 A는 법원에 담당 판사의 회피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형사소송 중 앞에서 언급한 공안, 검찰, 법원의 담당인원 외 서기, 통역인, 감정인에 대하여서도 회피 제도가 적용됩니다.

증인보호 제도

Q 한국인A는 모 형사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서 서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A에게 전화하여 법정에서 증언하면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 협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A 중국 〈형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제63조는 ‘법원, 검찰원 및 공안기관은 증인 및 그 근친족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증인 및 그 근친족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보복공격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형사처벌을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치안관리처벌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307조, 제308조에서도 폭력, 위협, 뇌물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증인이 증언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타인을 지시하여 위증을 서도록 할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정황이 엄중할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인에 대하여 보복 공격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정황이 엄중할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사례와 같이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나서게 되었는데 협박을 받게 되었을 경우 즉시 공안 또는 법원에 상황을 설명하면서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형법〉 또는 〈치안관리처벌법(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에 따라 가해자를 형사 처벌 또는 행정 처벌하여 줄 것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질서 문란 시의 처벌

Q 한국인A는 자신의 친구에게 상해를 가한 사람의 재판을 방청하던 중 재판 진행에 불만을 품고 판사와 검사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결국 강제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그는 급기야 구금되었습니다.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A 중국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의 사법해석에서는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방청인이 법정질서를 교란하고, 판사가 경고 및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법정에서 쫓아낼 수 있고, 정황이 엄중할 경우 1,000 위안 이하의 벌금과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을 조직하여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사법관계자 또는 기타 소송참여인에 대하여 모욕, 비방, 위협, 구타하여 법정의 질서를 엄중하게 파괴하는 경우에 형사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례와 같이 다만 검사와 판사를 욕하는 경우 15일 이하의 구류, 1,000 위안 이하의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소기간이 지난 후의 상소 가능성

Q A는 폭행죄로 구역6개월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지만 차후 생각하여 보니 너무 중한 벌이라 생각되어 다시 상소하려고 하였으나, 상소기한이 하루 지났는데 이러한 경우 상소가 가능한지요?

A 불가능합니다.

2심 종심제를 시행하고 있는 중국에서 1심 판결은 법정 상소, 항소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며 검찰원과 법에서 규정한 소송당사자 들에게 이에 대항 상소, 항소권이 부여됩니다.

중국 <형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제230조에 의하면,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판결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10일이내에 상소, 항소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소, 항소기한을 초과하게 되면 재판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판결은 기판력을 가지게 되며 집행에 넘겨지게 됩니다.

다만, 일부 확실히 억울함이 있거나, 1심에서 발견되지 못한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1심의 판결 중의 사실확인, 증거인정, 법률적용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 재심 또는 탄원서 제출을 통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제제도를 선택하신다 하더라도 원 판결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2심 종심제

Q 중국에서는 2번 재판을 받으면 끝난다고 하던데, 형사재판도 2번 재판 받으면 다시 재판 받을 수 없나요?

A 한국은 3심 종심제를 실행하고 있으나, 중국은 2심 종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심 종심제란, 한 건의 사건이 두번 법원의 재판을 받으면 종결되는 제도를 뜻합니다. 2심 법원의 재판결과는 중국판결로서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다시 상소할 수 없으며 검찰원도 상소할 수 없습니다. 즉 2심 판결은 기판력을 가지게 되며 집행에 넘겨집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와는 별개로 재판감독절차 (중국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제252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의 재심 제도와 유사합니다.

즉, 법에서 규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1심, 2심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재검토를 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재심에서 원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 원 판결이 취소되고 다시 취소된 판결의 진행절차에 따라 다시 재판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재판감독절차는 법률이 아직 완벽하지 못하고 실무상 사법관계자들의 자질에 차이가 있어 발생하게 되는 불공정판결에 대한 보완절차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심까지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심을 신청하여 다시 재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형사 안전의 법원 심판기한

Q 중국은 형사안전에 대해 2심 중심제를 시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1심 심판기한과 2심 심판 기한은 각각 어떠한가요?

A 일반적으로 법원의 1심 심판 기한은 최장 3개월이고 2심 심판 기한은 최장 2개월입니다. 단, 안전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시, 심판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제208조는 '인민법원의 공소사건 심리는 안전 수리 후 2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늦어도 3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사형선고를 할 수 있는 안전 또는 형사부대 민사소송 안전에 대해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 더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보충수사를 한 안전은 보충수사가 끝나 인민법원으로 이송한 후 인민법원에서 심리 기한을 다시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43조는 '2심 인민법원은 상소, 항소 안전을 수리하고 2개월 이내에 심리를 끝내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 사형선고를 할 수 있는 안전 또는 형사부대 민사소송 안전에 대해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고급인민법원의 비준 또는 결정을 거쳐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특수상황으로 더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안전이나 민사소송 부대안전인 경우, 안전 자체의 복잡성, 정확성을 고려하여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받고 심판기한을 2~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의 특수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더 필요할 경우,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재판 방청

Q 한국인A는 중국에서 법학 공부를 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입니다. 중국의 재판에 대하여 좀 더 깊게 알아보기 위하여 법원에 가서 일부 관심 있는 분야의 재판을 방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실무상 어렵습니다.

중국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재판은 모두 공개원칙을 준수하므로 법적으로 공개재판이 불가한 몇가지 경우 외에는 모두 중국 국민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등록하면 방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위와 같이 법원에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재판을 방청할 수 없고, 소재지의 지방정부 외사관리부서에 신청하여 외사관리부서에서 법원과 공동으로 검토한 후 방청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무상 외국인이 중국 법원의 재판을 방청하는 신청절차가 비교적 복잡하며 외국과 관계없는 내국사건일 경우 방청신청이 거절당하기 쉽습니다.

형사 안전 중 불공개 심판 범위

Q 저는 중국 북경에서 법대를 다니고 있는 한국 유학생입니다. 저는 중국 법원에서 형사안건 어떻게 심판하는 지 궁금하여 법원에 방청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본 안건은 불공개심판에 해당되어 방청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안건이 불공개 심판범위에 해당 되나요?

A 중국법원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기밀, 개인 사생활, 상업비밀과 연관된 형사 안건은 공개심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형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제188조에 의하면, '인민법원에서 제1심 형사안건을 심판할 시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다만, 국가의 기밀 혹은 개인 사생활과 연관된 안건은 불공개로 심판한다.'

그리고 상업비밀과 연관된 안건은 당사자가 불공개 심판으로 진행할 것은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사인의 신청에 따라 불공개심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도 다른 나라와 같이 모든 안건을 공개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의 기밀, 개인 사생활, 상업비밀에 연관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만 공개심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원의 불기소 처분의 유형

Q 한국인A는 중국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가해자는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얼마 후 검찰원에 사건이 이송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여 곧 형사처리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돌연 사건이 취소되고 검찰에서 가해자를 풀어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지요?

A 예, 있습니다.

검찰원에 이송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형사재판에 들어가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원에서 세 개의 유형으로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1. 법에 의한 불기소 처분 : 〈형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제16 조에서 규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사안이 현저히 경미하고, 위해가 크지 아니하여 범죄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 ② 범죄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 ③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벌이 면제된 경우
 - ④ 형법상 고소해야만 처리하는 범죄에 있어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
 - ⑤ 범죄혐의자나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 ⑥ 기타 법률에서 형사책임의 추궁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경우
2. 상황에 따른 불기소 처분 : 이는 범죄가 경미하여 형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필요가 없거나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3. 증거부족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 : 이는 공안에서 사건을 수사한 후 검찰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안기관에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검

찰원에서 보충수사를 진행하였지만 여전히 증거가 부족하여 기소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물론 형사 기소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해자 또는 책임자는 기타 법률에 따라 행정, 민사책임을 지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형사 사건에 부합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증거가 있을 경우, 직접 법원에 형사 자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원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구제절차

Q 한국 유학생 A는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가던 도중, 지하철 안에 사람이 너무 많은 탓에 조심하지 않아 한 남성B의 신발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B는 다자고짜로 A의 머리를 향해 주먹과 발로 여러번 구타를 했으며, 다행히 주위 사람들의 제지로 구타행위가 중지되었고, B는 경찰에 잡혀 갔습니다. 그 후 본 사건은 공안국의 수사 단계를 마치고, 공소단계에서 검찰원은B의 상해행위가 현저히 경미함으로서 범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 A는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할 수 있나요?

A 피해자인 한국 유학생 A는 검찰원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할 경우, 상급 검찰원에 신고하거나 또는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 <형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제180조에 의하면, '인민 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린 후 반드시 피해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피해자는 해당 검찰원의 불기소 결정서에 불복할 경우, 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상급 검찰원에 신고를 하여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상급 검찰원에서도 원 결정을 유지할 경우, 피해자는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피해자는 상기 상급 검찰원에 대한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유학생 A는 검찰원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할 경우, 상급 검찰원에 신고를 하거나 또는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사형재심제도

Q 중국에는 사형 재심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제도인지요?

A 사형 재심제도란 중국의 법원에서 사형에 처하는 사건에 대하여 사형복의 권리가 있는 상급법원에 심사확인을 신청하는 제도로서 사형에 대한 특별절차에 속합니다.

통상의 형사사건은 순서에 따라 입건, 수사, 기소, 1심 재판, 2심 재판, 집행절차 등을 거치는데, 사형에 처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위 절차 이외에 별도로 최종 결정(核准)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① 중국 형법의 규정에 따라 사형에 대하여 최고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을 경우 외에는 모두 최고법원에 최종 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형집행유예에 처할 경우 해당 고급법원에서 판결하거나 최종 결정할 수 있습니다.
- ② 중급법원에서 사형판결을 내린 제1심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을 경우 고급법원에서 확인한 후 최고법원에 최종 결정을 신청하여 비준받아야 합니다. 고급법원에서 사형에 처하는 것을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직접 재판하거나 다시 재판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③ 고급법원에서 사형에 처한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는 제1심 사건과 사형에 처한 제2심 판결은 모두 최고법원에 최종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④ 중급법원에서 사형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은 고급법원에서 최종결정을 합니다.
- ⑤ 최고법원에서 사형을 최종결정하고, 고급법원에서 사형집행유예 사건에 대하여 최종결정을 진행하며, 심판원 3인으로 구성된 합의정에서 사건을 심의하여야 합니다.

재판 중의 선임변호사의 교체 여부

Q 한국인A는 중국 형법에 저촉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사건에 대하여 토론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능력이 자신의 기대한 바와는 차이가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곧 열리게 되는데 지금 변호사를 교체할 수 있는지요?

A 예, 교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선임은 어디까지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선택 문제이므로 법적으로 변호사의 선임 및 교체에 대하여 횡수 및 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변호사를 교체하려고 할 경우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이로 인하여 새로운 변호사가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필요가 있다면 법원에 재판을 연기하여 진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재판 연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법원의 재량사항입니다.

다만 사형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등 반드시 형사변호사가 있어야 하는 특수사건에서 법원에서 변호사를 지정하여 주었을 경우, 이러한 변호사에 대하여서는 1회에 한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형사구금의 배상

Q 한국인A는 억울하게 경찰에 잡혀 가서3일이나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학교에 소문이 퍼져 크게 마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거나 기타 보상을 해 줄 방법이 없을까요?

A 중국 〈국가배상법(中华人民共和国国家赔偿法)〉 제3조에서는 ‘행정기관 또는 소속 직원이 행정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불법구류 또는 불법으로 국민의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상 강제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피해자는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불법이란 주로 구류 절차상의 불법을 뜻하는 데 구류행위가 법에 부합되는지 여부, 구류시 구류증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구류 후 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보장하여 주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만약 절차 및 구류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불법구류였다면 피해자는 당해 공간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그와 반대로 절차 및 구류요건에 부합되는 합법적인 구류였다면 당사자는 배상 또는 사과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 법원의 관할권 확정

Q 한국인 A는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급적 규모가 큰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보다 공정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형사 사건의 관할 법원은 당사자가 선택할 수 없으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1심 재판을 담당할 법원의 등급을 정하는 급별 관할, 동급의 법원 사이에서 범죄지 등 장소를 기준으로 재판을 담당할 법원의 정하는 지역 관할에 의하여 재판 받을 법원이 정해집니다.

먼저, 급별 관할은 〈형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제20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정해지며, 보통의 형사 사건은 기층법원이 담당하고, 사건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상급법원이 담당하게 되며, 최고법원이 1심 재판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관할은 〈형사소송법〉 제25조에 따라 정해지며, 원칙적으로 범죄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재판을 담당하며, 피고인의 거주지 법원이 관할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경우 피고인 거주지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전에는 외국인이 피해자인 중국인 피고인의 형사 사건과 외국인이 피고인인 형사사건을 중급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규정이 1996년, 2012년 개정에 의하여 각각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도 중국인과 동일하게 보통의 사건에 대해서는 기층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감형 및 감형 조건

Q 한국인A는 중국에서 유기징역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러한 형이 절대적이지 않고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에 가능한지요?

A 중국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78조 내지 제80조는 감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관제, 구역,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집행기간 중에 열심히 감독규정을 준수하고, 교육개조를 받아들이며 확실히 개선된 정황이 있거나 또는 공적이 있을 때에는 감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공적에 해당하는 (1) 타인의 중대한 범죄활동을 제지한 경우, (2) 감옥 내외의 중대한 범죄활동을 신고하고, 조사 결과 그것이 사실인 경우, (3) 발명, 창조 또는 중대한 기술혁신이 있는 경우, (4) 일상의 생산, 생활에서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구해준 경우, (5) 자연재해를 제압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막는데 있어 특별한 공을 세운 경우, (6) 기타 국가나 사회에 중대한 공헌을 한 경우 반드시 감형을 하여야 합니다.

통상 일반적인 모범 수형생활을 하였을 경우에는 최초 선고받은 유기징역의 20~30% 정도가 감형됩니다.

사형 집행유예제도

Q 한국인A는 중국에서 마약 밀수를 하던 중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법원에서 사형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중국 형법상 사형 집행유예 제도는 어떠한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A 사형 집행유예 제도는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특수한 사형제도입니다. 중국 법률은 사형에 대하여 즉시 집행, 사형 집행유예 2년 등 2가지 집행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형 집행유예는 그 중의 후자입니다.

따라서 사형 집행유예제도는 독립적인 형의 종류가 아니며 사형 집행의 한 가지 방식입니다. 사형 집행유예 제도는 2년 후에 다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인 2년 동안 고의 범죄행위가 없으면 무기징역으로 자동 감형되고, 사형 집행유예 기간에 중대한 공헌이나 성과가 있을 경우 2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됩니다.

즉 사형 집행유예 기간에 고의 범죄행위가 없다면 2년 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사형 집행유예 기간에 고의 범죄행위가 있다면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최고법원의 최종결정(核准)을 거쳐 사형을 집행합니다.

사형은 현대 법제사회에서 가장 중한 형으로 취급되고 있는 만큼 각국에서는 사형의 선고와 집행을 보다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법률적으로 사형의 즉시 집행은 최고법원의 최종결정을, 사형집행 유예는 고급법원의 최종결정을 거친 후 형을 선고 및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의 절차

Q 한국인 A는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중국인들로부터 심하게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국인들이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고 싶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요?

A 공안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형사 사건은 피해자가 공안기관에 신고하기만 하면 되고, 기소, 재판, 처벌의 진행은 국가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관여하는 국가기관으로는 수사를 담당하는 공안기관, 수사 감독 및 기소 심사를 담당하는 검찰원,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등이 있습니다.

일부 경미한 형사 사건 또는 친고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여 직접 법원에 형사 자소(自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 절차는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 (1) 공안기관은 사건접수, 구속, 입건조사, 증거수집 등을 책임지며,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원에 관련 자료들을 이송합니다.
- (2) 검찰원은 사건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사건의 범죄혐의자, 증거, 문서자료, 진행절차 등에 문제가 없다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합니다.
- (3) 법원에서는 검찰원에서 공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피고인의 죄명, 사건정황, 증거, 피고인 및 소송대리인의 변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유죄, 무죄 판결 및 형을 선고합니다.
- (4) 죄명이 성립되어 형을 선고 받을 경우 구체적인 형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형 집행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집행합니다.

통상의 형사 사건에서는 피해자는 형사 사건에 대하여 제때에 공안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들을 제출한 후, 공안기관이 협조를 요구할 경우 협조하시면 됩니다.

범죄로 인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 형사 절차에서 배상을 청구하려면 형사 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영장 없이 압수수색 가능여부

Q 한국인 A는 북경의 아파트를 임대하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야간 작업이 많습니다. 평소 아래 층 주민이 시끄럽다고 자주 항의를 하여 왔는데, 어느날 경찰이 들어와 현장조사를 하며 사무실 컴퓨터에 있는 내용을 수색(搜查)하려고 하였습니다. 중국의 경찰은 법원의 영장 없이도 재산을 수색할 수 있나요?

A 중국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이 발부하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이 필요한 경우, 현급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허가가 있고 수색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체포 또는 구속 집행시에는 수색증 없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찰은 A를 체포 또는 구속의 집행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수색증 없이는 재산을 수색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제136조 내지 제138조의 규정에 따르면, 범죄 증거의 수집, 범죄인의 신병 확보를 위하여 수사인원은 피의자나 피의자 또는 범죄 증거를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신체, 물품, 거소 또는 기타 관련 있는 장소에 대하여 수색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단체와 개인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색에는 반드시 수색증(搜查证)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만 체포 또는 구속의 집행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 수색증 없이 수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색증을 제시한 후 진행되는 수색 과정에서 범죄 증거로 될 수 있는 물건, 문서 등에 대하여 수색할 수 있으며, 집행자는 명세서를 작성한 후 집행자, 집행상대방, 목격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수사과정에서 발견한 범죄의 유죄 또는 무죄에 관련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 서류 등에 대하여 수색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수색증을 제시하고 수색을 진행하는 것이 그 전제조건이며, 또 해당 명세표를 작성하여 그 담당자가 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범죄자가 중국에서 한국 변호사 선임 가능 여부

Q 한국인이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한국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자신을 변호하게 할 수 있나요? 만약 이미 구금 중이라면 어떻게 변호사를 선임하나요?

A 한국 변호사를 위임할 수 없으며, 중국 변호사를 위임해야 됩니다.

〈형사소송법의적용에관최고인민법원의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解释)〉 제402조는 ‘외국인인 피고인이 변호사에게 변호를 위탁하는 경우 중국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또 법에 따른 법률직업증서를 취득한 변호사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외국인인 피고인이 구금 중인 경우, 그 후견인, 가까운 친척, 또는 그 국적국의 재중 대사관, 영사관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변호인에게 변호를 위탁할 수 있으며, 후견인, 가까운 친척은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한 유효한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인 피고인은 그 후견인, 가까운 친척에게 직접 변호인, 소송대리인 임무를 담당하도록 위탁할 수 있습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인이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한국 변호사에게 변호를 위탁할 수 없으며, 반드시 중국의 변호사 또는 자신의 후견인 가까운 친척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인인 피고인이 이미 구금 중이라면 피고인의 후견인, 가까운 친척 또는 주중한국대사관, 영사관에서 대신하여 변호인에게 변호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국적불명 시의 처리

Q 어떤 외국인이 중국에서 절도를 하다가 붙잡힌 후 수사기관의 신문을 거쳐 자신의 죄를 자백하였지만, 수사기관에 자신의 국적을 진술하는 것은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국 법원은 어떻게 재판을 하나요?

A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의적용에관한최고인민법원의 해석(最高人民法院 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的解释)〉 제394조는 ‘외국인의 국적은 입국 시의 유효한 신분증에 의하여 확인한다. 국적이 불명확한 경우, 공안기관 또는 관련 국가의 재중 대사관, 영사관이 발급한 증명에 따라 확인한다.

국적을 규명할 수 없는 경우 무국적인으로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판결 문서 중에 ‘국적불명’이라고 기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이 피의자가 자신의 국적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입국시의 유효한 신분증으로 국적을 확인합니다. ,

만약 국적을 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국적인으로 대하여 판결문서 중에 국적 불명이라고 기재하므로, 국적불명은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죄와 형을 확정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Section 12

일상 생활

이럴땐 이렇게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벌 및 구제

Q 중국에서 최근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었나요? 구제절차는 무엇인지요? 또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출입국관리법>의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예, 맞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출입국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은 특히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통상 중국 공안은 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 외국인을 적발하면 유치장에 구류한 채로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가 끝나면 벌금을 부과하고 강제추방을 합니다.

이 경우 본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최대 2만위안, 구류기간 최대 60일로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한 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을 한 본인뿐만 아니라 숨겨주는 등 도와준 사람에게는 1만 위안 이하의 벌금과 15일 이하의 구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불법 취업의 경우에는 고용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과 15일 이하의 구류처분 및 이로 인해 취득한 소득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초청장 등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규정을 어겨 비자를 발급 받는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 시 지문을 채취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사진과 지문을 대조하여 쉽게 불법입국자를 적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이 불법체류 관련 처벌 결과에 불복할 경우, 처벌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상급 정부부문 또는 동급 인민정부에 이의(复议)을 신청하거나 직접 6개월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复议)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15일 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 제45,제46조, 출입국 관리법 제63조>

법인 설립에 따른 Z비자 취득

Q F 상용비자를 소지 중이고, 중국에 법인체를 설립하여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Z비자 취득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Z비자는 2년 이상의 근무 경력 혹은 중국 내 사회보험료 세금납부 근거를 제출하거나 중국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외국인 취업허가제를 통해 종합 점수 평가를 받아 발급 받게 됩니다.

참고로,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창업지원기구를 통하여 중국에 법인체를 설립하면 장기거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용비자로 중국에 입국한 경우 법인체를 설립했다면 공안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여 최장 5년의 거류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7년 7월, 중국 국무원은 창업을 준비하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거류 정책(国务院关于强化实施创新驱动发展战略进一步推进大众创业万众创新深入发展的意见国发[2017]37号)을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은, 외국인 유학생이 제출한 '대학졸업증'과 '창업계획서'를 근거로 사인사무(私人事務) 거류허가를 인정하며, 외국인 유학생이 창업 후 기업등록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허가와 거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중국 공안부는 자유무역시험구 등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던 창업비자 관련 정책을 2017년 8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중국의 중점대학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가 졸업 후 중국에서 혁신창업 활동을 할 경우 2~5년의 거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베이징, 상하이, 톈진 등 일부 지방정부에서 외국인 유학생 창업자 대상 사인사무 거류허가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베이징 중관촌의 경우 유학생 졸업자가 사인사무거류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창업기관 입주, 법인설립 등의 증빙자

료를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Z비자 취득 사례)

베이징대 경영학과 외국인 졸업생 △△△은 베이징시 하이테크 창업원 입주(3년 계약, 임차료 무료) 및 법인설립 등의 과정을 거쳐 중관촌 관리위원회로부터 창업계획서를 승인 받았고, 이후 베이징시 공안국에서 3년짜리 사인사무 거류증을 발급 받음.

중국 비자의 유효기간과 체류기간

Q A는 유효기간이 1년인 비자를 받고 중국에 입국했으나 입국 후 6개월이 지나 불법 체류자로 적발되었습니다. B는 결혼을 하여 장기비자를 받았으나 역시 불법체류자로 적발되었습니다. A와 B는 각각 어떤 실수를 했으며,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 중국의 비자는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비자의 유효기간을 체류기간으로 착각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지나면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비자의 유효기간이 1년이고 복수입국이 가능할지라도 체류기간이 30일 이라면 체류 기간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으며, 더 체류하고자 할 때는 기간연장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장기비자의 경우는 거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유학, 취업, 결혼과 같이 장기 간 거류가 가능한 장기비자의 경우, 입국 후 30일 내에 거류증을 신청하여 발급 받지 않으면 불법체류에 해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 대학교는 방학기간 대부분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거류증 발급시 요구되는 학교 명의 확인서를 30일 이내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에 일단 귀국하여 비자를 다시 받아 중국에 입국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A는 유효기간을 체류기간으로 착각한 실수를 한 경우로 체류기간을 연장하여야 하고, B는 장기비자를 받은 경우로 거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거류허가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

Q 2019년 3월 한국인 A는 IT회사에서 화장품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이직하면 비자를 새로 신청해야 되는데, A는 여권상에 스티커로 붙여져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거류허가”상의 기간 만료 일자가 2019년 10월 23일까지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10월에 변경할 생각으로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외국인이 거류허가를 적시에 변경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A A는 이직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주지 공안국에서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안당국에 적발되었을 경우, 경고 또는 2,000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유 :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출입국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제33조는 ‘외국인 거류증에 기재된 내용(성명, 국적, 직업 또는 신분, 직장, 주소, 여권주소, 동반자녀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소지자는 10일 이내에 거주지 공안국에 가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76조 제1항은 외국인 거류증 기재 내용이 변경되었으나 소지자가 규정대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경고를 주고 동시에 2,000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62조에 의하면, 본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강제추방도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변경등록 사항을 제때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에서 외국인이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Q 한국인이 자신의 명의로 북경(北京)에서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나요? 구입할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나요?

A 한국인도 중국 북경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고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자동차 대출도 가능합니다.

북경시의 경우, 차량이 급속히 증가하여 도로가 자주 막히고 환경오염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을 완화하기 위하여 북경시 교통위원회는 <북경시 승용차 수량조절에 관한 임시시행 규정(北京市小客车数量调控暂行规定)>을 제정하였고, 동 규정에 따라 승용차의 연도별 증가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실무적으로는 한국인이 북경시에서 승용차를 구입하려면,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언제 구입이 가능할지는 추첨운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 규정 시행세칙 제9조에 의하면, 외국인이 북경시에서 승용차를 구입하려면, 주소지가 북경시에 있고, 자신의 명의로 북경시에 등록된 승용차가 없어야 하며, 유효한 운전면허증과 유효한 신분증을 보유하면서, 북경에서 1년 이상 거주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위 시행세칙 제14조, 제15조에 의하면, 북경시 승용차 구입 자격 관리기구(市小客车指标调控管理机构)는 위 조건에 부합하는 개인들의 신청(<http://www.bjhjyd.gov.cn/>)을 받아 정기적으로 공증기관의 감독하에 추첨을 통하여 일정한 수의 당첨자에게 승용차 구입 자격을 부여합니다. 실제 당첨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당첨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1~6회 추첨에 참가하였으나 당첨되지 못한 경우에는 7회부터 당

첨률을 2배로, 7~12회 추첨에 참가하였으나 당첨되지 못하였던 경우에는 13회부터 당첨률을 3배로 높여주며, 참가 횟수가 늘어감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당첨률을 높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대출관리방법(汽车贷款管理办法)〉 제9조는 차용인이 개인 자동차 대출을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1) 중국 국민이거나 중국 경내에서 연속하여 1년이상 거주한 홍콩인, 마카오인, 대만인 및 외국인, (2)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고정적이고 상세한 주소가 있으며, 완전한 민사상 행위능력을 보유, (3) 안정되고 합법적인 수입 또는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에 충분한 합법적인 개인 재산을 소유, (4) 양호한 개인신용 (5) 이 방법에서 규정한 최초 분납금의 지불이 충분히 가능 (6) 대출자가 요구하는 기타 조건 등 입니다.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대출받으려는 은행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중국 운전면허 취득

Q 북경에서 앞으로 3년간 거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운전면허를 따고 직접 운전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이미 가지고 있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달라집니다.

1. 한국의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한국과 동일하게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하여 필기-실기의 중국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2. 한국의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중국 운전면허 취득절차 중 필기시험만 거치면 중국의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면허증 취득과 사용규정 제34조) 필기시험은 한국어로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응시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 원본 및 복사본, 거류허가증 복사본,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및 번역본(한국 운전면허증은 앞, 뒷면 모두 복사 해야함), 거주지등록 증명(단기 비자인 경우, 파출소에서 발급받아야 함), 1寸, 흰색 배경 사진 5장, 신체검사증명서 등이며, 반드시 중국어로 번역되어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보험 보상

Q A는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중국에서 자동차를 구입하고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어느 날 고객과의 식사 자리에서 부득이하게 음주를 한 후 차를 운전하여 귀가를 하는 도중 교통사고로 상대 운전자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A는 파손된 차량의 보상과 경상자에 대한 보험처리를 위해 보험회사에 연락했으나 음주 운전을 이유로 보상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A가 보험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A 위 사례의 경우 A가 음주하여 만취된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처리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유 : 보험회사는 응급처치가 필요할 시 응급처치에 관한 비용을 대납 해줄 수는 있으나 결국 그 비용도 보험회사의 구상청구에 의하여 A가 보험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책임보험조례 (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条例)〉 제21 조는, '보험차량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자차 탑승인원과 피보험자 이외의 피해자에게 인신 사망, 재산손해를 가한 경우 보험회사가 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 책임보험 한도액 내에서 배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22조는 1) 운전자가 무면허이거나 또는 만취 운전인 경우, 2) 보험차량이 탈취 당했을 경우, 3) 보험가입자가 고의로 도로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첫째, 보험회사는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책임보험 한도액 내에서 응급처치 비용을 대납할 수 있고 차후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둘째, 위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 보험사는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A가 만취된 상황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위 조항 등 근거규정에 따라 보험처리가 어려울 것입니다.

교통사고의 책임범위

Q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를 주차하다가 중국인 주민 이준마를 가볍게 치었습니다. 바로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한 결과 가볍게 멍이 든 것 외에는 기타 상해는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서 터무니 없는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교통사고 책임범위는 어떻게 되며 그 중국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A 비록 사고 당시에 병원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고 하나 만약 이후의 재검사에서 피해자의 손해 또는 상해가 위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역시 배상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또한, 단순히 터무니 없는 치료비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판단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유 : 교통사고에 있어서 사고당사자간 책임비율은 통상 사건 처리를 책임진 교통관리부서에서 결정하게 되며,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해당 비례에 따라 배상하게 됩니다. 인신 상해 사건에서 손해배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발생한 손해가 인신 상해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동 사례의 경우 비록 사고 당시에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고 하나 만약 이후의 재검사에서 피해자의 손해 또는 상해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역시 배상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못하면 사고 당시의 진단결과에 따라 치료비 지불을 거절할 수 있을 것이며 재검사 비용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고의, 객관적인 기망행위, 기망행위를 통하여 편취하려는 재산적 이익 등의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동 사례와 같이 단순히 터무니 없는 치료비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 학교의 학력 인정

Q 중국의 학교는 모두 학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학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 한국의 교육 당국은 외국 소재 학교에 대해 학력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국가의 교육당국이 발급하는 학교인정확인서는 외국 소재의 학교가 해당 국가에서 인정 받은 학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학교의 학력 인정 여부는 그 학교가 중국 교육당국의 인허가를 취득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중국 교육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취득하고 학교인정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학교는 한국에서도 그 학력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 교육당국은 부처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외국(중국 포함) 소재 초·중·고 해당국가 학력인정학교 목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한국 교육당국이 그 목록에 포함된 학교에 대해 학력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국가에서 학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할 만하다는 의미로 공개된 것입니다. 동 리스트는 귀국 후 한국학교 재취학에 필요한 학적서류(재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영사공증을 면제해주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목록은 한국 교육부가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부 현지공관의 협조를 받아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학력 인정 학교 목록수정을 원하시면 중국 내 각 공관, 혹은 한국교육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목록에 없는 학교일 경우, 당사자가 해당국의 정규 교육기관임을 소명(중국 관할 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학교인정확인서 등)하거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해야 합니다.

대학교의 학위증 발급 거부에 대한 구제

Q A는 지난해 중국으로 유학을 왔는데 대학1학년때 커닝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적발된 후 학교 측에서는 일단은 남아 관찰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후 재시험에서 통과했는데 대학 졸업 때 학교 측에서 예전의 커닝행위로 인해 학사 학위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측의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구제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A A는 학위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유 : 중국에서의 교육 단위는 학위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위수여 단위는 마땅히 일정한 학술 수준 또는 전업기술 수준에 도달한 인원에게 상응한 학위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학위조례(中华人民共和国学位条例)〉 제4조는 ‘성적이 우수하고 이하의 학술 수준에 도달한 대학교 본과 졸업생에게 학위증서를 발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1) 본 학과의 과학기초이론, 전문지식과 기본기능을 기본적으로 습득
- (2) 과학연구작업 또는 전문기술작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본 능력 구비

또한 〈일반대학교 학생관리규정(普通高等学校学生管理规定)〉 제18조는 ‘학생이 학교의 검증 규율을 위반하거나 커닝했을 때 본 과목의 검증성적은 무효처리 하고 학교에서 정황에 따라 교육비평가 기술처분을 부여한다. 학교 관찰처분 이하인 경우 교육성과가 우수하면 졸업 전 본 학과의 재시험 기회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학교의 학위증 미 발급 결정은 위 조례와 규정에 근거하여 1차 적발시 취했던 학교 잔류, 관찰 결정, 재시험 참여 및 통과 조치를 스스로 되돌리는 것으로써 마땅히 무효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에게 재시험의 기회를 주었다는 것은 학교 측에서 다시 학위증서를 부여한다는 사실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A는 학위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애완동물의 반입 및 관리

Q 한국에서 키우던 강아지와 고양이를 중국에 데려오려고 하는데 유관기관에 등록하거나 신고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지요?

A 중국은 애완동물의 경우 개와 고양이에 한하여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 반입은 승객 1인당 1마리로 제한되므로 더 많은 애완동물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여객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애완동물의 반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광견병 예방주사 맞기: 입국 한달 전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은 후 '광견병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2) 종합검진 받기: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은 후 같은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고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함
- (3) 검역증명서 받기: 출국 당일 공항청사에 있는 동물검역소로 가서 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
- (4) 한국 공항에서 출국: 케이지를 포함한 애완동물의 무게에 따라 수하물 또는 기내 반입이 가능한 물품으로 분류되므로 그에 따라 비행기에 탑승시키면 됨 (각 항공사 규정에 따라 기준 무게는 다름)
- (5) 중국 도착 후 일정기간 검역소에서 계류: 계류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르나 반드시 일정기간 검역소에서 계류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음(북경의 경우 광견병 비발생국으로부터 반입된 경우 7일, 광견병 발생국으로부터 반입된 경우 30일)

외국인의 선교 활동

Q 한국의 목사인 A는 중국에 교회를 세우고 중국인들을 상대로 선교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A 중국 내 선교활동은 불가능합니다.

이유 : <중국 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实施细则)>에 의하면, 외국인은 중국 국경 내에서 종교활동을 진행할 때 반드시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중국 종교·사회단체 활동장소의 설립과 변경 및 중국 종교·사회단체 교직자 선발과 변경에 간섭하지 못하며, 중국 종교·사회단체의 기타 내부 사무를 간섭하거나 지배하지 못합니다.

외국인은 중국 내에서 그 어떠한 명의 또는 형식으로도 종교단체 조직, 종교 사무 기구, 종교 활동장소 또는 종교 사원을 설립할 수 없으며, 종교 대학과 양성소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동 세칙 제16조)

또한, 외국인은 중국 내에서 아래의 종교 활동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 ① 중국 공민을 종교 교직자로 임명하는 것,
- ② 중국 공민을 상대로 전도활동을 하는 것
- ③ 허가없이 종교 활동장소에서 강의나 설교하는 것
- ④ 허가없이 법적으로 등록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강의하거나 종교집회 활동을 진행하는 것
- ⑤ 임시 종교 활동 장소에서 중국 공민이 참가한 종교 활동을 진행하는 것. (단, 초청을 받아 종교 활동을 주최하는 중국 종교 교직자는 제외)
- ⑥ 종교 잡지, 종교 음반, 종교 전자출판물 등 종교 용품을 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

⑦ 종교 홍보물을 배부하는 것

⑧ 기타 형식의 전도 활동(동 세칙 제17조)

따라서 중국 내 외국인이 위 세부 규정을 위반하고 종교 활동을 진행할 경우 정부 종교 사무부서와 기타 관련된 부서에서 법에 의거하여 이를 제지 당할 수 있습니다.

중국 내 외국인이 위 규정을 위반하여 종교 활동을 진행한 경우, 공안기관에서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범죄가 구성되면 사법기관에서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습니다. (동 세칙 제19조)

위챗페이 이용 방법

Q 외국인인 제가 중국에서 현금 대신 위챗페이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위챗계정에 있던 돈이 사라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외국인이 위챗페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국 휴대폰 번호와 중국 은행카드가 필요합니다. 휴대폰은 통신회사에서 개설할 수 있고 은행카드는 중국의 은행에서 여권을 사용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두 가지가 모두 준비되어 있다면 아래 절차에 따라 핸드폰에 위챗페이 기능을 설치한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 1) 위챗개설 인터넷에서 위챗어플 다운로드 → 가입(注册) → 휴대폰번호, 소속지역 선택 후 전화번호 입력 →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 후 가입 완료
- 2) 위챗 등록 → [나(我)]- 위챗페이(Wechat Pay) → [지갑(钱包)] → [카드(银行卡)] → [카드 추가(添加银行卡)] 클릭
- 3) 중국 은행카드번호 입력 → ID유형을 여권(Passport)으로 선택한 후 여권 상의 영문이름, 여권번호, 중국 은행계좌 개설시 사용한 중국 휴대폰번호를 입력합니다. 여기에서 ID유형을 선택하지 않으면 영문 이름을 입력할 수 없기에 반드시 선택하시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 4) 6자리 비밀번호 설정한 후 휴대폰 문자로 인증코드를 받아 입력하면 위챗페이와 은행카드가 연동이 되며, 위챗페이에 은행카드 등록이 완성되어 위챗 지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챗 지갑의 잔액에 이상이 있거나 명확하지 않은 거래가 있다면 [나] → [지불] → [지갑] → [잔액] → 우측 상단의 거래내역을 클릭하여 확인해보고 여전한 자금의 행방을 알수 없다면 [나] → [지불] → [지갑] → 도움센터(帮助中心) → 도난 배상신고

(被盜申賠) → 자금 도난 배상신고(資金被盜申賠)를 신청하면 됩니다.

물론 배상금을 노리고 가짜로 신고하면 상응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알리페이(즈푸바오) 이용 방법

Q 중국에 유학온 한국 학생입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인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즈푸바오로 결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즈푸바오로 결제하기 위해서 우선 핸드폰으로 즈푸바오를 개설하고 중국 현지 은행에서 개설한 은행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① 즈푸바오 개설

즈푸바오(支付宝) 앱을 다운 받습니다 → 가입(注册) → 휴대전화번호, 소속 지역 선택 후 전화번호 입력 →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 후 가입 완료

③ 은행카드 등록

즈푸바오(支付宝)APP → 나(我的) 클릭 → 은행카드 클릭 후 은행카드 등록 (添加银行卡)

* 중국 현지 은행에서 발행한 예금카드와 신용카드만 등록 가능합니다.

만약 중국 현지 은행의 은행카드가 없다면 국제신용카드로 지불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3% 추가 됩니다.

④ 타오바오와 즈푸바오 연동

타오바오 APP → 나의 타오바오 (我的淘宝) 클릭 → 설정 → 계좌 및 안전(账户与安全) → 즈푸바오 연동 설치(支付宝绑定设置)

위 절차를 마친 후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구입하실 때 즈푸바오 지불을 선택하여 지불하시면 됩니다.

타오바오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Q 중국의 유명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타오바오에 입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해외국가, 홍콩, 마카오, 타이완 지역의 개인 사용자가 플랫폼에 매장개설을 하려는 경우 타오바오에 등록하여 판매자 센터(卖家中心) 클릭 → 무료 매장개설(免费开店) 클릭 후 개인 판매자 점포(个人类型店铺) 선택하여 타오바오 인증(淘宝开店认证) 절차를 완성하면 매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 개인(한국인)은 한국 또는 중국내에서 모두 타오바오 매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아쉽게도 해외국가, 홍콩, 마카오, 타이완 지역의 기업은 타오바오에 매장을 개설하실 수 없으며, 반드시 중국 대륙에 회사설립을 한 후 타오바오에 기업점포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타오바오 매장을 개설하자면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4단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즈푸바오 실명인증

- ① 즈푸바오 등록 (www.alipay.com) → 계정설치(账户设置) → 기본정보(基本信息) → 즉시인증(立即认证)
- ② 신분인증 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기입한 후 확인 및 제출.
- ③ 은행카드 인증 선택 (银行卡验证)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은행카드는 중국 현지 은행에서 개설한 것이어야 하고 외국인의 신분증명은 여권(기본정보 면+비자 면)입니다.

2. 타오바오 매장개설 인증 절차

타오바오 매장개설 인증시 즈푸바오 실명 인증 당시 제공한 여권을 들고 찍은 사진이 필요하며 안내(提示)에 따라 완료하면 됩니다.

3. 매장 정보 기입

인증절차를 완료한 후 매장을 개설하고 매장 정보를 기입합니다.

4. 매장개설 완료

인증 절차 완료 후 타오바오 플랫폼의 심사(48시간)를 기다려야 합니다. 심사 통과 후 판매센터에서 나의 점포(我的店鋪)를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의대를 졸업한 외국인의 중국 내 의료행위 가능 여부

Q 중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증을 취득한 한국사람이 중국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나요? 만약 의료행위를 하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A 2014년 3월부터 중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외국인의 중국 내 의료행위가 허용 되었습니다. 중국의를 졸업한 외국인이 중국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1)집업 의사고시를 통과하여 집업의사자격증(執業醫生資格證書)을 취득하고, 2)중국 정부로부터 행의면허(行醫證書)를 발급(행의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근무에 정인 중국병원에 취업해야 함)받아야 합니다. 상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경우에 한해서 중국 내 의료행위가 가능합니다.

중국의를 졸업한 한국인이 상기 조건을 갖추면 양의와 증의를 포함하여 모든 전공과목에 대해 중국 내 의료행위가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행위의 범위(단순상담, 진료, 수술 등)는 소속병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를 졸업한 한국인은 중국의 병원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개인병원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의 병원에 취업이 되고 그것을 근거로 중국 정부로부터 행의면허(行醫證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인병원 설립 허가 조건에 행의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집업의사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의 행의면허는 본인 혹은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은 시급 이상의 지방 위생건강부처 또는 중의약관리부처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가 진료 활동 중에 손해를 입었고 의료기관 및 그 의료인에게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중국민법전(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제1218조]

〈의료분쟁 예방 및 처리조례(医疗纠纷预防和处理条例)〉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과 환자 쌍방은 (1) 쌍방이 협상하여 해결, (2) 조정을 통해 해결, (3) 행정조정 신청, (4) 인민법원에 소송 제기 등의 경로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의료과실사고에 대한 구제

Q 저는 얼마 전에 농구를 하다가 다쳐서 A병원에 갔습니다. 그곳의 의사 B는 진찰을 하더니 별것 아니라며 주사를 놓고 약을 주었고, 저는 10여일을 계속해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별것 아니리던 B의 말과는 달리 통증은 더욱 심해져 이를 B에게 말했으나 B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저는 C종합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A병원에서 치료를 잘못하여 이미 치료시기가 지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B에게 다시 항의했더니 B는 책임을 계속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억울함을 보상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A 잘못된 치료에 대해 A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A병원 또는 B의사에게 과실이 있거나 B의사가 당시의 의료수준에 상응하는 진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유: <중국민법전(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제1218조는 진료과정에서 의료기관 및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법 제1221조는 의료진이 진료과정에서 당시의 의료수준에 상응하는 진료를 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의료기관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치료에 대해 A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A병원 또는 B의사에게 과실이 있거나 B의사가 당시의 의료수준에 상응하는 진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건과 달리 의료과실은 그 전문성,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과실의 입증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C병원에서의 진찰결과를 볼 때 B의 과실 유무를 다룰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법 제1225조 제1항은 의료기관이 환자와 관련된 의료기록을 보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환자가 의료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경우, 의료기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료기록을 근거로 법원에 배상책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 사례의 B의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관련 의료기록의 제출을 거부한다면, 해당 의료기관의 과실로 추정되어 의료기관이 반증을 제출하지 않는 이상 자동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동법 제1222조 제2호).

중국에서 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장례 처리 절차

Q 저는 저희 부모님과 함께 중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사망하셨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시신에 대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아버지의 시신을 한국으로 이송할 수 있나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중국 내 외국인 사망 후 처리 절차에 관한 민정부, 외교부, 공안부의 실시의견(民政部、外交部、公安部关于外国人在华死亡后处理程序有关问题的实施意见)>에 따르면, 중국에 있는 아버지의 시신을 중국에서 화장할 수도 있고 한국으로 이송할 수도 있습니다.

사체를 화장할 경우, 사망자의 가족 또는 소속국가의 재중국 영사관, 대사관이 서면으로 된 요구와 서명이 있어야 하고, 그 곳 장의사의 책임하에 화장한 후 본국으로 가지고 가거나 운송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화장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또는 공안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의 제출 외에 상속인 또는 재중국 한국 공관의 서면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유골과 뼈, 사체 등이 외국으로 운송될 때에는 중국 장례협회 국제사체운반 조직 서비스센터가 지정한 운송인의 책임하에 처리해야 합니다.

- (1) 유골, 골분 운반: 운송인은 반드시 병원이 발급한 '사망증명서' 또는 법원이 발급한 '사망감정서', 장례기관이 발급한 '화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중국 장례협회 국제사체운송 조직 서비스센터가 지정한 운송인은 (사체/관/해골/유골 입출국 입관증명), (사체/관/해골/유골 입출국 위생 관리 감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골, 뼈는 관 또는 상자 안에 봉해져야 하며, 밖은 나무로 된 상자로 가려져 있어야 합니다.

유골, 뼈를 스스로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에도, 역시 위에서 서술한 증명들이 구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시신 운반 : 시신, 관을 출국시키는 경우에도 이하의 증명이 반드시 구비되어야 합니다.

① 병원이나 공안, 사법기관이 발급한 '사망증명서' 또는 '사망감정서'. (외교 관련 공증처에서 발급한 '사망공증서'도 위 증명서 대체 가능)

장례관리부 또는 장의사(반드시 중국 장례협회가 지정한 국제 사체 운송인)이 발급한 세 개의 증명서, 사체/관/유골/골분 입출국 <방부증명>, <입관증명>, <위생관리감독신고서>

⑤ 항구 출입국 검증 검역기관이 발급한 <사체/관/유골/골분 입출국 허가증

⑥ 출입국 검사 검역국이 발급한 <출국허가증>에 근거한 세관의 통과 허가증

또 시신 운송시 포장은 다음을 필요로 합니다.

먼저 방부처리를 요하며, 두꺼운 비닐봉지에 밀봉되어 금속 상자 내에 놓여져야 합니다. 상자 내에는 톱밥 또는 목탄가루 등 습기를 흡수할 것들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연결 부분은 냄새나 액체가 유출될 경우를 대비해 아연을 이용하여 단단히 용접되어야 합니다. 금속상자는 목관으로 쌓여 있어야 하며 목관의 양측에는 운반의 편의를 위하여 손잡이가 달려 있어야 합니다.

불법 환치기 환전시 처벌

Q 중국에서 불법 환치기 환전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중국에서는 환치기 이용자(환전한 사람)와 환치기 경영업자를 모두 처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환치기 이용자(환전한 사람)일 경우

중국 은 환치기 이용자 에 대해서는 환치기 금액에 따라 처벌규정이 다르며, 금액 이 비교적 큰 경우(미화 1천달러 혹은 그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 외환관리국은 경고를 내리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동시에 불법금액의 3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상황이 엄중할 경우에는 불법금액의 30%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도 추궁받을 수 있습니다.

〈외환관리조례(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 제45조에 의하면, 사적인 외화매매, 변형된 형태의 외화매매, 투기성 외화매매 혹은 불법 소개에 따른 외화매매에 대해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 외환관리국은 경고를 내리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동시에 불법금액의 3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상황이 엄중할 경우, 불법금액의 30%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도 추궁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환관리조례〕 제7장의 일부조항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대한 통지 제3조에 의하면, 〈외환관리조례〉 제45조에서 “비교적 큰 금액”이란 사적인 외화매매, 변형된 형태의 외화매매, 투기성 외화매매일 경우, 미화 1천달러 혹은 그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리키고 불법 소개에 따른 외화매매일 경우, 미화 5만달러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을 가리킨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환치기 경영업자의 경우

중국 외환관리국은 환치기 경영업자에 대해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상황이 엄중할 경우, 형법 제225조(불법경영죄)에 따라 최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외환관리조례(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 제46조에 의하면,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외화를 결제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외환관리국은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동시에 불법소득이 50만 위안 이상일 경우, 불법소득의 1배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50만 위안 미만일 경우,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도 추궁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환치기 경영업자뿐만 아니라 환전하는 사람도 상기규정에 따라 불법소득 몰수, 과태료 부과, 상황이 엄중한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환전시 많은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부록

주중대한민국대사관 법률지원센터

교민들과 중국진출 기업을 위한 법률지원센터는 2011년 7월에 베이징 소재 주중 대한민국대사관에 설립되었다. 법률지원센터는 법률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민·기업에게 매년 200건 내외의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청 부장검사 출신 법무협력관이 센터장을 맡고, 덕현법률사무소 (대표 김덕현)에서 파견한 중국변호사가 상담업무를 보조한다.

법률상담은 이메일 또는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직접 면담하여 상담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국법령 리서치, 실무 관행 파악 등으로 인하여 상담을 접수한 후 답변까지는 통상 3~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 ① 이메일 상담 : chinalaw@mofa.go.kr
- ② 전화·팩스 상담 : 베이징 010-8531-0727(전화), 010-8531-0819(팩스)
- ③ 직접면담 : 주중대한민국대사관 1층 회의실

주중대한민국대사관 및 영사관 연락처

중국에는 주중국대사관 관할 아래 총 8개의 총영사관(홍콩, 上海, 靑島, 廣州, 沈陽, 成都, 西安, 武漢)과 1개의 출장소(大連)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대사관 대표전화 : (8610)8531-0700

- 기업지원센터 연락처 (8610)8531-0817

- 법률지원센터 연락처 (8610)8531-0727

문화원 대표전화 : (86-10)6501-6566

주중국대사관 영사부

中國 北京市朝陽區亮馬橋北小街 7号(100600)

전화: (86-10)8532-0404

팩스: (86-10)6532-3891

이메일: chinaconsul@mofa.go.kr

홈페이지: <http://chn.mofa.go.kr>

영사관관할 지역: 북경, 천진, 하북성, 산서성, 칭해성, 내몽고자치구, 신강위구르자치구, 저장자치구

(北京, 天津, 河北省, 山西省, 靑海省, 內蒙古自治區, 新疆自治區, 西藏自治區)

주홍콩 총영사관(1949.05.01 개설)

5-6/F, Far East Finance Centre, 16 Harcourt Road, Hong Kong

전화: (852)2529-4141

팩스: (852)2861-3699

이메일: hkg-info@mofa.go.kr

홈페이지: <http://hkg.mofa.go.kr>

영사관관할 지역: 홍콩, 마카오(香港, 澳門)

주상해 총영사관(1993.07.14 개설)

中國 上海市万山路60號(200336)

전화: (86-21)6295-5000

팩스: (86-21)6295-2629

이메일: shanghai@mofa.go.kr

홈페이지: <http://chn-shanghai.mofa.go.kr>

영사관관할 구역: 상해, 안휘성, 강소성, 절강성
(上海市, 安徽省, 江蘇省, 浙江省)

주청도 총영사관(1994.09.12 개설)

中國 山東省青島市城阳区春阳路88号(266109)

전화: (86-532) 8897-6001

팩스: (86-532) 8897-6005

이메일: qdconsul@mofa.go.kr

홈페이지: <http://chn-qingdao.mofa.go.kr>

영사관 관할 지역: 청도, 산둥성(青島市, 山東省)

주심양 총영사관(1999.07.08 개설)

中國 遼寧省沈陽市和平區南13緯路37號(110003)

전화: (86-24) 2385-3388

팩스: (86-24) 2385-5170

이메일: shenyang@mofa.go.kr

홈페이지: <http://chn-shenyang.mofa.go.kr>

영사관관할 지역: 요녕성, 흑룡강성, 길림성(遼寧省, 黑龍江省, 吉林省)

주광주 총영사관(2001.08.28 개설)

中国 广东省广州市海珠区赤岗领事馆区友邻三路18号(邮编510310)

전화: (86-20) 2919-2999

팩스: (86-20) 2919-2963

이메일: guangzhou@mofa.go.kr

홈페이지: <http://chn-guangzhou.mofa.go.kr>

영사관관할 지역: 광둥성, 광서장족자치구, 해남성, 복건성
(廣東省, 廣西壯族自治區, 海南省, 福建省)

주성도 총영사관(2005.02.26 개설)

中國 四川省成都市下南大街6號天府綠州大廈19F(610016)

전화: (86-28) 8616-5800

팩스: (86-28) 8616-5789

이메일: chengdu@mofa.go.kr

홈페이지: <http://chn-chengdu.mofat.go.kr>

영사관관할 지역: 중경직할시, 사천성, 운남성, 귀주성
(重慶直轄市, 四川省, 云南省, 貴州省)

주서안 총영사관(2007.09.20 개설)

中國 陝西省 西安市 高新技術產業開發區 科技路33號 國際商務中心19
層(710075)

전화: (86-29) 8835-1001

팩스: (86-29) 8835-1002

이메일: xian@mofa.go.kr

홈페이지: <http://chn-xian.mofa.go.kr>

영사관관할 지역 : 섬서성, 감숙성, Ningxia回族自治区
(陝西省, 甘肅省, 寧夏回族自治區)

주우한 총영사관(2010.10.25 개설)

中國 湖北省 武漢市 江漢區 新華路218號 浦發銀行大廈4樓(430022)

전화 : (86-27) 8556-1085

팩스 : (86-27) 8574-1085

이메일 : wuhan@mofa.go.kr

홈페이지 : <http://chn-wuhan.mofa.go.kr>

영사관관할 지역 : 호북성, 호남성, 하남성, 강서성
(湖北省, 湖南省, 河南省, 江西省)

주대련 출장소(2012.08.29 개설)

中國 辽宁省 大连市 中山区 人民路 2 3 号 虹源大厦 5 层 5th

전화 : (86-411) 8235-6288

팩스 : (86-411) 8235-6283

이메일 : dalian@mofa.go.kr

홈페이지 : <http://chn-dalian.mofa.go.kr>

영사관관할 지역 : 대련시(大连市)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접근한 중국법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상호 인적·물적 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하여 활동하는 기업과 교민의 수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5만여 개의 기업이 진출하여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 상주하는 교민의 수도 60여만 명에 이르며 유학생의 수는 6만여 명이나 됩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과 교민들은 각종 거래와 계약 등을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적잖은 법률상 분쟁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일어난 법률상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찾기란 여간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과 더불어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외형상 우리나라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경제를 제외한 나머지 정치와 법률분야에서는 아직도 사회주의적 특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 기업과 교민들이 중국에서의 법적분쟁 해결에 있어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기업과 교민들에게 효율적으로 법적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발생하기 쉬운 각종 분쟁사례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이 책자는 중국 활동 중 발생하기 쉬운 분쟁사례를 각 영역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분류한 후, 최신 법령에 맞추어 그 해결방법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책자에 수록된 총 300여개 사례는 주중대사관 법

률지원센터의 실제 상담사례와 김덕현 박사가 운영하는 법률회사에서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 등으로 실제 관여한 사례 중에서 엄선한 것들입니다. 4년간 축적된 법률지원센터의 상담 경험과 중국에서 최초로 한국인이 설립한 법률회사의 10여 년간 실전 경험을 종합함으로써 중국법의 거의 모든 분야를 책자에 소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실제사례 합계 약 1천여 건을 장기간에 걸쳐 심도 깊게 분석하였으며, 이 중에서 자주 발생하거나 시사성이 높은 것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책자에 수록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사례는 독자들이 알기 쉽게 단순화하였으며, 특히 여러 법령이 적용되는 복잡한 실제사례는 적용 법령별로 사안을 분리하여 서술함으로써,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쟁점별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발생빈도가 매우 높은 분쟁사례는 사안을 유형별로 재분류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들의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켜 유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Part 1 기업비즈니스법률에서는 중국진출 우리기업이 경영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례 총 195개를 선정하여, A.투자와 경영, B.기업세무, C.무역과 관세, D.노무 인사, E.기업부동산, F.기업 청산으로 분류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part 2 교민생활법률에서는 중국에서 거주하는 우리교민들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례 총 148개를 선정하여, G.부동산과 생활, H.세금과 생활, I.민법과 생활, J.민사소송법과 생활, K.형법과 생활,

I. 형사소송법과 생활로 분류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part 3 중국법 관련 참고자료에서는 중국법에 대한개괄적인 이해를 돕는 글과 참고자료를 정리하여, M.중국의 법제와 법문화, N.중국법의 종류와 법률용어, O.부록(참고)으로 나누어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은 광대한 중국 대륙에 흩어져 있는 수 많은 기업과 교민, 유학생들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전자책자 형태의 출판을 전제로 집필되었습니다. 기존의 종이책자 형태로는 기업과 교민들에게 일일이 배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책자파일을 주중대사관 등 주요 사이트에 무료로 게시하면 독자들이 컴퓨터, 태블릿pc 등으로 다운받아 손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글자크기와 디자인을 고려하여 집필하였습니다.

또한 독자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검색하여 읽을 수 있도록 별도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로써 독자들이 주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사전 또는 사후에 관련 사례를 손쉽게 찾아 읽고 대비함으로써 분쟁해결 또는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필진은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법률체계는 워낙 방대하고 복잡하여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사례를 수록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미진한 부분은 매년 증보판 발행을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자의 발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자료정리 및 중국법령 검색 등에 크게 도움을 준 배덕현 박사와 김흠 변호사, 그리고 원고 교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정효삼, 김호삼, 김용자 세 분의 검사, 노무·국세·관세 등 전문분야에 대하여 조언을 아끼지 않은 김상환 노무관, 심육기 국세관, 김정 관세관, 김앤장로펌 김종국 변호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12월 공동집필

주중한국대사관 법률지원센터소장 노정환

덕현법률사무소 대표 김덕현

중국법률사례집 『2015년 개정판』을 마무리하며

2012년 초판을 발간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의법치국(법치에 의한 중국) 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수많은 법령을 제정하고, 또 개정하였습니다. 2013년부터는 새로운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되었고, 관광법, 상표법 등 많은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최근에는 법인설립 관련 규정을 대폭 수정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번 2015년 개정증보판에는 변경된 중국의 법령에 맞추어 기존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률상당사례 100여 건을 새로 추가하였는데, 특히 우리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과 교민들이 중국 일상 생활에서 알아두면 편리한 법률문제를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증보판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면서 상담사례 중에서도 기업인과 교민의 입장에서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엄선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중국법률사례집’이 중국에서 기업을 경영하거나 생활하시는데 필요한 모든 법률이 들어 있어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담사례집으로 평가되기를 바라며, 미진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 책자의 발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자료정리 및 중국법령 검색 등에 크게 도움을 준 정영동 변호사, 원고 교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김상용 고용노동관, 윤인채 관세관, 김대일 국

세관, 정희남 선임연구원 그리고 책자 발간에 이르기까지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은 김지영 서기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12월 공동집필
주중대사관 법무협력관 위성국
덕현법률사무소 대표 김덕현

중국법률사례집 『2017년 개정증보판』 을 출간하며

2011년 '사례로 풀어보는 중국법'이 발간되고, 2014년 증보판이 발간된 지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2014년 10월 중국공산당 18차 4중전회에서 '依法治国'이 단독의제로 상정될 만큼 법치가 강조되었고, 2015년 12월 한·중 FTA가 발효되는 등 법률 환경의 변화가 많았습니다. 특히 외자기업법, 외국 비정부조직의 중국내 활동관리법, 영업세의 증치세로 전환규정, 회사등기관리조례 등을 비롯한 많은 법령이 제·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격변하는 법률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교민들의 생활 법률문제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번 2017년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최근 많은 변화가 있었던 세무, 관세, 노무분야 및 민사·형사분야의 새로운 사례를 추가하였고, 나날이 그 중요성이 증대되는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Section을 추가하여 관련 사례들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그 동안 개정된 법률을 그대로 반영하여 교민들의 일상 생활 및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중국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른 많은 법령 및 하위 규정들이 제·개정되어 본 개정판에 반영되지 못한 규정들이 있을 수 있음을 너그러이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하여 보완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 가능하였기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중국법령 검토에 큰 도움을 준 김길봉 변호사 및 구체적 사례 검토 및 원고 수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박무익 국토교통관, 김대일 국세관, 손필훈 고용노동관, 윤국섭 특허관, 이소면 관세관, 정희남 선임연구원 그리고 원만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 없는 행정적 지원을 해준 서민정 참사관, 김진애 서기관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5월

공동집필 주중대사관 법무협력관 정 효 삼

덕현법률사무소 대 표 김 덕 현 拜

중국법률사례집 『2020년 개정증보판』 을 출간하며

2011년 주중한국대사관에서 해외공관 중 처음으로 생활법률책자를 발간한 이래, 2014년과 2017년 개정 증보판을 각 발간하였는데, 어느새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한·중 양국 간의 교류의 증대로 다양한 유형의 법률분쟁이 증가하고, 중국의 법률 환경도 변화가 많았습니다.

2019년에는 기존 외국인투자 3법을 폐지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였고, 금년에는 중국 언론에서 '사회생활의 백과전서'라고 호칭되는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을 신중국 성립 후 7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중국은 그 동안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 체제의 본질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기존의 민법을 폐지하고 《물권법》 《계약법》 등 9개 법률로 민사관계를 처리하여 왔는데, 이번 통합 민법전의 제정은 법률문화를 선진화하고 의법치국(依法治国)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2020년 개정증보판』은 2017년 개정 이후 법률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대 변화에 따른 법률분쟁 유형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법률상담사례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법률상담사례의 근거된 법률조항도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문제되는 미세먼지 등을 고려하여 환경 분야, 비자와 자동차 등 일상생활 분야를 새로이 각 추가하고,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노무 및 세

금, 지식재산권 분야의 새로운 사례를 추가하였으며, 최근 제정된 통합 민법전을 민사 및 부동산 분야 사례의 근거조항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중국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교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개정판에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개정판의 발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자료 정리 및 중국법령 검토에 큰 도움을 주신 김길봉 변호사, 사례 선정 및 원고 수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황계영 환경관, 권대철 국토교통관, 박근재 국세관, 김근모 특허관, 권구형 고용노동관, 하춘호 관세관, 정희남 선임연구원 그리고 원만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행정지원을 해주신 임재완 서기관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8월

주중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 윤경원

덕현법률사무소 대표 김덕현

[2012년 초판]

- 발간총괄 김경수(경제공사)
- 발간책임 조원명(공사참사관)
- 집필 노정환(주중대사관 법무협력관, 부장검사, 법학박사)
김덕현(덕현법률사무소 대표, 법학박사)
- 발간위원 배덕현(주중대사관 선임연구원, 법학박사)
김흠(변호사)
정효삼(검사), 김호삼(검사), 김용자(검사)
- 감수위원 김상환(주중대사관 노무관), 심육기(주중대사관 국세관)
김정(주중대사관 관세관), 김종국(김앤장로펌 변호사)

-
- 발행일 2011년 12월
 - 발행처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과 [비매품]
 - 발간등록번호

-
- 제작 좋은샘/좋은아침
 - 편집 새샘기획

[2015년 초판]

- 발간총괄 박은하(경제공사)
- 발간책임 이충면(공사참사관)
- 집필 위성국(주중대사관 법무협력관, 부장검사)
김덕현(덕현법률사무소 대표, 법학박사)
- 발간위원 김지영(주중대사관 서기관)
정희남(주중대사관 선임연구원)
정영동(변호사)
- 감수위원 김상용(주중대사관 고용노동관)
김대일(주중대사관 국세관)
윤인채(주중대사관 관세관)

-
- 발행일 2014년 12월 10일
 - 발행처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과 [비매품]
 - 발간등록번호

-
- 제작 좋은샘/좋은아침
 - 편집 새샘기획

[2017년 초판]

- 발간총괄 백용천(경제공사)
- 발간책임 김석우(참사관)
- 집필 정효삼(주중대사관 법무협력관, 부장검사)
김덕현(덕현법률사무소 대표, 법학박사)
- 발간위원 서민정(주중대사관 참사관)
정희남(주중대사관 선임연구원)
김길봉(변호사)
- 감수위원 박무익(주중대사관 국토교통관)
윤국섭(주중대사관 특허관)
손필훈(주중대사관 고용노동관)
김대일(주중대사관 국세관)
이소면(주중대사관 관세관)

-
- 발행일 2017년 5월
 - 발행처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과 [비매품]
 - 발간등록번호

-
- 제작 북경부경한광고유한공사
 - 편집 북경애듀니설계유한공사
-

[2020년 초판]

- 발간총괄 유복근(경제공사)
- 발간책임 한상국(공사참사관)
- 집필 윤경원(주중대사관 법무협력관, 부장검사)
김덕현(덕현법률사무소 대표, 법학박사)
- 발간위원 임재완(주중대사관 서기관)
정희남(주중대사관 선임연구원)
김길봉(변호사)
- 감수위원 황계영(주중대사관 환경관)
권대철(주중대사관 국토교통관)
박근재(주중대사관 국세관)
김근모(주중대사관 특허관)
권구형(주중대사관 고용노동관)
하춘호(주중대사관 관세관)

-
- 발행일 2020년 8월
 - 발행처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과 [비매품]
 - 발간등록번호

-
- 제작 북경부경한광고유한공사
 - 편집 북경애듀니설계유한공사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